
최종보고서

취약청년 현황 및 지원방안 연구 - 1인가구 청년 및 경계선 지능 청년을 중심으로

저 자 유민상, 변민수, 김기현, 신동훈, 박미선, 한지형

연구진 연구책임자_유민상(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원_변민수(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선임연구위원)
김기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신동훈(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박미선(국토연구원 연구위원)
한지형(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연구보조원_이미영(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연구요약

1. 연구 개요

- 취약 청년이란 성인기 이행 과정에서 고용, 교육, 복지, 문화, 주거, 참여 등 삶의 영역에서 불리한 상황에 있는 청년을 의미함.
- 성인기 이행이 길어지고 어려워지면서, 성인기 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기존 사회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 청년에 대한 지원 방안이 확대되고 있음.
- 그동안 1인가구 청년과 경계선 지능 청년의 취약성에 대한 연구가 있었으나, 이들에 대한 청년정책이 아직 미비한 실정이므로 현황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가 필요함.
- 1인가구 청년은 매우 이질적인 집단이나 사회적 지지체계나 사회경제적 불안정성이 높은 취약 집단이 집중되어 있어 성인기 이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또한, 경계선 지능 청년은 교육과 고용의 경계에서 특별한 지원이 뒤따르지 않으면 성인기 이행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에서 정책적인 관심이 요구됨.

2. 1인가구 청년 지원

□ 현황

- **(개념)** 1인가구란 혼자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 가구를 의미함.
 - **(청년 1인가구)** 청년 1인가구란 「청년기본법」에 근거하여 19세~34세까지의 사람이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 가구를 의미함. 단, 지자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년 연령에 따라 연령 범위는 달라질 수 있음.
 - **(취약청년 1인가구)** 취약청년 1인가구는 법정정책적으로 규정되지 않았으나, 주거

환경의 물리적 취약성과 경제적 취약성이 결합된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음.

- **(현황 및 추이)** 청년 1인 가구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음
 - **(비중)** 2023년 기준 전체 1인가구 비중은 총가구의 34.5%
 - **(추이)** 2000년 20~30대 1인가구 비율은 6.4%에 불과하였으나 2023년 12.5%로 2배가량 증가함.
 - **(구성비)** 1인가구 연령대별 구성비를 보면 청년층의 1인가구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전체 1인가구 중 29세 이하는 19.2%, 30~39세는 17.3%, 40~49세는 13.0%, 40~49세는 13.0%, 50~59세는 15.2%, 60~69세는 16.7%, 70세 이상은 18.6% 등임.

- **(지자체별 분포)** 지역 간 청년 1인 가구 비중이 상이함.
 - **(광역 자치단체)** 광역 자치단체별 청년 1인가구의 비율을 보면, 청년 1인가구 비율*은 세종 53.1%, 서울 49.6%, 대전 47%로 높았고, 경북 27%, 경남 24.9%, 전남 20.9%로 낮게 나타나 지역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단, 29세 이하 및 30~39세의 비중을 합산한 결과임.
- **(성별 분포)** 성별 간 청년 1인가구의 수가 상이함.
 - **(여성)** 여성 청년 1인가구는 서울 관악구 32,715가구, 서울 강서구 16,221가구, 서울 마포구 15,752가구 등 상위 10개 지역 중 9개가 서울지역이었으며 나머지 1개 지역은 대전 서구였음.
 - **(남성)** 남성 청년 1인가구는 서울 관악구 35,178가구, 경기 화성시 19,905가구, 대전 유성구 15,018가구 등이었으며, 상위 10개 지역 중 서울은 5개 지역, 대전 2개 지역(대전 유성구, 서구), 경기 2개 지역(화성시, 수원 영통구), 충남 1개(천안 서북구) 등

□ 분석

- **(선행연구분석)** 1인가구 청년의 어려움과 유형
 - **(1인가구 청년의 이질성 및 유형)** 1인가구 청년들은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집단과 저임금, 실업, 비경제활동 등으로 인해 불안정한 집단까지 다양한 특성을 보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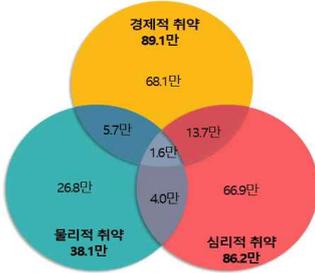
- **(청년 1인가구의 어려움)** 선행 연구들은 1인가구 청년들의 어려움으로 주거 불안정과 빈곤 문제, 주거비 과부담, 사회적 지지체계 부재 및 심리정서적 문제(고립감과 외로움) 등을 지적하였음.
- **(청년 1인가구의 특징)** 주택 소유보다는 임대 지원에 대한 욕구가 높았으며, 일자리 접근성이 좋고 여가·소비생활을 누릴 수 있는 지역을 선호하였음.
- **(선행연구 시사점)** ①청년들의 이질성을 반영하여 1인가구 청년을 단일하게 지원하기보다는 차등적으로 지원 필요, ②임대 지원을 통해 성인기 이행의 단계적 지원을 하면서 상향 이동 고려, ③일자리·여가생활을 고려한 주거를 공급 및 서비스 전달 체계 설치, ④1인가구 청년의 보편적 문제외 취약 청년의 중첩된 문제에 대한 차등적 대응 필요함.

● **(주거실태분석)** 국토부 주거실태조사(2022년) 결과 분석

- **(점유형태 및 주택 유형)** 1인가구 청년은 다른 유형의 청년가구에 비해 자가 점유가 낮고 보증부월세 형태로 거주하는 비중이 높았음. 혼자 사는 청년은 주로 단독·다가구 주택에 많이 거주(46.5%)하고, 아파트, 그리고 오피스텔 거주 비율(15.4%)도 높았게 나타났음.
- **(주택 보유 의식 및 정책 욕구)** 전체 가구의 주택 보유 의식은 87.3%인 것에 비해 청년 1인가구는 70.9%인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주택 보유 의식이 낮았음. 1인가구 청년은 월세 보조(28.2%)가 다른 가구 유형에 비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며 장기공공임대주택(9.8%)에 대한 요구가 두드러짐.
- **(물리적·경제적 취약성)** 청년 1인가구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비율(9.8%)과 주거비 과부담 비율*(29.5%)이 모두 전체 가구(각각 3.9%, 26.2%)보다 높았음. 이를 바탕으로 추정한 주거 취약 1인가구의 규모는 6.4만 가구로 추정되며, 전체 청년가구로 넓히면 7.3만 가구 정도로 추정됨.

* 월소득대비 주거비 부담이 30%를 넘는 비율

주거취약 청년가구 규모



주거취약 1인 청년가구 규모



출처: 국토교통부 (2022). 주거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계산하여 작성

그림-요약1. 주거취약 청년가구 규모 추정(단위: 가구)

- (주거실태분석 시사점) ① 청년 1인가구는 자가 점유 비율이 낮고 보증부 월세 형태로 거주하는 비중이 커 월세 보조나 장기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높음
 - ② 청년 1인가구 10명 중 1명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한 주택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9.8%), 3명 중 1명은 주거비 과부담 상태에 있어(29.5%) 주거 상향이동 지원이 시급히 필요한 상태였음. ③ 주거환경 개선 및 안정성 제고를 위해 월세 보조,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필요하나,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하므로 공급, 금융, 전월세 지원 등 정책 규모를 확대해야 함.
- (생활실태분석) 국무조정실 「청년의 삶 실태조사(2022년)」 분석
 - (거주 주택 상태) 청년 1인가구가 거주하는 주택의 상태(구조, 난방 및 단열, 환기, 채광, 안전, 위생 등)는 다른 청년가구에 비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고졸 이하 청년이 더 취약하였음.
 - (거주 환경 만족) 생활 인프라, 교통, 치안 등 주거 환경 만족도는 다른 청년가구보다 낮았으나, 대중교통 이용 만족도만 높게 나타남.
 - (주거 불안정) 2개월 이상 임대료 연체(3.9%), 이사 또는 계약 갱신에 필요한 보증금 부족(8.6%), 3개월 이상 공과금/관리비 연체(2.1%), 임대인과의 갈등(3.9%) 등에서 다른 청년가구에 비해 높게 나타났음. 고졸 이하 청년은 모든 항목에서 불안정 경험률이 가장 높았음.

- **(사회심리적 상태)** 삶의 만족도, 행복감, 자유로운 선택은 다른 청년가구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나, 우울도 다소 높게 나타남. 가족으로부터 큰돈을 빌리거나 생활비를 받을 수 없는 비율도 높게 나타나 사회적 지지체계가 부족한 특징이 있음.
- **(주거정책 욕구)** 전세자금대출(55.4%)과 주택구입자금대출(55.4%)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았으며, 주거비 지원(43.0%)과 공공임대주택 입주(30.3%)가 그 뒤를 이었음. 전체 청년가구가 주택자금대출(63.9%)을 가장 높게 응답한 것에 비해 청년 1인가구는 전세자금대출과 주거비지원 등 주거비에 대한 부담을 낮추고 비교적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임대해 지낼 수 있는 거주공간을 확보하는 것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볼 수 있음.
- **(생활실태분석 시사점)** 청년1인가구들은 직장, 학교가 가깝고 교통 편의성이 높은 지역을 선호한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임.

● **(면접조사분석)** 1인 가구 청년 및 실무자 면담 분석

- **(1인가구 청년의 다양성)** 고시원 거주 청년부터 안정적으로 자립한 청년까지 다양했으며, 주거 취약 외 빈곤, 경계선 지능 등 복합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었음. 1인가구 청년을 단일한 집단으로 보는 것은 어려움.
- **(주거 관련 어려움)** 처음 독립하며 겪는 주거 계약의 어려움, 전세 사기 및 퇴거 불안, 임대인과의 갈등 등을 호소하였음. 과도한 주거비 부담은 공통적인 어려움이었음. 또한 공공주택 공급 부족과 높은 경쟁률로 인해 정착 지원이 필요한 취약 청년이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아쉬움을 표하기도 함.
- **(생활 관련 어려움)** 독립생활에서 오는 불안감과 부담감, 심리적 고립감, 지지체계 부재 등은 1인가구 청년들의 보편적인 어려움으로 나타남.
- **(기존 주거정책의 한계)** 대체로 주거정책이 어렵고 도움받을 곳이 없다고 느꼈음. 공유주거보다는 독립된 주거를 선호했으며, 이러한 선호를 반영한 청년주택 구조 변경은 긍정적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답하였음.
- **(주거 상향에 대한 공통 욕구)** 집단의 이질성에도 불구하고, 불안정·부적정 주거에서 안정적·적정 주거로, 임대에서 소유로 나아가려는 주거 상향 욕구는 공통적으로 나타남.
- **(면접조사 분석 시사점)** 일반 청년에게는 주거 리터러시 교육을 지원하고, 정책을

청년 눈높이에 맞춰 전달해야 함. 주거와 생활 지원 욕구는 결합되어 있으나 전달체계는 단편적이어서 개선이 필요함. 또한, 보편적 주거 상향 전략과 함께 '지옥' 거주 청년 등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차등적으로 시행해야 함. 단, 선별지원 공급량이 너무 적어 실효성을 높이려면 청년특화공공임대 등 공급 확대가 필수적임.

□ 제도 현황

● (국조실·지자체) 「청년기본법」 및 1인가구 관련 조례

- (「청년기본법」상 주거 관련 조항) 「청년기본법」 제20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다소 상징적인 한계가 있음. 취약청년 지원 조항을 추가하거나 주거취약 개념을 포함하는 등의 개정이 필요함.
- (지자체 1인가구 지원 조례) 전국 140개 조례가 있으나, 청년 1인가구 특화 조례는 대구 달성군이 유일함. 서울시는 조례를 근거로 지원센터를 설치했지만, 노인 1인가구에 비해 청년 지원의 우선순위가 낮아 특화 정책의 근거로는 미흡함.

● (국토교통부)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주거지원제도 현황 분석

- (청년 주거복지정책 프레임) 국토교통부는 2024년 193개 청년 주거정책을 4개 유형, 10개 정책으로 단순화하여 발표하고, 정책 홍보 시 10개 정책명을 표기하도록 지침을 마련하여 청년 친화적으로 정책 홍보를 진행함. 국토교통부의 정책 단순화는 청년들의 정책 이해도 증진을 위해 긍정적이나, 1인가구 청년들의 욕구가 높은 월세지원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정책의 안정성이 떨어지는 한계가 있음.
- (소득기준 검토) 국토교통부는 소득기준이 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 중위소득, 연평균 소득 등 다양한 기준이 혼용되고 있어 중위소득과 연소득으로 단순화하는 방안을 발표하였으나, 여전히 지자체에서는 소득 기준이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
- (연령기준 검토) 국토교통부의 정책 지원 자격 중 연령은 19~39세(뉴홈 나눔형), 18~39세(통합공공임대), 19~34세(청년전용 버팀목 전세대출, 청약통장), 20~39세

(청약통장 대출)*로 각기 다르게 설정되어 연령기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단, 주거비 지원의 주거급여 분리도 19~29세로 설정하고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거급여 기준과 연관되어 있어 논외로 하였음.

* 자격기준의 포괄성, 정책 연결성, 청년 당사자의 정책 이해도와 연결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자격기준 검토)** 지원 대상을 미혼, 무주택자, 대학생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주거 취약성이 높은 고졸 청년이나 직업훈련생 등 비경제활동인구를 포괄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함.
- **(기타 검토 사항)** 공공임대의 경우 청년들의 선호도가 올라가고 있으나 매입임대 등 청년들이 선호하는 지역에서의 공급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음. 청년주택 공급 시 도심 청년주택 모델을 설정하여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함(정소이 외, 2023).
- **(국토교통부의 주거취약계층지원 사업 검토)** 국토교통부의 '비정상거처 주거상향 이주지원 패키지'는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비정상거처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 비정상거처에서 만18세 미만 아동과 함께 거주하는 사람이 해당함. 이 사업은 주거 상향을 위한 기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더 확대할 필요가 있으나, 비정상거처에 3개월 이상 거주 자격이 있어 주거 불안정 위험에 대응하기에는 다소 사후적인 방안임.
- **(국토교통부의 주거복지정책 분석 시사점)** 정책 단순화와 정보 제공 노력은 긍정적이나, 여전히 소득·연령 기준이 혼재되어 조율이 필요함. 월세 지원은 한시 사업이라 불안정하며, 사업 간 대기기간이 길어 즉각적인 도움이 어려움. 특히, 주거 불안정에 대한 완충 역할을 할 제도가 부족함.

● **(여가부·지자체)** 여성가족부와 지자체의 1인가구 지원은 전생애를 포괄하고 있고, 주로 생활편의를 지원하고 공통체를 형성해주는 형태임.

-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는 가족센터를 통해 생애주기별 1인가구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으나 생활지원에 특화되어 있음. 고독 우울감을 방지하기 위한 심리정서 지원, 소통, 교류, 자조모임 등의 사회관계망 형성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음.
- **(지자체)** 지자체 중 서울시는 1인가구 지원조례에 근거하여 1인가구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쌍글빙글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전생애 1인가구 지원을 하고 있음. 서울시 차치구나 설치 유형(가족센터 내 1인가구지원센터 설치, 1인가구지원센터 단독

설치)에 따라 운영 프로그램에 차이가 있으나, 주로 사회안전망 구축과 생활 편의지원(북카페, 공구대여) 등의 형태의 지원을 하고 있음.

- **(중앙 및 지자체 정책분석 시사점 및 함의)** 현 제도의 보완 필요사항은 다음과 같음.
 - **(주거 욕구대응)** 청년 1인가구는 전월세지원과 공공임대 지원에 대한 욕구가 높으나 월세지원이 한시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고, 공공임대의 공급도 너무 적어 경쟁률이 매우 높은 한계.
 - **(중간단계 지원)** 주거지원 대기기간이 길어 사회적 지지체계가 부족한 취약청년 1인가구는 비정상거처로 이동하는 등의 불안정성을 크게 느낄 수 있으며, 비정상거처로 옮길 경우에도 사후적으로 3개월 이상 비정상 거처에 거주해야 혜택을 받아야 하는 한계.
 - **(자격연령 표준화 필요)** 주거복지제도 이용 시 자격 연령이 상이하여 혼선이 발생할 수 있음. 표준 연령은 모두 포괄하되, 필요에 따라 자격 연령을 높이는 방식으로 설계 및 홍보 필요.
 - **(제도 표준화 및 홍보 필요)** 국토교통부가 마이홈 포털을 운영하고 청년들의 정책 이해도를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청년들의 마이홈 포털에 대한 인지도가 낮음. 현재 국토교통부 관련 정책은 마이홈과 청약홈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정책 이해도가 낮으면 활용하기 어려워 진입을 지원하는 교육이 필요함.
 - **(전달체계의 확대 필요)** 여성가족부와 지자체 1인가구 지원센터는 주거지원에 관한 정보연계나 상담은 제공하고 있지 않으며, 주거복지센터나 청년센터와의 연계도 거의 하지 않고 있음. 아직 전달체계가 불안정하고 프로그램이 임시적인 한계.
 - **(통합지원체계 필요)** 청년1인가구의 주거지원 및 주거정책 안내와 생활지원이 함께 결합되어 있는 형태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청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청년주택 인근의 청년센터에 1인가구 청년 특화 혹은 주거 정책 특화 모형으로 시범 운영해 볼 수 있음.

3. 경계선 지능 청년 지원

- **(정의)** 본 연구에서 경계선 지능 청년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지능력 및 학습능력 저하로 인해 소속되어 있는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이에 대한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자로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를 의미함
 - 경계선 지능인은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장애는 아니지만 인지, 학습, 사회성 등의 능력이 낮아 소속되어 있는 사회에 적응하기 어려워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자

	내용
법적 정의	<p>이 법에서 “경계선 지능인”이란 인지능력 등의 부족으로 학습 및 사회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으로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발달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제22대 국회 권철승 의원 법안)</p> <p>1. “경계선 지능”이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을 말한다.</p> <p>2. “경계선 지능 학생”이란 경계선 지능으로 인하여 학습 및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서울특별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p>
의학적 정의	<p>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편람(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DSM-4th-TR)</p> <p>경계선 지능 (Borderline Intellectual Functioning: BIF)</p> <p>‘IQ 71-84에 해당하며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주의해야 할 발달장애군’</p>

- **(특성에 따른 어려움)** 경계선 지능의 개념을 규정할 때, 개념에 ‘지능’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경계선 지능인을 설명할 때 학업적인 능력과 주로 연관 짓는 경향이 있음. 그러나 경계선 지능인의 특성을 이해할 때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오히려 성장 과정에서 정서·관계·사회성 영역에 있음(김동일 외, 2023).
 - 인지·학습·교육의 어려움: 학습이 느리고 지속적·반복적·단계적 훈련이 필요
 - 사회적·관계적 어려움: 타인과의 관계 형성과 유지, 사회적 상황과 맥락에 대한 이해 부족
 - 고용·자립·경제적 어려움: 성인전환기 이후 직업훈련 및 취업 기회 부족, 실업

내지 단기 아르바이트로 생활, 고용 유지 어려움.

- **(자립의 어려움)** 청년기는 학령기의 공적 교육체계가 제공하는 지원과 보호가 단절되거나 취약해지는 시기이므로,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경계선 지능 청년의 특성과 욕구에 적합한 지원이 제공되어야 하지만, 경계선 지능 청년을 위한 맞춤형 직업훈련이나 취업 알선 서비스 등이 부족하므로 구직활동도 어렵고 취업하더라도 부적응으로 인한 조기 퇴직으로 자립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변민수 외 2024).

- 경계선 지능 청년의 사회적 고립과 제한된 관계, 적절한 직무 매칭과 고용유지의 어려움.
- 학령기: 집단따돌림, 학교폭력 → 성인기: 지지적 관계 부재, 범죄에 쉽게 노출
- 적절한 직업훈련 과정 부재, 수행가능한 직무 제한, 직무 숙련 이전에 퇴직 가능성 높음.

- (당사자) “업무 속도가 느리고 대인관계와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어 상사로부터 자주 질책을 받다보니 오래 근무하기 어려웠어요.”
- (부모) “직업훈련 후 직업소개를 받아 취업해도 단기간 내 퇴사하는 경우가 많아 자녀의 취업과 경제활동을 통한 자립이 가장 큰 걱정거리예요.”

- **(국내 정책 동향)** 경계선 지능인 지원 관련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청년 취업 지원 시범사업

-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안)(2024~2028)’ 소외된 약자의 권익 보호·지원 강화 차원에서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지원을 언급, 교육·자립·고용·돌봄 등 통합적 지원 방안을 모색
- ‘제6차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2023~2027)’에서는 대상별 특화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경계선 지능인 등 법정 장애인은 아니지만 직업생활이 어려운 직업적 장애 대상에게 고용서비스 다양성 검사 등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을 통해 취업지원을 하는 방안을 검토
- ‘경계선 지능인 지원 방안(2024.7.3.)’ 관계부처 합동 지원 방안, 평균 지능 대비 낮은 인지 기능으로 학업·근로 등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규정, 조기개입, 인식개선, 자립역량 강화 등 3대 정책방향 명시

- 경계선 지능 청년 일 역량 강화 및 일경험 시범사업(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서울시경계선 지능인평생교육지원센터, 청년재단 3자 협업), 진로컨설팅·맞춤형직업훈련·일경험 시범사업 수행

- ‘느리지만 확실한 변화’...경계선 지능 아이들이 달라졌어요(서울신문, 2024.4.23.)
- ‘일자리 소외’ 겪는 경계선 지능인...“배우고 익히면 할 수 있어요”(경향, 2024.5.10.)

● **(국의 정책 동향) 중앙부처의 법에 근거한 제도적 지원과 다양한 프로그램 등 정책적 시사점**

- 미국의 메리어트 브릿지 프로그램(Marriott Bridges Program)
 - 청년의 능력과 고용주의 요구를 맞춤으로 매칭*, 고용유지 위해 취업 후 6개월에 서 1년 동안 업무 진행상황 파악 등 사후 관리
 - * 미국 10개 주요 도시에서 운영, 소매점, 레스토랑, 사무실, 병원, 호텔, 창고 및 유통 센터를 포함하여 다양한 일자리와 매칭, 일주일에 최소 15시간 일할 것을 요구
- 호주의 가족지원 프로그램(Family Connection)
 - 전문적인 정신건강과 심리치료를 위한 요법들을 제공, 경계선 지능인을 가족으로 두고 있는 경우에는 가족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
 - * 패밀리 커넥션(Family Connection)은 매주 2시간 동안 진행되는 무료 12주 과정으로, 경계선 지능인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교육, 기술 훈련 및 지원을 제공. 임상 의(clinicians) 또는 경계선 지능인의 가족 중에서 훈련된 이가 그룹 리더의 역할
- 스페인의 적극적 공공고용서비스(SOC)

- 호주는 경계선 지적 기능을 가진 사람들의 경험을 근거로 정책 마련
 - 경계선 지적 기능을 가진 사람들의 생활 환경을 일반 인구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학교에서의 열악한 경험, 괴롭힘의 위험, 유급 고용기회 감소, 더 높은 빈곤율, 불안정한 주거 및 노숙 위험, 알코올 및 약물 사용 문제 가능성, 정신 질환 동반 가능성, 형사 사법 시스템과의 접촉 위험 등이 큰 것으로 조사됨
 - 이를 근거로 경계선 지적 기능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자기 결정권을 고려하는 정책, 복지·안전 및 책임을 지원하는 정책, 관계와 전체적인 삶의 관점에서 개인을 지원하는 정책 등을 강화

- 스페인은 ECCDC, AMHC 또는 SSMHID에서 근무하는 전문가가 발급한 인증서로 경계선 지능 진단, 공인 인증서가 있는 사람은 장애가 있는 사람들

을 위한 자원과 지원도 이용*

* 경계선 지능인은 적극적 고용 정책의 공공고용서비스(SOC) 지원대상, 공공고용서비스는 기본적으로 현재 취업 중이든, 실업 중이든, 일자리를 찾는 사람에게 서비스 제공,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노동 기회 제공을 목표

- 고용 및 사회 보장부가 필요한 정책을 결정하고 국가 일반 예산에서 자치 공동체에 자금을 분배하여 전제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적극적인 정책수행

- 독일 경계선 지능인의 법적 지위 보장

- 독일에서 경계선 지능인은 학습장애의 한 유형에 포함되며 지원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장애인에 준하여 서비스를 제공

* 사회법전 제3권(근로촉진법) 제19조는 “장애인은 사회법전 제9권에 정의된 장애 유형 및 정도에 의하여 근로생활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크게 제한되어 근로생활에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 학습장애인 포함

- 독일의 경계선 지능인 맞춤형 직업훈련

- 비장애인 2~3년 걸릴 교육을 3~4년간 느리게 교육하고, 이론보다는 실습 교육을 장기간 반복*, 직장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 지원과 자신의 기술적 역량을 증명하고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는 직업훈련 과정

* 명확한 작업 지침과 목표, 질문·도움·격려, 직업교육 수준을 천천히 향상, 직업훈련지원인 서비스 제공

- 독일의 경계선 지능인 자격증

- 전문실무가 직업훈련(Fachpraktiker-Ausbildung)은 일반 직업훈련을 수료한 사람보다 전문성이 낮을 수 있지만 해당 직무에 경험이 없거나 숙련되지 않은 비숙련 근로자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직무능력을 보유, 과정을 성공적으로 수료한 사람은 전문실무가(Fachpraktiker)*라는 공식 지위를 부여

* 일반 기능인의 보조 역할이 아니라, 일정 영역에 대한 독립적인 직무 수행 ex) 수목 관리 업무 중 가지치기

■ 독일 전문실무가 채용 사례

- 라인란트주 142개 통합사업장(Inklusionsbetriebe)에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전문실무가(Fachpraktiker) 자격을 가진 경계선 지능 청년의 교육생 채용에 대한 질문에 67%가 긍정적으로 답변
- 통합사업장의 업종은 주로 요식업, IT서비스업, 정원관리 및 조경업, 세탁 및 건물 청소 등

4. 정책 제언

1) 1인가구 청년 지원

□ 1인가구 청년 지원 방안 (주거에서의 이행(transition) 지원)

- **(주택공급 확대)** 1인가구 청년들의 주거 욕구에 대응할 수 있는 주택공급 정책을 확대·신설하여 1인가구 청년의 주거 안정성 보장
 - **(청년친화형 주택공급 확대)** 도심·기숙사형 청년주택 공급을 늘리고, 코리빙 공간과 청년센터를 함께 설치하여 주거와 생활을 통합 지원하는 방안 검토
 - **(중간주택(가칭 지역 특화형 징검다리 주택) 공급)** 청년층은 지역 간 이동성 및 직업 이동성이 높음. 청년층이 지역 간 이동을 하는 경우 현재와 같이 민간 시장에서 초단기로 거주하거나 1~2년 이상의 장기로 거주하는 형태 이외의 '중간기간'을 지원하는 징검다리 형태의 공공임대 제공 방안 검토.
 - **(중간주택(가칭 취약 청년 자립형 징검다리 주택) 공급)** 비정상거처에서 공공임대로 완전히 이주하기 위해 비적정 거처를 벗어나 거주할 수 있는 중간 주택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중간주택은 비적정거처나 비정상적 상황에서 온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하기 이전에 지역사회에서 거주할 수 있는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음.
 - * 공공임대주택의 공실 활용, 지자체 차원의 사회주택 활용

- **(금융지원 확대)** 청년의 주거 상향 이동을 위한 자산 형성 지원
 - **(청년도약계좌 만기 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연계 강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청년도약계좌와 별개로 운영되고 있는 국토교통부 금융지원 사업임. 국토교통부는 2024년 2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출시하면서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 만기에 수령한 목돈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일시납 하는 것도 허용하여 청년자산형성 프로그램 간 연계성도 강화”하였음. 이를 촉진하기 위해 청년들의 정책 이해도를 높이고 편의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청년도약계좌 만기 시 자동연계될 수 있도록 사전 동의 및 신청을 받아 연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주거 관련 정책 이해도 증진 방안)** 이행에 관한 정보 및 정책 접근성 개선
 - **(청년 주거정책의 표준화-소득기준)** 국토교통부는 2023년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청년 주거정책 193개를 10종으로 알기 쉽게 단순화한 바 있음. “주거 복지제도를 수요자인 청년입장에서 단순화하고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는 방향에서 정책을 표준화, 단순화하기로 하였음. 하지만 아직 소득 기준에서 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 중위소득, 월평균소득 등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표준화가 지속적으로 필요함.
 - **(청년 주거지원 상담·교육 프로그램 신설)** 청년의 주거정책에 대한 교육 욕구가 높고 상담 필요성이 높으므로 이를 상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고도화하여 제공할 필요. 서울 청년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재무상담 및 교육 사업 ‘영테크’*를 벤치마킹하여 국토부에서 청년 주거 및 금융 교육 사업으로 고도화하여 전국 적용할 필요.
 - **(주거정책 관련 상담, 교육 지원)** 청년들이 주거정책에 대해 기초적으로 이해하고, 전세사기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청년들에 대한 주거 상담, 교육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현재 청년센터 등 청년정책 전달체계는 주거정책 관련 교육이나 상담이 거의 부재하므로, 국토교통부에서 신규 주거정책 관련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전국적으로 확대할 수 있음. 국토교통부, LH, SH 등 공공기관과 청년 및 주거복지 전달체계, 민달팽이 유니온 등 청년단체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진다면 안정성과 청년 당사자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임.
- **(청년 주거복지 전달체계의 확대)** 청년 1인가구 정책 접근성 향상
 - **(전달체계 설치 및 통합)** 현재 1인가구 청년 지원 관련 정책은 서울특별시에서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들만이 서울시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도입하고자 하고 있음. 중앙단위의 정책근거를 마련하여 전국 단위의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존의 전달체계를 보완하거나 정책 지원체계 패키지(생활지원 및 주거지원) 모형을 개발하여 전국단위로 확산시킬 필요가 있음. 또한, 청년센터, 1인가구 지원센터, 가족센터, 주거복지센터, 마이홈 센터 등 1인가구 청년 지원이 가능한 센터들 간에 협력하고, 사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

- **(보편적 1인가구 특화 사업 확대)** 청년 특화 주거복지전달체계 강화를 통해 청년의 주거정책 접근성을 높이고, 특화된 1인가구 생활지원 서비스와 연계하여 통합적 지원 체계로 고도화

□ 1인 가구 취약청년을 위한 지원방안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연장 및 제도화)** 1인가구 청년의 욕구가 높은 주거비 지원 강화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주거기본법」 제15조와 「청년기본법」 제20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2021년 국무회의를 통해 사업 시행이 확정되었음. 이 사업은 한시지원으로 2023년 일몰 예정이었으나 기간이 연장된 바 있음.
 - 1인가구 청년의 전월세 지원에 관한 욕구가 높으므로 본 사업의 기간을 연장하고, 안정화하는 방안을 검토. 「청년기본법」을 근거로 하고 있으므로 취약청년 주거지원에 관하여 더 명확한 조항을 신설, 보완하여 사업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비정상거처 주거상향 이주지원 패키지 확대)** 기존 지옥고 등 물리적 취약 청년에 대한 지원이 확대
 - 비정상거처 주거상향 이주지원은 비정상거처에 3개월 거주 조건이 있어 사후적임. 최근 발생한 고시원 거주 여성 청년 살인사건과 같이 비정상거처 거주 자체가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음. 따라서 주거불안정과 취약성으로 인해 비정상거처에 들어갈 상황에 놓인 경우 월세 긴급지원 혹은 임시주택 지원 등의 노력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지역의 중간주택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경계선 지능 청년 지원

- **(법적 지원근거)**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법적 근거 필요
 -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경계선 지능인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경계선 지능인을 지원하고 있음.

- 그러나 조례별로 평생교육 또는 일반지원 등 강조점에 따라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정의도 느린학습자 등 차이가 있고, 지원 방식과 내용도 상이함. 경계선 지능인의 정의와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규정이 부재한 상황에서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지방 자치단체도 다수 있어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에 어려움이 있음(변민수 외, 2024).

*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경계선 지능인 지원 관련 법안 7개

● **(맞춤형 직업훈련 및 자격증 도입)** 경계선 지능인의 인지능력과 사회성을 고려한 직업훈련 과정 개발 및 준기능사 수준의 자격증 개발 제안

- 해당 직무에 경험이 없거나 숙련되지 않은 비숙련 근로자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직무능력을 보유하는 것을 직업훈련 과정의 목표로 설정하고 준기능사 자격증 부여
- 독일 사례에 비추어 성공적인 취업을 위해 실습교육의 비중을 높이면서 직업훈련 기간을 적정 수준 확보하여 기능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과정을 운영해야 함.

● **(취업 및 자립지원 사업 도입)** 취업과 자립을 위한 경계선 지능 청년 고용지원 사업 제안

- 현재 직업 전 훈련, 사회성 훈련 성격으로 진행되고 있는 복지서비스 차원의 프로그램 외에, 취업과 자립을 목적으로 한 고용지원 사업이 중앙부처 중심으로 도입될 필요가 있음.
- 일반적으로 경계선 지능 청년의 보호자들은 경계선 지능 청년의 인지 및 학습 기능이 정체되어 있다고 평가
- 그러나 취업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한 경계선 지능 청년들은 참여 이후 구직 및 진로성숙도가 높아지고 사회성 기능도 향상된 결과를 보임.
- 취업을 목적으로 한 경계선 지능 청년의 경험이 집단적으로 공유되면서 긍정적인 영향으로 이어지고, 적극적인 경제활동의 계기가 됨.

● **(맞춤형 서비스와 전달체계)** 비장애인의 서비스 전달체계에 적용하기 어려운 경계선 지능 청년을 위해 별도의 맞춤형 서비스와 전담 전달체계 구축 필요

- 기존의 서비스 전달체계를 활용한 지원 사업 또는 전달체계에서 경계선 지능인 수준의 욕구와 이해를 반영하기도 어렵고 병행하기도 어려움.

- 기존 비장애인 청년 대상의 정부 지원 사업의 목적과 내용은 경계선 지능 청년이 참여하거나 성과를 내는데 적합하지 않음.
- 근무시간·직무내용 등 경계선 지능 청년의 학습 속도와 인지능력을 고려하고 있지 않음.

- **(경계선 지능인 가족지원 서비스)** 경계선 지능인 및 가족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서비스 필요
 - 경계선 지능인 가족 등 경계선 지능인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교육, 기술 훈련 및 지원을 제공
 - 경계선 지능인 및 가족의 기능에 대한 최신 정보 및 연구, 변증법적 행동 치료에 기반한 개인 대처 기술, 가족 기술, 그리고 가족 구성원을 위한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그룹 지원(정용문, 2024).

취약청년 현황 및
지원방안 연구
- 1인가구 청년 및
경계선 지능 청년을
중심으로

I. 연구 개요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취약청년의 개념 및 지원근거: 신취약청년 논의를 중심으로	4
1) 취약청년의 개념과 확대 적용	4
2) 1인가구 청년과 취약성에 대한 지원	6
3) 경계선 지능 청년과 취약성에 대한 지원	6
3. 연구 및 정책 동향	9
1) 1인가구 청년 지원 정책 동향	9
2) 경계선 지능 청년 지원 정책 동향	10
4. 연구내용	11
5. 연구방법	13
6. 보고서의 구성	13

II. 1인가구 청년 지원 방안

1. 1인가구 청년 지원 필요성	17
1) 1인가구 청년의 개념과 지원 필요성	17

2) 1인가구 청년 관련 주요 지표	19
3) 1인가구 청년 관련 연구 동향 및 시사점	22
2. 1인가구 청년의 생활실태 및 지원 욕구	25
1) 1인가구 청년의 주거실태와 취약청년 규모 추정: 2022 주거실태조사 분석	26
2) 1인가구 청년의 생활 실태와 주요 특성: 2022 청년 삶 실태조사 분석	38
3) 1인가구 청년의 생활경험과 지원에 관한 인식: 면접조사 결과	92
4) 1인가구 청년에 대한 양적연구 및 질적연구의 시사점	113
3. 1인가구 청년 관련 정책 동향	114
1) 1인가구 청년 관련 법적 근거 및 정책 동향	114
2) 정책 동향 시사점	134
4. 소결	136

III. 경계선 지능 청년 지원 방안

1. 경계선 지능 청년의 개념, 특성, 사회적 상황	140
1) 경계선 지능 청년의 개념과 정의	140
2) 경계선 지능 청년에 따른 어려움	145
3) 경계선 지능 청년의 사회적 상황 및 욕구	148
2. 경계선 지능 청년 관련 연구 및 정책 동향	149
1) 경계선 지능인 관련 선행 연구	149
2) 경계선 지능인 관련 정책 동향	153
3) 경계선 지능인 복지서비스 중심 지원 사례	155
4) 경계선 지능인 고용서비스 중심 지원 사례	161
5) 경계선 지능인 지원의 한계	164
3. 경계선 지능 청년 지원 관련 해외 사례	167
1) 미국	168
2) 호주	169
3) 스페인	170
4. 경계선 지능 청년 고용지원 해외 사례	173
1) 독일의 경계선 지능인 정의 및 현황(규모)	173
2) 독일의 경계선 지능인 판정기준 및 사례	176

3) 경계선 지능인의 노동시장 및 직장생활 참여	179
4) 경계선 지능인의 직업교육 및 취업지원	188
5)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취업프로그램 사례	205
5. 해외 사례 시사점	212
1) 포용적인 정책 적용	212
2) 법령에 의거한 정책 서비스	213

IV. 정책제언

1. 요약 및 시사점	217
1) 취약 청년 파트 요약 및 시사점	217
2) 1인가구 청년 지원 파트 요약 및 시사점	218
3) 경계선 지능 청년 지원 파트 요약 및 시사점	229
2. 1인가구 청년 지원 관련 정책제언	220
1) 주택공급 차원에서의 개선방안	220
2) 금융지원 차원의 개선방안	223
3) 주거 관련 정책 이해도 증진 방안	224
4) 청년 주거복지 전달체계의 확대	226
5) 1인가구 취약 청년을 위한 지원방안	227
3. 경계선 지능 청년 지원 전달체계 및 서비스 관련 정책제언	228
1) 경계선 지능 청년 법적 지원 관련 정책제언	228
2) 경계선 지능 청년 지원 전달체계 및 서비스 관련 정책제언	229

참고문헌	234
------	-----

표 목차

표 II-1. 지역별 1인가구 비중 및 연령대별 구성비(2022)	20
표 II-2. 청년 1인가구 상위 20개지역(2019)	21
표 II-3. 청년가구 유형별 점유형태	27
표 II-4. 청년가구 유형별 거주 주택유형	27
표 II-5. 청년가구 유형별 평균 주택가격 및 임대료 수준	28
표 II-6. 청년가구 유형별 주거비 부담	28
표 II-7. 청년가구 유형별 주택 보유 의식	29
표 II-8. 청년가구 유형별 주거정책 욕구	29
표 II-9. 청년가구 유형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30
표 II-10. 청년가구 유형별 주거비과부담 가구	31
표 II-11. 청년가구 유형별 주거비 부담 정도	32
표 II-12. 청년가구 유형별 임차 불안감 1	33
표 II-13. 청년가구 유형별 임차 불안감 2	33
표 II-14. 1인가구 청년의 지역별 점유형태	34
표 II-15. 청년가구 유형별 거주 주택유형	34
표 II-16. 청년가구 유형별 주거정책 욕구	34
표 II-17. 1인가구 청년 지역별 주거비과부담 가구	35
표 II-18. 1인가구 청년 지역별 임차료 및 대출금 상환 주관적 부담 정도	35
표 II-19. 중첩 주거취약 1인가구 청년의 지원 기준(안)	37
표 II-20. 현재 거주 주택의 상태(집의 구조물, 방수, 난방 및 단열) 40	
표 II-21. 현재 거주 주택의 상태(환기 상태)	41
표 II-22. 현재 거주 주택의 상태(채광)	41
표 II-23. 현재 거주 주택의 상태(주택 내외부 소음)	42
표 II-24. 현재 거주 주택의 상태(재난, 재해 안전성)	43
표 II-25. 현재 거주 주택의 상태(화재로부터의 안전성)	44
표 II-26. 현재 거주 주택의 상태(주택 방법)	45
표 II-27. 현재 거주 주택의 상태(주택 위생)	46
표 II-28. 현재 거주 주택의 상태(청년1인가구)	47

표 II-29. 현재 거주 지역의 주거 환경 만족도(생활인프라)	48
표 II-30. 현재 거주 지역의 주거 환경 만족도(대중교통 이용)	49
표 II-31. 현재 거주 지역의 주거 환경 만족도(치안 및 범죄)	50
표 II-32. 현재 거주 지역의 주거 환경 만족도(위생환경)	51
표 II-33. 현재 거주 지역의 주거 환경 만족도(녹지공간)	52
표 II-34. 현재 거주 지역의 주거 환경 만족도(문화/부대시설)	53
표 II-35. 현재 거주 지역의 주거 환경 만족도(교육환경)	53
표 II-36. 현재 거주 지역의 주거 환경 만족도(이웃과의 관계)	54
표 II-37. 현재 거주 지역의 주거 환경 만족도(청년1인가구)	55
표 II-38. 거주 불안 상황 경험 여부(2개월 이상 월 임대료 연체) ..	56
표 II-39. 거주 불안 상황 경험 여부(임대 보증금 부족)	57
표 II-40. 거주 불안 상황 경험 여부(임대인 기피 대상자라는 이유로 주택확보 곤란)	58
표 II-41. 거주 불안 상황 경험 여부(3개월 이상 주택담보대출 이자 또는 원리금 상환 연체)	59
표 II-42. 거주 불안 상황 경험 여부(퇴거)	60
표 II-43. 거주 불안 상황 경험 여부(3개월 이상 공과금이나 관리비 연체)	60
표 II-44. 거주 불안 상황 경험 여부(임대인과의 갈등)	61
표 II-45. 거주 불안 상황 경험 여부(주택임대차 보호법 위반)	62
표 II-46. 거주 불안 상황 경험 여부(청년1인가구)	63
표 II-47. 공공임대주택 거주 경험	64
표 II-48. 공공임대주택 거주 의향	66
표 II-49. 주거정책 수요(전세자금대출)	67
표 II-50. 주거정책 수요(주택구입자금 대출)	68
표 II-51. 주거정책 수요(주거비 지원)	69
표 II-52. 주거정책 수요(공공임대 입주)	70
표 II-53. 주거정책 수요(민간임대주택 관리감독 강화)	71
표 II-54. 주거정책 수요(임대차 분쟁 발생시 조정 지원)	71
표 II-55. 주거정책 수요(기타)	72
표 II-56. 주거정책 수요(청년1인가구)	73
표 II-57. 경제활동상태(임금근로자: 상용)	74
표 II-58. 경제활동상태(임금근로자: 임시 및 일용)	75
표 II-59. 경제활동상태(자영업자)	76
표 II-60. 경제활동상태(실업자)	77
표 II-61. 경제활동상태(비경제활동)	78

표 Ⅲ-14. 직업지원 동행서비스 제공 직업교육 시행절차	193
표 Ⅳ-1. 국토교통부 일자리 연계형 주택공급 계획	223
표 Ⅳ-2. 전국 주거복지센터 현황 (지자체 및 민간)	226

그림 목차

그림-요약1. 주거취약 청년가구 규모 추정(단위: 가구)	6
그림 Ⅰ-1. 연구 추진 과정	12
그림 Ⅱ-1. 주요 연령별 1인가구 비율	19
그림 Ⅱ-2. 지역별 1인가구 비중(2022)	20
그림 Ⅱ-3. 주거취약 청년가구 규모 추정(단위: 가구)	36
그림 Ⅱ-4. 현재 거주 주택의 상태(청년1인가구)	46
그림 Ⅱ-5. 현재 거주 지역의 주거 환경 만족도(청년1인가구)	55
그림 Ⅱ-6. 거주 불안 상황 경험 여부(청년1인가구)	63
그림 Ⅱ-7. 공공임대주택 거주 경험	65
그림 Ⅱ-8. 공공임대주택 거주 의향	66
그림 Ⅱ-9. 주거정책 수요(청년1인가구)	73
그림 Ⅱ-10. 경제활동상태(청년1인가구)	79
그림 Ⅱ-11. 사회적·심리적 상태(청년1인가구) 1	91
그림 Ⅱ-12. 사회적·심리적 상태(청년1인가구) 2	91
그림 Ⅱ-13. 사회적·심리적 상태(청년1인가구) 3	92
그림 Ⅱ-14. 광역 및 기초 지자체 1인가구 지원 조례 제정 현황(2024년)	117
그림 Ⅱ-15. 비주택거주 청년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추이(호, 2018~2023)	121
그림 Ⅱ-16. 청년 공공주택 유형별 공급 규모 및 예산규모(만호, 백만 원, 2024)	123
그림 Ⅱ-17. 대상별 공공분양 공급계획(만 호, 2023~2027)	123
그림 Ⅱ-18. 청년 월세 한시 지원사업 예산규모(백만 원, 2022~2024) ..	124
그림 Ⅱ-19. 서울시 중앙주거복지센터 운영 체계도	127
그림 Ⅱ-20. 서울시 1인가구 특별대책의 4대 안심과제	133
그림 Ⅱ-21. 서울시 1인가구 지원센터 업무 내용	134
그림 Ⅲ-1. 경계선 지능인 정규분포	142
그림 Ⅲ-2. 후기 청소년기 경계선 지능 임상집단의 분류	152
그림 Ⅲ-3. 경계선 지능 청년을 위한 지원체계	153

그림 Ⅲ-4. 서울학습도움센터	155
그림 Ⅲ-5. 시범사업 단계별 과정	163
그림 Ⅲ-6. 경계선 지능인 지원 체계	171
그림 Ⅲ-7. 포용 및 통합 개념적 구분	180
그림 Ⅲ-8. 동행지원서비스 직업교육 및 직업교육 동행지원에 대한 참여자 현황	195
그림 Ⅲ-9. 장애 청소년 및 청년을 위한 직업교육	197
그림 Ⅲ-10. 직업교육센터 분포 현황	201
그림 Ⅲ-11. 28개 지역 직업지원센터(BFW) 개관	203
그림 Ⅲ-12. 수직적 교육장소 조정	210
그림 Ⅲ-13. 사례별 진단에 따른 직업교육 지원	211
그림 Ⅳ-1. 청년기 이행 취약성	217
그림 Ⅳ-2. 국토교통부의 청년 주거정책 유형	220
그림 Ⅳ-3. 도심청년주택 모델(안)	221
그림 Ⅳ-4. 도심청년주택 특화 공간계획 및 서비스(안)	221

○ ————— 제1장 연구 개요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 취약청년의 개념 및 지원근거:
신취약청년 논의를 중심으로
- 3. 연구 및 정책 동향
- 4. 연구내용
- 5. 연구방법
- 6. 보고서의 구성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길어진 성인 이행기로 인해 자립 이전 시기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과거 가족의 도움을 받아 생활했었던 시기가 길어지면서 다차원적인 취약성이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이 시기에 대한 사회적 지원 요구가 출현하기 시작하였다(유민상 외, 2022). 청년의 취약성은 자립준비청년과 같이 아동·청소년기 복지 대상 경험 기인하기도 하고, 경제적 빈곤, 주거 빈곤 등 다차원적인 빈곤이나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 등 심리·정서적 특성 같은 현재 상태로 설명되기도 한다(차유림, 민소영, 장혜림, 2022; 변금선, 이해림, 2022; 유민상, 신동훈, 2021).

취약청년에 대한 명확한 학술적 정의는 부재하나, 다차원적인 취약성에 기반하여 나눌 수 있다. 취약청년은 경제적 취약성을 기반으로 한 빈곤 청년, 사회경제적 상태를 기반으로 한 니트청년 혹은 쉬었음 청년, 심리정서적 상태와 관계적 특성에 기반한 고립·은둔청년, 돌봄 역할에 기반한 가족돌봄청년, 개인 역량에 기반한 경계선 지능 청년 등 다양한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다만 취약성은 하나의 영역에서만 나타나지 않는다. 한 개인이 가진 취약성은 다중적으로 혹은 중첩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이 가진 취약성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유민상 외, 2023).

2020년대 청년의 성인 이행기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취약성은 사회 정책 영역 안에서 아직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청년정책이 개인의 원활한 성인기 이행에 초점을 맞추면서 기존에는 주목받지 않았던 특징들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등장하고 있다. 과거 성인기로의 이행에 비해 성인기로의 이행이 길어지고 어려워지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이에 대한 정책 사각지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이는 기존의 사회정책에서 다루어지지 못했던 취약성을 다룬다는 점에서 청년기 새로운 취약성

에 대한 대응이라 할 수 있다.

과거 주목받지 못하였으나 청년정책이 발전하면서 취약성이 두드러지는 집단이 등장하였는데 1인가구 청년과 경계선 지능 청년도 이러한 새로운 취약 집단 중 하나이다. 이 두 대상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가족을 중심으로 한 복지 제공 체제와 관련이 있다. 우리나라의 정책은 4인 가구와 같은 다인 가구 중심의 정책으로 짜여 있어 1인가구에 대한 정책은 크게 발전되지 못하였다. 경계선 지능 청년은 가족의 돌봄 책임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 이들의 원활한 성인기 이행에 대해서는 크게 주목받지 못하였다. 이들은 기존에 가족의 유형과 가족의 책임이라는 틀에서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틀에서 벗어나 다양한 가족의 유형과 다양한 청년 유형에 대한 성인기 이행 지원이라는 틀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기존의 사회정책의 틀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1인가구 청년과 경계선 지능 청년의 실태에 대해 알아보고, 새로운 정책의 틀에서 이들의 취약성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보고자 한다. 여기서부터는 1인가구 청년과 경계선 지능 청년의 개념과 특성을 살펴보고, 이 연구에서 주목하고 있는 이들 집단의 취약성에 대해 간략히 소개한다.

2. 취약청년의 개념 및 지원근거: 신취약청년 논의를 중심으로

1) 취약청년의 개념과 확대 적용

청년기 취약성은 성인기 이행 취약성으로 정의될 수 있다. 이 정의를 적용하면, 취약 청년이란 “성인기 이행 과정에서 고용, 교육, 복지, 문화, 주거, 참여 등 삶의 영역에서 불리한 상황에 있는 청년”을 의미하는 것으로 개념화할 수 있다.

최근 생애전반기 성인 이행 과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청년 정책의 급속한 팽창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과거와 달리 성인 이행기가 증가했을뿐만 아니라 성인 이행까지의 과정에서 개인의 노력이나 가정의 도움만으로는 성공적인 이행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는 성인기 이행에서의 사회적 지원의 요구가 표출되어 제도화가 이루어진 것이라 볼 수 있다(유민상 외, 2022).

청년 정책의 급속한 팽창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사회보장제도가 포괄하지 못하는 취약한 청년들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이는 청소년 정책에서는 신소외 청소년으로

표현되고, 청년 정책에서는 신취약 청년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이는 공통적으로 기존 제도에서 보장받지 못하는 대상들을 새롭게 포괄하여 지원해야 한다는 방향에서 사용되는 용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과거부터 존재해왔던 무직 청년 혹은 니트(NEET) 청년은 코로나19를 전후로 구직단념청년과 쉬었음 청년 등으로 정부의 고용지원서비스 체계 내로 편입되어 청년도전지원사업이나 청년성장프로젝트와 같은 청년 고용지원 프로그램의 주된 수혜자로 자리매김하였다. 고립은둔 청년 역시 2000년대부터 한국에서도 일본의 히키코모리와 같은 특징을 지닌 젊은 사람들이 발견되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으나 서비스 지원 대상으로는 자리매김하지 못하다가 코로나19 이후 다양한 역동에 의해 고립은둔 청년으로 자리매김하여 법정정책 테두리 내로 포괄되고 있다. 가족돌봄청년은 과거 가족을 돌보고 생계를 책임지는 소년소녀가장으로 존재하였으나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로 이에 대한 지원이 시작되었다가, 아동청소년기에서부터 청년기까지 가족돌봄으로 성인기 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가족돌봄청년으로 명명하여 지원하는 체계가 생겨나고 있다.

이와 같은 신취약 청년의 논의는 과거에는 거의 복지의 대상이 되지 못하였던 청년기를 사회복지체계를 통해 지원하기 시작하면서, 기존에 존재하였던 위험을 새롭게 “성인기 이행에 어려움을 주는 위험”으로 해석하면서 등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1인가구 청년과 경계선 지능 청년에 대한 지원은 어떠한가? 신취약 청년의 논의에서 보면, 이들은 그 자체로 취약하다고 이야기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성인기로 이행하는데 있어서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 1인가구 청년은 매우 이질적인 집단이나 사회적 지지체계나 사회경제적 불안정성이 높은 취약 집단이 집중되어 있어 성인기 이행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에서, 경계선 지능 청년은 교육과 고용의 경계에서 특별한 지원이 뒤따르지 않으면 성인기 이행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1인가구 청년과 경계선 지능 청년이 지닌 새로운 취약성에 대해, 혹은 기존 사회보장제도가 포괄하지 못했던 취약성에 대해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1인가구 청년과 경계선 지능 청년의 현황 및 지원정책에 대해 분석하고 이들의 원활한 성인기 이행을 위해 지원할 방법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2) 1인가구 청년과 취약성에 대한 지원

1인가구란 혼자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 가구를 의미하고, 청년 1인가구란 「청년기본법」에 근거하여 19세~34세까지의 사람이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 가구를 의미한다.

1인가구 청년 전체를 취약청년으로 볼 수는 없으나 일부 청년의 경우 주거 불안정, 안전, 고립감, 고독사 위험 등 다중적인 취약성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1인가구 청년 지원 정책은 아직 정교화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 현황 분석 및 개선 방안 도출이 필요하다.

특히 청년 1인가구는 주거, 사회적 관계, 심리정서, 건강 등에서의 취약성 등 다중취약성을 경험할 수 있다. 이는 모든 청년 1인가구가 아니라 특정하게 취약성이 집중된 청년들에게서 부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청년 1인가구의 취약성은 주거 영역에서는 주거 불안정과 위험, 사회적 관계 영역에서는 사회적지지 체계 부재, 사회적 고립, 심리 영역에서는 우울, 외로움, 자살생각, 건강 영역에서는 식사와 건강행태 등의 취약성이 지적되고 있다(이지아, 송해란, 조광래, 2024). 또한, 이 외에도 최근 전세사기 피해의 상당수가 청년 가구로 나타나 주거 계약, 주거비 대출 및 상환 등에서의 취약성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에서는 청년 1인가구의 취약성을 다차원적으로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생활지원 방안과 주거지원 방안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특히 국토교통부와 LH, SH 등이 제공하는 주거지원 정책이 더 청년 친화적으로 구성되고, 청년 친화적으로 전달 체계를 통해 전달될 수 있는 방안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하였다.

3) 경계선 지능 청년과 취약성에 대한 지원

경계선 지능 청년은 지능지수에 기반하여 지적장애와 비장애의 경계선 지능(borderline intellectual functioning)에 있는 사람을 지칭하나 아직 실태 파악을 통한 규모 추정이나 필요 서비스를 규정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 느린학습자 등의 용어로 널리 알려지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아직 청년정책에서 이들을 위한 정책이 명료화되지 않았으므로 해외 정책사례 등을 분석하여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016년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시행한 이후 경계선 지능 아동에 대한 공적 지원이 시작되면서, 이와 관련된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관련 연구마다 연구 목적에 따라 경계선

지능 또는 경계선 지능인을 지칭하는 단어는 ‘느린 학습자’, ‘천천히 배우는 학생’, ‘경계선 지능’, ‘학습장애’, ‘지적장애’, ‘경계선 지능을 가진 느린 학습자’ 등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김동일 외, 2022; 박광옥 외, 2022; 김동일 외, 2023; 김용훈, 2023). 일반적으로 경계선 지능은 의학적 정의와 법적 정의를 구분하여 접근 할 수 있다.

경계선 지능에 대한 의학적 정의는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편람 DSM-IV에 경계선 지적 기능(Borderline Intellectual Functioning: BIF)으로 명시되어 있다. DSM-IV에서는 ‘지적장애는 아니지만 지속적 관심을 가지고 주의해야 할 발달장애군’으로 기재되어 있다.

최근 개정된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편람 DSM-V에서는 “개인의 경계선 지적기능이 임상적 주의를 요하거나 개인의 처치나 예후에 영향을 줄 때를 지칭하고, 경계선 지적기능과 경도지적장애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지적 기능과 적응기능에 대한 주의 깊은 평가가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다(변민수 외 2024). 국제질병분류 ICD-10는 인지적 기능과 인식을 포함하여 불특정 증상 그리고 징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경계선 지능에 대한 개념과 표준화된 검사방법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박광옥 외, 2022).

개정된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편람 DSM-V에서는 이전 버전과 달리 지능지수에 대해 명기하지 않고 있다. 개정 과정에서 지능지수를 삭제한 결과는 지능검사의 수치가 경계선 지능을 정의하는데 적절한가에 대한 문제제기에 따른다(윤신희 외, 2022). 김동일 외 (2023)는 경계선 지능 임상 집단(BIF clinical group)이라는 용어를 이용하여 병원(검사 기관)에서 경계선 지능으로 진단(내지 의심 소견)받은 청소년을 규정하고 있다.

경계선 지능에 대한 의학적 진단으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DSM-V만으로는 진단 및 선별하는 기준으로 삼기 어렵다(김용훈, 2023). 학계 및 현장 전문가들은 경계선 지능을 정의하고 진단하기 위해선 지적 기능 수준에 대한 판단 외에도 적응기능 등을 모두 고려하여 평가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를 위해 전문가의 관찰이 선행되고 그에 기반한 임상적 판단이 요구된다 할 수 있다(변민수 외, 2024). 관련하여 박광옥 외(2022)는 제반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계선 지능 청년 지원을 위한 과제 중에 경계선 지능에 대한 개념 정립과 진단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경계선 지능, 학습 곤란, 학습장애 위험군 집단이 조기에 적절한 학습을 위한 교육적 지원을 받으면 잠재적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어 조기 지원체계(환경)가 중요하다는 주장이 있다. 그 외에 경계선 지능인들의 인지·정서·관계적 특징과 어려움을 경계선 지능인에게

환원하는 것에 대해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이해가 낮은 데서 오는 악순환의 측면과 사회적 지원체계가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임성은, 2023).

현재 경계선 지능인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전국 규모의 실태나 현황을 부재한 상황이다. 관련 국가 승인 통계가 없어 일반적으로 연구자들은 경계선 지능인의 규모를 지능지수 정규분포에 따라 전 국민의 13.59%로 추정하기도 한다(박진우, 2023). 정규분포상의 기준을 따르면 2024년 우리나라의 총 인구 51,145,884명 가운데 경계선 지능인은 6,955,840명으로 추정된다(국가통계포털, 2024)¹⁾. 해당 년도의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에 이 비율을 적용하면, 경계선 지능 청년은 1,814,021명으로 추정된다. 15세 이상 65세 이하 경제활동인구 기준을 적용하면 4,984,608명으로 추정 인구가 늘어난다.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2017년 이후 7년간 경제활동인구 인구가 90만 4천 명 감소한 것을 고려하면 약 180만 명의 청년은 간과할 수 없는 규모의 정책대상이다.

경계선 지능의 개념을 규정할 때, 개념에 '지능'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경계선 지능인을 설명할 때 학업적인 능력과 주로 연관 짓는 경향이 있으나 경계선 지능인의 특성을 이해할 때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오히려 성장 과정에서의 정서관계사회성 영역에 있다(김동일 외, 2023). 아동·청소년기 가족과 학교, 생활 환경 등 사회화의 중요한 과정에서 경계선 지능인들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Cisneros-Cohernour, E. J., & Stake, R. E., 2014).

최근 「경계선 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법안으로 발의되었으며, 지자체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김동일 외, 2023). 근래 들어 정부 차원에서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정책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안)(2024~2028)'에서는 소외된 약자 권익 보호·지원 강화 차원에서 지원 등, 현행 장애인정 기준으로 지원받기 어려운 경계선 지능인 등 사각지대에 대한 교육·자립·고용·돌봄 등 통합적 지원방안 모색을 명시하고 있다. '제6차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2023~2027)'에서는 대상별 특화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경계선 지능인 등 법정 장애인은 아니지만 직업생활이 어려운 직업적 장애 대상에게 고용서비스 다양성 검사 등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을 통해 취업지원을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부 중심으로 관계부처 합동 '경계선 지능인 지원 방안(2024.7.3.)'도 수립되었다. 경계선 지능인은 평균 지능 대비 낮은 인지 기능으로 학업·근로 등에서 어려움이

1) 통계청 KOSIS, 인구동향조사 '주요인구지표(<https://kosis.kr>)' 에서 2024년 4월 11일 인출.

있으나,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아 각종 지원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종합적 지원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현황 파악, 발굴지원 등 체계적인 정책적 접근이 미흡한 점을 언급하고 국민 요구에 부응하는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정책방향으로 조기개입, 자립역량 강화, 인식개선을 강조하고, 발굴 강화 및 실태 파악,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인식 개선 및 인프라 구축을 추진과제로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경계선 지능인의 특성과 정책 현황을 살펴보고, 경계선 지능 청년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방안, 법정정책 근거 마련, 서비스 모형 마련 및 전달체계 구성 등 다양한 차원에서 내용을 검토하였다.

3. 연구 및 정책 동향

1) 1인가구 청년 지원 정책 동향

이 연구에서는 1인가구 청년에 대한 지원을 생활지원과 주거지원으로 크게 구분하였다. 생활지원은 관계망형성이나 공구대여 같은 1인가구 주거 생활에서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서비스를 의미하고, 주거지원은 주택공급, 금융지원, 환경개선 등 주거제공 및 개선을 위한 지원을 의미한다. 이러한 틀로 기존 정책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국무조정실 '제1차 청년정책기본계획'에서는 주거 영역과 복지 영역에서 청년 1인가구 대상 사업을 제시하였다. 제1차 청년정책기본계획의 주거 분야 정책으로 청년 주택 공급 확대, 청년 전월세 비용 경감, 고시원·반지하 주택 거주 등 취약청년 집중 지원, 청년 친화형 주거모델 보급 등이 제시되어 있다. 청년 1인가구만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라기보다는 전체 청년 주거의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한 주거 공급, 주거 환경 개선, 주거비 지원 등을 지원한 것으로 보인다. 제1차 청년정책기본계획의 복지 분야 정책으로 1인가구 청년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이 제시되어 있고 가족센터를 중심으로 기초지자체, 민간단체 협업체계 구축, 심리상담 커뮤니티 참여가 제시되어 있다. 2024년 청년정책기본계획 시행 계획에서는 국토부의 청년 친화형 주거 모델 보급, 여성가족부의 청년1인가구 고독, 고립 방지를 위한 '취약·위기 가족 지원사업(온가족보듬사업)'으로 제시되어 있다. 이는 국토부 중심의 주거지원과 여성가족부 중심의 생활지원이 구분되어 있고, 주거지원과 생활지원의 연계보다는 각 부처별 기능분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2024년 청년1인가구 특별위원회의 정책 개선 방안으로 안전한 생활 환경(안심 주거 환경, 건강 환경 조성), 안정적 경제 기반(일생활 적용 지원, 재도약 기회 지원), 고립·은둔 대응(누수 없는 입체적 발굴, 치유지원), 통합지원 체계 구축 등을 제안하였다. 국민통합위원회는 기존의 전달체계나 서비스를 활용한 생활지원에 초점을 맞추어 1인가구 청년 지원 방안을 도출한 특징이 있다.

서울시는 청년 1인가구 특화 정책을 마련하기보다는 전연령을 포괄하는 1인가구 정책을 추진 중이다. 서울시는 '1인가구 특별대책'을 수립하고, 건강안심, 고립안심, 범죄 안심, 주거 안심 등의 정책 영역을 통해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서울시는 서울1인가구 포털(<https://1in.seoul.go.kr>)을 설치하고, 25개 자치구에 1인가구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있다. 서울시의 지원체계 역시 주거지원보다는 생활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편의를 제공하며, 사회관계망 형성을 지원하는 체계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현황을 보면 아직 1인가구 청년 지원이 주거지원보다는 생활지원쪽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주거지원과 생활지원이 별도로 설계되어 있는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2) 경계선 지능 청년 지원 정책 동향

경계선 지능 청년 지원 정책은 아직 국내에서 크게 발전되지 않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습부진아 지원 조례' (2017.03.23.일 제정)을 제정하고, 서울학습도움센터를 설치·운영(지역센터 11곳)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교육청은 지역학습도움센터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찾아가는 학습상담'의 기능을 강화하는 중이다. 학습지원학생을 대상으로 심층진단과 학습부진요인 파악 그리고 학생 맞춤 지원을 실시(윤신희 외, 2022) 하여 학습부진의 범주 안에 포함되는 경계선 지능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포괄적으로 지원 하고 있다. 지역학습도움센터는 기초학력의 결손 원인에 대한 판단을 통해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결속 원인은 첫째, 학습요인(3R's) 둘째, 특수요인(난독, 경계선 지능, 자살 등의 위기) 셋째, 복합요인(관계, 심리 등) 등이며, 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박상현, 2023:63).

해외사례를 보면, 각 국가마다 경계선 지능의 진단기준에 차이가 있으며, 국가에서 이들을 지원하는 데 대한 근거와 관련하여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박광옥 외, 2022; 윤신희 외, 2022). 경계선 지능에 대한 진단기준은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DSM-5), 미국 지적장애 및 발달장애 협회의 AAIDD, 국제질병분류 ICD(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등 세 가지가 있다. 각각의 진단 기준과 정하는 내용의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으로 평균 이하 지적기능, 적응행동능력, 발달단계에서 발생 등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변민수 외, 2024).

네덜란드는 경계선 지능인의 지원 범위를 지적장애인과 동일하게 다룬다. 의료서비스와 독립적인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개인 예산제를 활용하여 지원하고 있다. 정책적 지원의 근거는 대부분 경도 지적장애인의 어려움과 경계선 지능인의 어려움은 유사하거나 동일하며, 필요한 지원의 요구도도 유사하다는 것에 근거한다. 미국은 경계선 지능을 포함하는 신경발달장애의 기준을 2017년 새로 도입하였으나, 근로나 기초생활에 어려움을 증명해야만 지원하고 있다.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잔여 기능에 대한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정상적인 근로가 어렵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벨기에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돌봄 및 지원서비스의 대상에 경계선 지능인을 포함하지 않지만, 지방정부 또는 지역 복지기관이 심리사회적 프로그램을 운영 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지적장애인과 함께 하는 직업 및 취업 훈련 운영하고 있다. 캐나다에서는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별도의 지원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이차적인 사회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정신건강 영역에서의 지원에 주목하고 있다(변민수 외, 2024).

4. 연구내용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1인가구, 경계선 지능 청년 등 새롭게 주목받고 있으나 지원체계가 아직 크게 발전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취약청년에 대한 정부의 정책방향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이 연구의 내용과 범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1인가구 청년과 관련하여 1인가구 청년 중 주거지원이 필요한 청년 범위 및 현황 파악, 주거지원 제도 분석 및 정책 방향 제시하였다. 둘째, 경계선 지능 청년과 관련하여 국내외 주요 사례 분석, 정책 시사점 도출 등을 진행하였다. 특히 정책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외 사례를 주로 다루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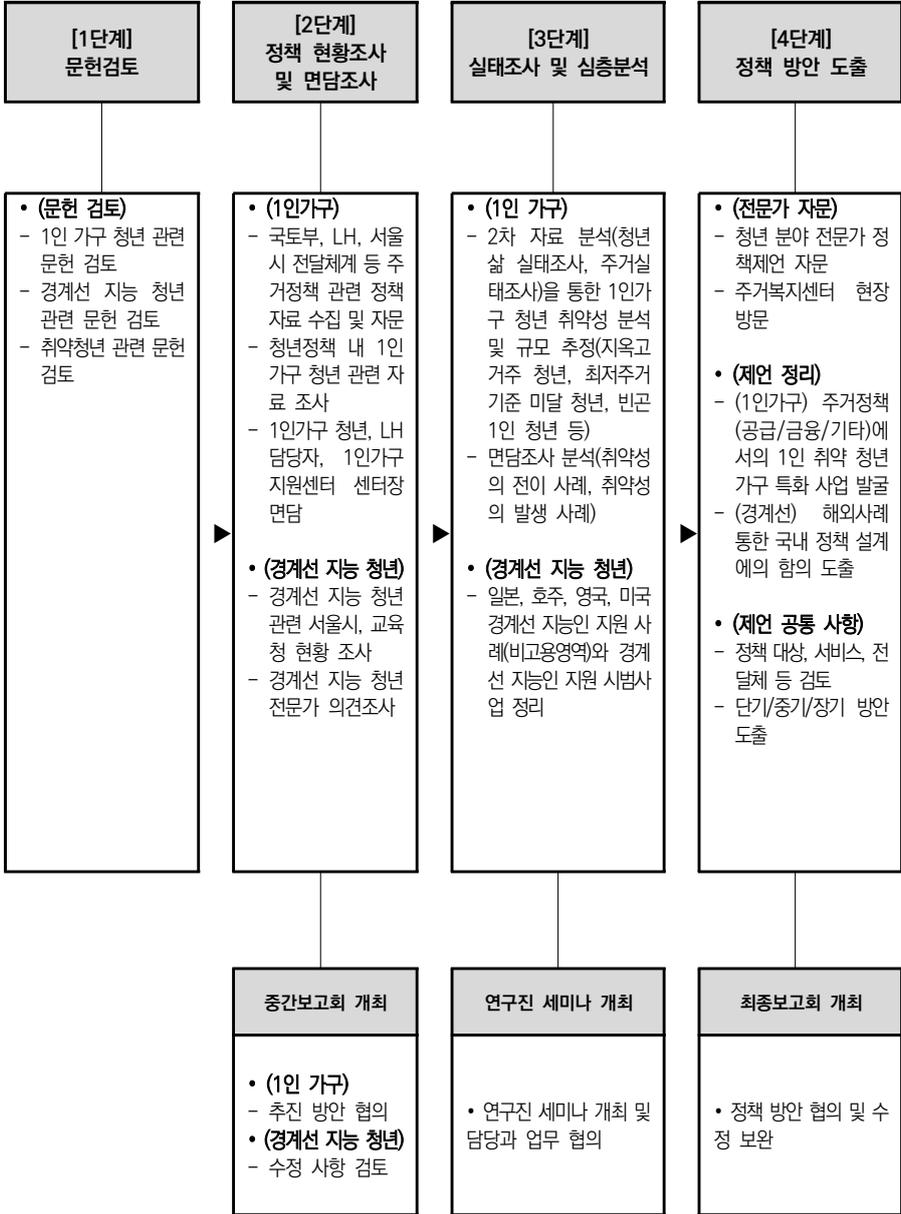


그림 1-1. 연구 추진 과정

5. 연구방법

이 연구의 주요한 연구 방법은 문헌분석, 2차 자료 분석, 면접조사 분석 등이다.

첫째, 문헌분석은 학술연구 및 정책자료 분석으로 기존의 1인가구 청년에 관한 학술자료 및 정책자료를 분석하였다. 또한 기존 통계자료를 통해 현황을 분석하여 취약청년 관련 연구 현황을 정리하였다.

둘째, 2차자료 분석이다. 조사자료 및 행정자료를 활용한 규모 및 특성 분석을 시행하였다. 1인가구 청년은 청년 삶 실태조사, 주거실태조사 원자료 분석을 통한 1인가구 취약성 분석을 진행하였다. 경계선 지능 청년은 관련 통계자료가 부재하여 규모, 분포, 특성을 파악하기 어려워 통계자료 구축을 정책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셋째, 면접조사 및 전문가 조사 분석이다. 이 연구는 청년 당사자와 관련 전문가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면접조사 및 전문가 자문을 시행하였다. 1인가구 청년 파트에서는 1인가구 청년, 지원기관 면접조사 및 다학제적 전문가 자문을 시행하였고, 필요에 따라서는 현장방문을 통해 내용을 확인하였다. 경계선 지능 청년 파트에서는 기관실무자 및 전문가 서면자문을 통해 현황을 정리하여 정책 방안을 마련하였다.

6. 보고서의 구성

이 보고서는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에서는 취약청년의 개념 및 지원 근거를 살펴보고, 특히 정책 사각지대에 있는 1인가구 청년과 경계선 지능 청년 지원 필요성에 대해 검토하였다.

2장에서는 1인가구 청년 지원과 관련하여 개념 및 지원 필요성에 대해 검토하고, 연구와 정책 동향에 대해 정리하였다. 1인가구 생활 실태와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의 주거실태조사 원자료, 국무조정실의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1인 청년 당사자 및 이해 관계자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하여 면접조사를 실시하여 실태 및 정책 욕구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3장에서는 경계선 지능 청년 지원과 관련하여 개념과 지원 필요성에 대해 검토하고,

연구 및 정책 동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경계선 지능 청년에 대한 실태조사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 장에서는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특히 독일 사례를 중심으로 정의, 판정기준, 노동시장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정리하여 국내에서 법·정책적으로 참고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다.

4장에서는 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하고, 시사점을 도출한 후,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다. 정책 제언은 1인가구 청년 지원, 경계선 지능 청년 지원 관련한 제언을 제시하고, 취약청년을 포괄하여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제시하였다.

○ — 제2장 1인가구 청년 지원

- 1. 1인가구 청년 지원 필요성
- 2. 1인가구 청년의 생활실태 및 지원 욕구
- 3. 1인가구 청년 관련 정책 동향
- 4. 소결

1. 1인가구 청년 지원 필요성

1) 1인가구 청년의 개념과 지원 필요성

1인가구란 혼자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 가구를 의미한다.²⁾ 2023년 우리나라 가구의 1/3 이상이 1인가구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20년 전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수치이다. 동일한 시기 동안 1인가구 청년은 1인가구 노인에 비해 높은 비율을 차지해 왔으며, 수도권의 경우 1인가구 청년의 비율이 전체 1인가구의 절반 가까이 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 사는 노인 혹은 독거 노인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것에 비해 1인 가구 청년에 대한 관심은 높지 않았었다. 이는 청년기 1인가구 생활이 다음 단계로의 자연스러운 이행 과정 중 하나로 여겨졌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성인기 이행이 길어지고 어려워지면서 1인가구 청년들의 어려움 또한 주목받고 있다. 1인가구는 청년기 자립으로 나아가는 과정일 수 있어 모든 1인가구 청년들이 같은 어려움을 겪는다고 가정하기 어렵지만,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취약성과 특정 집단에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취약성이 있을 수 있다. 이는 주거에 대한 불안정뿐만 아니라 경제적 불안정과 심리·정서적 불안정 문제 등이 다차원적이다. 이에 대해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주거 불안정이다. 1인가구 청년들은 사회경제적인 자원이 부족하므로 저렴한 주거지를 찾아 지·옥·고(지하실, 옥탑방, 고시원)로 대표되는 부정적 주거지에 거주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주거지는 최저주거기준이나 주거의 물리적 기준이 부적절한 경우가 있으며, 이로 인한 건강

2) 1인가구란 혼자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 가구를 의미하고, 청년 1인가구란 「청년기본법」에 근거하여 19세~34세까지의 사람이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 가구를 의미함. 단, 지자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년 연령에 따라 연령 범위는 달라질 수 있음.

문제나 안정 문제에 노출될 수 있다.

둘째는 주거비 과부담이다. 부정적 주거지를 피해 더 나은 주거지로 이동하더라도 높은 임대료로 인해 소득 대비 주거비의 부담이 너무 높은 주거비 과부담의 상황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현재의 생활비에 영향을 미치고, 미래의 자립 기반을 위한 저축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또한,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주거비를 마련하지 못하거나 이사를 가야 할 시에는 주거 불안정이 함께 나타날 수 있다. 최근 전세 사기 피해를 우려한 청년들이 월세를 선호하면서 월세 부담이 높아져 주거비 과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셋째는 사회적 지지체계의 부재로 인한 생활상의 어려움이다. 1인가구는 홀로 생활하는 것에 대해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데 주로 위기 상황에서 도와줄 사람이 부족한 경우에 발생한다. 예를 들어, 혼자서 간호 인력 없이 아픈 상황에서나 병원에 동행해줄 사람이 없는 경우 어려움이 더 커질 수 있다. 이는 비교적 보편적인 어려움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혼자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할 경우 기본적인 식사를 해결하지 못하거나, 집안 정리 정돈에도 취약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사회적 지지체계가 부족할 경우 결식, 영양 불균형 등 건강 문제가 발생하거나, 집 정리를 하지 못해 쓰레기 집으로 방치되는 등의 어려움도 발생할 수 있다.

넷째는 고립감과 외로움 등 정신건강 상의 어려움이다. 1인가구는 단독 생활을 책임져야 하는 부담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적 관계망이 약화되면서 고립감과 외로움을 느낄 수 있다. 이는 1인가구들이 쉽게 경험할 수 있는 문제이나, 정신건강이 취약한 상태에서는 완충제 없이 홀로 지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는 자살, 자해 등의 문제와 고독사의 문제로도 연결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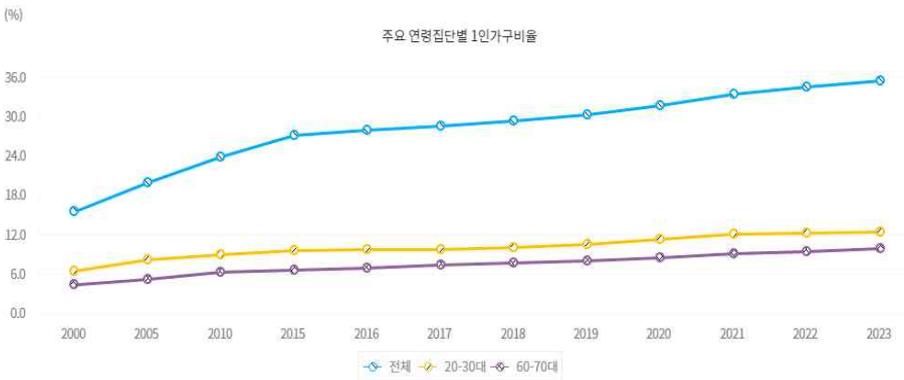
다섯째는 주거 상향의 어려움이다. 1인가구는 이론적으로 기존의 원가정에서 독립하여 새로운 단독 가구를 꾸리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징검다리 단계로 볼 수 있다. 하지만 1인가구로 불안정을 경험하고 주거 상향 이동에 대한 준비가 적절하지 않을 경우, 다음 단계로의 이행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소위 이행 불안정이 굳어질 수 있다.

이러한 어려움에 대한 대응은 사회경제적 역량이 취약한 대상에게 매우 잔여적으로 다루어져 왔으나, 향후 1인가구 청년이 확대될 것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어려움에 대한 대응 체계 혹은 대응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1인가구 청년들은 이질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와 같은 주거불안정, 주거비과부담, 사회적 지지체계 부재, 고립감과 외로움, 주거 상향의 어려움 등은 보편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특수하게 나타날 수도 있다. 여기서는 보편성과 특수성 혹은 선별성에 대한 논의 보다는 1인가구 청년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을 살펴보고,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 정리하고자 한다.

2) 1인가구 청년 관련 주요 지표

우리나라에서 1인가구 비율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체 가구 중 1인가구 중 비율을 보면 다음과 같다.

통계청 인구총조사를 활용한 '주요 연령별 1인가구 비율'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체 1인가구 비중은 총 가구의 35.5%였고, 20~30대는 12.5%, 60~70대는 10.0%이었다(통계청 지표누리, 2024).³⁾ 연령별 1인가구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2000년 15%였던 1인가구 비중이 2023년 35.5%까지 증가하였고, 20~30대의 비중은 6.4%에서 12.5%로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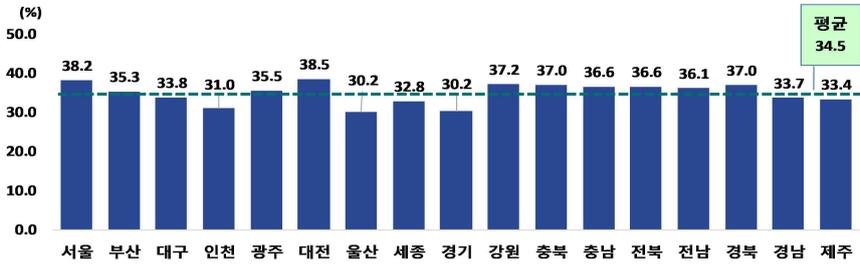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지표누리(<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5065#>)에서 2024년 10월 17일 인출

그림 II-1. 주요 연령별 1인가구 비율

1인가구의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기 위해 광역 지자체별 1인가구 비중을 살펴보면, 2022년 기준 대전이 38.5%로 가장 높았고, 서울이 38.2%로 뒤를 이었다.

3) 통계청 지표누리(index.go.kr) 1인가구 비율 <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5065#> 에서 2024년 10월 17일 인출.



출처: (원자료) 통계청 (2022) 인구주택총조사
(자료) 통계청 (2023). 통계로 보는 1인가구

그림 II-2. 지역별 1인가구 비중(2022)

광역 지자체별 청년 1인가구 비중을 살펴보면, 2022년 기준 29세 이하 1인가구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으로 29.2%였고, 서울이 26.7%로 뒤를 이었다. 30~39세도 세종이 23.9%로 가장 높았고, 서울이 22.9%로 뒤를 이었다.

광역 지자체별 청년 1인가구의 절대적 규모를 보면, 가장 많은 청년 1인가구가 거주하는 지역은 경기(1,634천 가구), 서울(1,564천 가구), 부산(512천 가구) 등이었다.

표 II-1. 지역별 1인가구 비중 및 연령대별 구성비(2022)

(단위: 천 가구, %)

지역	전체 가구	1인가구	비중	지역별 1인가구 연령대별 구성비						
				소계	29세 이하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전국	21,774	7,502	34.5	100.0	19.2	17.3	13.0	15.2	16.7	18.6
서울	4,099	1,564	38.2	100.0	26.7	22.9	12.4	11.5	12.8	13.6
부산	1,448	512	35.3	100.0	18.9	14.4	11.2	14.3	19.6	21.7
대구	1,011	342	33.8	100.0	17.9	14.9	12.2	16.2	18.7	20.3
인천	1,213	376	31.0	100.0	15.8	17.8	14.5	16.9	18.1	16.8
광주	623	221	35.5	100.0	21.4	17.4	14.1	15.5	15.3	16.3
대전	646	249	38.5	100.0	29.6	17.4	11.7	13.3	14.3	13.8
울산	454	137	30.2	100.0	14.3	16.7	15.3	18.3	19.4	16.0
세종	154	51	32.8	100.0	29.2	23.9	14.5	12.6	10.3	9.5
경기	5,407	1,634	30.2	100.0	17.3	19.8	15.3	16.4	16.1	15.1
강원	685	254	37.2	100.0	16.7	11.5	10.9	16.8	20.7	23.3
충북	705	261	37.0	100.0	19.0	15.1	11.9	16.1	17.9	20.1
충남	931	341	36.6	100.0	18.2	15.3	12.6	15.5	16.9	21.6
전북	778	285	36.6	100.0	16.6	11.8	11.3	15.6	17.9	26.8
전남	785	283	36.1	100.0	10.7	10.2	10.9	16.6	19.1	32.6
경북	1,166	431	37.0	100.0	15.1	11.9	11.5	15.9	19.2	26.5
경남	1,393	469	33.7	100.0	12.1	12.8	13.2	17.6	20.4	23.9
제주	276	92	33.4	100.0	13.9	15.1	16.7	20.5	17.4	16.4

출처: (원자료) 통계청 (2022). 인구주택총조사
(자료) 통계청 (2023). 통계로 보는 1인가구

다음으로 기초 지자체별·성별 청년 1인가구 규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인가구가

많은 지역을 성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서울 관악구가 여성 32,715가구, 남성 35,178가수로 1위였다. 여성은 서울 강서구(16,221가구), 서울 마포구(15,752가구), 서울 강남구(14,629가구), 서울 동작구(14,575가구) 순이었고, 남성은 경기 화성시(19,905가구), 대전 유성구(15,018가구), 서울 동작구(14,847가구), 대전 서구(13,802가구) 순이었다. 이는 기초 자치단체수준에서 청년 1인가구 분포는 지역의 산업구조, 대학분포, 1인가구 주거시설, 부동산 시세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II-2. 청년 1인가구 상위 20개지역(2019)

(단위: %)

여성			남성		
광역시	시군구	가구 수	광역시	시군구	가구 수
서울	관악구	32,715	서울	관악구	35,178
서울	강서구	16,221	경기	화성시	19,905
서울	마포구	15,752	대전	유성구	15,018
서울	강남구	14,629	서울	동작구	14,847
서울	동작구	14,575	대전	서구	13,802
서울	광진구	14,330	서울	동대문구	13,370
서울	송파구	13,387	서울	강서구	13,135
서울	성북구	13,309	경기	수원 영통구	13,080
대전	서구	12,621	충남	천안 서북구	12,941
서울	영등포구	12,588	서울	광진구	12,717
서울	동대문구	12,411	서울	마포구	12,426
서울	서대문구	11,849	서울	영등포구	12,081
경기	화성시	9,395	서울	성북구	11,851
부산	부산진구	9,392	경북	구미시	11,519
대전	유성구	9,056	경기	평택시	11,303
충남	천안 서북구	8,950	서울	송파구	11,298
서울	서초구	8,708	서울	강남구	10,826
경기	수원 영통구	8,126	서울	서대문구	9,641
서울	구로구	8,094	경기	부천시	9,526
서울	성동구	8,007	대구	북구	9,486

출처: (원자료) 통계청 (2019) 인구주택총조사

(자 료) 정현주 (2020). "청년 1인가구의 특징과 주거실태". 한국의 사회동향 2020. 대전: 통계청 통계개발원.

3) 1인가구 청년 관련 연구 동향 및 시사점

1인가구에 대한 연구는 주로 혼자 사는 노인에 대한 분석으로 이루어져 왔다.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는 전통적인 가족관계가 유지되지 못했고 평균 수명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혼자 사는 노인이 늘어나면서 이들의 주거 문제와 다양한 생활상의 어려움이 주목을 받아 왔다(Michael, R. T., Fuchs, V. R. and Scott, S. R., 1980: 49). 이에 따라 노후의 삶에 있어서 혼자 사는 것이 건강이나 사회적 부적응, 외로움을 비롯하여 사회적 고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이어져 왔다(Michael, R. T., Fuchs, V. R. and Scott, S. R., 1980; Wenger, G., Davies, R., Shahtahmasebi, S. and Scott, A., 1996; Victor, C., Scambler, S., Bond, J. and Bowling, A., 2000). 국내에서도 1인가구에 대한 초기 논의는 주로 혼자 사는 노인의 문제로 다루어져 왔다(변미리, 2015: 558).

그런데 젊은 층을 중심으로 결혼을 하지 않고 자녀도 두지 않으며 혼자 사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홀로 사는 청년에 대한 연구가 확산되었다(Garthwaite, K., 2012; Wade, J. and Dixon, J., 2006; Hall, R. and Ogden, P. E., 2003). 우리나라는 비혼이나 만혼 외에도 결혼 전에 학업이나 직장을 가기 위해 젊은 사람들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1인가구 청년이 늘어나자 홀로 사는 청년에 대한 관심도 커지게 되었다(배화옥, 1993).

여기서는 1인가구 청년 관련 연구에서 다루어진 주요 주제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주요 주제는 1인가구 청년의 이질성 문제, 주거 불안정과 빈곤 문제, 전·월세, 자가 등 점유형태 영향 요인, 공간적 입지 특성(일자리 접근성, 여가와 소비생활 선호), 심리·정서적 문제 등이다.

① 1인가구 청년의 이질성 문제

강은나와 이민홍(2016)은 청년과 중년, 그리고 노년을 구분하여 각 세대별로 위험요인을 분석하였다. 1인가구 청년은 다른 세대에 비해서 내부의 이질성이 커서 매우 다양한 양상을 보여주었다. 특히 한 쪽에서 높은 소득을 바탕으로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청년집단과 다른 한쪽에서 실업상태에 있거나 저임금 노동환경에서 종사하는 집단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양면성은 주거 불안정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1인가구 청년의 월세 비중이 매우 높아 열악한 주거 환경에 놓여 있지만 중년이나 노년 1인가구와는 달리 주거 상태는 열악하지 않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청년 내부의 이질성 문제는 채병주

와 황선재(2021)의 연구에서도 주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청년 1인가구를 1차 노동시장에 안착한 성취형과 교육수준은 높으나 낮은 임금수준을 보여주는 불안형, 교육수준은 낮으나 임금수준은 중간 수준에 도달한 정착형, 다차원적인 빈곤을 겪고 있는 소외형, 대학생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희망형 등으로 구분하였다. 복지 영역에 대한 선호에 있어서 소외형은 고용복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성취형과 불안형은 주거복지를 선호했으며 희망형은 보건복지를 선호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② 주거 불안정과 빈곤 문제

1인가구 청년에 대한 논의는 성인 이행기의 특성을 반영하여 주거 공간의 마련과 주거 환경 문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정서적인 문제는 혼자 사는 모든 세대의 공통적인 이슈라고 볼 수 있는데 성인기 이행 과정에 있는 청년들은 경제적인 여건 등에서 훨씬 더 불리한 위치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젊을수록 자신의 집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낮으며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반정호(2012)는 1인가구에 대한 분석에서 청년의 경우 주거 불안과 빈곤 문제가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1인가구 청년은 가구 내에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주체가 본인뿐이므로 취업을 하지 못하게 되면 곧바로 빈곤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박애리, 심미승, 박지현(2017)은 청년세대의 주거 빈곤 진입과 주거 불안정성에 대한 인식을 면접방법(FGI)을 활용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청년들은 부모와 함께 살 수 없는 여건에서 취업을 위해 불가피하게 수도권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었는데 높은 주거비용으로 인해 괜찮은 주거 공간으로 갈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미래를 기대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청년의 성공적인 성인기 이행을 돕는 주거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③ 전·월세, 자가 등 점유형태 영향 요인

1인가구 청년이 주로 월세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요인을 분석한 연구들도 이루어졌다. 이무선(2016)은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1인 가구의 주거 점유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청년 1인가구의 주거 환경이 40대 이상보다 더욱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구주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월세보다는 자가일 가능성이 높게 추정되었다. 1인가구 청년의 경우에 본인 스스로 주거비를 마련할 경우 자가보다는

월세일 가능성이 8.66배나 높았다. 정의철(2012)도 1인가구의 독립 가구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자료를 이용하여 주거비용이 20세에서 35세의 청년의 새로운 가구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청년의 연령과 소득이 독립해 새로운 가구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쳤으나 결혼 여부가 새로운 가구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보다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이 결혼을 했을 때 새로운 가구를 형성할 가능성이 최대 78%까지 증가하였다.

④ 공간적 입지 특성(일자리 접근성, 여가와 소비생활 선호)

1인가구 청년의 공간적 입지 특성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었다. 김리영, 박길환(2023)은 노인 1인가구와 비교해서 청년 1인가구의 주거입지 특성을 분석하였다. 청년 1인가구는 노인 1인가구와는 달리 특정한 지역에 집중해서 거주하는 특성을 보여주었는데 청년들은 도시적 특성이 강하거나 일자리 접근성이 좋은 곳, 그리고 여가와 소비생활이 용이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특성을 보여주었다. 이창효와 이승일(2010)은 1인가구의 주거 환경을 안전성과 보건성, 편리성, 쾌적성으로 나누어 성별이나 세대별로 어떤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연령이 높을수록 양호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가능성이 높았다. 29세 이하 1인가구는 안전성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표에서 가장 낮은 평가 결과를 보여주었다.

⑤ 심리·정서적 문제

1인가구 청년들의 심리정서적인 문제와 관련한 연구들도 이루어졌다. 노혜진(2018)은 청년 1인가구에 주목하여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활용해 1인가구 청년의 사회적 관계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1인가구 청년은 다른 유형의 가구보다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이 1시간가량 짧았다. 사회적 관계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에서 소득 수준이 미치는 영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지금까지 1인가구 청년에 대한 연구 동향을 살펴보았다. 선행연구를 통해 얻은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인가구 청년들은 이질적인 집단이다. 1인가구 청년 내에는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청년 집단과 불안정한 청년 집단이 함께 존재할 수 있다. 성인 이행기에 있는 집단으로 다중 취약성을 경험하는 집단, 교육훈련으로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집단, 노동시장에 나갔으나 불안정한 집단, 노동시장에 나가서 안정적인 집단 등으로 개념화할 수 있을 것이다. 1인가구 청년들은 이질적인 집단이므로 관련 서비스 역시 보편성과 선별성에 유의하여 설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청년기는 자립의 단계상 경제적 불안정을 경험할 수 있고, 이 단계에서는 월세에 거주할 가능성이 높다. 월세비의 과중부담이나 주거계약의 불안정 등이 함께 발생할 수 있다. 셋째, 1인가구 청년은 일자리 접근성이 중요하고, 여가와 소비생활이 용이한 지역에 밀집될 수 있다. 따라서 1인가구 청년 지원체계는 일자리가 집중된 지역, 여가와 소비생활이 용이한 지역에 설치하면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다. 넷째, 1인가구 청년은 보편적으로 심리정서적 문제를 경험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지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을 통해 ①1인가구 청년을 단일하게 지원하기 보다는 차등적 지원 전략을 활용하고, ②성인기 이행의 단계적 지원을 하면서 상향 이동을 고려하고, ③청년들의 일자리와 여가소비 생활을 고려한 전달체계를 설치하고, ④1인가구 청년에게 보편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와 취약청년에게 중첩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는 2차 데이터와 면접조사를 통해 1인가구 청년의 생활 실태 및 지원 욕구에 대해 알아본다.

2. 1인가구 청년의 생활실태 및 지원 욕구

이 절에서는 2차 데이터와 면접조사를 통해 1인가구 청년의 생활 실태 및 지원 욕구에 대해 살펴본다. 두 가지 분석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2차 데이터 분석은 국토교통부의 주거실태조사와 국무조정실의 청년 삶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1인가구 청년 중 취약청년의 규모를 추정하고, 1인가구 청년의 다차원적인 취약성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실증 데이터를 통해 1인가구 청년의 이질성에 대해 확인하고, 이질적인 특성에 대한 시사점을 얻게 해줄 수 있다.

둘째, 면접조사 분석은 1인가구 청년 및 실무자들의 인터뷰를 통해 이들의 특징과 정책 경험 및 욕구, 개선 방안에 대해 정리한다. 이 파트에서는 이들의 목소리를 통해 1인가구 청년의 이질적 특성에 대응하는 주거지원 및 생활지원 방안이 무엇인지, 필요한 정책 및 적절한 전달체계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1) 1인가구 청년의 주거실태와 취약청년 규모 추정: 2022 주거실태조사 분석

(1) 청년가구 유형별 주거여건

1인가구 청년의 주거여건을 살펴보기 위하여 주거 부문의 여건을 가장 상세히 조사하고 있는 통계청 승인통계인 주거실태조사를 활용한다. 가장 최근 시점인 2022년을 기준으로 분석한다. 청년가구는 만 19~34세 이하의 청년이 있는 가구를 의미하고 이러한 청년이 포함된 가구를 가구의 특성에 따라 네 가지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즉, 1인으로 혼자 사는 1인청년가구,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청년부부가구(자녀 유무 무관),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부모 동거가구⁴⁾, 그리고 다른 이들과 함께 거주하는 기타 동거가구⁵⁾가 그것이다. 이들의 유형별 주거 여건이 상이하고, 각 집단별 비교를 통하여 1인청년가구의 주거여건의 차이점이 드러날 수 있다.

주요 분석내용은 점유형태 및 주택유형과 같은 기본적인 주거 특성을 시작으로, 주택 가격 및 주거비 부담 정도, 주택 보유에 대한 의식 및 정책 요구 등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크게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① 점유형태 및 주택유형

청년가구의 형태별 점유형태를 살펴보면, 1인가구 청년이 다른 유형의 청년가구에 비해 자가 점유가 낮고 보증부월세 형태로 거주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다(61.5%). 이는 부모와 함께 거주하거나,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다른 형태의 가구에 비해 1인청년이 경제적 자원 동원 능력이 낮아서 발생하는 현상이다.

주택의 유형도 1인가구 청년은 청년 부부 가구나 부모 동거가구가 아파트에 주로 거주하는 것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혼자 사는 청년은 주로 단독·다가구 주택에 많이 거주(46.5%)하고 있고, 다음으로 아파트, 그리고 오피스텔 거주 비율(15.4%)이 상당히 높았다. 이에 더하여 주택 이외의 처처에서 거주하는 경우(7.1%)도 1인가구 청년에 두드러진 특징이다.

4) 부모 동거가구는 부모+청년, 부모+청년+조부모, (시)부모+청년부부, 청년+부모, 청년+부모+형제자매, 청년부부+(시)부, 청년부부+자녀+(시)부모 등 (시)부모와 청년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5) 기타 동거가구는 청년+형제자매가 거주하는 경우, 비혈연관계인 가구원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청년이 자녀나 조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등이 모두 포함된다.

표 II-3. 청년가구 유형별 점유형태

(단위: %)

구분	자가	전세	보증금있는 월세	보증금없는 월세	무상	계
전체 가구	57.5	15.4	20.9	2.5	3.7	100.0
청년 가구 소계	46.5	20.5	27.3	2.8	2.8	100.0
청년 1인가구	4.7	21.6	61.5	8.1	4.1	100.0
청년 부부가구	40.5	40.0	15.6	0.6	3.3	100.0
부모 동거가구	76.1	13.0	9.1	0.4	1.4	100.0
기타 동거가구	35.9	18.8	35.6	1.3	8.3	100.0

자료: 국토교통부 (2022). 주거실태조사 원자료를 바탕으로 분석

표 II-4. 청년가구 유형별 거주 주택유형

(단위: %)

구분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비거주용	오피스텔	주택이외	계
전체 가구	29.6	51.9	11.4	1.5	3.3	2.2	100.0
청년 가구 소계	26.6	51.8	12.6	1.0	5.8	2.3	100.0
청년 1인가구	47.4	17.0	11.8	1.4	15.4	7.1	100.0
청년 부부가구	12.1	73.1	12.1	0.1	2.5	0.1	100.0
부모 동거가구	17.7	67.4	13.0	1.1	0.7	0.1	100.0
기타 동거가구	37.4	37.9	16.6	.	7.8	0.4	100.0

자료: 국토교통부 (2022). 주거실태조사 원자료를 바탕으로 분석

② 주택가격 및 주거비 부담

주택의 가격이나 주거비 부담과 관련하여 1인가구 청년은 부부나 부모와 동거하는 가구와는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전세로 거주하는 경우도 부부나 부모 동거가구에 비해 전세금이 절반 수준이고, 보증부월세로 거주하는 경우에는 그 차이가 더욱 현격히 드러나서 보증금 1,419만 원에 월세 36.7만 원이 평균적인 모습이다.

월소득 대비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율로 파악하는 주거비 부담은 중위수 기준(월환산 임대료/중위소득)으로 17.2% 수준이었으며, 1인가구 청년이 다른 청년들에 비해 특별히 더 높다고 하기는 어려웠다. 그러나 주거비 부담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소득과 월 임대료의

비율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므로, 비율이 유사하다고 하여 비슷한 임대료를 지불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표 II-5. 청년가구 유형별 평균 주택가격 및 임대료 수준

(단위: 만 원)

구분	주택가격	전세금	보증부월세		월세
			보증금	월세	
전체 가구	43,804.8	20,650.1	2,600.1	34.5	28.8
청년 가구 소계	50,431.2	19,730.5	2,475.7	37.4	31.7
청년 1인가구	35,156.8	12,043.6	1,419.2	36.7	31.7
청년 부부가구	43,749.5	23,646.2	6,395.9	41.8	29.4
부모 동거가구	52,578.2	24,287.9	4,698.1	36.1	33.2
기타 동거가구	41,911.6	12,326.0	2,354.6	44.0	32.2

자료: 국토교통부 (2022). 주거실태조사 원자료를 바탕으로 분석

표 II-6. 청년가구 유형별 주거비 부담

(단위: 만 원, %)

구분	월 임대료 수준(만 원)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	
	중위수 기준	평균 기준	중위수 기준	평균 기준
전체 가구	47.5	73.7	16.0	21.8
청년 가구 소계	50.1	72.9	17.3	21.2
청년 1인가구	42.5	50.0	17.2	21.4
청년 부부가구	90.5	107.7	18.3	22.1
부모 동거가구	76.3	114.8	15.7	20.6
기타 동거가구	52.5	65.9	16.4	17.8

자료: 국토교통부 (2022). 주거실태조사 원자료를 바탕으로 분석

③ 주택 보유 의식 및 정책욕구

주택을 보유해야 한다는 의식은 대체로 유사하게 높는데, 1인가구 청년이 다른 가구 유형에 비해 상당히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본인의 경제적 여건 및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반영된 결과일 수 있다.

주거정책 유형별 희망 정책의 분포 역시 청년가구 유형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난다. 1인가구 청년은 월세 보조(28.2%)가 다른 가구 유형에 비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장기공공임대주택(9.8%)에 대한 요구도 높다. 청년 1인가구와 가장 유사한 특징을 보이고 있는 가구 형태는 기타 동거가구인데, 이들도 월세보조에 대한 희망이 높고(23.3%), 장기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욕구는 24.5%로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가구유형별 정책 요구도의 차이는 현재 가구별로 처한 주거여건의 차이에 기인한다. 즉, 현재 주거비 부담이 높고, 주거의 안정성이 낮으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월세보조나 주거안정성을 담보하는 공공임대주택과 같은 정책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이다.

표 11-7. 청년가구 유형별 주택 보유 의식

(단위: %)

구분	전체 가구	청년가구 소계	청년1인	청년부부	부모동거	기타동거
비율(%)	87.3	85.1	70.9	91.0	93.8	80.5

자료: 국토교통부 (2022). 주거실태조사 원자료를 바탕으로 분석

표 11-8. 청년가구 유형별 주거정책 욕구

(단위: %)

구분	월세 보조	전세 자금	구입 자금	주택 개량	분양 전환	장기 임대	공공 분양	주거 상당	계
전체 가구	11.5	24.6	34.6	7.1	5.0	11.6	4.3	1.3	100.0
청년 가구 소계	14.2	29.5	33.2	3.3	5.4	9.4	4.0	1.1	100.0
청년 1인가구	28.2	39.9	13.0	0.4	4.9	9.8	3.2	0.7	100.0
청년 부부가구	4.0	31.9	47.0	1.0	5.3	5.1	5.1	0.5	100.0
부모 동거가구	3.8	17.6	49.1	7.7	5.7	9.8	4.5	1.9	100.0
기타 동거가구	23.3	23.6	14.3	2.7	7.6	24.5	3.2	0.8	100.0

자료: 국토교통부 (2022). 주거실태조사 원자료를 바탕으로 분석

(2) 1인가구 취약 청년의 개념 및 특성

① 주거권 관점에서 본 주거 취약의 정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권리의 하나로 보장되어야 하는 주거권을 구성하는 요소는 점유의 안정성, 거처의 물리적 적정성, 주거비용의 부담 가능성, 생활편의 시설과의 접근성 등이

있다. 또한 「주거기본법」에서도 국가는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주요한 주거정책 대상에 청년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주거취약 청년에 대한 주거권 보장은 국가가 담당할 가장 중요한 책무 중 하나인 것이다. 이하에서는 주거권 보장의 측면에서 주거취약성을 경제적, 물리적, 심리적 취약성이라는 세 가지 차원에서 살펴본다.

② 물리적 취약성

주거취약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은 주택이라는 물리적 실체가 최저주거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가장 쉽게 드러난다. 방의 수, 면적 기준, 독립적인 기초생활시설의 사용 가능성 등을 통해 최저주거기준을 파악한다. 매해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의 비중은 하락하고 있으나 청년가구 중에서 특히 1인가구 청년은 기준 미달 가구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가구유형이다. 2022년 기준 전국적으로 3.9%가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이나, 청년 1인가구만을 대상으로 하면 그 비중은 9.8%로 올라간다. 따라서 청년가구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규모가 33.2만 가구인데, 그중 청년 1인가구가 21.2만 가구로 63.9%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거취약 중 물리적 취약성 측면에서 청년1인가구가 다른 유형에 비해 가장 취약함을 알 수 있다.

표 II-9. 청년가구 유형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구분	미달가구 비중(%)	미달가구 수 규모(만 가구)
전체 가구	3.9	83.4
청년 가구 소계	4.7	33.2
청년 1인가구	9.8	21.2
청년 부부가구	2.6	3.2
부모 동거가구	1.9	6.6
기타 동거가구	8.8	2.2

자료: 국토교통부 (2022). 주거실태조사 원자료를 바탕으로 분석

③ 경제적 취약성

두 번째의 주거취약은 주거비 부담이라는 경제적 취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월소득 대비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율로 파악하는 주거비 부담은 중위수 기준(월환산 임대료/중위 소득)으로 17.2% 수준으로 청년 1인가구가 특별히 더 높다고 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주거비부담이 30%를 넘는 주거비 과부담가구는 청년1인가구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즉, 청년가구 중 주거비부담이 과도한 가구의 비율이 29.5%로 약 30%에 육박하고 있는 것은 다른 청년가구 유형에 비해 두드러지는 차이이다. 청년가구 전체적으로 주거비 부담이 과도한 가구 수는 89.1만 가구인데, 청년1인가구의 주거비 과부담가구가 57.4만 가구에 이르고 있어 전체 청년가구 중 64.4%를 차지하고 있다. 홀로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취약 중 경제적 취약성을 확인할 수 있는 지점이다.

표 II-10. 청년가구 유형별 주거비과부담 가구

구분	주거비 과부담가구 비율(%)	주거비 과부담가구 규모(만 가구)
전체 가구	26.2	210.4
청년 가구 소계	25.5	89.1
청년 1인가구	29.5	57.4
청년 부부가구	21.8	14.7
부모 동거가구	19.3	14.4
기타 동거가구	19.3	2.6

자료: 국토교통부 (2022). 주거실태조사 원자료를 바탕으로 분석

④ 심리적 취약성

세 번째, 주거취약의 측면은 심리적 취약성이다. 이는 현재 상환하고 있는 임차료나 대출금에 대한 부담 정도로 측정할 수 있다.⁶⁾ 주거비부담의 실질적 부담 정도와 함께 심리적으로 체감하는 부담이 매우 높은 경우를 심리적 취약으로 정의하여 그 규모를 파악하고자 한다. 청년 1인가구의 경우 임차료나 대출금이 매우 부담된다고 답한 경우는 20.4%로 나타났고, 기타 동거가구에서는 29.4%로 가장 높다. 청년 부부가구도 23.7%로 매우 부담되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자가 마련 또는 높은 전세금 마련을 위한 대출로 인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6) 기존에 매월 임차료나 대출금을 상환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한다.

표 II-11. 청년가구 유형별 주거비 부담 정도

(단위: %)

구분	매우 부담	조금 부담	별로 부담되지 않음	전혀 부담되지 않음	계
전체 가구	22.9	57.9	17.6	1.6	100.0
청년 가구 소계	22.2	59.3	16.8	1.7	100.0
· 청년 1인가구	20.4	59.3	17.9	2.4	100.0
· 청년 부부가구	23.7	59.0	16.2	1.2	100.0
· 부모 동거가구	22.9	59.2	16.6	1.3	100.0
· 기타 동거가구	29.4	62.5	7.3	0.8	100.0

주: 부담x는 부담되지 않음을 의미

자료: 국토교통부 (2022). 주거실태조사 원자료를 바탕으로 분석

추가로 고려할 수 있는 심리적 취약의 차원은 임대차 계약과 관련한 주거불안감이다. 이는 임대차 계약 기간, 계약 만료 이후 재계약 거부 불안, 계약 종료 이후 보증금 상승이나 임대료 상승의 부담감, 또는 보증금 미반환 우려에 따른 불안감 등 임대차 계약 전 과정에서 임차인이 느끼는 거주 안정성과 관련된 것이다. 청년 1인가구는 상대적으로 보증금의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임대보증금 미반환 우려에 대한 불안감이 다른 가구 유형에 비해 낮은 것이 특징이다. 심리적 취약의 측면에서는 청년 1인가구에 비해 청년 부부가구의 불안감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계약기간 중 퇴거 불안, 계약 만료 후 재계약 거부, 임대료 상승이나 월세 전환, 임대 보증금 미반환 우려 등 모든 과정에서 청년부부가구의 불안감이 1인가구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II-12. 청년가구 유형별 임차 불안감 1

(단위: %)

구분	계약기간 중 퇴거 불안감					계약기간 만료후 재계약 거부 불안				
	매우 불안	조금 불안	별로 불안x	전혀 불안x	계	매우 불안	조금 불안	별로 불안x	전혀 불안x	계
전체 가구	1.7	14.4	55.5	28.5	100.0	2.7	15.0	52.3	30.0	100.0
청년 가구 소계	1.6	13.6	56.1	28.8	100.0	2.6	14.1	53.3	30.0	100.0
청년 1인가구	1.2	9.5	57.9	31.4	100.0	2.2	9.6	55.9	32.2	100.0
청년 부부가구	2.6	19.7	52.8	25.0	100.0	3.8	20.5	49.3	26.5	100.0
부모 동거가구	1.5	18.5	54.4	25.6	100.0	2.3	19.4	51.2	27.2	100.0
기타 동거가구	2.2	14.6	55.7	27.5	100.0	3.2	17.5	47.5	31.8	100.0

주: 불안x는 불안하지 않음을 의미
 자료: 국토교통부 (2022). 주거실태조사 원자료를 바탕으로 분석

표 II-13. 청년가구 유형별 임차 불안감 2

(단위: %)

구분	임대료 상승, 월세 전환 불안감					임대보증금 미반환 우려 불안감				
	매우 불안	조금 불안	별로 불안x	전혀 불안x	계	매우 불안	조금 불안	별로 불안x	전혀 불안x	계
전체 가구	4.7	21.0	48.3	26.0	100.0	4.2	17.6	52.6	25.7	100.0
청년 가구 소계	4.4	21.2	48.7	25.7	100.0	4.1	17.9	53.3	24.8	100.0
청년 1인가구	3.1	17.8	50.6	28.6	100.0	2.9	13.7	57.6	25.9	100.0
청년 부부가구	6.8	24.9	47.2	21.1	100.0	5.8	27.1	43.5	23.6	100.0
부모 동거가구	5.4	26.0	46.1	22.6	100.0	5.2	19.6	52.3	22.9	100.0
기타 동거가구	5.6	24.8	44.7	24.9	100.0	5.2	18.4	49.6	26.8	100.0

주: 불안x는 불안하지 않음을 의미
 자료: 국토교통부 (2022). 주거실태조사 원자료를 바탕으로 분석

(3) 1인가구 청년 및 주거취약 청년의 지역적 분포 특성

1인가구 청년의 주거특성을 지역별(수도권과 비수도권)로 구분해서 분석해 보면, 수도권 청년에 비해 비수도권 청년이 보증부 월세 및 보증금 없는 월세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거주하는 주택의 유형에서도 단독·다가구 주택이 월등히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대신 수도권 청년은 오피스텔 거주 비중이 비수도권 청년에 비해 약 두 배 정도 높게 나타난다는 차이가 확연하다.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1인가구 청년은 약 60%에 가까운 청년이 단독·다가구에 거주하고 오피스텔 거주는 약 10% 수준이다.

표 II-14. 1인가구 청년의 지역별 점유형태

(단위: %)

구분	자가	전세	보증금있는 월세	보증금없는 월세	무상	계
청년 가구 소계	46.5	20.5	27.3	2.8	2.8	100.0
청년 1인가구	4.7	21.6	61.5	8.1	4.1	100.0
수도권	4.4	25.5	59.8	7.0	3.3	100.0
비수도권	5.0	16.9	63.5	9.4	5.1	100.0

자료: 국토교통부 (2022). 주거실태조사 원자료를 바탕으로 분석

표 II-15. 청년가구 유형별 거주 주택유형

(단위: %)

구분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비거주용	오피스텔	주택이외	계
청년 가구 소계	26.6	51.8	12.6	1.0	5.8	2.3	100.0
청년 1인가구	47.4	17.0	11.8	1.4	15.4	7.1	100.0
수도권	38.6	16.2	16.2	2	19.3	7.7	100.0
비수도권	58.1	17.9	6.4	0.6	10.6	6.3	100.0

자료: 국토교통부 (2022). 주거실태조사 원자료를 바탕으로 분석

1인가구 청년이 거주하는 지역별로 주거정책 욕구의 차이를 보면, 비수도권 청년이 오히려 수도권에 거주하는 청년에 비해 장기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II-16. 청년가구 유형별 주거정책 욕구

(단위: %)

구분	월세 보조	전세 자금	구입 자금	주택 개량	분양 전환	장기 임대	공공 분양	주거 상담	계
청년 가구 소계	14.2	29.5	33.2	3.3	5.4	9.4	4.0	1.1	100.0
청년 1인가구	28.2	39.9	13.0	0.4	4.9	9.8	3.2	0.7	100.0
수도권	29.8	41.4	11.9	0.3	4.7	8.8	2.6	0.5	100.0
비수도권	24.8	36.9	15.2	0.6	5.3	11.8	4.4	1.0	100.0

자료: 국토교통부 (2022). 주거실태조사 원자료를 바탕으로 분석

지역별 주거비 과부담가구 1인청년의 분포는 비수도권에서도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난다. 비수도권 청년의 주거비 과부담 비율이 오히려 수도권 거주 청년에 비해 높고, 절대적인 규모면에서도 수도권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동안 수도권 청년의 주거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면서 수도권에서 다양한 정책 지원이 이루어진 것에 비해 비수도권 거주 청년에 대한 지원이 충분했던 것인지 검토할 필요성이 높은 지점이다. 2차 청년기본계획에서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주거지원을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표 II-17. 1인가구 청년 지역별 주거비과부담 가구

(단위: %)

구분	주거비 과부담가구 비율(%)	주거비 과부담가구 규모(만 가구)
청년 가구 소계	25.5	89.1
청년 1인가구	29.5	57.4
수도권	26.1	27.8
비수도권	33.7	29.6

자료: 국토교통부 (2022). 주거실태조사 원자료를 바탕으로 분석

다만 1인가구 청년의 지역별 임차료 및 대출금 상황에 대한 주관적 부담 정도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수도권에서 '매우 부담'의 비율이 24.8%로 비수도권의 15.0%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표 II-18. 1인가구 청년 지역별 임차료 및 대출금 상환 주관적 부담 정도

(단위: %)

구분	매우 부담	조금 부담	별로 부담x	전혀 부담x	계
청년 가구 소계	22.2	59.3	16.8	1.7	100.0
청년 1인가구	20.4	59.3	17.9	2.4	100.0
수도권	24.8	55.4	16.6	3.2	100.0
비수도권	15.0	64.2	19.5	1.4	100.0

주: 부담x는 부담되지 않음을 의미

자료: 국토교통부 (2022). 주거실태조사 원자료를 바탕으로 분석

(4) 1인가구 취약 청년의 규모 및 지원 기준(안)

① 중첩 주거취약 1인가구 청년의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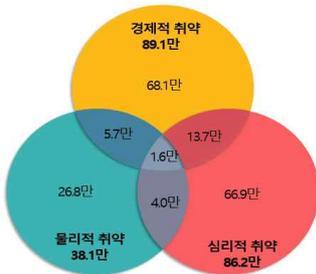
주거취약 가구는 경제적, 물리적, 심리적 측면에서 주거 여건이나 주거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로 정의한다. 경제적으로는 주거비 부담이 높은 주거비 과부담가구, 물리적으로는 열악한 주거기준을 보이는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와 지·옥·고 거주 가구, 심리적으로는 주관적 주거비 부담이 높은 가구로, 매월 부담하는 임차료나 대출금 상환액이 '매우 부담된다'라고 응답한 가구로 조작적 정의한다.

② 중첩 주거취약 1인가구 청년의 규모

주거취약의 세 가지 차원에서 취약성을 파악한 결과, 청년가구 중 전체적으로 세 가지 모두 중첩된 취약가구는 1.6만 가구로 산출된다. 경제적 취약은 89.1만, 물리적 취약은 39.1만, 심리적 취약은 86.2만 가구이며, 경제적 취약과 물리적 취약이 중첩된 경우는 7.3만, 경제적 취약과 심리적 취약이 중첩된 경우는 15.3만, 물리적 취약과 심리적 취약이 중첩된 경우는 41.6만 가구이다.

청년가구 중 1인 청년만으로 한정하여 주거취약 중첩가구를 계산하면 모든 측면에서 중첩된 다중 취약가구는 1.2만 가구 수준이다. 경제적 취약은 57.4만, 물리적 취약은 23.8만, 심리적 취약은 35.6만 가구로 추정된다.

주거취약 청년가구 규모



주거취약 1인 청년가구 규모



출처: 국토교통부 (2022). 주거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계산하여 작성

그림 II-3. 주거취약 청년가구 규모 추정(단위: 가구)

③ 중첩 주거취약 1인가구 청년의 지원 기준(안)

주거취약이 중첩된 1인가구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선별기준으로는 일단 물리적 취약성, 경제적 취약성이 합리적일 것이다. 주거취약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은 주택 자체의 물리적 거주 적합성 미달에서 드러나기 때문이고 이는 지·옥·고로 일컬어지는 (반)지하나 옥탑, 고시원 등 대상자 파악도 용이한 측면이 존재한다. 따라서 지·옥·고 등에 거주하는 경우와 주택 이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경우를 가장 우선적인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최저주거기준 미달인 경우인데, 주택의 면적이 최저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예, 1인가구 14㎡), 독립적으로 화장실, 욕실, 부엌 등의 기초 편의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두 번째 선별기준은 경제적 취약성과 연결된 것이다. 이는 소득, 자산과 같은 자신의 경제적 능력과 함께, 거주하는 주택의 보증금과 임차료 등 주택의 경제적 상황 등 두 가지 측면이 작용한다. 한정된 재원을 활용하여 대상자를 선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보통 경제적으로 취약한 대상자를 우선적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게 된다. 따라서 1인청년의 소득, 자산 여건을 선별 기준으로 선정할 수 있다. 세 번째는 거주하는 주택의 보증금 수준 및 임차료와 같은 주거비 수준을 기준으로 설정할 수 있다. 광역시도에서 지원하는 청년월세지원 프로그램도 일반적으로 보증금의 상한과 월세 상한을 두고 기준선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를 지원하는 경우가 많다.

종합하면, 주거취약이 중첩된 1인청년을 지원하는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면, 주택의 물리적 적합성 기준, 대상자의 경제적 수준, 주거비 수준이라는 세 가지 기준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표 II-19. 중첩 주거취약 1인가구 청년의 지원 기준(안)

기준	내용
물리적 기준	지옥고, 최저주거기준 미달
경제적 기준	
대상자	청년의 소득, 자산 기준
주택	주택의 보증금, 임차료 수준

출처: 저자 작성

2) 1인가구 청년의 생활 실태와 주요 특성: 2022 청년 삶 실태조사 분석

앞서 주거실태조사를 통해 1인가구 청년의 기본적인 주거특성과 주거비 관련 내용, 주택 보유에 대한 의식 및 정책 요구를 살펴보았다. 다만 주거실태에 초점을 맞춘 통계의 특성상 이들의 사회경제적인 측면과 심리정서적 측면 등을 포괄한 생활실태를 파악하는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여기서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통계청 승인통계로 추진된 조사 가운데 가용한 가장 최신의 자료인 2022 청년 삶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1인가구 청년의 생활 실태를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2022 청년 삶 실태조사는 청년기본법 제11조에 근거하여 2년 주기로 실시하는 승인통계(국가통계 승인번호 제170002호)로 지난 2022년에는 전국 17개 시도 일반가구의 19-34세 가구원과 그 가구원이 속한 가구를 모집단으로 한 약 15,000개의 표본을 구축하여 가구단위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항목은 주거, 건강, 교육훈련, 노동, 관계 및 참여, 사회인식 및 미래설계, 경제활동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있다. 따라서 청년 1인가구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최적의 자료라 볼 수 있다.⁷⁾

청년층의 생활실태는 크게 주거와 관련한 내용과 사회경제적 및 심리정서적 상태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주거와 관련한 내용은 거주 주택의 상태, 거주 지역의 주거 환경 만족도, 주거불안 상황 경험 여부, 공공임대주택 거주 경험 및 의향, 주거정책 수요 등을 포함하였다. 사회경제적 및 심리정서적 상태와 관련한 내용은 경제활동상태, 음주 및 운동 빈도, 우울 수준, 활동 참여 여부, 고립 수준, 삶과 사회에 대한 인식, 가족으로부터의 지원 등의 실태를 가구 유형별로 구분해 분석하였다. 다만, 개인의 배경에 따라 생활실태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보다 체계적인 지원 정책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보다 세분화된 분석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가구 유형에 더해 개인의 학력 수준, 연령, 성별, 부모의 학력 수준 등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2022 청년 삶 실태조사의 유효한 표본수는 14,965명이다. 이를 앞서 2022 주거실태조사를 분석한 방법과 같이 4개의 유형(청년1인가구, 청년부부가구, 부모동거가구, 기타동거가구)으로 구분하였다. 이 중 부모동거가구(57.3%)가 가장 많고, 청년1인가구(22.6%)가 두 번째로 많으며, 뒤이어 청년부부가구(13.3%), 마지막으로 기타동거가구(6.8%) 순이다. 개인학력수준은 3개 유형(재학생, 고졸이하, 대졸이상)으로 구분했는데, 대졸이상

7) 보다 최근에 조사된 2024 청년 삶 실태조사의 경우 2024년 12월 기준 미공표 상태이므로, 이 연구에서는 '2022 청년 삶 실태조사'를 분석하였음.

(59.9%)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재학생(21.5%)과 고졸이하(18.5%) 순서로 나타났다. 연령도 3개 수준(19-24세, 25-29세, 30-34세)으로 구분하였으며, 각각은 조사참여자의 35.3%, 34.1%, 30.6%를 차지했다. 성별(남: 52.5%, 여: 47.5%)과 부모학력(대졸 미만: 51.7%, 대졸이상: 48.3%)은 각각 2개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1) 가구 유형별 현재 거주 주택의 상태

청년 삶 실태조사에서는 현재 거주 주택의 상태에 대해 총 8가지 문항을 통해 조사하였다. 구체적으로 ①집의 구조물(건고, 균열, 노후 상태), 방수(습기, 빗물 누구), 난방 및 단열, ②환기 상태(창문 개폐 여부, 통풍), ③채광, ④주택 내외부 소음(차량 경적, 공사장 소음, 층간 소음 등), ⑤재난, 재해(산사태나 홍수, 지진 피해 등) 안전성, ⑥화재로부터의 안전성(화재 예방 전기 시설, 화재 대피 시설 유무), ⑦주택 방법(외부인의 주택 내 침입에 대한 안전성), ⑧주택 위생(악취, 벌레 등) 등이다. 각 문항은 5점 척도(①매우 불량, ②조금 불량, ③보통, ④조금 양호, ⑤매우 양호)로 측정되었다.

① 가구 유형별 집의 구조물, 방수, 난방 및 단열 차이

‘집의 구조물, 방수, 난방 및 단열’에 관한 문항은 전체 응답값의 평균(3.93점)이 대체로 양호한 편이라고 볼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구유형 가운데 청년1인가구(3.78점)가 집의 구조물, 방수, 난방 및 단열 등에 대해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하는 편이었다. 반면, 청년부부가구는 가장 긍정적으로 인식하였으며, 두 집단 간 차이는 0.23점이었다.

청년1인가구 중에서도 개인 학력수준이 고졸이하인 집단의 경우 거주 주택의 구조물이나 방수, 난방, 단열 등에 대해 가장 낮은 점수(3.65점)를 주었다. 개인 배경에 따라서는 재학생이거나 대졸이상인 청년이 거주 주택의 상태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고, 연령에 따라서는 청년부부가구이거나 기타동거가구인 경우 연령대가 올라감에 따라 점수가 더 높아졌으나, 부모동거가구의 경우 반대 경향이 나타났다. 청년1인가구의 경우 25~29세에 해당하는 연령대의 점수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낮았으나 그 차이는 크지 않았다. 부모학력이 높은 집단이 현재 거주하는 주택의 구조물, 방수, 난방 및 단열 등에 대해 더욱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편이었다.

표 II-20. 현재 거주 주택의 상태(집의 구조물, 방수, 난방 및 단열)

		집의 구조물, 방수, 난방 및 단열(점)			
		청년1인가구	청년부부가구	부모동거가구	기타동거가구
전체(평균: 3.93점)		3.78	4.01	3.97	3.90
개인 학력수준	재학생	3.83	4.17	4.10	4.13
	고졸이하	3.65	3.93	3.84	3.68
	대졸이상	3.80	4.03	3.95	3.94
연령	19-24	3.79	3.89	4.02	3.67
	25-29	3.77	3.99	3.96	3.86
	30-34	3.80	4.03	3.85	3.97
성별	남	3.77	4.00	3.99	3.89
	여	3.81	4.02	3.96	3.90
부모학력	대졸미만	3.70	3.96	3.81	3.90
	대졸이상	3.89	4.12	4.11	3.91

자료: 국무조정실 (2022).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를 바탕으로 분석

② 가구 유형별 환기 상태

현재 거주 주택의 환기 상태에 대한 전체 청년 응답값의 평균은 4.13점으로 대체로 양호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유형 가운데 청년1인가구(3.83점)가 환기 상태에 대해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하는 편이었다. 반면, 부모동거가구(4.23점)는 환기 상태에 대해 가장 긍정적으로 인식하였으며, 두 집단간 차이는 0.40점이었다.

청년1인가구 중에서도 개인 학력수준이 고졸이하인 집단의 경우 환기 상태에 대해 가장 낮은 점수(3.70점)를 주었다. 이는 앞선 결과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개인배경에 따라서는 청년부부가구를 제외하고 나머지 가구유형에서는, 재학생이거나 대졸이상 청년이 환기 상태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연령에 따라서는 청년1인가구이거나 기타동거가구인 경우 연령대가 올라감에 따라 점차 점수가 높아졌으나, 부모동거가구의 경우 반대 경향이 나타났다. 청년부부가구의 경우 25-29세에 해당하는 연령대(4.19점)와 30-34세 연령대(4.18점)의 점수가 유사했으나, 19-24세 연령대(3.87점)의 경우 다소 차이가 있었다. 성별과 부모학력에 따라서는 각각 여성과 부모학력이 대졸이상인 경우가 환기 상태에 대해 더 높은 점수를 주었다.

표 II-21. 현재 거주 주택의 상태(환기 상태)

		환기 상태(점)			
		청년1인가구	청년부부가구	부모동거가구	기타동거가구
전체(평균: 4.13점)		3.83	4.18	4.23	4.14
개인 학력수준	재학생	3.82	4.13	4.31	4.28
	고졸이하	3.70	4.19	4.13	3.93
	대졸이상	3.87	4.18	4.22	4.19
연령	19-24	3.80	3.87	4.27	3.93
	25-29	3.84	4.19	4.22	4.14
	30-34	3.85	4.18	4.14	4.19
성별	남	3.80	4.13	4.22	4.07
	여	3.87	4.23	4.24	4.16
부모학력	대졸미만	3.77	4.13	4.09	4.12
	대졸이상	3.90	4.29	4.35	4.17

자료: 국무조정실 (2022).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를 바탕으로 분석

③ 가구 유형별 채광 상태

채광에 대한 전체 청년 응답값의 평균은 4.13점으로 환기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또한, 개인배경에 따른 세부적인 양상도 대체로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반적으로 청년1인 가구의 응답값(3.79점)이 다른 가구유형에 비해 낮은 경향과 청년1인가구 가운데에서도 개인 학력수준이 고졸이하인 집단(3.69점)이 가장 낮은 값을 갖는 양상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표 II-22. 현재 거주 주택의 상태(채광)

		채광(점)			
		청년1인가구	청년부부가구	부모동거가구	기타동거가구
전체(평균: 4.13점)		3.79	4.20	4.25	4.14
개인 학력수준	재학생	3.76	4.42	4.33	4.34
	고졸이하	3.69	4.08	4.12	3.92
	대졸이상	3.82	4.22	4.26	4.18
연령	19-24	3.76	4.02	4.29	3.93
	25-29	3.80	4.13	4.26	4.14
	30-34	3.80	4.23	4.13	4.18
성별	남	3.75	4.17	4.22	3.97
	여	3.84	4.23	4.29	4.20
부모학력	대졸미만	3.73	4.17	4.10	4.10
	대졸이상	3.86	4.27	4.38	4.20

자료: 국무조정실 (2022).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를 바탕으로 분석

④ 가구 유형별 주택 내외부 소음 상태

주택 내외부 소음에 대해서 전체 청년 응답값의 평균은 3.67점으로 앞선 결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평가가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청년1인가구의 경우 3.46점으로 '양호'보다 '보통'에 가깝게 평가했는데, 개인배경에 따른 편차는 집단 내 가장 낮은 값(여성: 3.43점)과 가장 높은 값(남성: 3.48점)의 차이가 0.05점으로 다른 가구유형에 비해 크지 않은 편이었다.

표 II-23. 현재 거주 주택의 상태(주택 내외부 소음)

		주택 내외부 소음(점)			
		청년1인가구	청년부부가구	부모동거가구	기타동거가구
전체(평균: 3.67점)		3.46	3.71	3.76	3.62
개인 학력수준	재학생	3.46	3.82	3.87	3.69
	고졸이하	3.44	3.53	3.64	3.44
	대졸이상	3.46	3.75	3.74	3.66
연령	19-24	3.46	3.35	3.78	3.56
	25-29	3.46	3.77	3.79	3.58
	30-34	3.45	3.69	3.63	3.64
성별	남	3.48	3.64	3.77	3.51
	여	3.43	3.77	3.75	3.66
부모학력	대졸미만	3.40	3.67	3.60	3.57
	대졸이상	3.53	3.79	3.89	3.70

자료: 국무조정실 (2022).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를 바탕으로 분석

⑤ 가구 유형별 재난, 재해 안전성

거주 주택의 재난, 재해 안전성에 대해 청년층은 대체로 양호한 편(4.06점)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다만, 청년1인가구의 경우 다른 가구유형에 비해 이에 대한 평가가 다소 낮은편(3.86점)이었고, 반대로 청년부부가구는 재난, 재해 안전성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4.16점)했다. 청년1인가구 중 고졸이하 학력의 청년이 평가하는 재난, 재해 안전성 점수가 가장 낮았다(3.76점).

표 II-24. 현재 거주 주택의 상태(재난, 재해 안전성)

		재난, 재해 안전성(점)			
		청년1인가구	청년부부가구	부모동거가구	기타동거가구
전체(평균: 4.06점)		3.86	4.16	4.12	4.07
개인 학력수준	재학생	3.81	3.93	4.18	4.19
	고졸이하	3.76	4.11	3.98	3.79
	대졸이상	3.90	4.17	4.13	4.14
연령	19-24	3.83	3.92	4.13	3.87
	25-29	3.85	4.13	4.14	3.94
	30-34	3.91	4.17	4.01	4.16
성별	남	3.84	4.13	4.12	4.00
	여	3.89	4.18	4.11	4.10
부모학력	대졸미만	3.78	4.14	3.95	4.01
	대졸이상	3.96	4.20	4.25	4.16

자료: 국무조정실 (2022).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를 바탕으로 분석

⑥ 가구 유형별 화재로부터의 안전성

화재로부터의 안전성에 대한 전체 청년의 평가는 3.96점으로 나타났다. 청년1인가구의 평가가 3.77점으로 가장 낮았으며, 청년부부가구의 평가가 4.08점으로 가장 높았다.

청년1인가구 중에서 학력이 고졸이하인 경우 화재로부터의 안전성을 가장 낮게 평가(3.66점)하였다. 반면, 부모동거가구이면서 부모학력이 대졸이상인 집단은 화재로부터의 안전성을 가장 높게 평가(4.18점)하였다. 청년1인가구 중 연령에 따른 차이(0.05점) 크지 않은 편이었으나, 부모학력에 따른 차이(0.19점)는 상대적으로 큰 편이었다.

표 II-25. 현재 거주 주택의 상태(화재로부터의 안전성)

		화재로부터의 안전성(점)			
		청년1인가구	청년부부가구	부모동거가구	기타동거가구
전체(평균: 3.98점)		3.77	4.08	4.04	4.00
개인 학력수준	재학생	3.78	4.17	4.13	4.04
	고졸이하	3.66	3.92	3.90	3.79
	대졸이상	3.80	4.12	4.04	4.05
연령	19-24	3.75	3.77	4.08	3.66
	25-29	3.76	3.97	4.04	3.90
	30-34	3.80	4.13	3.91	4.11
성별	남	3.75	4.05	4.05	3.96
	여	3.80	4.12	4.02	4.01
부모학력	대졸미만	3.69	4.07	3.86	3.96
	대졸이상	3.88	4.13	4.18	4.06

자료: 국무조정실 (2022).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를 바탕으로 분석

⑦ 가구 유형별 주택 방법 상태

주택 방법에 대해 전체 청년의 평균은 4.01점으로 나타나, 양호한 편으로 평가할 수 있었다. 청년1인가구(3.78점)는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가장 높은 평균점수를 보이는 청년부부가구(4.09점)와 비교해 0.21점 낮았다.

청년1인가구에서 가장 낮은 점수는 고졸이하 학력인 집단(3.64점)이었으며,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집단은 부모학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집단(3.89점)이었다. 청년1인가구 내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는 0.01점으로 극히 작았다.

표 11-26. 현재 거주 주택의 상태(주택 방법)

		주택 방법(점)			
		청년1인가구	청년부부가구	부모동거가구	기타동거가구
전체(평균: 4.01점)		3.78	4.09	4.07	4.01
개인 학력수준	재학생	3.79	4.17	4.17	3.95
	고졸이하	3.64	3.94	3.95	3.87
	대졸이상	3.82	4.12	4.07	4.06
연령	19-24	3.75	3.90	4.11	3.73
	25-29	3.77	4.03	4.09	3.96
	30-34	3.83	4.12	3.92	4.09
성별	남	3.79	4.05	4.09	3.94
	여	3.78	4.12	4.05	4.04
부모학력	대졸미만	3.70	4.07	3.89	3.96
	대졸이상	3.89	4.14	4.22	4.09

자료: 국무조정실 (2022).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를 바탕으로 분석

⑧ 가구 유형별 주택 위생 상태

현재 거주 주택의 위생 상태에 대해 청년층의 전체 평균은 3.92점으로 양호한 편이었다. 청년1인가구의 평균은 3.71점으로 가구 유형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특히, 고졸이하 학력의 청년1인가구가 인식하는 주택 위생 상태는 3.63점으로 전체 유형 가운데 가장 낮았으며, 가구유형을 불문하고 고졸이하 학력의 청년은 주택 위생 상태에 대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전 타 요인을 분석한 결과의 양상을 그대로 따랐다.

부모동거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유형에서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주택 위생 상태를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부모동거가구의 경우는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위생 상태에 대한 점수가 낮아지는 반대의 경향성이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위생 상태에 대한 평가는 큰 차이가 없는 편이었는데, 대조적으로 부모학력 수준에 따른 차이는 상대적으로 컸다.

표 11-27. 현재 거주 주택의 상태(주택 위생)

		주택 위생(점)			
		청년1인가구	청년부부가구	부모동거가구	기타동거가구
전체(평균: 3.92점)		3.71	3.99	3.99	3.88
개인 학력수준	재학생	3.73	4.01	4.07	3.93
	고졸이하	3.63	3.87	3.85	3.68
	대졸이상	3.73	4.02	4.00	3.94
연령	19-24	3.69	3.74	4.02	3.62
	25-29	3.71	3.96	4.01	3.88
	30-34	3.73	4.01	3.87	3.95
성별	남	3.70	3.99	4.00	3.85
	여	3.72	3.99	3.99	3.90
부모학력	대졸미만	3.63	3.97	3.81	3.86
	대졸이상	3.81	4.03	4.14	3.92

자료: 국무조정실 (2022).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를 바탕으로 분석

⑨ 가구 유형별 현재 거주 주택의 상태에 대한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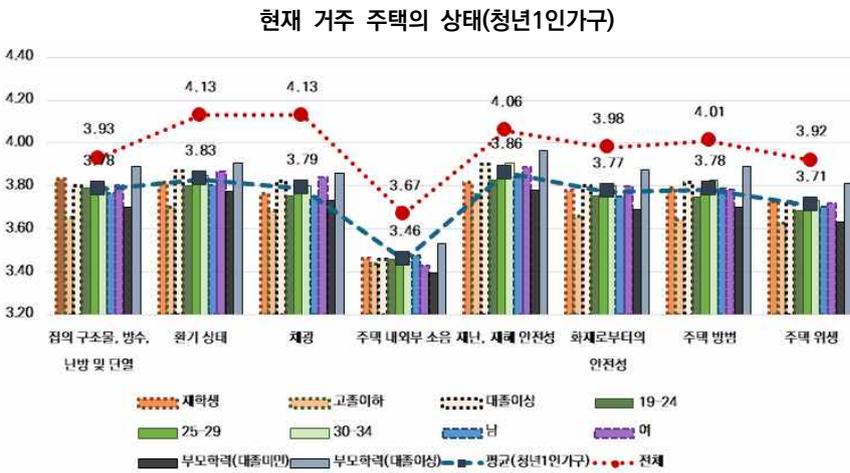


그림 11-4. 현재 거주 주택의 상태(청년1인가구)

1인가구 청년이 응답한 현재 거주 주택의 상태는 모든 영역에서 다른 가구 유형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1인가구 청년들의 주거 환경이 대체적으로 열악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①집의 구조물(건고, 균열, 노후 상태), 방수(습기, 빗물 누구), 난방 및 단열, ②환기 상태(창문 개폐 여부, 통풍), ③채광, ④주택 내외부 소음(차량 경적, 공사장 소음, 층간 소음 등), ⑤재난, 재해(산사태나 홍수, 지진 피해 등) 안전성, ⑥화재로부터의 안전성(화재 예방 전기 시설, 화재 대피 시설 유무), ⑦주택 방범(외부인의 주택 내 침입에 대한 안전성), ⑧주택 위생(악취, 벌레 등) 등에서 대체로 다른 가구 유형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거주 주택의 상태를 묻는 대부분의 문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점수분포를 보이는 집단은 청년1인가구 중에서도 고졸이하의 학력 수준인 경우였다. 학력수준에 따른 차이가 그 자체로 의미를 갖기보다는 이른 나이에 청년 1인가구로 독립해서 지낼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쾌적하지 않은 환경일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에 머무는 일자리에 있을 경우 이러한 위험은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성인기 이행의 관점에서 노동시장 이행의 불안정이 주거 불안정과도 연관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다.

표 II-28. 현재 거주 주택의 상태(청년1인가구)

		집의 구조물, 방수, 방 단열	환기 상태	채광	주택 내외부 소음	재난, 해전 안전성	화재로부터의 안전성	주택 방범	주택 위생
개인 학력 수준	재학생	3.83	3.82	3.76	3.46	3.81	3.78	3.79	3.73
	고졸이하	3.65	3.70	3.69	3.44	3.76	3.66	3.64	3.63
	대졸이상	3.80	3.87	3.82	3.46	3.90	3.80	3.82	3.73
연령	19-24	3.79	3.80	3.76	3.46	3.83	3.75	3.75	3.69
	25-29	3.77	3.84	3.80	3.46	3.85	3.76	3.77	3.71
	30-34	3.80	3.85	3.80	3.45	3.91	3.80	3.83	3.73
성별	남	3.77	3.80	3.75	3.48	3.84	3.75	3.79	3.70
	여	3.81	3.87	3.84	3.43	3.89	3.80	3.78	3.72
부모 학력	대졸미만	3.70	3.77	3.73	3.40	3.78	3.69	3.70	3.63
	대졸이상	3.89	3.90	3.86	3.53	3.96	3.88	3.89	3.81
평균(청년1인가구)		3.78	3.83	3.79	3.46	3.86	3.77	3.78	3.71
전체		3.93	4.13	4.13	3.67	4.06	3.98	4.01	3.92

자료: 국무조정실 (2022).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를 바탕으로 분석

(2) 가구 유형별 현재 거주 지역의 주거 환경 만족도

청년 삶 실태조사에서는 현재 거주 지역의 주거 환경에 대해 총 8가지 문항으로 조사하였다. 구체적으로 ①생활 인프라(상업 시설, 의료 시설, 공공 기관), ②대중교통 이용, ③치안 및 범죄 등 방범 상태, ④위생 환경(무단 쓰레기 투기 등), ⑤녹지 공간(산책로, 공원 등), ⑥문화/부대시설(커뮤니티 센터, 도서관 등), ⑦교육 환경(학교·학원 및 미취학 아동을 위한 시설·서비스 등), ⑧이웃과의 관계 등이다. 각 문항은 5점 척도(①매우 불만족, ②약간 불만족, ③보통, ④약간 만족, ⑤매우 만족)로 측정하였다.

① 가구 유형별 생활인프라에 대한 만족도

거주 지역의 생활인프라에 대한 만족도는 청년1인가구(3.80점)가 다른 가구 유형에 비해 낮은 편이었으며, 고졸이하 청년1인가구(3.69점)의 만족도가 특히 낮았다. 청년부부가구의 생활인프라에 대한 만족도는 3.87점으로 가구유형 가운데 두 번째로 낮았다. 이는 거주 주택의 상태에 대한 평가에서 나타난 결과와는 다소 다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생활인프라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3.89점으로 후술할 다른 주거 환경에 대한 만족도에 비해 높은 편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표 II-29. 현재 거주 지역의 주거 환경 만족도(생활인프라)

		생활인프라(점)			
		청년1인가구	청년부부가구	부모동거가구	기타동거가구
전체(평균: 3.89점)		3.80	3.87	3.93	3.90
개인 학력수준	재학생	3.80	4.02	4.04	3.81
	고졸이하	3.69	3.69	3.75	3.77
	대졸이상	3.83	3.91	3.93	3.95
연령	19-24	3.81	3.72	3.97	3.80
	25-29	3.81	3.78	3.94	4.06
	30-34	3.77	3.90	3.78	3.86
성별	남	3.74	3.88	3.90	3.80
	여	3.88	3.86	3.96	3.93
부모학력	대졸미만	3.72	3.83	3.77	3.83
	대졸이상	3.90	3.94	4.06	4.00

자료: 국무조정실 (2022).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를 바탕으로 분석

② 가구 유형별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만족도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만족도의 전체 평균은 3.82점으로 생활인프라에 비해 다소 낮게 나타났다. 청년1인가구(3.82점)의 만족도는 부모동거가구(3.88점)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는데, 이는 거주 주택에 대한 평가나 후술할 주거 환경에 대한 만족도 가운데 유일한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는 청년1인가구의 경우 주택의 상태나 주거 환경은 다소 떨어지더라도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점을 주거의 우선순위로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연령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청년1인가구와 부모동거가구, 기타동거가의 경우 같은 가구 유형 내에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편이었다. 반대로 청년부부가구는,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졌다.

표 II-30. 현재 거주 지역의 주거 환경 만족도(대중교통 이용)

		대중교통 이용(점)			
		청년1인가구	청년부부가구	부모동거가구	기타동거가구
전체(평균: 3.83점)		3.82	3.65	3.88	3.70
개인 학력수준	재학생	3.86	3.46	3.97	3.76
	고졸이하	3.70	3.54	3.76	3.64
	대졸이상	3.84	3.68	3.88	3.71
연령	19-24	3.89	3.50	3.92	3.91
	25-29	3.82	3.62	3.91	3.83
	30-34	3.78	3.67	3.74	3.60
성별	남	3.76	3.69	3.86	3.77
	여	3.91	3.61	3.91	3.67
부모학력	대졸미만	3.73	3.62	3.76	3.56
	대졸이상	3.94	3.73	3.99	3.93

자료: 국무조정실 (2022).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를 바탕으로 분석

③ 가구 유형별 치안 및 범죄에 대한 만족도

치안 및 범죄에 대한 만족도 평균은 3.96점으로 주거 환경 만족도 가운데 가장 점수가 높았다. 다만, 가구 유형 간 비교해보면, 청년1인가구가 3.76점으로 가장 점수가 낮았다. 특히, 고졸이하 청년1인가구의 만족도는 3.66점으로 전체 청년 유형 중 만족도가 최하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중교통 이용 만족도를 제외한 다른 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다.

표 II-31. 현재 거주 지역의 주거 환경 만족도(치안 및 범죄)

		치안 및 범죄(점)			
		청년1인가구	청년부부가구	부모동거가구	기타동거가구
전체(평균: 3.96점)		3.76	3.96	4.04	3.96
개인 학력수준	재학생	3.79	4.14	4.13	4.08
	고졸이하	3.66	3.85	3.90	3.83
	대졸이상	3.78	3.98	4.03	3.98
연령	19-24	3.77	3.82	4.06	3.91
	25-29	3.76	3.90	4.07	4.02
	30-34	3.75	3.99	3.88	3.95
성별	남	3.76	3.96	4.05	4.01
	여	3.76	3.96	4.01	3.94
부모학력	대졸미만	3.67	3.95	3.84	3.90
	대졸이상	3.87	3.99	4.19	4.06

자료: 국무조정실 (2022).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를 바탕으로 분석

④ 가구 유형별 위생환경 만족도

위생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3.87점으로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편이었다. 다만, 청년1인가구의 만족도는 3.63점으로 다른 가구유형에 비해 점수가 낮았으며, 본인이 고졸 이하의 학력(3.53점)이거나 부모학력이 대졸미만(3.57점)인 경우 위생환경에 대한 만족도 낮은 편이었다. 연령에 따른 편차는 크지 않은 편이었는데, 기타동거가구의 경우만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위생환경에 대한 만족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32. 현재 거주 지역의 주거 환경 만족도(위생환경)

		위생환경(점)			
		청년1인가구	청년부부가구	부모동거가구	기타동거가구
전체(평균: 3.87점)		3.63	3.89	3.96	3.89
개인 학력수준	재학생	3.63	3.93	4.03	3.75
	고졸이하	3.53	3.77	3.78	3.77
	대졸이상	3.66	3.92	3.98	3.94
연령	19-24	3.62	3.93	3.97	3.79
	25-29	3.63	3.81	4.01	3.84
	30-34	3.65	3.92	3.81	3.93
성별	남	3.62	3.90	3.96	3.84
	여	3.64	3.88	3.96	3.91
부모학력	대졸미만	3.57	3.86	3.77	3.83
	대졸이상	3.72	3.94	4.11	3.98

자료: 국무조정실 (2022).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를 바탕으로 분석

⑤ 가구 유형별 녹지공간 만족도

녹지공간에 대한 만족의 평균은 3.91점으로 주거 환경의 여러 요인 가운데 높은 편이었다. 다만, 청년1인가구는 3.65점으로 평균과 0.26점, 부모동거가구와는 0.36점 차이가 났는데, 이는 다른 주거 환경 만족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차이이다. 청년부부가구(3.93점), 부모동거가구(4.01점), 기타동거가구(3.95점)는 대체로 비슷한 수준의 만족도를 보였다.

표 II-33. 현재 거주 지역의 주거 환경 만족도(녹지공간)

		녹지공간(점)			
		청년1인가구	청년부부가구	부모동거가구	기타동거가구
전체(평균: 3.91점)		3.65	3.93	4.01	3.95
개인 학력수준	재학생	3.62	3.95	4.11	3.74
	고졸이하	3.54	3.79	3.85	3.82
	대졸이상	3.69	3.96	4.01	4.02
연령	19-24	3.61	3.70	4.04	3.74
	25-29	3.65	3.84	4.03	3.84
	30-34	3.68	3.97	3.89	4.04
성별	남	3.64	3.93	4.00	3.91
	여	3.66	3.93	4.03	3.97
부모학력	대졸미만	3.60	3.90	3.83	3.90
	대졸이상	3.72	3.99	4.15	4.04

자료: 국무조정실 (2022).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를 바탕으로 분석

⑥ 가구 유형별 문화/부대시설 만족도

문화/부대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3.60점으로 다른 주거 환경 만족도에 비해 낮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도 청년1인가구의 만족도는 가장 낮은 3.43점이었으나, 다른 가구 유형과 차이(최대 0.25점)는 비교적 작은편이었다. 청년1인가구와 부모동거가구의 경우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문화/부대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내려가는 경향이 있었는데, 청년부부가구와 기타동거가구는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만족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는 가구 유형과 연령대에 따라 주거 환경에 대한 가치관이나 평가 기준이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위해서는 변수를 보완해 보다 세밀한 분석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표 II-34. 현재 거주 지역의 주거 환경 만족도(문화/부대시설)

		문화/부대시설(점)			
		청년1인가구	청년부부가구	부모동거가구	기타동거가구
전체(평균: 3.60점)		3.43	3.58	3.68	3.56
개인 학력수준	재학생	3.55	3.59	3.81	3.54
	고졸이하	3.35	3.47	3.47	3.48
	대졸이상	3.41	3.60	3.68	3.59
연령	19-24	3.53	3.45	3.72	3.50
	25-29	3.40	3.54	3.70	3.51
	30-34	3.39	3.59	3.51	3.60
성별	남	3.41	3.57	3.67	3.43
	여	3.46	3.58	3.69	3.61
부모학력	대졸미만	3.36	3.54	3.49	3.48
	대졸이상	3.52	3.67	3.83	3.70

자료: 국무조정실 (2022).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를 바탕으로 분석

⑦ 가구 유형별 교육환경 만족도

교육환경에 대한 만족 수준의 평균은 3.69점으로 점수가 낮은 편이었다. 청년1인가구의 재학생과 그에 상응하는 연령대(19-24세)는 다른 학력수준이나 연령대에 비해 높은 점수대를 보였다. 청년부부가구와 부모동거가구에서도 재학생인 경우 교육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졸업생에 비해 높은 편이었는데, 이는 당사자성이 일부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II-35. 현재 거주 지역의 주거 환경 만족도(교육환경)

		교육환경(점)			
		청년1인가구	청년부부가구	부모동거가구	기타동거가구
전체(평균: 3.69점)		3.47	3.65	3.79	3.66
개인 학력수준	재학생	3.67	3.80	3.91	3.67
	고졸이하	3.43	3.55	3.59	3.61
	대졸이상	3.42	3.67	3.79	3.67
연령	19-24	3.58	3.64	3.83	3.63
	25-29	3.45	3.62	3.82	3.71
	30-34	3.41	3.66	3.59	3.64
성별	남	3.44	3.64	3.77	3.68
	여	3.51	3.65	3.81	3.65
부모학력	대졸미만	3.43	3.60	3.61	3.63
	대졸이상	3.52	3.76	3.93	3.71

자료: 국무조정실 (2022).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를 바탕으로 분석

⑧ 가구 유형별 이웃과의 관계 만족도

거주 지역의 주거 환경 만족도를 측정하는 총 8개의 문항 가운데, 이웃과의 관계는 평균이 3.57점으로 만족도가 가장 낮은 항목이었다. 다만, 본 문항이 5점 척도로 측정된 점을 감안하면, 보통에서 약간 만족 수준에 해당하여 절대적으로 부정적인 상태라고 보기는 어렵다. 가구 유형 중 청년1인가구의 만족도는 가장 낮았고, 부모동거가구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재학생 또는 연령대가 낮은 청년부부가구를 제외하고 동일 가구 유형 내 개인배경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은 편이었다.

표 II-36. 현재 거주 지역의 주거 환경 만족도(이웃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점)			
		청년1인가구	청년부부가구	부모동거가구	기타동거가구
전체(평균: 3.57점)		3.33	3.58	3.66	3.59
개인 학력수준	재학생	3.37	4.10	3.76	3.55
	고졸이하	3.30	3.49	3.54	3.54
	대졸이상	3.32	3.60	3.65	3.60
연령	19-24	3.36	3.94	3.69	3.49
	25-29	3.33	3.48	3.67	3.46
	30-34	3.30	3.62	3.55	3.66
성별	남	3.33	3.56	3.66	3.49
	여	3.33	3.61	3.67	3.62
부모학력	대졸미만	3.31	3.55	3.57	3.58
	대졸이상	3.35	3.67	3.74	3.59

자료: 국무조정실 (2022).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를 바탕으로 분석

⑨ 가구 유형별 현재 거주 지역의 주거 환경 만족도의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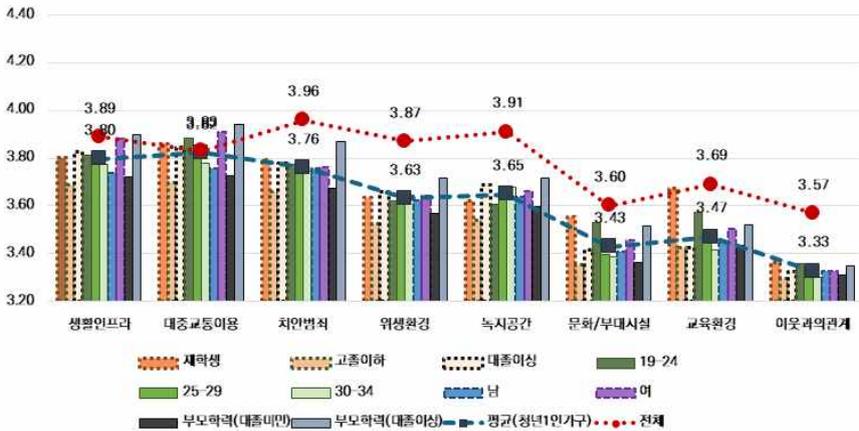
청년1인가구의 주거 환경 만족도가 다른 가구 유형에 비해 대부분 낮은 가운데, 유일하게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만족만 높은 편에 속했다. 이는 청년1인가구가 역세권 인근의 다소 정비되지 않은 거주 환경에 있는 주택에서 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 아울러, 앞서 주거실태조사를 통해 분석한 청년1인가구의 주택유형 중 단독주택의 비중이 47.4%로 과반에 가깝게 나타난 결과와 일맥상통하는 결과라 볼 수 있다.

표 II-37. 현재 거주 지역의 주거 환경 만족도(청년1인가구)

		생활인프라	대중교통이용	치안범죄	위생환경	녹지공간	문화/대시설	교육환경	이웃과의관계
개인 학력 수준	재학생	3.80	3.86	3.79	3.63	3.62	3.55	3.67	3.37
	고졸이하	3.69	3.70	3.66	3.53	3.54	3.35	3.43	3.30
	대졸이상	3.83	3.84	3.78	3.66	3.69	3.41	3.42	3.32
연령	19-24	3.81	3.89	3.77	3.62	3.61	3.53	3.58	3.36
	25-29	3.81	3.82	3.76	3.63	3.65	3.40	3.45	3.33
	30-34	3.77	3.78	3.75	3.65	3.68	3.39	3.41	3.30
성별	남	3.74	3.76	3.76	3.62	3.64	3.41	3.44	3.33
	여	3.88	3.91	3.76	3.64	3.66	3.46	3.51	3.33
부모 학력	대졸미만	3.72	3.73	3.67	3.57	3.60	3.36	3.43	3.31
	대졸이상	3.90	3.94	3.87	3.72	3.72	3.52	3.52	3.35
평균(청년1인가구)		3.80	3.82	3.76	3.63	3.65	3.43	3.47	3.33
전체		3.89	3.83	3.96	3.87	3.91	3.60	3.69	3.57

자료: 국무조정실 (2022).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를 바탕으로 분석

현재 거주 지역의 주거 환경 만족도(청년1인가구)



자료: 국무조정실 (2022).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를 바탕으로 분석

그림 II-5. 현재 거주 지역의 주거 환경 만족도(청년1인가구)

(3) 가구 유형별 거주 불안 상황 경험 여부

청년 삶 실태조사에서는 최근 1년간 거주 불안 상황 경험 여부에 대해 총 8가지 문항으로 조사하였다. 구체적으로 ①2개월 이상 월 임대료 연체, ②이사 또는 임대차 계약 갱신에 필요한 임대 보증금 부족, ③임대인이 기피하는 대상자라는 이유로 주택확보 곤란, ④3개월 이상 주택담보대출 이자 또는 원리금 상환 연체, ⑤주택압류, 재개발, 임대차 계약 중도 해지 등으로 인한 퇴거, ⑥3개월 이상 공과금이나 관리비 연체, ⑦임대인과의 갈등, ⑧주택임대차 보호법 위반 등이었다. 각 문항에 대해 응답자가 ‘①있다’와 ‘②없다’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측정하였다.

① 가구 유형별 2개월 이상 월 임대료 연체 여부

월 임대료를 2개월 이상 연체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전체 청년가구 중 1.6%가 그러한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청년1인가구는 3.9%가 월 임대료 연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특히, 청년1인가구 내에서도 개인 학력이 고졸이하(7.1%)거나, 부모학력이 대졸미만(5.5%)인 경우 월 임대료 연체 경험 비율이 다른 집단 집단 보다 두드러지게 높았다. 기타동거가구의 고졸이하 학력(6.0%)과 연령대가 19-24세로 낮은 경우(5.6%)도 월 임대료 연체 비율이 높은 편이었다.

표 II-38. 거주 불안 상황 경험 여부(2개월 이상 월 임대료 연체)

		2개월 이상 월 임대료 연체			
		청년1인가구	청년부부가구	부모동거가구	기타동거가구
전체(1.6%)		3.9%	0.8%	0.7%	2.4%
개인 학력수준	재학생	3.3%	0.0%	0.8%	0.0%
	고졸이하	7.1%	2.0%	0.8%	6.0%
	대졸이상	3.2%	0.5%	0.6%	1.6%
연령	19-24	4.1%	1.7%	0.9%	5.6%
	25-29	4.7%	0.5%	0.5%	2.5%
	30-34	2.8%	0.9%	0.6%	1.6%
성별	남	4.7%	0.8%	0.8%	3.9%
	여	2.7%	0.7%	0.6%	1.8%
부모학력	대졸미만	5.5%	0.7%	1.0%	2.1%
	대졸이상	1.7%	0.9%	0.5%	2.8%

자료: 국무조정실 (2022).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를 바탕으로 분석

② 가구 유형별 이사 또는 임대차 계약 갱신에 필요한 임대 보증금 부족 여부

임대 보증금 부족을 경험한 청년은 전체의 4.9%로 청년 삶 실태조사에서 조사한 거주 불안 상황 가운데 가장 높은 경험 비율을 보였다. 부모동거가구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2.3%가 임대 보증금 부족을 경험했다고 응답하였는데, 나머지 청년1인가구(8.6%), 청년 부부가구(8.7%), 기타동거가구(8.0%)는 8.0% 이상이 임대 보증금 부족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1인가구와 청년부부가구는 전체적으로는 비슷한 규모가 임대 보증금 부족 상황을 경험한 것으로 보이나, 연령별로 살펴본 결과에서는 다소 다른 양상이 나타났다. 청년1인가구는 연령대가 올라감에 따라 임대 보증금 부족을 경험한 비율이 함께 올라가지만, 청년부부가구의 경우 낮은 연령대에서 임대 보증금 부족 경험 비율이 더 높은 편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청년1인가구와 청년부부가구가 거주하는 집의 특성이 연령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나타났을 수 있다. 임대 보증금 부족은 대체로 점유 형태가 전세거나 보증금이 있는 월세인 경우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청년1인가구는 낮은 연령대에서 보증금이 없는 월세 방식의 점유형태가 주를 이루다 연령대가 올라가면서 전세 또는 보증금이 있는 월세에 거주하게 됨에 따라 임대 보증금 부족 상황도 더 많이 겪게 되는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청년부부가구의 경우는 연령대에 관계 없이 전세 또는 보증금이 있는 월세 거주 비율이 높아 임대 보증금 부족을 낮은 연령대에서부터 많이 겪게 되지만,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소득 수준의 증가를 기대할 수 있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년1인가구에 비해 부부소득을 합산해 주거비에 투입할 수 있기 때문에 30-34세 연령 구간에서는 임대 보증금 부족을 경험하는 비율이 더 낮은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표 II-39. 거주 불안 상황 경험 여부(임대 보증금 부족)

		이사 또는 임대차 계약 갱신에 필요한 임대 보증금 부족			
		청년1인가구	청년부부가구	부모동거가구	기타동거가구
전체(4.9%)		8.6%	8.7%	2.3%	8.0%
개인 학력수준	재학생	4.7%	4.3%	1.9%	3.9%
	고졸이하	10.7%	9.1%	2.4%	13.5%
	대졸이상	9.1%	8.7%	2.4%	6.8%
연령	19-24	5.2%	16.9%	1.9%	6.4%
	25-29	9.0%	11.0%	2.3%	7.5%
	30-34	10.7%	7.7%	3.1%	8.5%

성별	남	7.5%	8.1%	1.8%	10.4%
	여	10.0%	9.3%	2.7%	7.1%
부모학력	대졸미만	10.0%	9.7%	3.1%	10.1%
	대졸이상	6.7%	6.6%	1.6%	4.4%

자료: 국무조정실 (2022).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를 바탕으로 분석

③ 가구 유형별 임대인이 기피하는 대상자라는 이유로 주택확보 곤란 여부

임대인이 기피하는 대상자라는 이유(예를 들면, 취약 계층 또는 아동 동반 가구)로 주택 확보에 곤란함을 겪은 경우는 전체 청년 중 0.7%로 분석되었다. 청년1인가구는 0.9%가 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전체 평균에 비해 높은 편이었다. 다만, 청년부부가구(0.9%)와 유사한 수준, 기타동거가구(1.5%) 보다는 낮은 수준이었으며, 부모동거가구(0.5%)와도 큰 차이는 아니었다. 전체 유형 가운데 연령대가 19~24세로 낮은 청년부부가구가 이와 같은 거주 불안 상황 경험 비율이 가장 높았다.

표 II-40. 거주 불안 상황 경험 여부(임대인 기피 대상자라는 이유로 주택확보 곤란)

		임대인이 기피하는 대상자라는 이유로 주택확보 곤란			
		청년1인가구	청년부부가구	부모동거가구	기타동거가구
전체(0.7%)		0.9%	0.9%	0.5%	1.5%
개인 학력수준	재학생	0.7%	0.0%	0.4%	0.0%
	고졸이하	0.6%	1.3%	0.3%	3.0%
	대졸이상	1.0%	0.9%	0.6%	1.3%
연령	19-24	0.8%	4.4%	0.5%	1.8%
	25-29	0.8%	1.3%	0.4%	0.8%
	30-34	1.1%	0.7%	0.7%	1.7%
성별	남	1.0%	0.7%	0.5%	0.4%
	여	0.8%	1.1%	0.4%	1.9%
부모학력	대졸미만	1.2%	1.0%	0.5%	2.1%
	대졸이상	0.5%	0.8%	0.4%	0.5%

자료: 국무조정실 (2022).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를 바탕으로 분석

④ 가구 유형별 3개월 이상 주택담보대출 이자 또는 원리금 상환 연체 여부

전체 청년 중 3개월 이상 주택담보대출 이자 또는 원리금 상환 연체를 경험한 비율은 0.6%로 낮았다. 이는 기본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한 경우에만 연체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사례로 한정해 연체 경험 비율을 보면 다른 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번 분석에서는 청년1인가구와 청년부부가구의 연체 경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청년부부가구 중 재학생이나 낮은 연령대(19-24세)의 연체 경험 비율이 각각 4.3%와 6.3%로 다른 유형에 비해 두드러지게 높았다. 이러한 유형의 경우 정기적인 수입의 규모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그 결과가 반영된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표 II-41. 거주 불안 상황 경험 여부(3개월 이상 주택담보대출 이자 또는 원리금 상환 연체)

		3개월 이상 주택담보대출 이자 또는 원리금 상환 연체			
		청년1인가구	청년부부가구	부모동거가구	기타동거가구
전체(0.6%)		0.8%	0.8%	0.5%	0.6%
개인 학력수준	재학생	0.6%	4.3%	0.3%	1.0%
	고졸이하	1.3%	0.3%	0.6%	0.4%
	대졸이상	0.8%	0.9%	0.5%	0.6%
연령	19-24	0.8%	6.3%	0.5%	0.7%
	25-29	0.6%	0.4%	0.2%	0.7%
	30-34	1.1%	0.8%	1.0%	0.6%
성별	남	0.9%	1.3%	0.5%	0.4%
	여	0.7%	0.3%	0.4%	0.7%
부모학력	대졸미만	0.9%	0.4%	0.6%	0.7%
	대졸이상	0.8%	1.7%	0.4%	0.5%

자료: 국무조정실 (2022).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를 바탕으로 분석

⑤ 가구 유형별 주택압류, 재개발, 임대차 계약 중도 해지 등으로 인한 퇴거 여부

주택압류, 재개발, 임대차 계약 중도 해지 등으로 인한 퇴거를 경험한 비율은 전체 청년의 0.5%에 해당하여, 거주 불안 상황 중 가장 낮은 규모였다. 전반적으로 2%를 넘는 유형이 없었는데, 30-34세 청년1인가구(1.4%)와 19-24세 청년부부가구(1.8%)가 퇴거를 경험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부모동거가구를 제외하고 나머지 가구유형에서는 고졸이하 청년이 대졸이상이나 재학생에 비해 퇴거를 경험한 비율이 더 높은 편이었다.

표 II-42. 거주 불안 상황 경험 여부(퇴거)

		주택압류, 재개발, 임대차 계약 중도 해지 등으로 인한 퇴거			
		청년1인가구	청년부부가구	부모동거가구	기타동거가구
전체(0.5%)		0.7%	0.6%	0.4%	0.3%
개인 학력수준	재학생	0.5%	0.0%	0.3%	0.0%
	고졸이하	1.0%	1.5%	0.4%	0.8%
	대졸이상	0.8%	0.4%	0.5%	0.2%
연령	19-24	0.5%	1.8%	0.5%	0.6%
	25-29	0.4%	0.0%	0.4%	0.3%
	30-34	1.4%	0.8%	0.5%	0.3%
성별	남	0.8%	0.9%	0.6%	0.0%
	여	0.7%	0.3%	0.3%	0.5%
부모학력	대졸미만	0.9%	0.5%	0.5%	0.5%
	대졸이상	0.6%	0.9%	0.4%	0.0%

자료: 국무조정실 (2022).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를 바탕으로 분석

⑥ 가구 유형별 3개월 이상 공과금이나 관리비II-76 연체 여부

공과금이나 관리비 연체를 경험한 청년은 임대료 연체(1.6%)와 주택담보대출 이자 또는 원리금 상환 연체(0.6%)의 중간 수준으로 전체 청년의 1.2%가 해당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청년1인가구는 2.1%가 공과금이나 관리비 연체 경험이 있었으며, 고졸이하 청년1인가구는 특히, 4.3%가 이러한 경험이 있어 가장 높은 경험률을 보였다.

표 II-43. 거주 불안 상황 경험 여부(3개월 이상 공과금이나 관리비 연체)

		3개월 이상 공과금이나 관리비 연체			
		청년1인가구	청년부부가구	부모동거가구	기타동거가구
전체(1.2%)		2.1%	1.0%	0.9%	1.4%
개인 학력수준	재학생	1.5%	0.0%	1.0%	2.2%
	고졸이하	4.3%	1.8%	1.5%	3.4%
	대졸이상	1.8%	0.8%	0.7%	0.7%
연령	19-24	1.8%	1.7%	1.0%	3.4%
	25-29	1.9%	0.8%	0.5%	1.3%
	30-34	2.7%	1.1%	1.6%	1.0%
성별	남	2.4%	1.2%	0.9%	2.4%
	여	1.8%	0.8%	1.0%	1.1%
부모학력	대졸미만	2.7%	0.9%	1.1%	1.5%
	대졸이상	1.5%	1.1%	0.8%	1.3%

자료: 국무조정실 (2022).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를 바탕으로 분석

⑦ 가구 유형별 임대인과의 갈등 여부

임대인과의 갈등을 경험한 청년은 전체의 2.3%였다. 청년1인가구는 기타동거가구와 더불어 3.9%가 임대인과 갈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가구 유형 중 상대적으로 높은 경험 비율을 보였다. 청년1인가구는 개인배경에 따른 편차(3.3%~4.8%)가 다른 가구유형보다 작은 편이었다. 구체적으로, 청년부부가구와 기타동거가구는 각각 0%~7.0%, 1.7%~8.5%로 개인배경에 따른 차이가 큰 편이었다.

표 II-44. 거주 불안 상황 경험 여부(임대인과의 갈등)

		임대인과의 갈등			
		청년1인가구	청년부부가구	부모동거가구	기타동거가구
전체(2.3%)		3.9%	2.6%	1.3%	3.9%
개인 학력수준	재학생	3.3%	0.0%	1.0%	2.9%
	고졸이하	4.5%	2.6%	1.3%	3.3%
	대졸이상	4.0%	2.6%	1.6%	4.3%
연령	19-24	3.3%	7.0%	1.1%	8.5%
	25-29	3.6%	1.4%	1.6%	2.2%
	30-34	4.8%	3.0%	1.6%	3.5%
성별	남	3.5%	3.5%	1.1%	1.7%
	여	4.6%	1.7%	1.6%	4.8%
부모학력	대졸미만	3.8%	1.8%	1.8%	3.6%
	대졸이상	4.1%	4.3%	1.0%	4.4%

자료: 국무조정실 (2022).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를 바탕으로 분석

⑧ 가구 유형별 주택임대차 보호법 위반 여부

전체 청년 중 1.3%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위반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부부가구가 가구유형 중에서는 가장 높은 경험 비율(2.8%)을 보였다. 기타동거가구를 제외하고 나머지 가구에서는 개인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주택임대차 보호법 위반을 경험한 비율이 높았는데, 이는 학력수준에 따라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관련한 정보에 대한 접근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표 II-45. 거주 불안 상황 경험 여부(주택임대차 보호법 위반)

		주택임대차 보호법 위반			
		청년1인가구	청년부부가구	부모동거가구	기타동거가구
전체(1.3%)		1.7%	2.8%	0.8%	1.3%
개인 학력수준	재학생	1.3%	0.0%	0.7%	0.0%
	고졸이하	1.0%	2.2%	0.7%	2.7%
	대졸이상	2.0%	3.0%	0.9%	1.1%
연령	19-24	1.0%	1.7%	0.7%	0.2%
	25-29	1.2%	0.5%	0.8%	3.3%
	30-34	2.9%	3.7%	0.9%	0.8%
성별	남	2.0%	3.5%	0.8%	1.6%
	여	1.3%	2.2%	0.8%	1.2%
부모학력	대졸미만	2.2%	2.1%	1.1%	1.8%
	대졸이상	1.1%	4.4%	0.6%	0.5%

자료: 국무조정실 (2022).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를 바탕으로 분석

⑨ 거주 불안 상황 경험 여부 관련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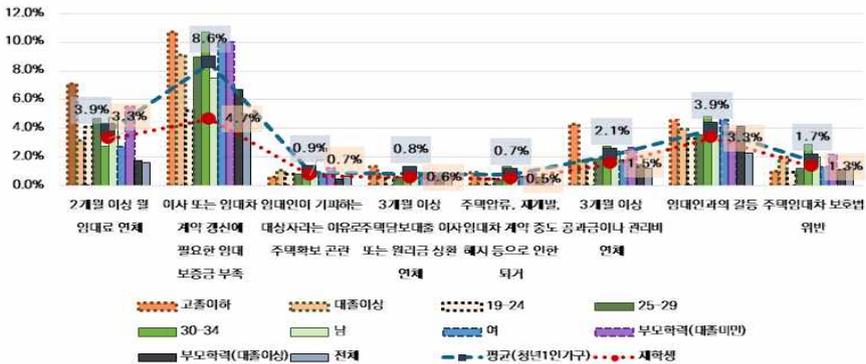
거주 불안 상황 경험 여부를 분석한 결과는 가구 유형과 개인 및 가정배경에 따라 각기 다른 거주 불안 상황에 노출될 수 있음을 확인한다. 이는 각 유형에서 주를 차지하는 거주 또는 점유형태 등에 따른 결과가 반영된 것이라 이해할 수 있다. 청년1인가구의 경우 전반적인 거주 불안 상황 경험률이 부모동거가구에 비하면 높은 편인 데다가, 그중에서도 고졸이하 학력과 30대는 금전적인 측면(2개월 이상 월임대료 연체, 임대보증금 부족, 3개월 이상 공과금이나 관리비 연체)에서 불안 상황을 경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정책적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II-46. 거주 불안 상황 경험 여부(청년1인가구)

		2개월 이상 월 임대료 연체	이사 또는 임대차 계약 갱신에 필요한 임대보증금 부족	임대인이 피하는 대상자라는 이유로 주택확보 곤란	3개월 이상 주택담보대출 이자 또는 원리금 상환 연체	주택압류, 재개발, 임대차 계약 중도 해지 등으로 인한 퇴거	3개월 이상 공과금이나 관리비 연체	임대인과의 갈등	주택임대차 보호법 위반
개인 학력 수준	재학생	3.3%	4.7%	0.7%	0.6%	0.5%	1.5%	3.3%	1.3%
	고졸이하	7.1%	10.7%	0.6%	1.3%	1.0%	4.3%	4.5%	1.0%
	대졸이상	3.2%	9.1%	1.0%	0.8%	0.8%	1.8%	4.0%	2.0%
연령	19-24	4.1%	5.2%	0.8%	0.8%	0.5%	1.8%	3.3%	1.0%
	25-29	4.7%	9.0%	0.8%	0.6%	0.4%	1.9%	3.6%	1.2%
	30-34	2.8%	10.7%	1.1%	1.1%	1.4%	2.7%	4.8%	2.9%
성별	남	4.7%	7.5%	1.0%	0.9%	0.8%	2.4%	3.5%	2.0%
	여	2.7%	10.0%	0.8%	0.7%	0.7%	1.8%	4.6%	1.3%
부모 학력	대졸미만	5.5%	10.0%	1.2%	0.9%	0.9%	2.7%	3.8%	2.2%
	대졸이상	1.7%	6.7%	0.5%	0.8%	0.6%	1.5%	4.1%	1.1%
평균(청년1인가구)		3.9%	8.6%	0.9%	0.8%	0.7%	2.1%	3.9%	1.7%
	전체	1.6%	4.9%	0.7%	0.6%	0.5%	1.2%	2.3%	1.3%

자료: 국무조정실 (2022).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를 바탕으로 분석

거주 불안 상황 경험 여부(청년1인가구)



자료: 국무조정실 (2022).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를 바탕으로 분석

그림 II-6. 거주 불안 상황 경험 여부(청년1인가구)

(4) 가구 유형별 공공임대주택 거주 경험 및 거주 의향 여부

공공임대주택 거주 경험과 공공임대주택 거주 의향을 묻는 문항은 ‘①있다’와 ‘②없다’의 선택지 중 하나를 고르는 방식으로 측정하였다.

① 가구 유형별 공공임대주택 거주 경험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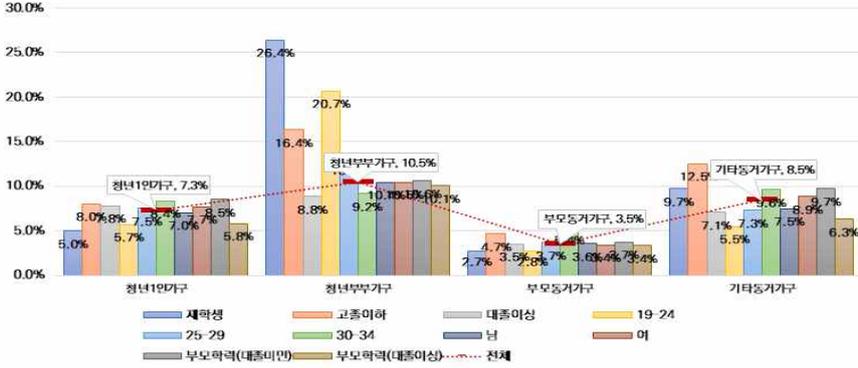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한 경험이 있는 청년은 5.6%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동거가구는 3.5%로 경험이 많지 않았던 것에 비해, 청년부부가구는 10.5%, 기타동거가구는 8.5%, 그리고 청년1인가구는 7.3%가 공공임대주택 거주 경험이 있었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공공임대주택 거주 경험 규모가 대체로 커지는 경향이 있었으나, 청년부부가구만 반대로 낮은 연령대에서 경험률이 높았다. 청년1인가구 내에서는 개인 학력수준에 따라서는 재학생(5.0%)인 경우 공공임대주택 거주 경험 비율이 가장 낮았다. 고졸이하(8.0%)인 경우 공공임대주택에서 거주한 경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졸이상(7.8%)과 큰 차이는 없었다. 청년1인가구와 기타동거가구에서 부모학력이 대졸미만인 경우 대졸이상과 비교해 공공임대주택 거주 경험 비율이 높았다.

표 II-47. 공공임대주택 거주 경험

		공공임대주택 거주 경험			
		청년1인가구	청년부부가구	부모동거가구	기타동거가구
전체(5.6%)		7.3%	10.5%	3.5%	8.5%
개인 학력수준	재학생	5.0%	26.4%	2.7%	9.7%
	고졸이하	8.0%	16.4%	4.7%	12.5%
	대졸이상	7.8%	8.8%	3.5%	7.1%
연령	19-24	5.7%	20.7%	2.8%	5.5%
	25-29	7.5%	13.2%	3.7%	7.3%
	30-34	8.4%	9.2%	5.4%	9.6%
성별	남	7.0%	10.4%	3.6%	7.5%
	여	7.7%	10.5%	3.4%	8.9%
부모학력	대졸미만	8.5%	10.6%	3.7%	9.7%
	대졸이상	5.8%	10.1%	3.4%	6.3%

자료: 국무조정실 (2022).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를 바탕으로 분석

공공임대주택 거주 경험



자료: 국무조정실 (2022).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를 바탕으로 분석

그림 II-7. 공공임대주택 거주 경험

② 가구 유형별 공공임대주택 거주 의향 여부

공공임대주택 거주 의향은 다른 분석과 다르게 공공임대주택 거주 경험 유무에 따른 추가적인 분석을 실시했다. 이는 정책 참여 경험 유무가 정책에 대한 참여 의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체 청년 중 63.2%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임대주택 거주 경험이 있는 청년은 78.9%가 거주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고, 임대주택 거주 경험이 없는 청년은 62.3%가 거주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공공임대주택 거주 경험 유무에 따른 차이가 있었다.

앞선 분석 결과에서 드러나듯이, 청년1인가구는 공공임대주택 거주 경험률이 7.3%로 청년부부가구나 기타동거가구에 비해 낮은 편이었다. 그런데 공공임대주택 거주 의향은 대조적으로 71.3%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여 가장 높았다. 임대주택에 거주한 경험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간 차이는 약 15%p였는데, 이 차이는 집단에 따라 다소 달랐으나 두드러지는 수준의 차이는 아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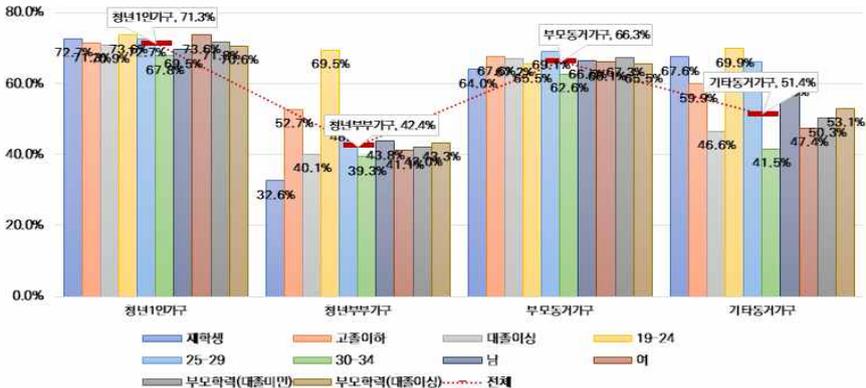
청년부부가구는 임대주택 거주 의향이 42.4%로 가장 낮았다. 또한, 임대주택 거주 경험에 따라서도 각각 69.9%와 39.2%로 거주 의향에 큰 차이가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청년부부가구의 경우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선호가 성향에 따라 극명하게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표 II-48. 공공임대주택 거주 의향

		공공임대주택 거주 의향											
		청년1인가구			청년부부가구			부모동거가구			기타동거가구		
		전 체	임대주택 거주경험		전 체	임대주택 거주경험		전 체	임대주택 거주경험		전 체	임대주택 거주경험	
있 음	없 음		있 음	없 음		있 음	없 음		있 음	없 음			
임대주택 거주경험 (유 78.9%, 무 62.3%)		71.3	85.4	70.1	42.4	69.9	39.2	66.3	80.8	65.8	51.4	75.4	49.1
개인 학력 수준	재학생	72.7	84.5	72.0	32.6	73.3	18.1	64.0	74.3	63.7	67.6	100.0	64.1
	고졸이하	71.3	83.4	70.2	52.7	79.6	47.4	67.6	78.1	67.1	59.9	87.4	56.0
	대졸이상	70.9	86.1	69.6	40.1	65.5	37.6	67.2	84.9	66.5	46.6	64.6	45.2
연령	19-24	73.6	83.9	73.0	69.5	81.5	66.3	65.5	76.3	65.2	69.9	91.7	68.6
	25-29	72.7	88.1	71.5	48.9	68.6	45.9	69.1	85.7	68.4	66.1	86.8	64.5
	30-34	67.8	83.4	66.3	39.3	70.1	36.2	62.6	80.8	61.6	41.5	70.1	38.5
성별	남	69.5	83.2	68.5	43.8	75.2	40.1	66.5	81.1	65.9	61.6	98.6	58.6
	여	73.6	88.1	72.4	41.1	65.1	38.3	66.1	80.5	65.6	47.4	67.9	45.4
부모 학력	대졸미만	71.8	83.3	70.7	42.0	70.9	38.5	67.3	84.0	66.6	50.3	75.1	47.6
	대졸이상	70.6	89.2	69.4	43.3	67.7	40.6	65.5	78.0	65.1	53.1	76.2	51.5

자료: 국무조정실 (2022).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를 바탕으로 분석

공공임대주택 거주 의향



자료: 국무조정실 (2022).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를 바탕으로 분석

그림 II-8. 공공임대주택 거주 의향

(5) 가구 유형별 주거정책 수요

주거정책 수요는 2022 청년 삶 실태조사에서 '귀하에게 가장 필요한 주거정책은 무엇입니까? 필요한 순서대로 1순위, 2순위를 응답해 주십시오'로 물었던 문항에 대한 1순위와 2순위 응답값을 합산해 도출하였다. 조사에 참여한 청년은 ①전세자금대출, ②주택구입자금 대출, ③주거비 지원, ④공공임대 입주, ⑤민간임대주택 관리감독 강화, ⑥임대차 분쟁 발생시 조정 지원, ⑦기타로 구분된 값 중에 1순위와 2순위를 선택하였다.

① 가구 유형별 전세자금대출 필요 정도

전세자금대출의 필요성에 대해 전체 청년 중 52.3%가 높은 순위로 꼽았다. 이는 주거정책에 대한 여러 수요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치이다. 가구유형과 관계 없이 고르게 비슷한 수치를 보이는 점이 특징적인데, 청년부부가구 중 19-24세 연령대는 67.1%가 전세자금대출을 정책 우선순위로 선택해 가장 높은 선택율을 보였다.

표 II-49. 주거정책 수요(전세자금대출)

		전세자금대출			
		청년1인가구	청년부부가구	부모동거가구	기타동거가구
전체(52.3%)		55.4%	50.2%	52.1%	48.3%
개인 학력수준	재학생	51.0%	45.6%	49.9%	53.2%
	고졸이하	59.2%	52.6%	50.6%	47.1%
	대졸이상	55.6%	49.7%	53.9%	48.0%
연령	19-24	53.0%	67.1%	50.4%	50.0%
	25-29	58.6%	51.9%	53.3%	53.9%
	30-34	53.7%	49.2%	54.6%	45.8%
성별	남	54.7%	48.4%	52.1%	48.6%
	여	56.3%	51.9%	52.1%	48.2%
부모학력	대졸미만	54.6%	50.8%	52.8%	48.3%
	대졸이상	56.4%	48.8%	51.6%	48.4%

자료: 국무조정실 (2022).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를 바탕으로 분석

② 가구 유형별 주택구입자금 대출 필요 정도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전체 청년의 63.9%가 1순위 또는 2순위로 선정한 주거정책으로 청년층이 가장 필요성이 크다고 인식한 주거정책이었다. 가장 낮은 선택율을 보인 청년1인 가구도 55.4%인 만큼 전반적으로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지만, 앞서 제시한 전세자금 대출과 다르게 가구 유형별 편차는 큰 편이었다. 특히, 청년1인가구와 청년부부가구 간 차이는 약 30%p였다. 가구 유형에 관계 없이 연령대가 올라감에 따라 정책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게 나타난 결과는 높은 연령대일수록 주택구입에 대한 압박을 더 크게 느끼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II-50. 주거정책 수요(주택구입자금 대출)

		주택구입자금 대출			
		청년1인가구	청년부부가구	부모동거가구	기타동거가구
전체(63.9%)		55.4%	85.2%	61.4%	72.0%
개인 학력수준	재학생	37.4%	86.7%	55.6%	49.8%
	고졸이하	55.1%	73.3%	57.4%	67.6%
	대졸이상	60.6%	88.0%	66.0%	76.3%
연령	19-24	38.3%	63.9%	55.3%	46.6%
	25-29	55.6%	78.6%	65.5%	61.1%
	30-34	68.6%	88.1%	70.6%	82.1%
성별	남	59.9%	83.0%	64.0%	64.3%
	여	49.3%	87.1%	58.2%	75.0%
부모학력	대졸미만	56.8%	84.5%	61.7%	77.0%
	대졸이상	53.6%	86.7%	61.1%	63.7%

자료: 국무조정실 (2022).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를 바탕으로 분석

③ 가구 유형별 주거비 지원 필요 정도

주거 정책에 대한 수요 가운데 주거비 지원은 세 번째로 높았다. 전체 청년의 36.8%는 1순위 또는 2순위로 주거비 지원 정책을 선택했다. 청년1인가구가 43.0%로 가장 높았고, 청년부부가구의 수요가 20.0%로 가장 낮았다. 연령대가 낮고, 재학생인 경우 주거비 지원

을 더 많이 선택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들의 경우 안정적인 경제활동 상태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더 낮기 때문에 전세자금대출이나 주택구입자금 대출에 비해 비교적 일시적이고 규모가 작은 주거비 지원에 대한 선호가 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II-51. 주거정책 수요(주거비 지원)

		주거비 지원			
		청년1인가구	청년부부가구	부모동거가구	기타동거가구
전체(36.8%)		43.0%	20.0%	38.7%	32.3%
개인 학력수준	재학생	63.8%	27.9%	46.0%	56.7%
	고졸이하	43.5%	26.5%	43.1%	35.6%
	대졸이상	36.9%	18.3%	33.1%	28.1%
연령	19-24	61.5%	23.3%	46.0%	56.2%
	25-29	41.0%	22.5%	33.6%	34.1%
	30-34	30.9%	18.9%	27.5%	26.0%
성별	남	41.3%	21.0%	36.3%	40.8%
	여	45.3%	19.0%	41.5%	29.1%
부모학력	대졸미만	42.7%	21.3%	37.5%	30.9%
	대졸이상	43.5%	17.1%	39.7%	34.7%

자료: 국무조정실 (2022).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를 바탕으로 분석

④ 가구 유형별 공공임대 입주 필요 정도

공공임대 입주에 대한 정책수요는 앞서 공공임대주택 거주 의향을 분석한 결과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청년1인가구의 수요가 30.3%로 가장 높았고, 부모동거가구의 청년이 28.5%로 두 번째로 높았으며, 청년부부가구의 수요가 14.2%로 가장 낮았다. 청년 1인가구 내에서는 낮은 연령대일수록 공공임대 입주에 대한 수요가 높은 편이었고, 여성이 남성보다 공공임대 입주가 더 필요한 정책이라 응답하였다. 다만, 성별에 따른 차이는 청년부부가구와 기타동거가구에서는 반대로 나타났다.

표 II-52. 주거정책 수요(공공임대 입주)

		공공임대 입주			
		청년1인가구	청년부부가구	부모동거가구	기타동거가구
전체(26.4%)		30.3%	14.2%	28.5%	20.1%
개인 학력수준	재학생	32.6%	13.3%	27.7%	29.5%
	고졸이하	28.5%	19.2%	31.2%	23.3%
	대졸이상	30.1%	13.0%	27.9%	17.8%
연령	19-24	33.5%	25.6%	28.4%	36.4%
	25-29	29.7%	19.4%	29.5%	25.1%
	30-34	28.4%	12.0%	26.4%	14.3%
성별	남	28.3%	16.3%	28.5%	26.6%
	여	33.0%	12.3%	28.5%	17.5%
부모학력	대졸미만	30.1%	13.6%	28.6%	16.0%
	대졸이상	30.5%	15.6%	28.3%	26.8%

자료: 국무조정실 (2022).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를 바탕으로 분석

⑤ 가구 유형별 민간임대주택 관리감독 강화 필요 정도

민간임대주택 관리 감독 강화는 불법 건축물 감독, 전세 사기 처벌, 불공정 공인 중개 처벌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이러한 주거정책을 1순위 또는 2순위로 선정한 청년의 비율은 전체의 12.9%였다. 청년1인가구는 가구 유형 중 가장 낮은 9.1%가 민간임대주택 관리 감독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청년부부가구와 기타동거가구가 각각 16.5%와 16.7%가 1순위 또는 2순위로 민간임대주택 관리 감독 강화를 꼽았다. 개인 학력 수준이 대졸이상인 청년1인가구와 청년부부가구가 고졸이하 학력에 비해 선택 비율이 더 컸다.

표 II-53. 주거정책 수요(민간임대주택 관리감독 강화)

		민간임대주택 관리감독 강화			
		청년1인가구	청년부부가구	부모동거가구	기타동거가구
전체(12.9%)		9.1%	16.5%	13.2%	16.7%
개인 학력수준	재학생	8.8%	4.8%	14.6%	6.2%
	고졸이하	6.7%	13.5%	12.2%	18.0%
	대졸이상	9.8%	17.4%	12.8%	17.7%
연령	19-24	8.3%	13.0%	13.6%	8.9%
	25-29	9.0%	15.8%	12.5%	14.9%
	30-34	9.7%	16.9%	13.4%	19.2%
성별	남	8.8%	17.6%	12.7%	13.0%
	여	9.5%	15.5%	13.8%	18.1%
부모학력	대졸미만	9.2%	15.9%	13.0%	18.3%
	대졸이상	8.8%	17.9%	13.4%	14.0%

자료: 국무조정실 (2022).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를 바탕으로 분석

⑥ 가구 유형별 임대차 분쟁 발생시 조정 지원 필요 정도

임대차 분쟁 발생시 조정에 대한 수요는 기타 응답값을 제외하고 가장 낮은 6.1%였다. 다만, 청년부부가구 중 재학생인 경우 수요가 21.8%로 다른 유형에 비해 높은 편이어서 이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과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II-54. 주거정책 수요(임대차 분쟁 발생시 조정 지원)

		임대차 분쟁 발생시 조정 지원			
		청년1인가구	청년부부가구	부모동거가구	기타동거가구
전체(6.1%)		5.8%	9.9%	5.1%	8.4%
개인 학력수준	재학생	5.9%	21.8%	4.7%	3.6%
	고졸이하	5.6%	7.8%	4.8%	7.1%
	대졸이상	5.9%	10.3%	5.4%	9.5%
연령	19-24	4.9%	7.0%	4.9%	1.3%
	25-29	5.5%	8.9%	4.8%	8.9%
	30-34	6.9%	10.4%	6.4%	9.9%
성별	남	5.8%	9.3%	5.2%	4.6%
	여	5.9%	10.5%	5.0%	9.9%
부모학력	대졸미만	5.8%	9.9%	5.5%	7.7%
	대졸이상	5.9%	10.1%	4.8%	9.7%

자료: 국무조정실 (2022).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를 바탕으로 분석

⑦ 기타

기타로 분류된 세부 응답값은 본 연구에서 분석한 자료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확인이 어렵다. 다만, 청년부부가구의 기타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라는 점에서, 이들 집단에서 일반화하기 어려운 독특한 욕구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표 II-55. 주거정책 수요(기타)

		기타			
		청년1인가구	청년부부가구	부모동거가구	기타동거가구
전체(1.5%)		1.0%	4.0%	1.1%	2.2%
개인 학력수준	재학생	0.5%	0.0%	1.5%	0.9%
	고졸이하	1.4%	7.1%	0.8%	1.4%
	대졸이상	1.1%	3.3%	0.9%	2.5%
연령	19-24	0.5%	0.0%	1.2%	0.6%
	25-29	0.7%	2.9%	0.8%	2.0%
	30-34	1.8%	4.6%	1.1%	2.6%
성별	남	1.2%	4.4%	1.1%	2.1%
	여	0.7%	3.7%	0.9%	2.2%
부모학력	대졸미만	0.8%	4.1%	0.9%	1.8%
	대졸이상	1.3%	3.8%	1.2%	2.7%

자료: 국무조정실 (2022).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를 바탕으로 분석

⑧ 공공임대주택 거주 경험 및 거주 의향 여부 관련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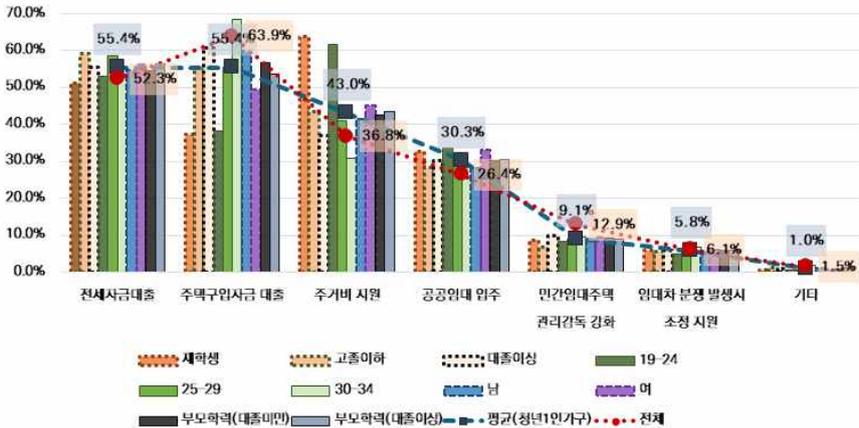
종합하면, 주거정책에 대한 수요는 가구 유형별로 차이가 있었다. 특히 청년1인가구는 주택의 구입이나 기타 주거 관련 지원보다 전세자금대출, 주거비 지원, 공공임대 입주와 같이 주거비에 대한 부담을 낮추고 비교적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임대해 지낼 수 있는 거주공간을 확보하는 데 정책수요의 초점이 더 맞춰져 있음이 드러났다. 단, 이 결과는 우선순위에서 1순위와 2순위를 합산하여 도출한 비율이므로 우선순위에 관한 문제이며 개별 정책의 필요도 응답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표 II-56. 주거정책 수요(청년1인가구)

		전세자금대출	주택구입자금대출	주거비 지원	공공임대 입주	민간임대주택 관리감독 강화	임대차 분쟁 발생시 조정 지원	기타
개인 학력 수준	재학생	51.0%	37.4%	63.8%	32.6%	8.8%	5.9%	0.5%
	고졸이하	59.2%	55.1%	43.5%	28.5%	6.7%	5.6%	1.4%
	대졸이상	55.6%	60.6%	36.9%	30.1%	9.8%	5.9%	1.1%
연령	19-24	53.0%	38.3%	61.5%	33.5%	8.3%	4.9%	0.5%
	25-29	58.6%	55.6%	41.0%	29.7%	9.0%	5.5%	0.7%
	30-34	53.7%	68.6%	30.9%	28.4%	9.7%	6.9%	1.8%
성별	남	54.7%	59.9%	41.3%	28.3%	8.8%	5.8%	1.2%
	여	56.3%	49.3%	45.3%	33.0%	9.5%	5.9%	0.7%
부모 학력	대졸미만	54.6%	56.8%	42.7%	30.1%	9.2%	5.8%	0.8%
	대졸이상	56.4%	53.6%	43.5%	30.5%	8.8%	5.9%	1.3%
평균(청년1인가구)		55.4%	55.4%	43.0%	30.3%	9.1%	5.8%	1.0%
전체		52.3%	63.9%	36.8%	26.4%	12.9%	6.1%	1.5%

자료: 국무조정실 (2022).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를 바탕으로 분석

주거정책 수요(청년1인가구)



자료: 국무조정실 (2022).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를 바탕으로 분석

그림 II-9. 주거정책 수요(청년1인가구)

(6) 가구 유형별 경제활동상태

가구 유형에 따라 경제활동상태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2022 청년 삶 실태조사에서 제공하는 두 개(경제활동상태, 종사상지위) 변수를 활용해 새로운 변수를 생성하였다. 그 결과 총 일곱 가지 유형(①임금근로자(상용), ②임금근로자(임시), ③임금근로자(일용), ④자영업자(고용원O), ⑤자영업자(고용원X), ⑥실업자, ⑦비경제활동)으로 구분되었으나, 일부 유형에서 유사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최종 구분은 총 다섯 가지로 구분해 제시하였다. 유사성이 나타난 유형은 임금근로자에서는 임시직과 일용직이었고, 자영업자는 고용원 유무와 관계없이 비슷한 경향이 있었다.

① 가구 유형별 임금근로자(상용) 여부

상용 임금근로자는 청년의 54.3%에 해당하여 경제활동상태 중 가장 그 규모가 컸다. 청년1인 가구는 그중에서도 65.2%가 상용 임금근로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학력수준에 따라서는 대졸이상 청년의 상용직 근로 비율이 높은 편이었다. 이는 앞서 고졸이하 학력 청년층이 주택이나 지역환경, 거주불안 경험 등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여건이었던 것은 경제활동 상태의 안정성과도 관련이 있음을 드러낸다. 다만, 고졸이하 청년 중에서도 1인가구에 해당하는 집단의 거주불안정성이 대체로 컸던 것은, 이들의 다수가 상용 임금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일자리의 질이 높은 수준의 주거지를 선택할 수 있을 정도에 미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음을 시사한다.

표 II-57. 경제활동상태(임금근로자: 상용)

		임금근로자(상용)			
		청년1인가구	청년부부가구	부모동거가구	기타동거가구
전체(54.3%)		65.2%	65.0%	47.5%	54.5%
개인 학력수준	고졸이하	64.8%	56.3%	44.0%	54.5%
	대졸이상	77.1%	66.9%	66.0%	57.8%
연령	19-24	40.1%	64.5%	28.5%	34.5%
	25-29	71.4%	62.2%	62.6%	61.5%
	30-34	77.8%	66.1%	72.2%	56.7%
성별	남	64.2%	78.4%	43.9%	61.8%
	여	66.4%	52.6%	51.8%	51.7%
부모학력	대졸미만	66.8%	64.7%	54.1%	54.0%
	대졸이상	63.1%	65.7%	42.2%	55.4%

자료: 국무조정실 (2022).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를 바탕으로 분석

② 가구 유형별 임금근로자(임시 및 일용) 여부

임시 및 일용 임금근로자는 전체 청년의 9.5%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은 11.1%가 여기에 해당하여 다른 가구유형의 청년에 비해 그 비중이 상대적으로 컸다. 청년부부가구는 4.0%로 가장 낮았고, 청년1인가구는 9.1%가 임시 및 일용 임금근로자였다. 개인 학력수준에 따라서는 고졸이하 청년이 대체로 임시 및 일용 임금근로자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고, 연령대가 낮을수록 불안정한 일자리의 형태를 보였다.

청년1인가구의 경우 임시 및 일용 임금근로자로 일하는 비율이 부모동거가구에 비해 낮았으나, 연령대별로 구분해 살펴보면 30대 연령층에서는 부모동거가구에 비해 오히려 높은편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임시 및 일용 임금근로자와 같이 불안정한 일자리에 종사하는 높은 연령대의 청년1인가구가 상대적으로 많으므로 이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표 II-58. 경제활동상태(임금근로자: 임시 및 일용)

		임금근로자(임시 및 일용)			
		청년1인가구	청년부부가구	부모동거가구	기타동거가구
전체(9.5%)		9.1%	4.0%	11.1%	7.5%
개인 학력수준	고졸이하	11.3%	3.3%	13.6%	9.4%
	대졸이상	6.4%	4.3%	8.0%	6.2%
연령	19-24	14.4%	9.0%	15.0%	14.4%
	25-29	8.1%	4.8%	8.5%	6.3%
	30-34	5.9%	3.6%	4.6%	6.2%
성별	남	8.7%	2.9%	10.6%	9.1%
	여	9.5%	5.1%	11.6%	6.8%
부모학력	대졸미만	9.7%	3.5%	10.7%	8.2%
	대졸이상	8.1%	5.2%	11.3%	6.1%

자료: 국무조정실 (2022).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를 바탕으로 분석

③ 가구 유형별 자영업자 여부

자영업의 경우 고용원의 존재 유무에 따라 구분 가능하지만, 두 가지 자영업 형태를 가구유형과 개인배경에 따라 구분해 분석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유사한 양상이 나타나 여기

서는 통합하여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청년 중 자영업을 운영하는 경우는 전체의 5.1%로 임금근로자에 비해 작은 규모였다. 청년부부가구는 해당 유형의 11.0%가 자영업자로 분류되어 다른 가구유형에 비해 그 비율이 높았다. 청년1인가구는 5.6%가 자영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학력과 연령에 따른 규모차이가 컸다.

표 II-59. 경제활동상태(자영업자)

		자영업자			
		청년1인가구	청년부부가구	부모동거가구	기타동거가구
전체(5.1%)		5.6%	11.0%	3.4%	7.1%
개인 학력수준	고졸이하	9.8%	16.8%	4.7%	5.5%
	대졸이상	5.8%	9.7%	4.1%	8.2%
연령	19-24	1.7%	2.0%	1.2%	4.9%
	25-29	5.1%	9.6%	4.0%	3.2%
	30-34	9.1%	11.7%	8.7%	9.1%
성별	남	6.1%	14.9%	3.2%	5.6%
	여	4.9%	7.3%	3.6%	7.7%
부모학력	대졸미만	6.3%	11.3%	4.3%	6.6%
	대졸이상	4.7%	10.2%	2.6%	7.9%

자료: 국무조정실 (2022).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를 바탕으로 분석

④ 가구 유형별 실업자 여부

실업 상태에 있는 청년은 전체 청년의 3.6%로 분석되었다.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은 4.5%가 실업 상태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청년1인가구는 이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2.5%가 실업자 상태였다. 여러 가구 유형 가운데에서도 1인가구 청년의 실업자 비율은 낮은 편이었는데, 이는 가구 내 부양해야 할 가족 또는 부양받을 수 있는 가족이 없는 특성이 반영된 결과라 이해할 수 있다.

표 II-60. 경제활동상태(실업자)

		실업자			
		청년1인가구	청년부부가구	부모동거가구	기타동거가구
전체(3.6%)		2.5%	1.6%	4.5%	2.8%
개인 학력수준	고졸이하	3.1%	1.3%	4.5%	2.7%
	대졸이상	2.4%	1.6%	5.8%	2.5%
연령	19-24	3.7%	2.8%	3.5%	5.6%
	25-29	2.0%	2.2%	5.6%	3.2%
	30-34	2.1%	1.3%	5.3%	1.9%
성별	남	2.1%	0.9%	5.1%	3.1%
	여	3.1%	2.2%	3.8%	2.6%
부모학력	대졸미만	2.5%	1.7%	4.7%	3.3%
	대졸이상	2.5%	1.2%	4.4%	1.9%

자료: 국무조정실 (2022).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를 바탕으로 분석

⑤ 가구 유형별 비경제활동 여부

비경제활동 청년은 전체의 27.6%로 상용 임금근로자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부모동거가구의 청년이 33.6%로 특히 높은 비율을 보였고, 청년1인가구는 절반 정도 수준인 17.7%로 가장 낮은 비율이었다. 청년1인가구 중 19-24세의 어린 연령층은 비경제활동 상태에 있는 경우가 40.1%로 높았는데, 이들의 경우 대부분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일 것으로 판단된다. 다른 가구 유형에 비해 청년1인가구가 비경제활동 상태에 있는 청년의 비율이 낮은 편인 것은 앞서 실업 상태를 분석한 결과와 마찬가지로 가구 내 부양해야 할 가족 또는 부양받을 수 있는 가족이 없는 특성이 반영된 결과라 이해할 수 있다.

표 II-61. 경제활동상태(비경제활동)

		비경제활동			
		청년1인가구	청년부부가구	부모동거가구	기타동거가구
전체(27.6%)		17.7%	18.4%	33.6%	28.2%
개인 학력수준	고졸이하	10.9%	22.3%	33.2%	27.9%
	대졸이상	8.2%	17.4%	16.1%	25.3%
연령	19-24	40.1%	21.6%	51.8%	40.6%
	25-29	13.4%	21.3%	19.3%	25.7%
	30-34	5.0%	17.2%	9.3%	26.1%
성별	남	18.9%	2.9%	37.2%	20.3%
	여	16.1%	32.7%	29.1%	31.2%
부모학력	대졸미만	14.7%	18.7%	26.2%	27.8%
	대졸이상	21.6%	17.7%	39.5%	28.8%

자료: 국무조정실 (2022).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를 바탕으로 분석

⑥ 경제활동상태 관련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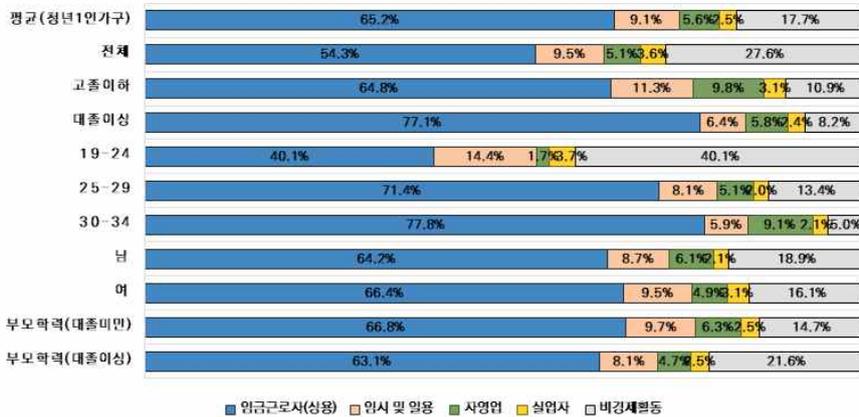
가구유형에 따라 경제활동상태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청년1인가구의 경우 실업자나 비경제활동 규모가 부모동거가구에 비해 작은 편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상용 임금근로자 비율이 높지만, 임시 또는 일용 임금근로자인 사례도 많은 편인 점이 특징적이다. 특히, 30대임에도 불안정한 근로 형태인 경우가 다른 가구 유형에 비해 많은 편이어서 1인가구의 잠재적인 취약성을 고려하면 정책적 관심이 필요한 지점임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부모동거가구의 경우 경제활동상태에서 실업자나 비경제활동인 집단의 규모가 큰 편이고, 동시에 임시 또는 일용 임금근로자인 경우도 많은 반면, 상용 임금근로자 비율은 낮은 특징이 있었다. 이는 경제적 자립에 이르지 못한 청년 집단이 부모와 함께 거주하며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는 선택을 하기 쉽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풀이할 수 있다. 동시에 불안정한 경제적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부모와 함께 살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청년의 경우 더욱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표 II-62. 경제활동상태(청년1인가구)

		임금근로자 (상용)	임시 및 일용	자영업	실업자	비경제활동
개인 학력 수준	고졸이하	64.8%	11.3%	9.8%	3.1%	10.9%
	대졸이상	77.1%	6.4%	5.8%	2.4%	8.2%
연령	19-24	40.1%	14.4%	1.7%	3.7%	40.1%
	25-29	71.4%	8.1%	5.1%	2.0%	13.4%
	30-34	77.8%	5.9%	9.1%	2.1%	5.0%
성별	남	64.2%	8.7%	6.1%	2.1%	18.9%
	여	66.4%	9.5%	4.9%	3.1%	16.1%
부모 학력	대졸미만	66.8%	9.7%	6.3%	2.5%	14.7%
	대졸이상	63.1%	8.1%	4.7%	2.5%	21.6%
평균(청년1인가구)		65.2%	9.1%	5.6%	2.5%	17.7%
전체		54.3%	9.5%	5.1%	3.6%	27.6%

자료: 국무조정실 (2022).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를 바탕으로 분석

경제활동상태(청년1인가구)



자료: 국무조정실 (2022).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를 바탕으로 분석

그림 II-10. 경제활동상태(청년1인가구)

(7) 가구 유형별 사회·심리적 상태

① 가구 유형별 음주 빈도

음주 빈도는 “최근 1년 동안 술을 얼마나 자주 마셨습니까?” 묻는 방식으로 조사되었으며, 6개(①전혀 마시지 않았다, ②한 달에 1번 미만, ③한 달에 1번 정도, ④한 달에 2~4번 정도, ⑤일주일에 2~3번 정도, ⑥일주일에 4번 이상)의 선택지 가운데 하나를 고르도록 구성되었다.

전체 청년의 평균(3.13점)에 비해 청년1인가구(3.29점)는 상대적으로 음주빈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년1인가구 내에서 고졸이하 학력인 경우 재학생이나 대졸이상에 비해 음주 빈도가 많았다. 이외 연령이나 부모학력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은 편이었으나, 성별에 따른 차이는 모든 가구유형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표 II-63. 음주 빈도

		음주 빈도(점)			
		청년1인가구	청년부부가구	부모동거가구	기타동거가구
전체(3.13점)		3.29	3.24	3.05	3.09
개인 학력수준	재학생	3.22	3.72	2.99	3.28
	고졸이하	3.42	3.43	3.02	3.06
	대졸이상	3.27	3.18	3.09	3.07
연령	19-24	3.23	3.23	3.00	3.27
	25-29	3.33	3.17	3.12	3.20
	30-34	3.28	3.26	3.04	3.00
성별	남	3.46	3.55	3.21	3.58
	여	3.05	2.94	2.86	2.90
부모학력	대졸미만	3.31	3.27	3.09	3.12
	대졸이상	3.25	3.16	3.01	3.03

자료: 국무조정실 (2022).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를 바탕으로 분석

② 가구 유형별 운동 빈도

운동 빈도는 “평소 건강 관리를 위해 규칙적으로 운동하십니까?”와 같이 묻는 방식으로 조사되었으며, 5개(①전혀 하지 않는다, ②일주일에 1번 미만, ③일주일에 1~2번, ④일주일에 3~4번, ⑤일주일에 5번 이상)의 선택지 가운데 하나를 고르도록 구성되었다.

전체 청년의 평균적인 운동 빈도는 일주일에 1번 미만에서 1~2번 사이인 2.79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유형에 따라서는 청년1인가구와 부모동거가구가 비슷한 수준으로 다른 가구유형에 비해 운동 빈도가 많은 편이었다. 모든 가구유형에서 일관되게 고졸이하 청년의 운동 빈도가 낮았고, 남성의 운동 빈도가 여성에 비해 많았으며, 부모학력이 높은 경우 운동 빈도 역시 많은 편이었다.

표 II-64. 운동 빈도

		운동 빈도(점)			
		청년1인가구	청년부부가구	부모동거가구	기타동거가구
전체(평균: 2.79점)		2.82	2.65	2.83	2.58
개인 학력수준	재학생	2.90	2.90	2.82	2.80
	고졸이하	2.61	2.47	2.75	2.50
	대졸이상	2.84	2.70	2.87	2.57
연령	19-24	2.83	2.36	2.77	2.37
	25-29	2.85	2.48	2.92	2.91
	30-34	2.76	2.73	2.81	2.50
성별	남	2.94	2.79	2.99	2.80
	여	2.65	2.53	2.64	2.49
부모학력	대졸미만	2.71	2.54	2.74	2.37
	대졸이상	2.95	2.91	2.90	2.92

자료: 국무조정실 (2022).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를 바탕으로 분석

③ 가구 유형별 우울 증상

청년 삶 실태조사에서는 “지난 2주 동안 아래 나열되는 증상들에 얼마나 자주 시달렸습니까?”의 공통 질문에 해당하는 다음과 같은 총 9개의 문항으로 우울 증상에 대해 조사하였다(①일을 하는 것에 대한 흥미나 재미가 거의 없음, ②가라앉은 느낌, 우울감 혹은 절망감, ③잠들기 어렵거나 자꾸 깨어남, 혹은 너무 많이 잠, ④피곤함, 기력이 저하됨, ⑤식욕 저하 혹은 과식, ⑥내 자신이 나쁜 사람이라는 느낌 혹은 내 자신을 실패자라고 느끼거나, 나 때문에 나 자신이란 내 가족이 불행하게 되었다는 느낌, ⑦신문을 읽거나 TV를 볼 때 집중하기 어려움, ⑧남들이 알아챌 정도로 거동이나 말이 느림 또는 반대로 너무 초조하고 안전부절하지 못해서 평소보다 많이 돌아다니고 서성거림, ⑨나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는 등의 생각 혹은 어떤 면에서건 당신 스스로에게 상처를 주는 생각들). 각 문항에 대해 조사에 참여한 청년은 ①전혀없음, ②여러 날 동안(1~6일), ③일주일 이상, ④거의매일 중 한 가지로 응답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항에 대한 응답값의 평균이 3점(일주일 이상)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우울 증상이 있는 것으로 구분하고, 청년 가운데 어느 정도 비율을 차지하는지 분석하였다.

그 결과 우울 증상이 있는 것으로 구분된 청년의 규모는 전체 청년 중 1.8%였다. 이 가운데 청년1인가구의 경우 1.9%로 다른 가구유형에 비해 집단내 우울 증상이 있는 청년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개인배경에 따라서는 고졸이하, 20-34세, 여성, 부모님 학력이 대졸미만인 경우 각각 2.4%, 2.8%, 2.6%, 2.1%로 높은 편이었다.

표 II-65. 우울 증상(평균 일주일 이상)

		우울 증상(평균 일주일 이상)			
		청년1인가구	청년부부가구	부모동거가구	기타동거가구
전체(1.2%)		1.9%	0.6%	1.1%	0.4%
개인 학력수준	재학생	1.2%	0.0%	0.9%	0.0%
	고졸이하	2.4%	0.2%	2.0%	1.5%
	대졸이상	1.9%	0.7%	1.0%	0.1%
연령	19-24	1.6%	0.0%	1.1%	1.8%
	25-29	1.1%	1.0%	1.0%	0.2%
	30-34	2.8%	0.5%	1.6%	0.1%
성별	남	1.3%	0.5%	0.9%	0.0%
	여	2.6%	0.7%	1.5%	0.5%
부모학력	대졸미만	2.1%	0.5%	1.1%	0.6%
	대졸이상	1.6%	0.8%	1.2%	0.0%

자료: 국무조정실 (2022).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를 바탕으로 분석

④ 가구 유형별 활동 참여 여부

청년 삶 실태조사에서는 총 4가지로 구분한 활동(①1가지 이상의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문화·예술 활동, ②1가지 이상의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스포츠 활동, ③1번 이상의 2-3일 정도의 여행, ④1곳 이상의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여가 관련 단체·동호회 활동)에 대한 지난 1년간의 경험과 생각을 물었다. 여기서는 활동 참여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이러한

활동에 대한 참여 여부를 평균하였는데, 이 값은 1~2점 사이의 값을 갖게 되며, 1점에 가까울수록 더 많은 활동에 참여함을 의미한다.

전체 청년의 평균은 1.55점으로 청년들은 평균적으로 4가지 활동 중 2가지 정도의 활동에는 참여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청년1인가구의 경우 다른 가구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활동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가구유형 간 차이는 최대 0.04점으로 매우 작다고 할 수 있다. 고졸이하 청년의 활동 참여 수준이 낮은 것은 앞서 살펴보았던 결과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다.

표 II-66. 활동 참여

		활동 여부(점): 1에 가까울수록 더 많은 활동에 참여함을 의미			
		청년1인가구	청년부부가구	부모동거가구	기타동거가구
전체(1.55점)		1.53	1.54	1.55	1.57
개인 학력수준	재학생	1.53	1.35	1.55	1.51
	고졸이하	1.62	1.61	1.62	1.68
	대졸이상	1.50	1.53	1.53	1.54
연령	19-24	1.55	1.60	1.56	1.58
	25-29	1.53	1.57	1.54	1.54
	30-34	1.51	1.53	1.55	1.58
성별	남	1.52	1.52	1.56	1.53
	여	1.54	1.56	1.54	1.59
부모학력	대졸미만	1.56	1.56	1.59	1.60
	대졸이상	1.49	1.50	1.52	1.52

자료: 국무조정실 (2022).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를 바탕으로 분석

⑤ 가구 유형별 고립 수준

고립·은둔의 경우 청년 삶 실태조사에서 조사한 외출 빈도 및 사유, 지속기간 등을 바탕으로 구분하였다. 조사 참여 청년은 “평소 얼마나 외출하십니까”에 대해 총 8가지의 수준(①직장이나 학교로 펼일은 매일 외출한다, ②직장이나 학교로 일주일에 3~4일 외출한다, ③여가생활을 위해 자주 외출한다, ④사람을 만나기 위해 가끔 외출한다, ⑤보통은 집에 있지만, 자신의 취미생활만을 위해 외출한다, ⑥보통은 집에 있지만, 인근 편의점 등에 외출한다, ⑦자기 방에서 나오지만 지 밖으로는 나가지 않는다, ⑧자기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는다) 가운데 한 가지로 응답하게 되는데, ⑤~⑧을 선택할 경우 그러한 상태가 얼마나 지속되었는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는 ⑤~⑧을 선택한 사례 중 6개월 이상 그러한 생활을 지속했고, 그러한 상태가 된 주된 이유가 장애 또는 임신·출산 등이 아닌 경우 고립·은둔으로 구분하였다.

그 결과, 전체 청년의 1.5%가 고립·은둔으로 분류되었다. 가구유형별 규모의 차이가 있었는데, 부모동거가구의 고립·은둔 청년이 1.7%로 가장 높았고, 기타동거가구(1.5%), 청년1인가구(1.3%), 청년부부가구(1.1%) 순서였다. 청년1인가구 내에서는 학력에 따라 재학생이 1.3%, 대졸이상이 1.4%로 비교적 높은 편이었고, 고졸이하의 고립·은둔 비율이 0.8%로 가장 낮았다. 그러나 나머지 가구유형에서는 고졸이하 청년의 고립·은둔 비율이 다른 학력수준에 비해 높게 나타난 점은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표 II-67. 고립·은둔

		고립·은둔			
		청년1인가구	청년부부가구	부모동거가구	기타동거가구
전체(1.5%)		1.3%	1.1%	1.7%	1.5%
개인 학력수준	재학생	1.3%	0.0%	0.8%	0.0%
	고졸이하	0.8%	2.2%	3.7%	3.4%
	대졸이상	1.4%	0.9%	1.4%	1.1%
연령	19-24	1.3%	0.0%	1.4%	1.0%
	25-29	1.2%	0.5%	2.2%	2.9%
	30-34	1.3%	1.3%	1.5%	1.1%
성별	남	1.0%	0.7%	2.1%	1.6%
	여	1.6%	1.5%	1.2%	1.5%
부모학력	대졸미만	1.2%	1.0%	1.5%	1.8%
	대졸이상	1.4%	1.4%	1.8%	1.0%

자료: 국무조정실 (2022).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를 바탕으로 분석

⑥ 가구 유형별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는 11점 척도(①전혀 만족하지 않는다~⑩매우 만족한다)로 측정된 문항으로 “요즘 귀하의 삶에 전반적으로 만족하십니까?”와 같은 방식으로 묻는다. 이에 대한 전체 청년의 평균은 6.72점이고, 가구유형별로는 청년부부가구(7.22점), 기타동거가구

(6.72점), 부모동거가구(6.65점), 청년1인가구(6.63점) 순서로 나타났다.

청년1인가구 내에서는 고졸이하 청년의 만족도 수준이 두드러지게 낮는데, 이러한 경향은 부모동거가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부모학력에 따른 차이도 큰 편인데, 청년 1인가구(0.32점)와 기타동거가구(0.28점)의 청년이 부모학력에 따른 차이가 다른 가구유형(청년부부가구: 0.59점, 부모동거가구: 0.42점)에 비해서는 작은 편이다.

표 II-68.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점)			
		청년1인가구	청년부부가구	부모동거가구	기타동거가구
전체(평균: 6.72점)		6.63	7.22	6.65	6.72
개인 학력수준	재학생	7.09	7.26	7.11	6.80
	고졸이하	6.22	6.57	6.16	6.20
	대졸이상	6.61	7.37	6.56	6.87
연령	19-24	6.80	7.22	6.83	6.44
	25-29	6.58	7.24	6.49	6.52
	30-34	6.56	7.21	6.42	6.86
성별	남	6.66	7.23	6.65	6.70
	여	6.60	7.21	6.64	6.73
부모학력	대졸미만	6.49	7.04	6.41	6.62
	대졸이상	6.81	7.63	6.83	6.90

자료: 국무조정실 (2022).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를 바탕으로 분석

⑦ 가구 유형별 행복감

행복감은 “귀하는 어제 얼마만큼 행복하셨습니다?”에 대해 11점 척도(①전혀 행복하지 않았다~⑩매우 행복했다)로 측정된 문항으로 전체 청년의 평균은 6.89점이었다. 가구유형 중 청년부부가구는 삶의만족도에서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다. 나머지 가구유형 간 차이는 0.11점 내로 그 차이가 크지 않았다. 청년1인가구 내에서는 재학생의 행복감이 가장 높았고, 고졸이하 청년의 행복감이 낮은 편이었다. 전체 세부 집단 중 행복감이 가장 높았던 집단은 청년부부가구이면서 부모학력이 대졸이상인 경우였는데, 7.89점이었다.

표 II-69. 행복감

		행복감(점)			
		청년1인가구	청년부부가구	부모동거가구	기타동거가구
전체(평균: 6.89점)		6.72	7.50	6.83	6.82
개인 학력수준	재학생	7.10	7.89	7.16	6.86
	고졸이하	6.34	6.83	6.40	6.31
	대졸이상	6.71	7.66	6.80	6.97
연령	19-24	6.86	7.67	6.96	6.52
	25-29	6.67	7.47	6.73	6.51
	30-34	6.68	7.51	6.63	7.01
성별	남	6.71	7.52	6.78	6.89
	여	6.73	7.49	6.89	6.79
부모학력	대졸미만	6.63	7.33	6.65	6.69
	대졸이상	6.85	7.89	6.97	7.04

자료: 국무조정실 (2022).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를 바탕으로 분석

⑧ 가구 유형별 자유로운 선택

자유로운 선택은 “귀하의 삶에서 얼마만큼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느끼십니까?”에 대해 11점 척도(①전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다~⑩매우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로 측정된 문항이다. 이에 대한 전체 청년의 평균은 6.93점이었다. 이 문항에 대해 청년1인가구(6.92점), 청년부부가구(6.94점), 부모동거가구(6.95점) 간 차이는 매우 작은 편이었다. 다만, 기타동거가구(6.67점)의 경우 나머지 가구유형과 점수 차이가 상대적으로 컸다.

전반적으로 재학생이 더욱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응답한 경향이 있었다. 다만, 청년부부가구에서만 재학생(6.46점)→고졸이하(6.52점)→대졸이상(7.05점) 순으로 선택의 자유도가 더 높다고 인식하였다.

청년1인가구의 특성을 감안하면, 자유로운 선택과 관련한 이 문항의 응답값이 다른 가구유형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난 점은 다소 예상과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다. 다양한 추론이 가능하지만, 물리적·공간적 독립이 심리적·정서적 독립을 담보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1인가구로서의 삶이 자유로운 선택이 아닌 부득이한 선택에 의한 결과인 청년1인가구가 다수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표 II-70. 자유로운 선택

		자유로운 선택(점)			
		청년1인가구	청년부부가구	부모동거가구	기타동거가구
전체(평균: 6.93점)		6.92	6.94	6.95	6.67
개인 학력수준	재학생	7.25	6.46	7.28	7.17
	고졸이하	6.67	6.52	6.63	6.42
	대졸이상	6.90	7.05	6.89	6.68
연령	19-24	7.04	6.33	7.13	6.63
	25-29	6.84	7.03	6.82	7.03
	30-34	6.92	6.92	6.71	6.54
성별	남	6.88	6.99	6.97	6.97
	여	6.98	6.90	6.94	6.55
부모학력	대졸미만	6.83	6.77	6.77	6.48
	대졸이상	7.05	7.32	7.11	6.98

자료: 국무조정실 (2022).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를 바탕으로 분석

⑨ 가구 유형별 사회에 대한 신뢰

사회에 대한 신뢰는 “우리 사회가 얼마만큼 신뢰할 수 있는 사회라고 느끼십니까?”에 대해 11점 척도(①전혀 신뢰할 수 없다~⑩매우 신뢰할 수 있다)로 측정된 문항이다. 이에 대한 전체 청년의 평균은 5.20점이었다. 이 문항에 대해 가구유형 간 차이는 최대 0.14점(청년부부가구: 5.25점, 기타동거가구: 5.11점)으로 작은 편이었다.

청년1인가구의 경우 연령대가 높아짐에 따라 사회에 대한 신뢰가 낮아지는 편이었는데, 이는 부모동거가구의 양상과 유사했다. 청년부부가구의 경우 19-24세 연령대의 사회에 대한 신뢰도가 가장 낮았고, 대조적으로 기타동거가구의 경우 19-24세 연령대의 사회에 대한 신뢰도가 가장 높았다.

표 II-71. 사회에 대한 신뢰

		사회에 대한 신뢰(점)			
		청년1인가구	청년부부가구	부모동거가구	기타동거가구
전체(평균: 5.20점)		5.15	5.25	5.22	5.11
개인 학력수준	재학생	5.54	5.98	5.55	5.72
	고졸이하	4.72	4.88	4.82	5.04
	대졸이상	5.16	5.33	5.18	5.05
연령	19-24	5.36	4.65	5.36	5.43
	25-29	5.16	5.29	5.12	5.03
	30-34	4.98	5.25	5.00	5.07
성별	남	5.22	5.15	5.23	5.18
	여	5.07	5.34	5.21	5.09
부모학력	대졸미만	5.01	5.11	5.04	5.02
	대졸이상	5.34	5.58	5.36	5.27

자료: 국무조정실 (2022).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를 바탕으로 분석

⑩ 가구 유형별 가족으로부터의 지원 가능 여부

청년 삶 실태조사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적 관계에 대해 측정하였다. 여기서는 금전적인 지원에 초점을 맞춰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할 때’와 ‘이번 달 생활비가 부족할 때’ 가족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가구유형 간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했다.

큰 돈이 필요할 때 가족으로부터 도움 받을 수 없다고 응답한 청년은 전체 청년의 7.2%, 생활비가 필요할 때 가족으로부터 도움 받을 수 없다고 응답한 청년의 비율은 전체 청년 중 6.6%였다. 부모동거가구의 경우 지원 받을 수 없는 사례가 상대적으로 작았고, 청년1인가구, 청년부부가구, 기타동거가구와 같이 부모와 거주 공간이 같지 않은 경우 가족으로부터 도움받을 수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특히, 청년1인가구 중 고졸이하인 청년의 경우 17.0%가 큰 돈이 필요할 때 도움받을 수 없다고 응답했으며, 이는 생활비 측면(16.9%)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청년1인가구의 경우 연령대가 올라감에 따른 불가능 응답 비율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전반적으로는 부모학력 수준이 높고 낮음에 따른 지원 가능성을 달리보고 있는 경향이 나타났다. 큰 돈이나 생활비에 대한 가족으로부터의 지원 가능 여부는 세부적인 유형에 관계 없이 대체로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표 II-72. 가족으로부터의 지원(큰돈)

		큰돈(가족으로부터 도움받을 수 없다고 응답한 비율)			
		청년1인가구	청년부부가구	부모동거가구	기타동거가구
전체(7.2%)		9.9%	9.5%	5.3%	9.8%
개인 학력수준	재학생	4.8%	15.0%	4.2%	5.9%
	고졸이하	17.0%	10.5%	8.4%	15.3%
	대졸이상	9.6%	9.1%	4.7%	8.7%
연령	19-24	6.6%	9.2%	5.0%	4.5%
	25-29	9.3%	6.9%	5.0%	12.4%
	30-34	13.3%	10.4%	6.4%	10.2%
성별	남	10.5%	9.6%	5.6%	7.1%
	여	9.2%	9.3%	4.9%	10.9%
부모학력	대졸미만	11.9%	11.0%	6.8%	11.0%
	대졸이상	7.3%	5.9%	4.0%	7.8%

자료: 국무조정실 (2022).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를 바탕으로 분석

표 II-73. 가족으로부터의 지원(생활비)

		생활비(가족으로부터 도움받을 수 없다고 응답한 비율)			
		청년1인가구	청년부부가구	부모동거가구	기타동거가구
전체(6.6%)		9.6%	9.4%	4.4%	10.0%
개인 학력수준	재학생	4.0%	15.0%	2.7%	6.4%
	고졸이하	16.9%	10.7%	7.7%	13.6%
	대졸이상	9.2%	9.0%	4.2%	9.4%
연령	19-24	5.7%	6.5%	3.5%	5.7%
	25-29	9.2%	5.4%	4.7%	13.0%
	30-34	13.0%	11.0%	6.3%	10.0%
성별	남	10.4%	10.5%	4.8%	7.9%
	여	8.5%	8.4%	3.9%	10.8%
부모학력	대졸미만	11.0%	10.1%	5.9%	11.1%
	대졸이상	7.6%	7.8%	3.2%	8.3%

자료: 국무조정실 (2022).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를 바탕으로 분석

⑪ 사회·심리적 상태 관련 시사점

사회·심리적 상태와 관련한 변수에서 청년1인가구는 일부 긍정적인 측면을 보이기도 하지만, 유의할 필요가 있는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양면성이 있어 정책적 설계 과정에서 세밀한 고려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예컨대, 운동이나 활동과 같은 면에서는 다른 가구 유형에 비해 다소 활동적인 결과가 드러났으나, 음주나 우울에서는 다른 가구유형에 비해 부정적인 상태에 있는 경우가 많았다. 고립·은둔 상태에 놓인 경우는 부모동거가구 청년에 비해 낮은 편이었으나, 삶이나 사회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았다. 삶에서의 선택에 자유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나 실질적으로는 다른 가구유형과 큰 차이가 없는 양상이었으며, 가족으로부터의 지원도 부모동거가구에 비해 제한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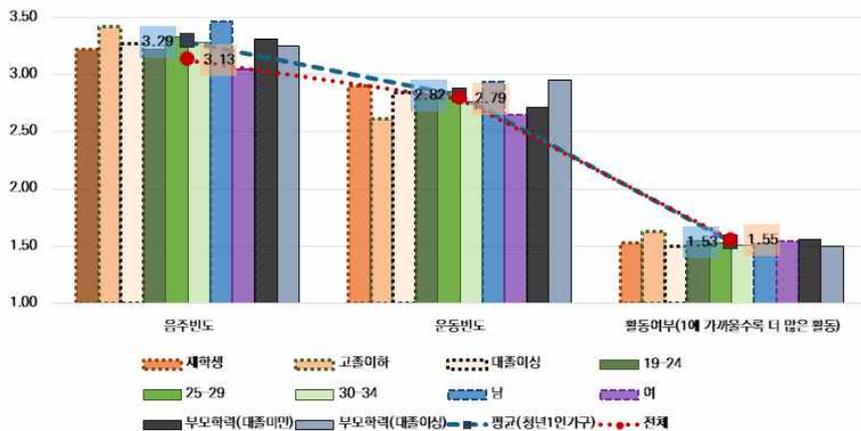
이와 같은 결과는 청년1인가구 내 이질성을 시사하며, 개인학력이나 부모배경, 연령 등에 따라 필요로 하는 정책과 지원이 다를 수 있음을 드러낸다. 특히, 대부분의 분석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청년1인가구 중 고졸이하 청년에 대한 보다 세밀한 실태분석을 통한 정책제시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II-74. 사회적·심리적 상태(청년1인가구)

		음주빈도	운동빈도	활동(1에 가까울수록 더 많은 활동)	삶만도	삶행감	자유선택	사회에 대한 신뢰	우울	고립·은둔	가족부지원(돈)	가족부지원(생활비)
개인 학력 수준	재학생	3.22	2.90	1.53	6.22	6.34	6.67	4.72	1.2%	1.3%	4.8%	4.0%
	고졸이하	3.42	2.61	1.62	6.61	6.71	6.90	5.16	2.4%	1.3%	17.0%	16.9%
	대졸이상	3.27	2.84	1.50	6.80	6.86	7.04	5.36	1.9%	0.8%	9.6%	9.2%
연령	19-24	3.23	2.83	1.55	6.58	6.67	6.84	5.16	1.6%	1.4%	6.6%	5.7%
	25-29	3.33	2.85	1.53	6.56	6.68	6.92	4.98	1.1%	1.3%	9.3%	9.2%
	30-34	3.28	2.76	1.51	6.66	6.71	6.88	5.22	2.8%	1.2%	13.3%	13.0%
성별	남	3.46	2.94	1.52	6.60	6.73	6.98	5.07	1.3%	1.3%	10.5%	10.4%
	여	3.05	2.65	1.54	6.49	6.63	6.83	5.01	2.6%	1.0%	9.2%	8.5%
부모 학력	대졸미만	3.31	2.71	1.56	6.81	6.85	7.05	5.34	2.1%	1.6%	11.9%	11.0%
	대졸이상	3.25	2.95	1.49	6.63	6.72	6.92	5.15	1.6%	1.2%	7.3%	7.6%
평균(청년1인가구)		3.29	2.82	1.53	7.09	7.10	7.25	5.54	1.9%	1.4%	9.9%	9.6%
전체		3.13	2.79	1.55	6.72	6.89	6.93	5.20	1.2%	1.5%	7.2%	6.6%

자료: 국무조정실 (2022).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를 바탕으로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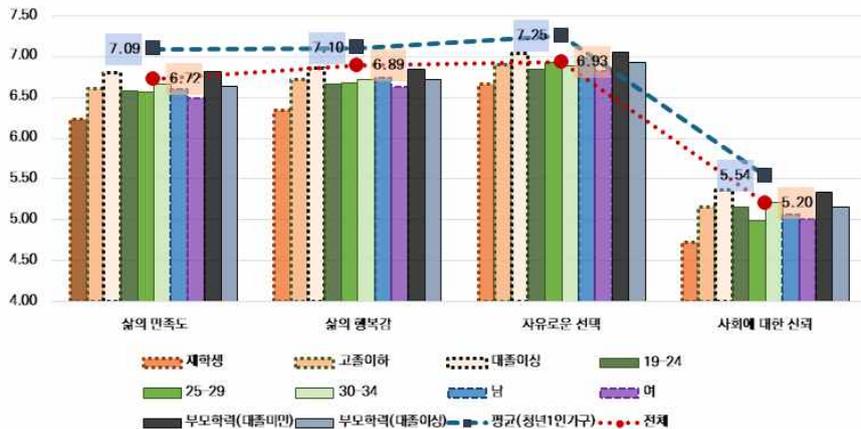
사회적·심리적 상태(청년1인가구) 1



자료: 국무조정실 (2022).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를 바탕으로 분석

그림 II-11. 사회적·심리적 상태(청년1인가구)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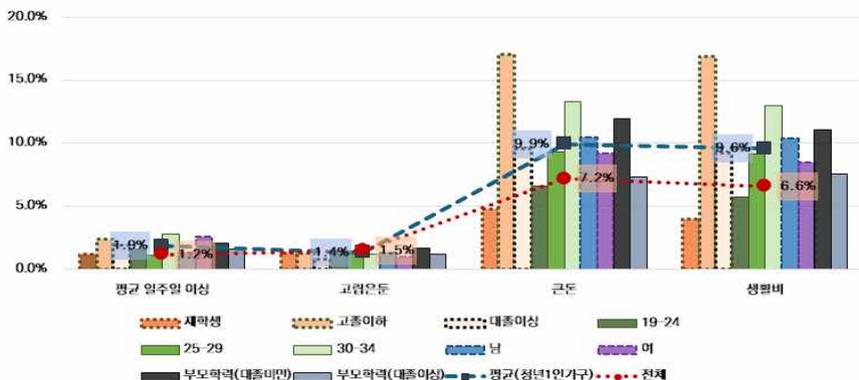
사회적·심리적 상태(청년1인가구) 2



자료: 국무조정실 (2022).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를 바탕으로 분석

그림 II-12. 사회적·심리적 상태(청년1인가구) 2

사회적·심리적 상태(청년1인가구) 3



자료: 국무조정실 (2022).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를 바탕으로 분석

그림 II-13. 사회적·심리적 상태(청년1인가구) 3

3) 1인가구 청년의 생활경험과 지원에 관한 인식: 면접조사 결과

(1) 면접조사 개요

이 절에서는 1인가구 청년의 생활경험과 지원에 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청년 당사자와 관련 실무자들의 목소리를 청취하였다. 인터뷰는 개별 심층 면접과 초점집단 인터뷰를 병행하였으며, 1인가구의 특성과 지원 필요성 및 방향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 면접이 이루어졌다.

표 II-75. 면접조사 개요

구분	주요내용
면담참여자 수	• 총 14명
면담참여자 특성 개요	• 청년 당사자 (7명) • 청년 1인가구 지원 실무자 (5명) • 청년 정책 관련 전문가 (2명)
면담참여자 모집방법	• 연구자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스노우볼링
면담방식	•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한 면접

(공식성 정도, 구조화 정도)	• 개별 심층 면담 및 초점집단 면접(FGI)
면담장소	• 대면 면접을 기본으로 하되, 참여자의 사정에 따라 비대면 면접(온라인 면접)을 병행하였음
면담 시간 및 횟수	• 면접은 1인당 90분 내외로 진행하였음
면접 기간	• 2024년 11월~12월
면담자료 기록 및 녹취 여부	• 면접 시 녹음하여 전사
면담자 및 분석	• 연구진 (참여자 모집, 면담, 분석, 보고 등 연구진이 담당)

면접의 주요 프레임은 1인가구 청년의 어려움, 지원 필요성, 지원 욕구, 지원 방안 등이다. 청년들의 욕구와 정책방안을 다양하게 청취하기 위하여 생활상의 어려움과 주거상의 어려움에 대해 인터뷰하였다. 실무자들에 대한 면접도 거의 유사하게 진행하였으나, 현재 공공과 민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지원 현황과 서비스 차원 및 전달체계 상의 개선점을 함께 질문하여 향후 정책제언에 활용하고자 하였다.

표 II-76. 청년 심층면접의 질문 프레임

주요 요소	내 용
1인가구 청년의 어려움	• 1인가구 청년이 경험하는 생활과 주거 차원의 어려움
1인가구 청년의 지원 필요성	• 1인가구 청년에 대한 생활 및 주거지원 필요성 • 1인가구 중 특히 취약한 특성이 있는 청년에 관한 지원 필요성
1인가구 청년의 지원 욕구	• 1인가구 청년들의 생활 및 주거지원 욕구
1인가구 청년의 지원 방안	• 1인가구 청년 지원에 관한 정책 내용 및 전달체계 상의 욕구

표 II-77. 청년 관련 현장실무자(종사자) 면접 질문 프레임

주요 요소	내 용
1인가구 청년의 어려움	• 1인가구 청년 생활 및 주거 차원의 어려움
1인가구 청년의 지원 실태	• 1인가구 청년 지원 정책의 운영 실태 및 개선 방안
1인가구 청년의 지원 욕구	• 1인가구 청년들의 정책 욕구 및 제도 개선 방향
1인가구 청년의 지원 방향	• 1인가구 청년 지원 서비스 및 전달체계 개편 필요성 및 방향

연구 참여자는 다양한 특성을 가진 청년들과 종사자들을 추가하고자 하였다. 연구참여 청년들은 중산층 이상의 청년들에서부터 청소년기 가출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청년들까지 다양한 배경의 청년을 두루 포함하였다. 이를 통해 보편적인 1인가구 청년에 대한 지원 방안과 특수한 욕구 혹은 중첩적인 욕구를 지닌 청년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나누어 검토하고자 하였다. 종사자들은 다양한 전달체계의 종사자들을 인터뷰하였는데, 다부처의 청년 전달체계 종사자 및 지자체 전달체계 종사자들이 포함되었다. 이 면접조사 내용은 현황 파악 및 정책 도출에 목적이 있어 개선 방안에 더 집중하여 면접을 진행하였다. 이와 함께 본 연구에서는 연구내용 보완을 위하여 관련 공무원 및 청년단체 참여자, 주거복지센터 실무자 등 10인으로부터 자문받아 정책 도출에 정확성과 타당성을 기하였다.

표 II-78. 청소년 당사자(CY) 연구참여자의 인적사항 및 특성

연번	ID	성별	연령대	주요 특성	비고
1	Y1	남	20대 중반	청년 주거지원 활동가	개별면접
2	Y2	여	20대 초반	청년 주거지원 이용경험자	개별면접
3	Y3	여	20대 중반	청년 1인가구 당사자	개별면접
4	Y4	남	20대 후반	청년 주거지원 이용경험자	초점집단면접
5	Y5	여	20대 중반	청년 주거지원 이용경험자	
6	Y6	남	30대 초반	청년 참여기구 참여자	
7	Y7	여	20대 후반	청년 참여기구 참여자	
8	W1	여	30대	청년 1인가구 지원기관 종사자	초점집단면접
9	W2	여	30대	청년 1인가구 지원기관 종사자	
10	W3	남	40대	청년 1인가구 지원기관 종사자	
11	W4	남	40대	청년 1인가구 지원기관 종사자	
12	W5	남	40대	청년 1인가구 지원기관 종사자	
13	W6	남	50대	청년 주거지원기관 종사자	개별면접
14	W7	여	40대	청년 지원기관 종사자	개별면접

이들에 대한 인터뷰는 연구진이 진행 및 분석을 진행하였다. 인터뷰는 포괄적인 1인 가구 청년의 삶의 실태와 정책 욕구에 관하여 순차적으로 질문하였다. 정책 욕구는 전반적인 의견을 청취하되, 생활 지원 정책과 주거 정책에 관한 의견이 골고루 포함될 수 있도록, 주거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질문을 통해 세부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독려하였다. 인터뷰 내용은 모두 녹음 및 전사 이후 연구자가 반복적으로 내용을 읽고 의미단위를 구조화하여 범주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분석하였다.

(2) 면접조사 분석 결과

면접조사 내용은 1인 가구 청년의 다양성, 1인가구 청년의 다차원적 어려움, 1인가구 청년들의 차등적 정책 욕구 등 세 가지 범주로 분석되었다. 여기서는 먼저 네 가지 범주에 관해 설명하고, 이후 세부적인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첫 번째 범주는 1인가구 청년의 다양성이었다. 이는 자발성 차원과 안정성 차원에 서의 특징이 있었는데 직장 등 경제적 자립 통해 자발적으로 독립한 유형, 대학 및 대학원 진학으로 비자발적으로 독립한 유형, 가정 밖 생활을 통해 홀로 생활하는 유형, 노숙·PC방·찜질방을 거쳐 온 불안정 유형 등 다양하였다. 청년들은 비자발성과 불안정성을 지닌 1인 가구가 경험하는 사례를 주로 어려움의 사례로 이야기하였고, 비자발성과 불안정성을 지닌 청년일수록 여러 가지 생활의 어려움이 중첩되어 나타나는 특성이 있었다.

두 번째는 1인가구 청년의 다차원적인 어려움 범주가 있었다. 이는 주거 관련 어려움과 생활 관련 어려움으로 나눌 수 있었는데 경제적 측면, 심리적 측면, 주거 안정 및 안전 측면, 정보 측면 등 다양한 측면에서 나타났다. 잘 모르는 상태에서 주거 계약해야 하는 어려움과 불안, 싼 집 찾아 부정적 주거 환경에서 버티는 경험, 내가 사는 곳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 경험, 홀로 생활에서의 안전 불안과 고립감 경험, 주거비 과중 부담 경험 등이 있었다.

세 번째는 1인가구 청년의 차등적 정책 욕구 범주가 있었다. 주거정책 이해를 위한 정책, 주거 상향을 위한 정책, 생활 편의를 위한 정책 등 다양한 정책 의견이 있었다. 이는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욕구이기도 하였지만, 성인 이행기의 단계와 현재 상황 및 미래 계획에 따라 차등적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 욕구는 기본적인 틀을 구성한 후, 청년들의 상황에 따라 차등적으로 제공하는 형태가 적절하다는

의미에서 차등적 정책 욕구로 범주를 구성하였다. 청년들은 1인가구 청년 지원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하였으나, 1인가구 청년만 지원하는 형태보다는 1인가구 청년 친화적 정책이 구성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주거 형태 및 가족 형태는 언제든 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이러한 논의는 궁극적으로 청년의 주거권 향상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다음부터는 면접조사 분석 결과를 한눈에 제시하고, 각 범주별 청년들의 의견과 목소리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표 II-79. 면접조사 분석 결과

범주	하위범주		
1인가구 청년의 다양성	자발적·비자발적, 안정 1인가구	경제적 자립 청년	
		경제적 안정 청년	
	자발적, 불안정 1인가구	취업·학업 독립 청년	
		취업·학업 지역 이주 청년	
	비자발적, 불안정 1인가구	아동청소년기 불안정 청년	
		길거리 생활 청년	
1인가구 청년의 다차원적 어려움	주거 관련 어려움	주거정책 이해 및 계약 과정의 어려움	
		주거 사기 및 퇴거에 대한 불안	
		주거비 과중 부담	
		낙후된 부적정 주거의 생활 불편	
	생활 관련 어려움	심리정서적 고립감	
		단독생활의 불안감	
		1인가구 청년들의 차등적 정책 욕구	주거 정책 및 계약 절차 관련 교육과 지원
			1인가구 생활 관련 교육
주거 상황을 위한 정책	주택 공급 지원		
	전월세 등 금융 지원		
	부정적 거처 이동 지원		
생활 편의를 위한 정책	심리·정서적 지원		
	지역 정착 지원		
청년 주거권 향상을 위한 정책	청년 친화적 주거복지 전달체계		
	주거지원과 생활지원 통합 지원		

① 1인가구 청년의 다양성 (자발성 차원과 안정성 차원의 경계)

선행연구들에서는 1인가구 청년의 이질성에 주목하였다. 면접조사 분석 결과에서도 청년 및 기관 종사자들은 청년 1인가구는 다양한 유형을 지니고 있으며, 유형에 따라 필요로 하는 욕구가 다르다고 이야기하였다.

“1인 가구 자체를 취약계층으로 보면 너무 범위도 넓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에 대한 지원 대책이나 정책이 제대로 나올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1인 가구를 이제 좀 약간 분할을 해가지고 저소득 1인 가구라든가 아니면 노년 1인 가구라든가 좀 엔드 조건이 붙어야 좀 더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 Y7)

직장 등 경제적 자립을 통해 자발적으로 독립한 청년들은 사회경제적으로 괜찮은 상황에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혼자 생활하는 것에 대한 심리정서적 어려움과 주거비 과부담을 경험할 수는 있다고 하였다.

반면 비자발적으로 아동·청소년기부터 가정 밖 생활 및 빈곤 생활을 한 1인가구 청년은 다음 단계로의 이행이 어렵고 다차원적인 어려움이 중첩적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는 가정불화나 경제적 불안정으로 가정 밖으로 일찍 나올 경우, 안정적 기반 없이 독립적인 생활을 시작해야 하므로 불안정을 경험할 확률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지옥고로 대표되는 부적정 주거에 거주하거나 PC방, 찜질방을 전전하며 지내는 등 기본적인 주거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을 밝혔다.

“저희는 지금 만나고 있는 분들이 주거 위기 상황 청년들이니까 그래서 저희는 크게 몇 가지 범주를 잡고 있는 게 우선 현재 노숙 중인 상황에 청년, 그리고 근데 이제 그 노숙의 개념을 기존의 노숙 정책에서는 너무 협소하게 좀 보고 있어가지고 예를 들면은 예를 들면은 24시 카페나 무인 세탁기실, PC방 이런 데 전전하고 있는 청년의 경우에는 그 노숙 상황도 잘 파악을 안 하시고 막 이런 게 있거든요. 청년들이 그런데 요즘 막 용산역 영등포역에 앉아 있는 청년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좀 더 확장된 개념으로서 노숙 상황의 청년들이랑 그 다음에 고시원, 반지하, 옥탑방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을 저희는 우선은 주거 위기 상황 청년으로 보고 있어요.” (청년 Y1)

이질적인 1인가구 청년 중 누구를 취약 청년으로 볼 것인가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주거복지의 수혜층은 매우 협소하며, 주거에 대한 지원은 차등적으로 이루어지는 구조와 거리가 먼 편인 까닭에, 수혜자와 비수혜자로 양분되는 경향이 있다. 이는 기존의 빈곤-비빈곤의 틀을 적용했을 때 불안정하지만 지원을 받지 못하는 주거복지의 사각지대가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면담에 참여한 청년들은 이러한 맥락에서 청년 주거에 대한 지원 자체가 더 확장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저는 1인 가구가 되고 난 뒤에 이사를 지금까지 9번을 했거든요. 계속 고시원에서 살았고 세어하우스에서 살았고 지금은 이제 이렇게 청년주택에 살고 있는데 그런 것을 여러 번 찾아보면서 항상 나는 취약계층이 아닌가 취약계층인가라는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럼 정말 취약계층의 기준은 기초생활 수급자가 취약계층일까 정서적인 아니면 물질적인 취약계층의 기준이 생활 수급 생활을 하시는 분들 많이 취약계층이니까 그런 취약계층이 되기 위해서 엄청나게 행정적인 노력을 하시는 취약계층과 그조차도 안 되시는 정말 취약계층과 간극이 정말 미세하고 세심하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그 미세하고 세심한 것들을 사실 찾아서 필터링까지 해주실 여력은 너무 이상적인 거고... 저도 그 간극을 정말 다 없애자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그 노력을 정부 차원에서 조금씩 더 활용하는 스탠스는 계속되어야...”
(청년 Y4)

② 1인가구 청년의 다양성과 다차원적인 어려움

분석 결과, 1인 가구 청년의 삶의 실태는 매우 다차원적으로 결핍된 상태에 있는 청년의 상황에서부터 이른 시기 자립하여 홀로 독립된 생활을 유지하는 자립 청년의 상황까지 다양하였다. 청년기는 부모로부터 독립을 하여 단독 가구로 생활하거나 새롭게 가구를 구성하는 시기이므로 자발적인 자립의 사례도 포함되어 있는 반면, 진학이나 취업으로 인해 서울로 이주하여 비자발적으로 자립하는 사례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 청년들은 생활을 위해 지속적으로 서울에 머무를 계획이라고 하였다. 이로 인해 청년 1인가구의 생활은 다양하였으며 생활 격차도 크게 나타나고 있었으며, 앞으로의 과정에서도 격차가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었다. 청년의 1인 주거는 청년들의 성인이 이행의 과거-현재-미래를 함께 틀로 봐야 한다.

”(주거가 어렵지만 학업 이후 귀향을) 선택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게 제일 커요. 서울에 있어야

지 제가 살 수 있는 활동할 수 있는 게 생겨요. 고향으로 갔을 때 물론 주거는 괜찮겠죠. 주거는 괜찮으나 근데 거기서 제가 일을 할 수도 없고 저 같은 경우에 원래 전공이 또 있으니까 그런 데 거의 다 아이들 대상인데 아이도 없는 곳인데 이런 식으로...” (청년 Y3)

1인가구 취약 청년의 경우에는 매우 불안정하고 취약한 주거 상태에 있는 경우도 있었다. 이들은 1인가구였다가 노숙을 하기도 하고 공동생활을 하기도 한다. 이는 1인가구 청년 지원에서 거주 방식과 형태가 매우 유동적일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는 걸 보여준다.

“서울역 용산역 영등포역에는 앉아 있으면 한 한두 분 정도는 있을 텐데 30대까지를 포함하니까. 근데 그러니까 거기에 앉아 있을 정도로 기력이 없는 분들, 무기력 상태가 심한 분들도 있지만 대다수는 피시방, 사우나, 모텔 그 다음에 무인 카페, 무인 세탁방 이런 데 다 분포돼 있기 때문에...” (청년 Y1)

1인가구 취약청년은 이행 상태에 있기도 하였다. 대학 진학으로 서울로 이사 온 청년들은 조금이라도 부담을 줄여보기 위해서 함께 모여살기도 한다. 친구들이 불안정하게 모여 살다가 1인가구로 분리가 되기도 하지만, 홀로 상향 이동을 할 수 없을 때는 고시원으로 이동하기도 한다. 지-옥-고 안에서 ‘불안정한 다수’에서 ‘불안정한 개인’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1년 살았는데 그때는 사실 불법 증축인 줄 모르고 4명이 모여서 산 적이 있어요. 동기들이랑 좀 금전적인 문제로 쪼개서 쓰려고 근데 저희 지역구는 문제가 불법 증축 문제도 있고 그래서 나중에 좀 이렇게 보장받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추울 때 춥고 더울 때 덥고 그다음에 그게 주택 편의시설이 아니니까 지하도 그렇고 다 목적성이 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살기에는 쾌적한 편은 아니었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청년 Y3)

이들이 겪는 어려움은 크게 공통적인 내용과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내용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공통적으로 겪는 어려움은 계약 내용에 대해 잘 인지하지 못하고 계약하게 되는 어려움, 기본적인 일상을 홀로 관리하고 유지해야 되는 부담, 심리, 정서적인 외로움, 지지 체계의 결핍이나 부족 등 다양하였다. 특별한 지원은 1인가구로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이 심화된 형태로 기본적인 주거생활의 불안정, 주거 기준 미달 등 부적정, 주거 전월세비의 부족, 주거비 과다 지출로 인한 생활비 부족, 그런 부족함으로 인한 장기적인 인생 설계 가능성의 부족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있었다.

“이거는 긍정적인 1인 가구나 이렇게 못 사는 취약계층 1인 가구나 둘 다 누구나 행복하고 이룰 수는 있겠지만 그쪽에 있는 분들은 고립이나 외로움에 조금 덜 취약할 수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사회적으로 좀 고립이 많이 돼 있는 것 같아요. 1인 가구들이 분명히 연락하는 빈도는 많거든요. 자기가 혼자 가장이니까 연락하는 빈도는 많은데 그게 굉장히 얇고 넓어서 좀 밀도 있는 관계가 좀 어렵고 그다음에 또... 1인 가구의 경우에 가족이랑 연락하는 시간도 많이 적은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그리고 시청 시간은 오히려 4인 가구보다 높거든 높더라고 하더라고요.” (청년 Y3)

“1인 가구의 경우에 혼자서 이것저것 생활해야 되니까 이게 고립을 떠나서 혼자서 1인 가구면 혼자서 가장 역할을 하면서 필요 없는 연락을 많이 하면서 그것도 정신 건강에는 꽤 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주거 정책 제안하실 때도 이런 심리 공간도 같이 가야 되지 않나 생각도 항상 하고 있어요.” (청년 Y3)

1인가구 청년들은 외로움이나 고립감뿐만 아니라 자신이 도움이 필요할 때 누가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지에 대한 불안을 경험했다고 이야기했다. 이는 사회적 연결성과 지지체계가 부족한 1인가구 청년들에게는 비공식적 지원뿐만 아니라 공식적인 지원 체계에 대한 욕구가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포괄해서 이런 어떤 심리적인 위축감도 되게 많이 느껴졌어요. 뭔가 정말 물리적인 상황에서 표현을 하자면 정말 내가 이 혼자 있는 공간에서 만약에 내가 정말 만약에 목숨이 끊어진다면 나를 누가 어떻게 발견해 줄 것인지 약간 그런...” (청년 Y7)

청년들의 주거 선택에는 정보 비대칭이 발생한다. 온라인을 통한 주거정보 제공이 늘어나면서 청년들에게 주거 정보가 많이 전달되는 것처럼 보인다. 예를 들어, 최근 온라인 주거 플랫폼을 통해 집을 구하는 사례가 많아졌다고 했다. 최근에는 해당 앱에서 1인가구를 위한 정보를 별도로 제공하거나, 고시원과 고시텔 등 전용 앱도 등장하였다고 하였다. 하지만 이것이 청년들이 주거를 선택할 때 알아야 할 정보를 온전히 보여주지는 못한다. 청년들은 이런 앱을 자주 활용하지만 앱 속의 예쁘게 치장된 작은 방 사진 이면에 확인해야 할 것들을 잘 모르고 계약한다고 하였다. 이는 청년들에게 주거가 불안감으로 다가오게 하는 특징 중에 하나이다.

“그래서 요즘은 고시원이 전용 앱(application)이 아예 있어요. 아예 고시원들을 소개하기 위한 어플이 아예 활성화되어 있고 저희도 그 청년분들 임시 거주지 구할 때 여기는 이렇게

우아하게 원룸 탭이라는 이름으로 붙여 있어요. 근데 이제 사실상 이제 여기는 그냥 고시원 고시텔 뭐 이런 곳들 비주택인 곳들을 다 모아놓고 여기는 그래도 조금 좋은 고시원들이 올라오죠. 이런 마케팅을 하는 이렇게 지역별로 다 이렇게... (중략) 완벽하게 연출한 거고 그래서 그 사진에 속아서 많이들 이제 그 같은 가면은 이제 연출입니다. 이런 게 써 있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진짜 예쁘게 꾸며놨는데 창문이 없고 면적은 기본적으로 다들 두 평을 넘지 않고..." (청년 Y1)

1인가구 청년들의 다양한 유형과 취약성을 요약하자면, 주거의 취약성이 다차원적인 취약성의 일부에 포함이 되는 사례에서부터 주거비 부담의 부담 등 완화된 취약성의 형태로 나타나는 등 다양한 유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우리가 삶의 질을 구성하는 영역들에서 주거의 취약성만 도드라지는 경우 이를 조정하여 회복하거나 임시적인 지원으로 일상생활 유지를 지원할 수 있다는 의미이고, 다차원적인 취약성에서 모든 영역의 취약성이 다 발휘되는 경우 주거 지원만으로는 이들의 취약성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지원 체계를 구성할 때 어느 영역에 대해 어느 수준에 대해 지원할지에 대해서 심도 깊은 고려가 필요하다.⁸⁾

1인가구 청년의 어려움의 영역은 안전, 부정적 주거, 불안정 주거 등을 구체화시켜볼 수 있다. 먼저, 안전은 1인 가구 여성 청년들에게 특히 민감한 주제이며, 이로 인하여 더 안전한 주거를 위해 주거비가 상승될 여지가 큰 특성을 가지고 있다. 만약 주거비가 부족하여 불안정한 주거에 머무를 경우 이로 인한 안전 영역에서의 불안감, 이와 관련하여 전반적인 삶의 질 영역에서의 저하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부적정 주거에 관한 목소리도 있었다. 제1차 청년정책기본계획 수립 당시 지옥고, 즉 지하실 옥탑방, 고시원에 거주하는 청년을 위한 정책들이 제안되었다. 해당 정책이 일부 시행되기도 하였으나 실제적으로는 잔여적인 지원에 가까워 이로 인한 혜택을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그 당시 연구와 정책 흐름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이들 시설에 거주하는 청년들은 불안정뿐만 아니라 안전에 대한 위협을 느낀다고 이야기하였다.

“집이 이게 반지하였거든요. 이 집이 한 번 비가 샀는지 이게 너무 젖어가지고... 이제 청소 업체를 불렀는데도 저의 수중에 돈은 한계가 있고 심지어 투룸이고... 이제 어느 정도는

8) 예를 들어, 원형판에 개별적인 영역, 즉 주거 영역, 경제 영역, 노동 영역, 교육 영역 등을 표기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유형화를 진행한 후 지원전략을 수립하는 방안이 있을 것이다. 주거에만 한정된 지원을 해야하는 대상과 주거를 포함한 통합지원이 필요한 대상 등 전략은 다양할 수 있다. 다만, 주거 취약의 양상으로 볼 때 취약청년에 대한 지원은 통합적으로, 일반 1인가구 청년에 대한 지원은 필요한 욕구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정보 제공 정도로 나누어 고려할 수 있다.

다 했는데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 수가 없어서...”(청년 Y2)

이와 함께, 전월세 사기 등으로 인하여 최근 월세 거주를 희망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취약한 주거인 고시원 역시 주거비가 상승하였다고 한다. 주거비 과부담 뿐만 아니라 부적정한 주거에서의 스트레스와 안전에서의 위협과 다양한 부정적인 결과물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고시원과 지옥고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경제적 부담은 많은 청년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 주거부담으로 인하여 저렴한 주거를 찾는 것은 여러 취약성을 발현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고 있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대학교를 진학하거나 이제 이리면서 이제 오는 분들도 당연히 많고 그분들이 숫자적으로는 훨씬 높고 근데 왜냐면 아까 고시원이 이제 어쨌든 청년들의 주거 모델 중에 하나로 아예 정착을 했기 때문에 근데 취약성으로서 본다면은, 취약성으로 본다면은 이제 그중에서도 그렇게 탈가정하고 가정의 지원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거주지를 마련하는 모델로서 고시원에 거주하는 분들이 훨씬 더 취약한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청년 Y1)

많은 사람들이 주거비 과중 부담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한다. 이는 청년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사회안전망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청년 중에는 주거비 과중 부담으로 인해 이 주거비를 마련하지 못하면 더 불안정한 주거의 상태로 내몰리는 계층이 있다. 이들은 경제적 빈곤과 사회경제적 미참여의 중첩된 영역에 있는 이들이다. 만약 가족으로부터의 지원을 꿈꿀 수 없다면 상황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무보증금이면서 그런 쪽방 같은 원룸을 한 60에서 80만 원 사이로 받아 건물주들이 이제 리스크 비용을 이제 감안해서 받는 건데 그렇게 근데 그게 최근에는 또 문제가 됐던 게 전세 사기로 사람이 살 수 없는 집을 그렇게 전입신고 안 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60만 원 70만 원에 이렇게 이렇게 돌린 거죠. 그런 식으로도 운영을 하고 어쨌든 보증금 그러니까 초기 비용이 없는 청년에게 훨씬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을 전가시키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만나는 분 중에도 그래서 월세만 들으면 거의 월 300 번는 분들이 있죠.”(청년 Y1)

청년들은 계약을 처음 해보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해 잘 모르기도 한다. 이는 청년들의 보편적인 어려움일 수 있으나, 1인가구로 홀로 계약해야 하는 청년들에게는 더 우려투럽게 다가온다. 청년들에게 계약서 작성, 은행 대출, 주거 관련 신청 등은 모두 쉽지 않은 것들이다.

“이게 아무래도 집주인이랑도 연락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은행 그리고 저는 청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거는 전세 계약 은행에 가서 LH 가능한지 뭐가 가능한지 이런 계약 상황이 제일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때 때는 서류 길이어서 쓰는 그 시간 근데 그때 동행해 주는 사람이 없으면 물론 가족이나 어른이 있으면 좋지 근데 이 비자발적인 독립이 많은 상황이고 그리고 30대 독립 가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 혼자 해야지라는 이미지가 있는데 그 동행에 대한 아니면 이걸 서포트해주는 그런 게 많이 없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은행 가보시면 알겠지만 대출받을 때 많이 쌀쌀하시잖아요.” (청년 Y3)

이러다 보니 부당한 상황에서의 대처능력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으며, 이것이 불안정의 경로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정상적인 계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에 비해 나이가 많은 집주인의 부당한 요구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구조적 요인이 있다.

“지금 당장 제 아랫집 살던 친구는 지금 고시원으로 이사를 갔어요. 약간 여기 서울이다 보니까 서울의 특징인데 묵시적 갱신이 집주인 마음대로일 때가 있어요. 집값을 올려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묵시적 갱신일 줄 알았는데 기다렸다가 당연히 묵시적 갱신일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일주일 뒤에 나가라 이렇게 돼가지고 갈 데가 없으면 그냥 고시원 가는 거예요.” (청년 Y3)

“집주인이) 좀 강경했던 것 같아요. 집주인이 아마... 그냥 제 생각에는 저는 집에 잘 없으니까 어차피 대학원생이니까 집에 잘 없어서 막 이렇게 민원을 많이 안 했는데, 이 친구는 민원을 많이 집주인한테 해서 보복성으로 나가지 않았을까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청년 Y3)

갑작스럽게 부당한 요구를 받고 빠르게 이사를 가야했던 경험은 비단 1인가구 청년들에게만 해당하는 일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을 대변해줄 가족이나 친구가 없고, 공식적/비공식적인 사회적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1인가구 청년들은 이를 시정하지 못하고 따라야 할 수도 있다.

“거의 안 됐어요. 많이 고립돼 있는 상태였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방금 윗집인 저 같은 경우 이런 식이라서 많이 그것에 대한 도움을 못 받았어요.” (청년 Y3)

③ 1인가구 청년의 정책 욕구

그럼에도 불구하고 1인 가구 청년에 대한 지원체계는 아직 출발 단계에 있다. 생활 지원과 주거 지원 모두 접근성 면에서 청년들에게 여러 한계가 있었다. 주거 지원과 생활 지원은 전달체계에서 분리되어 있는 경향도 있었고, 관할하는 과마다 가지고 있는 본연의 정책 범위로 인하여 두 대상을 결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앞서 다룬 바와 같이 청년들이 잘 모르는 주거 계약을 지원해주는 정책이 가장 필요한데, 이는 옆에서 함께 해줄 사람이 동행하는 서비스뿐만 아니라 청년들의 주거정책 리터러시(literacy, 문해력)를 높이는 방식 등 다양할 수 있다. 즉, 잘 모르는 걸 잘 알게 해주거나, 조금 더 통합적으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통합적인 정보 제공 기회는 현재의 계약이나 집을 찾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에서부터 징검다리로 상향 이동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까지 다양하게 구성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는 청년기라는 성인 이행기의 특성 때문인지, 비단 불안정한 주거를 경험하는 취약 청년에서부터 이른 시기 안정적으로 자립을 하는 청년들까지 공통적인 욕구라는 것에 특징이 있다.

“한국 사회에 어쨌든 복지 체계가 아예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도 좀 연결이 안 된다는 느낌이 강했고 그런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활동이나 센터나 서비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청년 Y1)

이러한 주거 리터러시는 대학을 나왔다고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주거정책 리터러시를 증진하기 위한 교육과 실제 그러한 상황에서 보조를 해줄 체계가 필요해 보인다.

“저 같은 경우에는 주택 청약을 넣었지만 왜 1순위 2순위를 하는지 아직도 명확히 잘 모르는 리터러시가 떨어지는 거죠. 오히려 이걸로 예금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어서 좋다 이런 생각이지 이걸로 당첨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는 사실 좀 옅은 편이고 저는 게을러서 그거를 청년형으로 전환도 안 했거든요. 그냥 일반형이에요. 아직 약간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주변에는 리터러시가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게 은행 가는 걸 아예 무서워해요. 그리고 요즘 많이 대출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비상금 대출도 무서워하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하물며 주택에 대해서 대출을 받는 걸 굉장히 어려워 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특수 형태에 대한 그런 이해가 좀 없어요.. 반전세나 아니면은 또 이렇게 같이 사는 민간 임대 형태 이런 것도 좀 어려워하고 그가 국가에서 하는 게 아니면 물론 국가에서 하면 좋지만 국가에서 하는 게 아니면은 뭐든지 어려워하고 은행이랑 관련된 걸 대출을 듣거나 어려워하고 그리고 서류 작업 오고 갈 때 부동산에 갔을 때 위촉되는 경험을 많이 토로해요” (청년 Y3)

“공고문이 막 뜨고 공고문 보면 진짜 엄청 길거든요. 빨간색 볼드체 엄청 많고 그래서 저도 사실 무슨 아 큰일 날 것 같은 큰일 날 것 되게 너무 많아서 그게 오히려 안 와닿는 그런 게 있는데...” (청년 Y7)

청년들에게 주거정책의 이해력을 높이는 것만큼 청년 친화적으로 주거정책을 구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청년들이 금융에 대한 이해와 활용 능력이 떨어지는데 주거 정책을 통해 잘못 대출 기회를 주면 청년들이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빚의 수렁에 빠지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청년들의 주거정책 리터러시를 높이고, 청년들이 주거 정책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청년 친화적으로 구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세보증금 대출 100% 대출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자부담 없어. 근데 그게 전세보증 전세자금 대출하고 똑같아가지고 그 건물주에게 직접 보증금을 은행이나 은행에서 이제 바로 쓰고 그래도 100%니까 자부담 비율이 없어가지고 취약한 청년들이 어쨌든 이용하기 좋고 그래서 그리고 실제로 어쨌든 성공적인 모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진짜 선호하는 모델 중에 하나였거든요.” (청년 Y1)

“집에 있어서 예를 들면 뭐 주거급여 연결해 놨는데 주거급여도 월세 안 내고 생활비로 다 쓰고 이런 경우도 많다 보니까 그래도 특히 근데 큰 돈은 더 그런 리스크가 커서 어쨌든 예를 들면 저희도 보증금을 빌려주는 방식이 아니라 보증금을 천천히 갚을 수 있는 방식으로 하고 보증금을 물어두는 방식으로 설계가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보증금이 큰 돈은 그렇게 좀 현금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정책자금 형태로 전세자금 대출 형태로 진행만 되더라도 그걸 은행에서 뭐가 뭐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은행에서 이 청년의 통장을 그냥 스쳐 지나가게 할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건물주한테 바로 가도록 찍히기만 하고 이렇게 그것만 되더라도...” (청년 A1)

앞서 살펴본 양적 연구에서 1인가구 청년들은 주택 소유보다는 전월세 지원이나 임대주택 공급을 선호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다음 단계로 나가는 청년들은 주거비 과부담으로 다음 단계로의 이행에 어려움을 겪는다. 이 때문에 직접적인 전월세 지원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경제적인 것만 보면은 아닐 수 맞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직장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사회적 네트워크에서 고립되는 거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문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경제적인 부분으로 봐서도 저 같은 경우만 봐도 식비나 월세 이걸로 거의 버는 돈에 거의 다 가 나가니까 모이는 게 없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잠정적으로 계속 취약하게 살아갈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주거가 너무 크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월세 지원 이런 거는 좀 필요하다고는 생각되는 것 같아요.”

1인가구 청년들은 성인 이행기에 있어 다음 단계로의 이행을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는 주거 상황이라는 개념을 적용해볼 수 있다. 청년들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불안정한 주거에서 안정적인 주거로 이동하는 성향이 있다. 부적정 거처에서 임시적이고 단기적인 주거로, 단기적인 주거에서 중장기적인 주거로 이동을 선호한다. 이는 향후 본인이 선호하는 지역이나 크기, 시설까지로 연장될 것이다.

이를 지원해주는 정책은 상향 이동을 직접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고 금융지원을 해주거나, 상향 이동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 등 다양할 수 있다. 청년들의 주거가 더 나은 형태로 상향한다면 1인가구 청년들의 형태도 일종의 임시적 형태일 수 있다. 청년들이 불안정한 주거로 다시 떨어지지 않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런 징검다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센터나 기관이 하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역할은 주거뿐만 아니라 그럼 보통 주거 위기를 둘러싼 다양한 위기 상황들이 같이 있거든 그런 뭐 사채 금융이나 아니면 정신 건강, 경계선을 포함한 이런 것들을 좀 통합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징검다리 역할이 없으면은 저는 그래서 좀 그런 특히 경계선 이슈가 있는 분들이 진입을 못할 거다 라고 좀 우려가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회주택이나 어떤 공공임대주택 모델이 공급된다면은 신용도와 별도로 보장되는 그러니까 무보증금 상태인 청년에 대한 포커싱이 좀 되긴 해야 된다. 지금 예를 들면은 주거 취약계층 전세 임대료 청년들이 주거 상향하려고 했을 때 전세임대 LH 받으면 그때 문제가 크게 보면 한 3개 정도 있는데 하나가 이제 진입이 어렵다 그러니까 주민센터에서 상담을 이렇게 받아야 되고 이런 과정을 혼자서 해야 되는데 그거를 어려워하거나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대기하는데 시간이 한 지금 거의 한 선정되는 데까지 한 8개월 걸리거든요. 서울은 그러니까 3개월 이상 거주한 다음에 8개월이니까 1년 이상을 거기서 3개월, 8개월, 그 다음에 선정된 이후에 또 LH 전세임대 심사 기간 3개월 정도 더 하면은 1년 이상을 고시원에 거주해야지만 이제 전세 임대료 이사를 갈 수 있는데 그 기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중도에 탈락하는 청년들이 많고 그러니까 유지가 안 돼서 세 번째로는 그 청년들이 이제 이사 가려면 200만 원 자부담해야 되거든요. 50만 원에서 200만 원 자부담해야 되는데 아니면 대출을 받거나 대출 프로그램은 있는데 그 대출을 받으려면 근데 노숙을 하면서 버텨왔던 청년들의 경우에 보통 내부제 대출 사기 이런 이슈들이 금융 이슈가 있기 때문에 대출이 대부분 다 거절당하고 근데 그때 이제 지원받을 수 있는 게 서울은 희망 온돌이라는 사업밖에 없거든요. 희망 온돌의 경우에는 또 대상자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보증금이라도 어쨌든 있으면 청년들이 그런 무보증금에 80만원 이런 데 안 가거든요. 그래서 좀 저희는 그래서 아예 저희 사회주택에서 저희 세어하우스는 아예 들어올 때 무보증금으로 들어오면은 매달 10만 원씩 상환해 가지고 보증금 100만 원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계획을 세우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회주택들도 이제 그런 사회주택협회나 이런 데서 기금을 통해서 그렇게 무보증금 상태인 청년들이 우선 들어와서 정착하고 그걸 천천히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데...” (청년 Y1)

다중적 취약성이 있는 1인가구 청년에게는 통합적 지원 체계 구성이 필요하나, 현재는 이러한 구성이 매우 떨어지는 상태로 개선이 필요하다. 일례로 청년센터와 1인 가구 지원 센터, 주거복지센터는 일부의 정보 연계가 되고 있었으나 이것이 청년들에게까지 가는데 있어서는 한계를 보였다. 또한 1인 가구 지원센터는 서울시의 경우에만 설치되어 있었으나 1인 가구 지원센터는 생활 지원 위주에 있었고, 주거복지센터는 주거 지원 위주에 있었다. 주거복지센터는 사실상 취약 주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청년들의 취약성을 개선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한 여자 청년의 사례를 보면 가출을 하여 길거리와 고시원에서 생활을 하면서 주거불안 뿐만 아니라 성인기 이행 자체가 어려워진 경우도 있었다. 이 청년은 청소년기 가출과 청년기 다차원적 빈곤 생활에서 주거복지센터 같은 체계로부터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었고, 이로 인해 주거가 안정되어 직장을 갖고 자립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어릴 적 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하고, 가출하여 서울로 상경하고, 길거리 생활을 하거나 고시원에서 지내다, 고시원 같은 원룸으로, 그보다 나은 반지하로, 그보다 쾌적한 반지하로 계속 이동 중에 있었다. 이 청년은 그래도 자신의 상황이 점차 나아지는 중이라고 하였다.

“(고시원을 개조한 원룸에 들어갔는데) 사람이 살 수가 없었어요. 그냥 벌레도 너무 심하고 그러니까 웬만하면 참겠는데 바퀴벌레랑 항상 거의 같이 생활해야 되고 이러니까 제 손에서 잡아서 해결이 안 되는 그리고 거기는 보증금도 돈도 사실 보증금도 다 반납을 못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상황이 너무 어려워지니까 다행히 저는 길거리 생활을 그때는 이제 다행히 그만하게 됐었고 그래서 그냥 거기서 바로 집을 옮겨주셔가지고 (매입임대 주택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청년 Y2)

하지만 이 청년은 주거에 대한 지원만 받은 것은 아니다. 청소년 기관으로부터 함께 지원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진로나 다른 어려움에 대해 상담할 수 있었다. 그리고 부족한 자원에 대해서는 일부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기관에서 보완을 해 주는 형태로 지원받을 수 있었다. 취약성이 중첩되고 밀집되어 나타날수록 단일한 영역의 지원으로 어려움에서 빠져나오기 어렵다. 통합적으로 지원하거나 다양한 서비스 연계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경제선 지능을 가진 청소년, 청년을 위한 지원 정책도 통합적 제공의 틀에서 살펴보아야 한다. 현장에서 주거취약 청년을 지원하는 청년(Y1)의 경우, 현장에서는 취약성의 문제가 개별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한다.

“경계선 이슈가 저는 그래서 두 개가 되게 긴밀하다고 생각했었는데 경계선 이슈가 있을 걸로 추정되는 분들이 많고 근데 경계선 이슈가 있는 분들의 경우에 어쨌든 장애 등급이 있거나 이런 게 아니니까 주민센터에서도 그거에 대한 고려나 배려를 전혀 안 하고 그냥 경계선 청년들이 공공자원 연계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예를 들면 화를 내거나 이런 식으로 흔히 말하는 악성 민원인처럼 행동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니까 근데 그러면은 이제 뭐 다른 차분하게 상담을 하거나 이게 이게 안 되니까 주민센터에서는 쫓겨나고 그러면 이제 저희한테 와서 주민센터 갔는데도 자기 아무것도 지원 안 된다고 했다 이렇게만 얘기가 돼가지고 또 확인해 보면은 이런 이런 상황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상담해가지고 이제 정리해가지고 중간에서 연결하는 역할을 하면은 그 최초 상담 때는 대상자가 아니라고 했던 분들 대부분이 긴급 복지나 기초생활 보장 대상자로 연결은 되고...” (청년 A1)

“근데 확실히 서울이 아닌 곳에서 혼자 올라왔을 때도 우선은 그러니까 원룸을 구하더라도 우선 고시원을 먼저 구하는 경우도 많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통은 10대 시절부터 어떤 이슈가 이어지면서 탈가정 한 다음에 이제 계속 살 길 찾다가 고시원에서 우선은 쉼터 나와서 고시원부터 먼저 버티고 뭐 이런 경우들도 많아서...”(청년 A1)

부적정 주거에 대한 지원 필요성은 소위 지옥고(지하실, 옥탑방, 고시원)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나타났다. 하지만 지옥고에 거주하는 대상을 지원할 것인지, 지옥고를 조금 더 나은 환경으로 만들어 지원할 것인지에 따른 딜레마는 여전히 존재한다.

“그때 고시원 화재 같은 거 이렇게 예방하려고 뭐 그런 시설 개선 사업도 지원했는데 그렇게 업그레이드 되면은 이제 월세가 3만 원씩 올라가고 이러니까 예를 들면 지원하는 대신에 몇 년간 월세를 동결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조건을 걸면은 또 건물주 고시원 사장님들이 이제 안 받으려고 하고 근데 그렇다고 이제 전면 폐쇄할 거냐 이렇게 하면은 이제 당장 그 청년들이나 뭐 고시원 거주자들이 갈 데가 없어지는 문제 때문에 사실상 폐지도 못하고 빈곤 비즈니스 영역이 좀 특이죠” (청년 A1)

따라서 지옥고와 같은 부정적 주거를 사회적으로 점차 제거하되, 주거 빈곤 청년들이 거주할 수 있는 공공형 주택을 확대하는 방향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1인가구 청년 혹은 1인가구 취약 청년을 지원과 관련해서는 전달체계 문제를 많이 들을 수 있었다. 대다수의 응답자들은 청년 1인가구 관련 정책은 확대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하지만 현재의 전달체계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어 이에 대해 개선을 해야한다는 이야기였다. 이는 아직 청년 1인가구 지원 전달체계가 매우 초기모델로 구성되어 있어서

자원이 부족하고, 인력의 전문성, 프로그램 전문성 및 다양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이다.

청년들은 1인가구 지원센터가 청년 친화적으로 구성되어야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 이야기하였다. 운영시간만 보더라도 열심히 자립을 위해 일을 해야하는 청년 1인가구가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우선 1인 가구 지원센터 자원이 없구요. 예를 들면 주거복지상담센터 만큼의 자원도 없는 상태라서 사실 할 수 있는 게 프로그램 정도. 그러니까 청년들 다들 바쁘고 힘든데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걸 힘들어하고 그 다음에 운영 시간도 지자체마다 다른데 대부분 다 공무원들하고 똑같기 때문에 정작 예를 들면 거기서 돈 받아서 부동산 등의 받으려면은 무직은 또 부동산을 못 구하니까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가 하루 휴가 내고 써야 되는 거고 시간 맞춰서 근데 근데 그런 그것도 동행 서비스 쪽 어쨌든 청년에 특화되지 않고 맞춤이 없고 그분들이 청년을 어떻게 돼야 될지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고 그냥 지역에 마음씨 좋은 부동산 아주머니 아저씨들 모셔다가 이제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다 불편해하고 갈등 생기고 이라고 거기서도 아예 청년은 좀 포기하고 중장년 타겟층으로 하더라고요.” (청년 A1)

“이게 제일 맹점 같아요. 그냥 그분들은 당연히 이게 편하니까 그 시간대 편하니까 하는 건데 1인 가구 정책이 나중에 나온 게 4인 가구 기본 주거 정책 때문에 이게 소외됐던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실 1인 가구 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나 지원 뭐든 그런 것들도 정책들도 정책이라기보다 그분들의 그것도 7시부터 8시 반 약간 이런 식인데 이것도 구투스의 그런 1인 가구 대상이지 그때 수업이 있거나 서비스직 이런 분들한테는 또 소외되는 이런 식으로 우리 주거 문제가 뭐 이런 보편적인 4인 가구 기준으로 되어서 이게 소외받았던 그 양상이랑 같은 걸을 가지고 가고 있지 않나 이 의문도 좀 들었어요.” (청년 A3)

하지만 1인가구를 지원하는 전달체계의 종사자들은 불명확한 지침, 적은 예산, 광역 지자체와 기초 지자체간 일치하지 않는 운영 방향, 자주 변경되는 기관의 정체성 등 여러 운영상의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인가구 지원센터는 조금씩 그 영역을 확대해가고 있으며 새로운 시도를 진행하고 있었다.

“가구 배치나 소품이나 환기나 이렇게 1인 가구분들이 큰 돈 들이지 않고 자기 취향에 맞는 공간을 꾸밀 수 있는 교육들이 하나가 있고요. 하나는 간단한 집 수리. 이렇게 돈 내고 하면 7~8만 원 드는데 본인이 배워서 하면 한 1만 원이면 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집수리 교육 하나랑 이런 집 꾸미는 교육 요것들을 저희가 지금 계속 이제 해오고 있습니다.” (1인가구 및 청년 지원기관 종사자 W3)

“시에서는 공동 프로그램을 저희한테 내려주고 있어요. 상담을 해라, 그 다음에 문화 교실을 진행해라, 그리고 동아리를 해라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도 공모 사업으로 상담 멘토링을 할 기관, 행복 한 밥상을 할 기관, 반찬 사업할 기관 또 뭐 있죠? 되게 여러 가지 있잖아요. 나들이도 있고 어쨌든 그런 식으로 공통적인 거를 내려주고 있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시에서 내려주는 지침대로 하는 건 그대로 똑같이 다 하고 있고요. 지금처럼 이게 집 관련해서 뭘 한다 뭐 한다 이거는 자치구에서 (요청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인가구 및 청년 지원기관 종사자 W4)

1인가구 지원센터는 생활지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나 최근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에 도 역할을 부여받고 있었다. 이는 청년 1인가구 지원의 방향 역시 다양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합적으로 가지고 갈지 혹은 한 부분으로 특화시켜 가지고 가야할지, 그리고 기존의 체계들과 어떠한 차별성과 연계방향을 정해야 할지 등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구청에서는 애초에 청년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1인 가구 지원센터, 1인 가구 커뮤니티 센터를 만들었다 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 사업을 뭘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행정과 센터 실무자들과의 소통하는 과정에서의 초점 잡기가 굉장히 되게 어려웠어요. 그쪽에서 요구 하는 거는 이제 복지관이 해야 되는 어떤 그런 기능성을 요구했고, 우리가 애초에 이제 구청이랑 좀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가보자. 청년의 고독사라 함은 좀 더 예방적인 선제적인 조치를 위해서 지금의 서울시가 하고 있는 어떤 사회적 관계망이라든가 좀 더 대상자를 포괄적으로 보고 접근하는 좀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 라고 제안을 해서 그게 이제 효과적이다. 이 사업의 지속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또 학자들은 그래서 청년 구독사가 예방이 된 거냐, 아니 청년 고독사가 아니라 지역의 고독사가 예방이 된 거냐 중년의 고시원에 사는 남성이 죽고 있는데 너희가 왜 청년 사업을 하나 그때는 맞았는데 지금은 또 틀린 얘기가 되어가고 있고 이게 21년도 22년도 들어서 계속 22년도에 갑자기 19년도 20년도에 잘했던 사업에 대한 평가가 또 안 좋아지기도 하고 왜냐하면 우리는 구청의 부설인데 구청에도 이제 행정 담당자 과장님이 바뀔 때마다 이거에 대한 평가가 그때그때 또 달라지는 거죠.” (1인가구 및 청년 지원기관 종사자 W1)

“저는 1인 가구를 사회적 외로움에서 예방할 수 있는 지식 체계를 만드는데 저희 센터들이 각각의 노하우가 있고 특히 소셜 라인이나 요리 프로그램 중심으로 단순히 무료 급식 형태가 아니라 음식을 같이 먹고 나누면서 이 안에서의 그 지역에 대한 소속감과 이웃에 대한 친근함을 가지게 하는 데 있어서는 저희가 기존에 가지는 전달 체계들 유사한 혹은 더 뛰어난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대표적으로 1인 가구들이 이렇게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주방 시설, 요리를 배울 수 있는 시설들이 대부분 이렇게 저희 센터가 제일 열악한 수준인데도 성동구 내에서도 몇 군데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1인 가구들의 주된 욕구 중 하나인 먹거리나 이제 먹는 문제, 먹는 문화 관련해서 그분들이 이렇게 조직해 나가는 것들은 확실히 뛰어난 퍼포먼스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다 전문적이고

고정적인 요리 강사, 1인 가구의 식문화만을 고민하는 요리 연구가나 어떤 영양, 위생 쪽 인력이 지금 저희가 외부 강사를 지금 연결하는 형태인데 내부 인력으로 이분들이 있을 때 저는 충분히 이제 더 다양한 시너지가 날 수 있다고 보거든요.” (1인가구 및 청년 지원기관 종사자 W3)

청년들의 청년 1인가구 지원기관에 대한 욕구는 생활정보, 주거정보, 그리고 관련 교육 까지 더 다양하였다. 이는 향후 생활지원 서비스와 주거지원 서비스를 결합한 모델을 고려할 때, 서비스의 전문성과 정책 연계의 전문성 등을 함께 고려해야 청년의 눈높이를 맞출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아직 청년 1인가구에 대한 지원정책이 무엇이며, 어떠한 방향이 필요한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그냥 소규모 네트워킹이고 따로 이론적 배경도 없이 진행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제가 제일 회의적인 부분은 1인 가구 지원센터와 청년센터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그림체가 너무 같아요. 1인 가구는 1인 가구에 특화되고 그들 생애 과업이나 이런 걸 좀 이견 일반 대학생도 이렇게 알 수 있는데 왜 그들은 알면서 알겠지만 왜 그림체가 같은지 그게 항상 의문이었고 그리고 연구 보고서에도 나오듯이 그 전문성 자기가 케어해야 될 대상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 좀 낮은 것 같다 이게 항상 의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민간 업체의 맹점이 물론 저도 그런 데에서 일할 것 같긴 한데 근데 팀으로 움직이니까 그 센터장이 직원들을 데리고 다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러니까 계속 고인 상태로 계속 계속 이렇게 이게 문제지 않나 보수 교육이 보수 교육도 받는 데서만 받으니까 문제지 않나 이 생각이...” (청년 A3)

“파견되는 강사의 질이 되게 중요하게 어쨌든 저희도 이제 경제 교육 같은 걸 할 때 10명이 모이면 당연히 10명의 경제 수준이 금융 지식 수준이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교육과정을 아무리 기본 심화로 나눈다 하더라도 기본에서도 차별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내실 때는 이제 교육 커리큘럼을 좀 더 보충하게 잘 구성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것만 된다면 어느 센터든 말씀하신 것처럼 돌아가면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선호도가 꽤 있을 것 같아요” (1인가구 및 청년 지원기관 종사자 W3)

앞으로 청년 1인가구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청년들도 청년 1인가구 관련 정책이 청년 정책에서 하나의 영역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였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청년 전체에 대한 주거복지지원으로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아직 우리가 청년 1인가구 지원에 대한 명확한 답을 내리기는 어렵더라도, 청년의 주거복지 보장을 위해서 청년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정책을 더 정교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런 지원이 늘어난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저는 그중에서도 잘 살든 못살든 어떤 소득 분위와 관계없이 어떤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라는 아까 그 진단적 기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과 관련해서라면은 지원되는 당위성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이제 생활 지원 정책으로 마음 건강이라든가 정신 건강에 대한 부분은 사실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이야 이게 예방적 조치지만 어느 순간에 또 금방 또 고위험군으로 가기도 하고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굉장히 이 불안정성이 너무 제가 체감하는 현장에서는 너무 컸고 이렇게 복지 현장이 아니라 저 개인의 생활에서는 굉장히 자살자들이 많고 제 주변에도 저는 자살의 어떤 생존자들 자살의 생존자들이나 아니면 자살 시도를 경험한 사람이라든가 이런 주변에 친구들이 너무 많아서 1년에 한 번은 늘 장례식에 가요. 그러니까 그만큼 청년 세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렵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하기 때문에 이런 지원은 뭐가 됐든 늘어나면 당연히 좋다 하지만 이게 정책의 목표가 분명히 있고 예산이 무한정 늘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좀 저는 물론 이제 국토부에서 어떤 정신 건강을 지원하지는 않지만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더 강조했어요.” (1인가구 및 청년 지원기관 종사자 W1)

“청년들은 이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청년이 앞으로 지금 비혼 인구 늘어나는 과정에서 청년 1인 가구, 중년 1인 가구 되고 5년 1인 가구 될 텐데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우리 발달 법이 어떤 식으로 돼 있는지 아니면 발달과 어떤 식으로 미충족됐을 때 어떤 식으로 넘어가고 어떤 식으로 스트레스를 받는지 좀 전반적인 이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네트워킹만 한다. 단순히 그렇게 필요한 공부 지원한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건 좀 앞뒤가 다른 것 같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주거 관련된 정책들도 보면은 나중에 정책 지원단이 하는 의견이 다 그냥 결국에 눈 가리고 왕왕 같다. 앞에 있는 것만 이렇게 진화한다 이런 여론이 팽창해요. 이때 전세 사기 급하니까 지금 이렇게 TF 이렇게 되고 연구되고 이런 식으로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청년 A3)

요컨대, 일선의 전달 체계에서 이러한 기능적인 통합이나 연계들이 같이 나타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주거 정보의 전달성과 관계 하여 많은 청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주거 정보를 이해하는 것은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작업이었고 이것은 주거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는 청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한 현장 실무자는 이를 암호 해독 수준이라 이야기하기도 하였는데 주거 정보를 취합해서 자신의 자립을 위하여 나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작업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주로 부모의 지원을 통해 정책에 대한 이해와 다음 단계로의 자산 형성을 촉진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는데, 이것이 주거 안정에 있어서의 자산 격차 계층 간 격차를 유인하는지 이끄는지에 대해서 일부 검토가 필요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때문에 국토교통부에서는 마이홈과 같은 체계를 마련하고 있는데 마이홈 체계가 청년 전달체계와 같이 결합되는 데에 있어서 아직까지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인다. 주거 정보에 대한 지원은

단순히 어떻게 청약할 수 있는지와 같은 주거 정보를 제공하는 거에서 더 나아가 향후에 어떻게 하면 주거에 주거비 마련에 도움이 되는 금융 형성과 금융 지원이나 형성 등과 같은 부분에 있어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도 함께 전달돼야 될 필요가 있을 것이고, 이는 주거 주거에 대한 부분은 미리부터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성인 초반기에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대입하면 중장기적인 자산 형성의 효과 그리고 이것으로 인한 다음 단계로의 이행의 순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4) 1인가구 청년에 대한 양적연구 및 질적연구의 시사점

1인가구 청년은 이질적인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1인가구 청년은 공통적으로 단독 생활에서 오는 생활부담과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었으나, 사회경제적인 불안정이 높은 1인가구 청년은 낙후된 주거에서 오는 어려움, 불안정한 주거에서 오는 어려움, 심리정서적 어려움, 주거비 과부담과 상향 이동에 대한 준비 어려움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었다. 즉, 1인가구 청년 중 중첩된 취약성에 노출된 청년들은 현재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성인 이행기에서 어려움을 함께 경험할 수 있어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1인가구 청년들은 청년 주거 정책에 대한 이해가 어렵고, 주거 관련 어려움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받기 어렵다고 토로하였다.

1인가구 청년에 대한 정책은 주거지원정책과 생활지원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었는데, 국토교통부의 주거지원정책은 1인가구 자체보다 다른 취약성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았고 결과적으로 1인가구 청년이 많이 포괄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있었다. 1인가구 청년이 이질적이므로 1인가구 청년을 명시적으로 내세우기보다는 1인가구 청년 중 취약성이 두드러질 수 있는 부정적 거처에 대한 지원, 1인가구 청년 밀집 지역에 대한 공공임대 지원, 일자리와 연계된 주거 지원을 확대하는 전략이 더 적절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와 자치단체의 생활지원정책은 생활상의 불편함이나 사회적 관계 단절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경우가 많았고 1인가구 지원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는 1인가구에 대해 보다 분명한 정책 대상을 삼고 있는 특징이 있었으나 상시적 사업보다는 기간이 한정된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되는 한계가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틀이 필요하다. 하나는 주거 최저 기준선을 설정하고, 이에 미달하는 주거에 대한 적극적 지원방향을 설정하는 것이다. 부정적 거처에 대한 상향

이동 지원, 임대료 및 공과금, 관리비 연체에 대한 위기 지원, 갑작스러운 퇴거 가구에 대한 임시 거처 지원 등 1인가구 취약 청년에 대한 최저 기준선 보장 전략을 설정하고, 이를 청년의 주거권 보장 전략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청년 친화적인 주거정책을 구성하고, 이를 지원해주는 생활 밀착형 전달체계가 필요하다. 현재 주거복지센터와 1인가구 지원센터 같은 주거 지원, 생활 지원 전달체계는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었다. 수도권 1인가구 청년 지원에 대한 수요가 높은 상황이기도 하나, 전국적인 1인가구 청년 지원, 더 나아가 전국적인 청년 주거에 관한 지원의 형태로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전달체계와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향후 적절한 모형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1인가구 청년 관련 정책 동향

1) 1인가구 청년 관련 법적 근거 및 정책 동향

(1) 법정정책적 근거: 청년기본법 및 관련법

1인 가구 청년에 대한 정책은 2020년 청년기본법 제정 이후 국가 차원에서 검토되기 시작하였는데 국토교통부에서는 청년에 대한 주택공급과 주거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추어 정책을 추진 중이다. 2020년 이후 여성가족부에서도 1인가구 청년에 대한 정책을 심리 상담이나 정서적인 지원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다.

1인 가구 청년에 대한 법률은 현재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현행 청년 관련 법률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다. 「청년기본법」 제3조 정의에서 취약계층 청년을 규정하고 있는데 고용·교육·복지 등의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으로만 되어 있어 1인가구 청년이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4).

국토교통부 소관의 법률 중에서 「주거기본법」은 제3조에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서 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및 주거비의 우선지원 대상으로 장애인, 고령자, 저소득층, 신혼부부, 지원대상아동과 더불어 청년층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주거 공급 및 주거비 지원 이외에 별도로 청년층에 대해서 규정하는 조항이 없는 상태이다.

동시에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제2조 정의에서 65세 이상이나 장애인인 경우 주거 약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대통령에서 국가유공자로 상이등급이 1급부터 7급인 경우, 518 민주화 유공자로 신체장애등급이 1급부터 14급인 경우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경도 장애 이상인 경우 등을 포함하고 있다. 대체로 장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주거약자로 정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보건복지부 소관 법률 중에 주거 관련하여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다. 이 법률에 근거하여 사회보장위원회에서는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해 오고 있는데 2016년에 처음 수립되었으며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제2차 계획이 수립되어 추진 중이다(관계부처 합동, 2021). 노숙인 종합계획에서 청년과 관련된 부분은 가정 밖 청소년의 노숙 위험 조기 발견을 위한 아웃리치 강화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노숙인 실태조사는 5년마다 조사가 진행 중인데 2021년 기준으로 40세 미만의 비중이 쪽방 주민을 포함하여 4.7%로 나타나고 있다(임덕영, 이태진, 하은솔, 이병재, 남윤재, 남기철, 정원오, 민소영, 신원우, 송아영, 이기재, 2021).

22대 국회에서 취약이나 위기 청년에 대한 법안 현황을 살펴보면, 7개의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었다. 1인가구를 명시적으로 취약이나 위기 청년에 포함하여 발의된 법안은 없는 상태이나 김미애 의원 대표발의 법안에서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발굴에 대한 조항에 1인가구 여부가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서 1인가구 청년은 “가족과 떨어져 고시원, 원룸 등에서 혼자 생활하는 청년”으로 규정되어 있다.

대부분의 법안은 최근 핵심적인 정책 대상으로 부상하고 있는 자립준비 청년과 고립은둔 청년, 그리고 가족돌봄 청년(young carer)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 내용을 담고 있는데 기타로 취약이나 위기 청년을 규정하는 조항을 담고 있기도 하다.

표 II-80. 취약 및 위기 청년 관련 지원 법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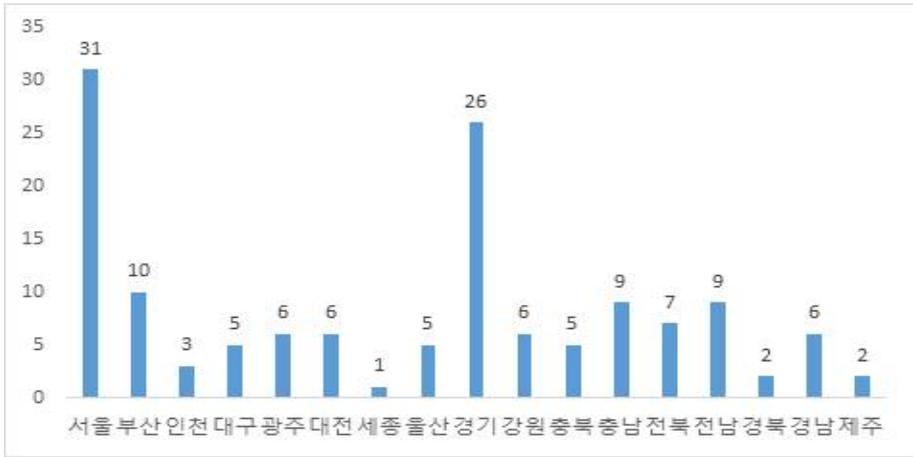
법안명 (대표발의자/발의연월일)	주거 관련 내용
가족돌봄이동·청년 지원법안 (강선우/2025. 12. 30.)	제19조(주거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원대상자의 자립 지원을 위해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및 입주자격 부여, 임대보증금 지원 등 주거 관련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안 (조은희/2024. 11. 11.)	제15조(주거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 청년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위하여 임대주택 공급, 임대료 지원, 주거환경 개선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돌봄 이동·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정춘생/2024. 11. 11.)	제16조(주거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 이동·청소년·청년과 돌봄 대상자가 쾌적한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의 공급 및 입주자격 부여, 임대보증금 지원, 주거시설의 설치·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위기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 (김미애/2024. 10. 8.)	제16조(고립·은둔청년 선제 발굴)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립·은둔청년 선제 발굴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관리·보유할 수 있다. 1. 「고용보험법」 제37조에 따른 실업급여 이력 2. 최근 6개월 간 「국민건강보험법」에 건강보험료 납부기록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대상자 중 가족과 떨어져 고시원, 원룸 등에서 혼자 생활하는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에 해당하는 사람의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자료 정보
위기청년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조승환/2024. 8. 22.)	제16조(주거시설의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족돌봄청년과 돌봄대상가족이 거주할 주거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거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취약청년 자립지원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 (김성원/2024. 8. 19.)	제9조(취약청년 자립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청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1.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2024). <https://likms.assembly.go.kr>에서 2024년 11월 20일 인출.

위기청년 지원 내용 중에는 주거지원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조은희 의원 대표 발의 법안에서는 주거지원과 관련하여 “임대주택 공급, 임대료 지원, 주거환경 개선” 등 세부적인 지원 사항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다. 위기 청년에 대해서 별도의 주거 공간을 마련하여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된 법안도 있는데 조승환 의원 대표 발의 법안에서는 가족돌봄 청년과 돌봄 대상 가족이 거주할 수 있는 시설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강선우, 정춘생, 서영석 의원 대표 발의 법안에서는 가족돌봄 청년 및 가족에 대한 거주 시설 설치와 더불어 임대주택 공급 및 임대보증금 등 주거지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처럼 별도의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내용은 가정밖 청소년이나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에 청소년 자립지원관을 비롯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등이 제공되고 있다. 현재 청년 복지 관련 법안들은 아동이나 청소년을 포함해 제시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연령 중복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아동, 청소년, 청년에 대한 통합 법안 발의가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4년 11월 현재 1인가구 관련 지자체 조례는 140개에 이르고 있다(법제처 법령정보센터, 2024). 서울특별시가 광역과 기초를 합쳐 31개로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1인가구 조례를 제정하였고 이어서 경기도가 26개, 부산광역시가 10개 등이었다. 이것은 중앙정부에 비해서 지자체가 1인 가구에 대한 정책사업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4). '주거기본법(<https://www.law.go.kr>)' 에서 2024년 11월 20일 인출.

그림 II-14. 광역 및 기초 지자체 1인가구 지원 조례 제정 현황(2024년)

1인가구 청년과 관련된 조례는 전국 140개 조례 중에서 대구광역시 달성군이 유일하다. 달성군에서는 청년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조례를 2023년 처음 제정하였다. 청년 1인가구에 대한 사업은 조례에 제시된 사업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군수는 청년 1인가구 대상 사업으로 범죄예방 등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 주거, 문화, 여가 생활 지원사업, 사회관계망 형성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 건강 및 식생활 교육 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2) 중앙정부 및 지자체 정책 동향: 주거지원과 생활지원

이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1인가구 청년 대상 사업을 살펴보고자 한다. 1인가구 청년 대상 사업은 주로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하는 주거지원과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하는 생활지원 사업이 있다. 주거지원은 주거에 대한 직접적인 공급, 금융, 환경 개선 등을 의미하고, 생활지원은 생활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는 주거지원과 생활지원이 함께 제공되는 경우도 있으나 통합적인 지원체계는 미발달 되어 있다.

여기서는 1인가구 정책을 유목화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주거지원과 생활지원 체계를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이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II-81. 중앙 및 지자체의 1인 가구 지원 현황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주거 지원	공급	- 고시원·쪽방·반지하 등 거주청년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사업(국토부) - 청년 주택 공급 사업(국토부)	- 1인가구 주거공급사업(서울, 경기, 경북, 경남 등) - 서울형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사업(서울)
	금융	- 고시원 등 거주청년 이주비용 패키지 지원사업(국토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국토부) - 청년 전월세 대출 지원 사업(국토부)	-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서울, 인천, 세종, 경기, 충남, 전남, 경북, 울산 등) - 청년 1인가구 이사지원(경기)
	기타	- 불법건축물 감독관 운영(국토부) - 대학가 및 원룸촌 부동산 허위매물 등 수시모니터링 사업(국토부)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국토부)	- 1인가구 주거 계약 지원(서울, 광주) - 1인가구 주택 보수 및 수리(서울, 경남)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대구)
생활 지원	편의 제공	- 청년 1인가구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 사업(여성부)	- 1인가구 생활키트(서울, 인천, 광주, 경기) - 1인가구 안심장비 지원(서울, - 1인가구 건강지원(서울, 경기, 울산, 전북) - 1인가구 안전교육(서울,
	사회 참여		- 1인 가구 사회적 관계 지원(서울, 부산, 울산, 충남, 경남)
	정보 제공	- 주거복지센터(국토부)	- 주거안심종합센터 및 주거상담소(서울)

① 국토교통부의 청년 대상 주거지원 정책: 1인가구 청년 지원을 중심으로

국토교통부는 주택토지실 주거복지정책관 내에 청년주거정책과를 설치하여 청년 주거 지원 정책을 총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정책은 주택공급정책과 주거비 지원 정책, 주거 환경 개선 정책으로 나누어진다. 주택공급정책과 주거환경 개선 정책은 청년 중 해당 정책의 기준이 되는 청년을 우선 지원하는 정책이다.

표 II-82. 국토교통부의 청년 주거지원 정책 목록

구분		
주택공급	공공분양 (뉴·홈)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민간분양	특별공급
	공공임대	행복주택
		전세임대
		매입임대
		통합공공임대
		청년특화 임대주택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금융지원	주택 구입대출	내집마련 디딤돌
	전세대출	버팀목
		청년전용 버팀목
		중소기업 취업청년
	청약통장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월세+보증금 대출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	
주거비지원	월세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주거급여 분리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전세보증반환 보험료 할인	
	전세보증반환 보험료 지원	
기타	공공임대 희망상가	

출처: 국토교통부 내부자료

국토교통부의 정책은 명시적으로 1인가구 청년만 선별적으로 지원하지는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제시하는 주택공급(공공분양, 민간분양, 공공임대,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금융지원(주택 구입대출, 전세대출, 청약통장, 월세 및 보증금 대출), 주거비 지원(월세 지원, 주거급여 분리, 전세보증반환 보험료 할인 및 지원) 등에서 자격기준으로 1인가구를 명시한 정책은 없었다. 예를 들어,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우선공급 입주가격 및 입주자 선정 방법을 보면, 청년의 자격기준은 '혼인 중이 아닐 것'과 같이 미혼 가구를 포함하고 있었다.⁹⁾ 이는 명시적인 1인가구 청년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있지는 않으나, 실질적인 수혜자 중 1인가구 청년이 상당히 포함될 수 있는 구조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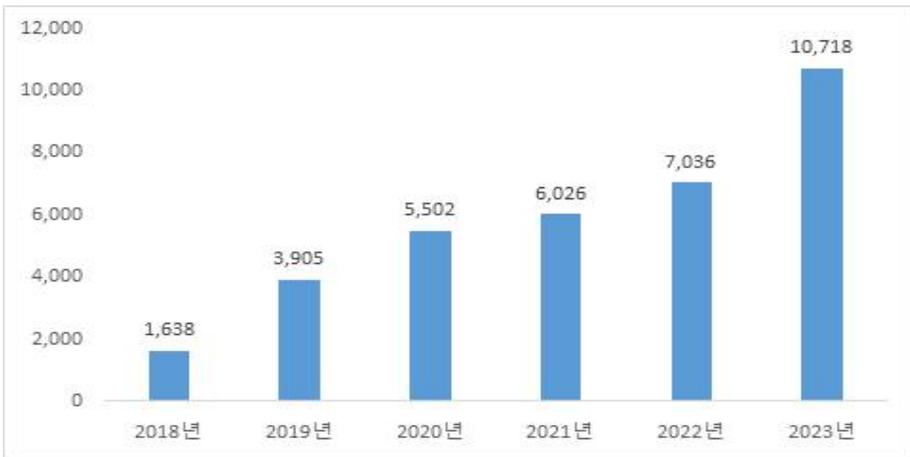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우선공급 입주가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중 청년 자격
<p>무주택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p> <p>가. 공급 신청자(세대원이 있는 세대의 세대주인 경우에는 해당 세대를 말한다)의 월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퍼센트(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명인 경우에는 110퍼센트로 한다) 이하일 것</p> <p>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p> <p>(1)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일 것</p> <p>(2)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 또는 가정위탁이 종료 예정이거나 퇴소 또는 종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p> <p>(3)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에서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청소년쉼터를 2년 이상 이용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p> <p>다. 혼인 중이 아닐 것</p>

여기서는 국토교통부의 청년 주거지원 정책 중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사업,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주비용 패키지 지원사업, 청년 대상 선택형 공공 분양주택 공급 사업, 청년 대상 공공임대주택 공급 사업, 공공지원 민간임대 방식 청년 대상 공공임대주택 공급 사업, 매입임대 방식 청년 대상 공적임대주택 공급 사업 등을 간단히 정리하였다.

1인가구 청년에 대해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은 고시원·쪽방·반지하 등 거주청년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사업과 고시원 등 비정상거처 거주청년 이주비용 패키지 지원사업

9)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지원에 관한 주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NH)가 운영하는 마이홈(MYHOME.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음.

이 있다(관계부처 합동, 2024).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이하(1인가구 기준)로 무주택, 영구임대주택의 입주대상 자산기준 충족한 경우에 지원, 고시원·쪽방 등 열악한 환경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자에 대하여 전용 85㎡ 이하 공공임대주택 우선해서 공급하는 사업이다. 2018년에 처음 시행되었는데 우선 공급을 받은 청년은 1,638명이었고 2019년 3,905명, 2020년 5,502명, 2021년 6,026명, 2022년 7,036명에 이어 2023년에 10,718명이 지원을 받았다.



출처: 관계부처 합동 (2024). 2024년 제1차 청년정책기본계획 시행계획(중앙행정기관).

그림 II-15. 비주택거주 청년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추이(호, 2018-2023)

청년 이주비용 패키지 지원은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1인 가구 기준)로 무주택, 영구임대주택의 입주대상 자산기준 충족한 경우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시원·쪽방 등 열악한 환경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경우에 공공임대주택 이주시 이주비용을 지원하는데, 2023년부터 추진되었고 이사비 및 생필품 비용으로 40만 원을 7,882명에게 지원하였다.

이어서 1인 가구를 포함해서 청년 전반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주택 공급사업을 보면, 총 6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먼저 청년 대상 나눔형 공공 분양주택 공급 사업은 무주택 청년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되는 나눔형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23년부터 새로 시작되었으며, 무주택자 부담 능력을 고려하여 시세 70% 이하로

공급하는데, 분양가의 최대 80%까지 장기 주택담보대출(mortgage)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19~39세로 청년으로 전년도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 140% 이하이다.

청년 대상 선택형 공공 분양주택 공급 사업은 무주택 청년 등에게 일정기간(6년) 임대료 거주 후 분양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선택형 주택 신규 공급 사업이다. 이 사업은 시세대비 낮은 비용으로 6년간 임대거주 후에 저렴한 분양가로 내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며, 분양가의 최대 80%까지 장기 모기지도 지원한다. 이 역시 지원 대상은 19~39세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40% 이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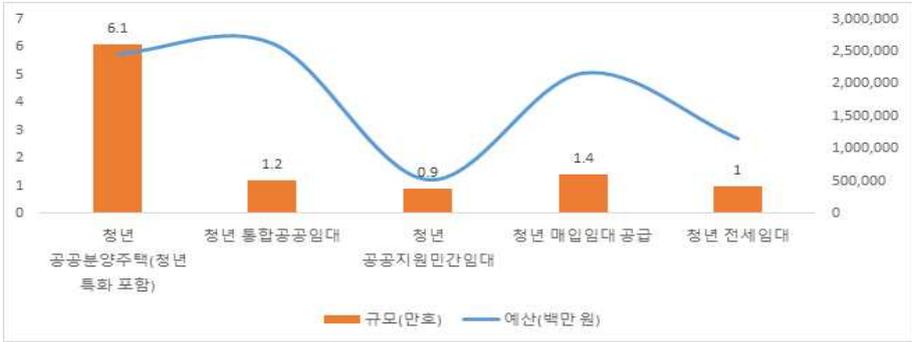
이어서 청년 대상 공공임대주택 공급 사업은 공공주택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지자체 등이 직접 건설하여, 무주택 청년 등에게 소득에 연계한 임대주택을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18~39세로 소득 기준은 일반공급은 중위소득 150% 이하이며, 특별공급은 중위소득 100% 이하이다.

다음으로 공공지원 민간임대 방식 청년 대상 공공임대주택 공급 사업은 공공지원 민간 임대 방식의 특별공급으로 2018년부터 2025년까지 총 27.8만 호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공적임대주택 중 19~39세로 월 평균 소득 120% 이하의 무주택 청년 대상을 대상으로 총 10만호를 공급한다.

매입임대 방식 청년 대상 공적임대주택 공급 사업은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주택사업자가 도심 내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관광호텔 등 기존주택 매입 후 개·보수하여 저소득층 청년층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19~39세 청년으로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로 대학생, 취업준비생,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최근 출산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 등이다.

마지막으로 전세임대 방식 청년 대상 공적임대주택 공급 사업은 입주대상자가 원하는 전세주택을 물색해 오면 공공주택사업자가 해당 주택을 임차하여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19~39세 청년으로 대학생, 취업준비생, 예비 신혼부부, 최근 출산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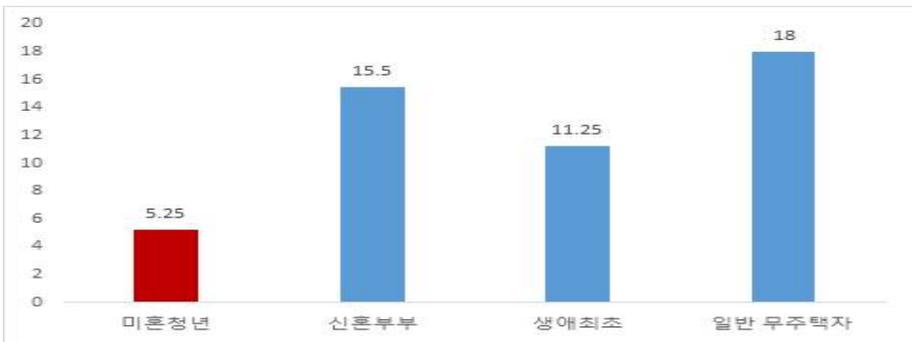
각 유형별로 공급 규모나 예산을 보면, 청년 특화를 포함해 청년 공공임대주택 공급사업이 6.1만호 공급으로 가장 많고 예산은 청년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 사업이 2,617,429백만 원으로 가장 컸다.



출처: 관계부처 합동 (2024). 2024년 제1차 청년정책기본계획 시행계획(중앙행정기관).

그림 II-16. 청년 공공주택 유형별 공급 규모 및 예산규모(만호, 백만 원,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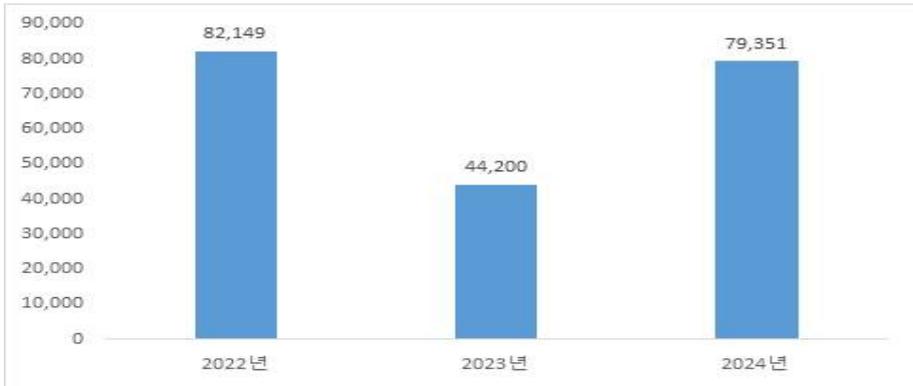
각 유형 중에서 1인가구 청년이 어느 정도인지는 가늠하기 어렵다. 다만 미혼 청년이 1인가구일 가능성이 높는데 대상별 공공분야 공급계획에서 2027년까지 미혼청년이 5.25만 호로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다만, 이전 연도와 비교해 많이 증가한 수치이다. 공공분야 주택공급에서 2027년까지 가장 많이 공급받는 대상은 일반 무주택자로 18만 호이며 이어서 신혼부부가 15.5만호,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가 11.25만호였다. 1인가구 중에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도 상당수 포함될 것으로 보여서 1인가구 중 주택을 공급받는 규모는 좀 더 될 것으로 보인다.



출처: 관계부처 합동 (2024). 2024년 제1차 청년정책기본계획 시행계획(중앙행정기관).

그림 II-17. 대상별 공공분야 공급계획(만 호, 2023-2027)

이어서 1인 가구를 포함해 청년 전반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주거비 지원정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월 최대 20만원의 임차료를 최대 12개월까지 생애 한 번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2년에 처음 도입되었고 기간을 연장해 2026년까지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출처: 관계부처 합동 (2024). 2024년 제1차 청년정책기본계획 시행계획(중앙행정기관).

그림 II-18. 청년 월세 한시 지원사업 예산규모(백만 원, 2022~2024)

지원 대상은 19세~34세 청년으로 부모로부터 독립해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으로 본인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기준으로 100% 이하이다. 지원 대상이 매우 협소한 편인데 소득 기준 외에 지원 대상이 되는 보증금과 월세 기준이 각각 5,000만 원과 70만 원 이하였다. 2023년에 예산 불용이 크게 발생하였고 2024년 지원 대상 기준 완화로 보증금과 월세 기준을 폐지하였다. 지원기간도 2024년 3월부터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조치로 인해 2024년에는 월세 한시지원사업 예산이 대부분 소진될 예정이다.

이어서 청년 전·월세 대출 지원 사업이 있다. 이 사업은 청년층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청년전용 전월세자금 보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19~34세로 부부합산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이고, 임차보증금이 수도권외의 경우 7억 원, 지방의 경우 5억 원 이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무주택 세대주이다. 전세의 경우 최대 2억 원까지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월세의 경우 소득과 무관하게 최대 1,200만원 이내에서 희망하는 금액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1인 가구를 포함해 청년 전반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주거환경 개선 정책을 추진 중이다. 먼저 2020년 청년정책기본계획에서 새롭게 다루어졌던 사업이 불법 건축물 감독관 운영이다. 이 사업은 대학이나 역세권 지역에서 방 쪼개기로 불리는 불법대수선 등에 대해 집중단속을 불법건축물 감독관을 통해 시행하는 것으로 2021년부터 추진되었다. 만약 불법대수선이 적발될 경우 이를 통해 얻은 이익을 환수하고 현장조사 거부 시에 과태료를 물게 하는 등 지자체의 행정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대학가 및 원룸촌 부동산 허위매물 등 수시모니터링 사업도 추진 중이다. 2020년 8월부터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매물의 허위·과장 광고를 금지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모니터링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7~8월에 대학가 및 학원가 등을 중심으로 5,538건의 광고를 모니터링하여 291건의 위반 의심 광고를 적발하였고, 규정 위반 의심광고에 대해 과태료 부과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시정을 요구하였다.

다음으로 국토교통부의 주거전달체계는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토교통부는 「주거기본법」에 근거하여 주거복지센터를 운영 중에 있다. 2024년 말 현재 전국 42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지자체의 주거복지센터를 포함할 경우 59개소로 늘어난다. 주로 서울은 주거안심종합센터라는 명칭으로 운영 중이고, 타지역은 주거복지센터로 운영 중에 있다.

「주거기본법」 주거복지센터 관련 조항

제22조(주거복지센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거복지센터를 둘 수 있다.

1. 주거복지 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
2. 제20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주거 관련 조사 지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복지센터의 설치·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 전문성과 조직·인력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거기본법(<https://www.law.go.kr>)' 에서 2024년 11월 20일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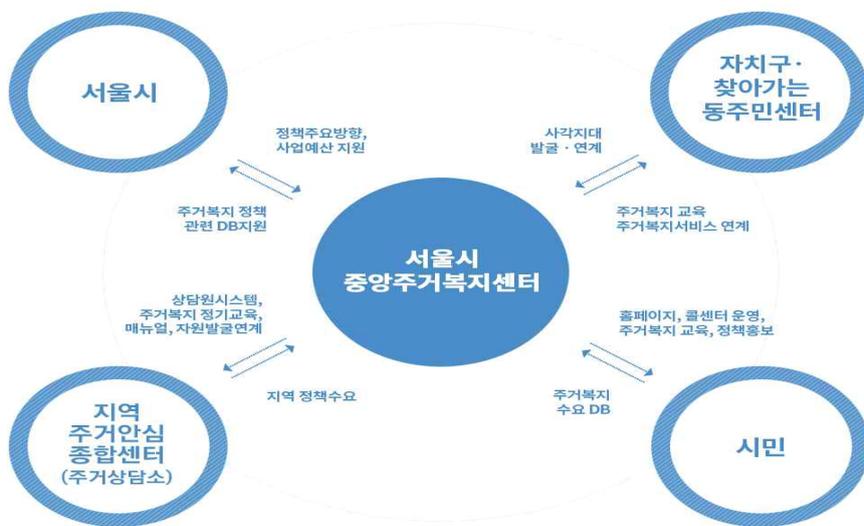
주거복지센터의 설치 규정은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하거나, 해당 시·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로 인해 주거복지센터는 서울시에는 광역과 기초단위에 모두 설치되어 있으나, 다른 지역의 설치는 미진한 상황이다.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으로 범위를 확대할 경우, 수도권에 70% 이상의 주거복지센터가 설치되어 있어 전달체계의 편중이 나타났다.

「주거기본법 시행령」 주거복지센터 관련 조항
<p>제14조(주거복지센터) ① 법 제2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임대주택 등의 입주, 운영, 관리 등과 관련한 정보 제공 2. 주거복지 관련 기관, 단체의 연계 지원 3. 주택개조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주거복지 관련 제도에 대한 홍보 5. 그 밖에 주거복지와 관련된 사항 <p>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주거복지센터의 설치·운영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한다.</p> <p>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주거복지센터의 설치·운영을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해당 시·도,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p> <p>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p>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거기본법(<https://www.law.go.kr>)' 에서 2024년 11월 20일 인출.

서울시의 경우 지자체 조례인 「서울특별시 주거기본조례」 제21조에 근거하여 주거복지센터 운영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며, 광역 및 자지구별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다. 서울시의 광역센터는 ‘서울시 중앙주거복지센터’이며, 기초센터는 ‘지역주거안심종합센터(주거상담소)’로 명명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중앙주거복지센터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서 위탁을 받아 운영 중이고, 기초지자체의 경우 서울주택도시공사와 민간기관이 나누어 운영 중에 있다.

역할과 기능



출처: 서울주거상담 홈페이지 <https://www.seoulhousing.kr/html/0601002.do>에서 2024년 12월 20일 인출

그림 II-19. 서울시 중앙주거복지센터 운영 체계도

주거복지센터는 주거안심종합센터(주거상담소)의 역량 강화, 주거복지서비스 체계 정리, 주거복지 윈스탑 상담서비스 제공 등의 기능을 한다. 이 기관 역시 청년 1인가구 특화 전달체계로 볼 수는 없으나, 청년 1인가구가 주거에 관한 지원이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주거복지센터나 주거안심종합센터가 전체 계층을 포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빈곤층 등 주거취약계층에 더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청년센터나 1인가구 지원센터 등 청년전달체계와의 연계가 낮은 것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운영하는 마이홈센터가 있으며, 2024년 현재 61개소가 전국에 운영 중에 있다. 마이홈센터 역시 주민들의 주거복지를 위해 운영되고 있으나 주거복지센터가 「주거기본법」에 근거하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에 비해, 마이홈센터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윈스탑 주거지원 안내 시스템인 것에 차이가 있다.¹⁰⁾

10) 지자체별 마이홈센터 명단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홈페이지 참고 <https://www.lh.or.kr/menu.es?mid=a10708030000>에서 2024년 8월 14일 인출.

표 II-83. 중앙·지자체·민간의 주거복지 전달체계 목록

No.	운영범위	지역명	센터명	운영법인	운영방식	관련조례
1	광역	서울특별시	서울시 중앙주거복지센터	서울주택도시공사	위탁	서울특별시 주거기본조례
2	기초	서울 강남	강남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	서울주택도시공사(사)해냄복지회	위탁	서울특별시 주거기본조례
3	기초	서울 강동	강동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	서울주택도시공사	위탁	서울특별시 주거기본조례
4	기초	서울 강북	강북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	서울주택도시공사(사)강북주거복지센터	위탁	서울특별시 주거기본조례
5	기초	서울 강서	강서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	서울주택도시공사(사)함께하는나눔과이음	위탁	서울특별시 주거기본조례
6	기초	서울 관악	관악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	서울주택도시공사((사)관악주민연대)	위탁	서울특별시 주거기본조례
7	기초	서울 광진	광진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	서울주택도시공사(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	위탁	서울특별시 주거기본조례
8	기초	서울 구로	구로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	서울주택도시공사(사)나눔은희망과행복	위탁	서울특별시 주거기본조례
9	기초	서울 금천	금천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	서울주택도시공사(사)한국주거복지협회	위탁	서울특별시 주거기본조례
10	기초	서울 노원	노원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	서울주택도시공사((사)나는 청소년)	위탁	서울특별시 주거기본조례
11	기초	서울 도봉	도봉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	서울주택도시공사	위탁	서울특별시 주거기본조례
12	기초	서울 동대문	동대문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	서울주택도시공사	위탁	서울특별시 주거기본조례
13	기초	서울 동작	동작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주거복지연대	위탁	서울특별시 주거기본조례
14	기초	서울 마포	마포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	서울주택도시공사(사)한국장애인리빙생활센터	위탁	서울특별시 주거기본조례
15	기초	서울 서대문	서대문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	서울주택도시공사(사)마을과사람	위탁	서울특별시 주거기본조례
16	기초	서울 서초	서초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	서울주택도시공사	위탁	서울특별시 주거기본조례
17	기초	서울 성동	성동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	서울주택도시공사	위탁	서울특별시 주거기본조례
18	기초	서울 성북	성북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	서울주택도시공사(사)나눔과미래	위탁	서울특별시 주거기본조례

19	기초	서울 송파	송파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위례)	위탁	서울특별시 주거기본조례
20	기초	서울 양천	양천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	서울주택도시공사	위탁	서울특별시 주거기본조례
21	기초	서울 영등포	영등포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	서울주택도시공사(사)한국장애인직업생활센터	위탁	서울특별시 주거기본조례
22	기초	서울 용산	용산주거안심종합센터	서울주택도시공사	위탁	서울특별시 주거기본조례
23	기초	서울 은평	은평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	서울주택도시공사(사)마을과사람)	위탁	서울특별시 주거기본조례
24	기초	서울 종로	종로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	서울주택도시공사(사) 나눔과미래)	위탁	서울특별시 주거기본조례
25	기초	서울 중구	중구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	서울주택도시공사	위탁	서울특별시 주거기본조례
26	기초	서울 중랑	중랑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	서울주택도시공사	위탁	서울특별시 주거기본조례
27	광역	경기도	경기도 주거복지센터	경기주택도시공사	위탁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28	기초	경기 시흥	시흥시주거복지센터	사회적협동조합 시흥주거복지센터	위탁	시흥시 주거복지기본조례
29	기초	경기 수원	수원시주거복지센터	(재)수원시도시재단	출자기관	수원시 주거복지 조례
30	기초	경기 부천	부천시주거복지센터	부천도시공사	공설 운영	부천시 주거복지지원조례
31	기초	경기 고양	고양시주거복지센터	고양시청	직영	고양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32	기초	경기 광주	광주시주거복지센터	광주시청	직영	광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33	기초	경기 성남	성남시주거복지센터	성남시청	직영	성남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34	기초	경기 광명	광명시주거복지센터	광명시청	직영	광명시 주거복지 지원조례
35	기초	경기 안양	안양시주거복지센터	안양시청	직영	안양시 주거복지 지원조례
36	기초	경기 양주	양주시주거복지센터	양주시청	직영	양주시 주거복지 지원조례
37	기초	경기 안성	안성시주거복지센터	안성시청	직영	안성시 주거복지 지원조례
38	기초	경기 여주	여주공공주거복지센터	여주시청	직영	여주시 주거복지 기본조례
39	기초	경기 이천	이천시주거복지센터	이천시청	직영	이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40	기초	경기 용인	용인시주거복지센터	용인시청	직영	용인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41	기초	경기 남양주	남양주시주거복지센터	남양주시청	직영	남양주 주거복지 지원 조례
42	기초	경기 동두천	동두천시주거복지센터	동두천시청	직영	동두천시주거복지 지원 조례
43	기초	경기 하남	하남시주거복지센터	하남시청	직영	하남시 주거 기본 조례
44	기초	경기 파주	파주시주거복지센터	파주시청	직영	파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45	기초	경기 화성	화성시주거복지센터	화성시청	직영	화성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46	기초	경기 평택	평택시주거복지센터	평택시청		
47	광역	대구	대구광역시주거복지센터	대구도시개발공사(사)자원봉사능력개발원	위탁	대구광역시 주거기본 조례
48	기초	달서구	달서구주거복지센터	(사)자원봉사능력개발원	위탁	대구광역시 달서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
49	기초	전북 전주	전주시주거복지센터	(사)전북주거복지센터	위탁	전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50	기초	충남 천안	천안시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	사)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	위탁	천안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51	광역	세종	세종시종합주거복지센터	사회복지법인 세종중앙	위탁	세종시 주거기본조례
52	광역	인천	인천광역시 광역주거복지센터	인천도시공사	위탁	인천광역시 주거복지기본조례
53	기초	미추홀구	미추홀구 주거복지센터	인천시 미추홀구청	직영	인천시 미추홀구 주거복지기본조례
54	광역	청주	청주시주거복지센터	충북주거복지 사회적협동조합	위탁	청주시주거복지조례
55	광역	광주	광주광역시 종합주거복지센터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위탁	광주광역시 주거기본조례
56	권역별	부산	부산 동부주거복지센터	부산도시공사	위탁	부산광역시 주거기본조례
57	권역별	부산	부산 서부주거복지센터	부산도시공사	위탁	부산광역시 주거기본조례
58	권역별	서귀포	서귀포주거복지센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위탁	제주특별자치도 주거기본 조례
59	권역별	제주	제주시권역주거복지센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위탁	제주특별자치도 주거기본 조례

요컨대 국토부의 정책은 명시적인 1인가구 청년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있지는 않으나, 1인가구 청년이 다른 기준에 의해 포함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구조라 할 수 있다. 1인가구 자체를 자격기준으로 제공하기보다는 빈곤이나 아동복지시설 거주 경험과 같은 사회경제적 기준을 우선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는 국토부의 주택공급의 적은 총량으로 보았을 때 단순히 청년이나 1인가구 등 많은 대상이 포함될 수 있는 기준을 사용하기보다 선별적인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적은 공급량에서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기준은 국토부의 주택공급이 획기적으로 증가하지 않는 이상 당장 변화시키기는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주택공급의 기준을 1인가구로 변경하는 것보다는 1인가구 중 취약청년들이 밀집되어 있는 주거형태를 개선하고, 1인가구 청년들이 서비스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접근성을 개선하고 1인가구가 서비스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포괄하는 형태로 정책이 구성되어 있었다.

② 여성가족부의 1인가구 청년 대상 생활지원 정책

여성가족부에서는 1인가구 청년의 사회적 관계 개선을 위해 청년 1인가구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가족센터를 중심으로 사회적 관계 개선을 위한 1인가구 대상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2022년에 처음 실시되었고 12개의 가족센터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오다가 2023년 36개 가족센터로 확대되었다. 2024년 취약 및 위기가족지원 사업이 온가족보듬사업으로 통합되면서 220개 가족센터에서 진행되는 사업으로 확장되었다. 사업 내용은 전문 상담을 통한 고립·우울감 해소 및 동아리, 소모임 통한 지역 주민과의 교류 증진, 자조모임 등을 지원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③ 자치단체의 1인가구 청년 대상 생활지원 정책

국무조정실에 운영하고 있는 청년정책포털인 온통청년(에서 지자체 1인 가구 사업을 검색해 보면, 총 72개의 사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국무조정실 온통청년, 2024). 이 중에서 주거 지원과 관련된 사업을 보면, 1인가구 주거공급(서울, 서울 관악구, 경기, 경북, 경남), 주거비 지원(서울, 인천, 세종, 경기 가평군, 충남 서천군, 전남 강진군, 곡성군, 경북, 울산), 1인가구 이사 지원(경기 광주시), 1인가구 주거 계약 지원(서울, 광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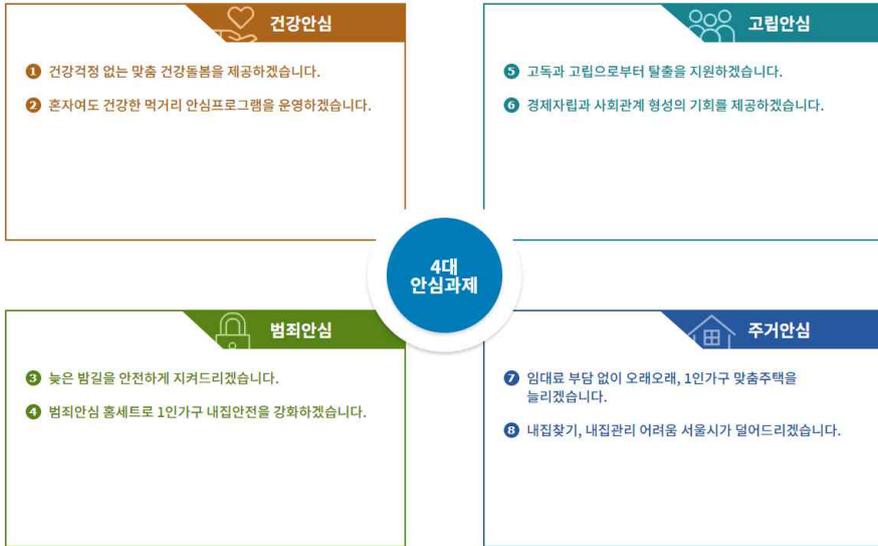
1인가구 주택 보수 및 수리 지원(서울시 종로구, 경남), 1인 가구 웰컴 박스 및 생활 관련 키트 제공(서울, 경기), 1인가구 사회적 관계 지원(서울, 부산, 충남, 경남) 등이 있다.

지자체에서는 1인가구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해 지원하고 있는데 청년만을 특정하지 않고 전체 1인가구를 지원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가장 활발하게 1인가구 지원사업을 추진 중인 곳은 서울특별시이다. 서울특별시에서는 2016년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 가구 지원 기본조례를 제정하였다. 사회적 가족은 조례에서 정의하고 있는데 “혈연이나 혼인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취사, 취침 등 생계를 함께 유지하는 형태의 공동체”를 의미한다. 세부적인 사업 공간은 공동생활가정과 소셜 다이닝(Social-Dining)으로 조례에서는 공동생활가정을 “5명 이상 10명 이하의 홀로 살던 사람들이 공동 거주하는 시설로, 소셜 다이닝은 ”1인가구가 모여서 취사와 식사를 함께하는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조례에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되었다(서울특별시, 2019). 이 기본계획에서 비전은 “다양한 가족이 어울려 사는 사회적 우정도시 건설”이며 추진목표로 “다양한 소통과 사회적 관계망 확대로 활기찬 일상유지”와 “상호나눔과 돌봄의 사회적 고립예방”, “안전하고 자립적인 삶의 지원 및 사회적 존중 인식 확산”을 제시하였다. 이 기본계획에 따라서 1인가구지원센터가 자치구 단위에 생겼고 1인가구 청년과 관련해 고시원 거주자 주거비 지원, 청년과 어르신 주거공유사업인 한지붕 세대 공감 등이 추진되었다.

2023년부터 서울특별시가 추진하고 있는 1인가구 사업은 1인가구의 세 가지 불안(불편, 불안, 불만)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재편되었다(서울특별시 보도자료, 2023. 02. 27). 불편 해소 사업은 1인가구에 거주하는 사람이 병원 이동 시 동행을 하고 퇴원 후 일상회복 지원하며, 전월세 계약 시에 지원하는 내용이다. 전자는 주로 노인을 대상으로 하면 전월세 계약 시 지원은 청년에 초점을 맞춘 사업이다. 동시에 1인가구 소셜다이닝 ‘행복한 밥상’도 포함되어 있는데 2023년부터 중장년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행복한 밥상’을 10개 자치구에서 15개 자치구로 확대하였고, 청년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건강한 밥상’을 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새롭게 시작하였다.

불안 해소 사업은 서울특별시가 제작한 안심이 앱을 사용하여 이용자에게 CCTV 등 안심시설물 설치경로를 추천하는 등 안전한 귀갓길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동시에 안심마을보안관을 운영 중으로 기존의 자율방범대와 연계해 추진 중이며 안심귀갓택시 서비스와 스마트초인종이나 가정용 CCTV 등을 지원하는 안심장비 지원사업도 추진 중에 있다. 이 사업들은 주로 1인가구 여성에 초점을 맞춘 사업으로 볼 수 있다.



출처: 서울특별시 서울1인가구 포털 <https://1in.seoul.go.kr>에서 2024년 11월 20일 인출.

그림 II-20. 서울시 1인가구 특별대책의 4대 안심과제

불만 완화 사업은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 회복을 위한 관계망 사업이다. 1인가구 지원사업의 추진체계인 25개 자치구의 1인가구지원센터를 거점으로 '상담멘토링' 멘토단을 구성해 지원하고 소통공간 제공과 더불어 사회적 관계 개선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1인가구 중 중장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같은 연령대의 중장년이 정서적인 어려움이나 경제적인 위험에 처한 취약 중장년에게 말벗에서 출발해 전문기관 연계까지 도움을 주는 생활안심 코디네이터로 2023년부터 매주 봄(春) 매니저 사업을 신규로 추진 중이다.

서울시의 경우 자치구 청년센터에서 1인가구 청년을 지원하는 사업을 개별적으로 추진 중이다(청년몽땅정보통, 2024). 먼저 서울청년센터 강북에서는 20대 중반 이후 이행기에 있는 1인가구 청년을 대상으로 신청자의 관심사항에 따라서 전문기관을 연계해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징검다리 상담 사업을 추진 중이다. 서울청년센터 관악(신림동 쓰리룸)은 1인가구 주거생활 원스톱서비스 사업으로 “두 가지 연말요리 만들기” 등 공유주방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했다. 2024년 12월에는 청년 10명을 대상으로 스페인식 타파스와 오븐을 사용하지 않고 만드는 티라미수 등을 함께 만드는 프로그램을 운영한 바 있다.



출처: 서울특별시 서울1인가구 포털 <https://1in.seoul.go.kr>에서 2024년 11월 20일 인출.

그림 II-21. 서울시 1인가구 지원센터 업무 내용

서울시 이외에 대표적인 1인가구 지원사업은 충남에서 진행 중인 충남형 1인가구 지원사업이 있다(충청남도, 2024). 충남에서는 2020년 충청남도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2021년 충남 1인가구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22년부터 4개 분야 15개 실행과제를 추진 중이다. 4개 분야는 정책 추진 기반 구축, 주거복지 및 안전한 환경 조성, 돌봄지원 강화 및 고독사 예방, 공동체의식 함양 프로젝트 등이다. 2024년에 1인가구 청년과 관련해서는 예산군에서 1인가구 청년들을 위한 관계망 형성을 위한 문화 프로그램을 추진하였고 홍성군에서는 청년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함께 여행을 하는 프로그램을 추진하였다. 이처럼 지자체 사업은 별도의 조례를 제정해 주로 정서적인 측면에서 사회적 관계망 형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중앙부처 중에서 여성가족부가 추진 중인 청년 1인가구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 사업과 유사하다.

2) 정책 동향 시사점

지금까지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다양한 정책 사업들을 살펴보았다. 국토교

통부에서는 1인가구 청년의 주거 공급과 환경개선에 초점을 맞추어 사업을 추진 중이나 청년 1인가구를 자격으로 하기보다는 다른 선정 기준을 우선시하고 있었다. 이는 주택 공급이 매우 한정되어 있어 자격 기준을 더 명확히 하고, 대상을 구체화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의 사업은 비록 1인가구 청년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현재 운용되고 있는 사업의 주요 혜택이 1인가구 청년에 돌아가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었다. 국토교통부의 사업 영역에서 1인가구 청년은 직접적인 자격 기준으로 활용되기보다는 1인가구 청년이 밀집해 있는 취약 영역, 즉 지옥고와 같은 비정상 거주 거주자에 대한 이사비 지원 및 전월세 지원 등에 대한 지원이 넓히는 방향에서 설계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주택공급의 차원에서 이동성이 높은 청년층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자리 연계형 주택 건설·공급 사업, 1인가구 청년 밀집 지역 내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청년임대 사업 등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여성가족부와 지자체에서는 주로 사회적 관계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으며, 국토교통부의 사업에 비해 1인가구 청년 특화 사업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의 1인가구 청년에 대한 생활지원 서비스는 생활상의 불편을 해소 하거나 공동체를 형성하는 등의 사업을 주로 진행하므로 1인가구 청년들이 서비스로 유입 되도록 1인가구 청년 지원을 본격적으로 진행해도 형평성 문제 등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국토교통부와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의 주거복지서비스 및 1인가구 청년 지원 서비스는 상호 연계되지 못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 또한, 주거복지센터는 수도권에 몰려 있어 지방으로 시각을 확대할 경우 주거지원과 생활지원을 함께 이용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청년들이 1인가구 생활지원 서비스와 주거지원 서비스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인다. 주거지원 체계와 생활지원 체계의 연계가 현재 1인가구 청년들에 대한 지원에서 필요해 보인다.

전반적으로 1인가구에 대한 지원은 새롭게 시작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그 중에서 청년에 대한 지원도 이제 시작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관련 법률이 별도로 제정되지 않은 상태이며 청년을 분리해서 접근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1인가구 전체를 지원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비롯하여 기본적인 정책추진체계에 대한 고려도 필요한 상황이다. 향후 1인가구가 계속해서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1인가구 청년에 대한 정책적인 노력이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

4. 소결

제2장에서는 1인가구 청년 지원의 필요성, 개념, 주요 정책, 양적·질적 방법을 통한 현황을 살펴보았다. 이 장을 통해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1인가구 청년 지원은 주로 생활지원과 관련하여 논의가 이루어졌고, 주거지원은 1인가구 청년 지원보다는 일반적인 청년 지원과 관련하여 이루어졌다. 둘째, 1인가구 청년 지원은 주로 1인가구 전체를 대상으로 지자체에서 서비스가 시도되고 있으나, 1인가구 지원을 하는 별도의 전달체계를 가지고 있는 지자체는 매우 적다. 1인가구 청년 지원은 수도권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정책 운용의 근거 마련 및 표준화가 필요하다. 셋째, 1인가구 청년 중 물리적, 경제적, 심리정서적 취약성을 보이는 대상은 5만여명이 존재하며, 이들은 중첩된 취약성이 심화되어 나타나는 대상으로 통합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1인가구 청년들의 주거 환경은 다른 청년들의 거주 환경에 비해 좋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특히 1인가구 청년 중 고졸 청년들의 주거 환경이 좋지 않은 편이었다. 이는 1인가구 청년들 중에서도 더 취약한 특성을 지닌 청년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섯째, 1인가구 청년들의 지원 욕구는 자가를 소유하는 것보다는 전월세를 지원해주는 경제적 지원과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 주거지원에 대한 선호가 높았다.

이와 같은 결과를 볼 때 1인가구 청년은 그동안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아지기는 했으나 특화되어 있는 정책이 크게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 있었다. 하지만 실제 1인가구 청년 중 취약성을 지닌 청년들이 많이 있어 지원을 위한 체계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인가구 청년들은 성인기 이행에서 다음 단계를 위한 고민을 하고 있었으며, 주거 안정화를 위한 상향 이동에 대해서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1인가구 청년 지원은 그 상태를 지속시키려는 의도보다는 더 나은 삶의 환경을 만들고 더 나은 단계로 이행하고자 하는 의도를 충족시키는 방향에서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제3장 경계선 지능 청년 지원

- 1. 경계선 지능 청년의 개념, 특성, 사회적 상황
- 2. 경계선 지능 청년 관련 연구 및 정책 동향
- 3. 경계선 지능 청년 지원 관련 해외 사례
- 4. 경계선 지능 청년 고용지원 해외 사례
- 5. 해외 사례 시사점

1. 경계선 지능 청년의 개념, 특성, 사회적 상황

경계선 지능인은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장애는 아니지만 인지, 학습, 사회성 등의 능력이 낮아 소속되어 있는 사회에 적응하기 어려워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자다.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의 부적응으로 학습과 사회관계에서 비장애인과는 다른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경계선 지능 아동은 또래 보다 학습 능력이 낮고, 청년기에는 구직, 직장생활 유지 등 자립을 위한 제반 활동에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한다. 경계선 지능에 대한 의학적, 법적인 개념 그리고 지원제도 등을 통해 경계선 지능의 특성과 경계선 지능인의 사회적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다.

1) 경계선 지능 청년의 개념과 정의

2016년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시행한 이후 경계선 지능 아동에 대한 공적 지원이 시작되면서, 이와 관련된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경계선 지능 또는 경계선 지능인을 지칭하는 단어는 '느린 학습자', '천천히 배우는 학생', '경계선 지능', '학습장애', '지적장애', '경계선 지능을 가진 느린 학습자' 등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김동일 외, 2022; 박광욱 외, 2022; 김동일 외, 2023; 김용훈,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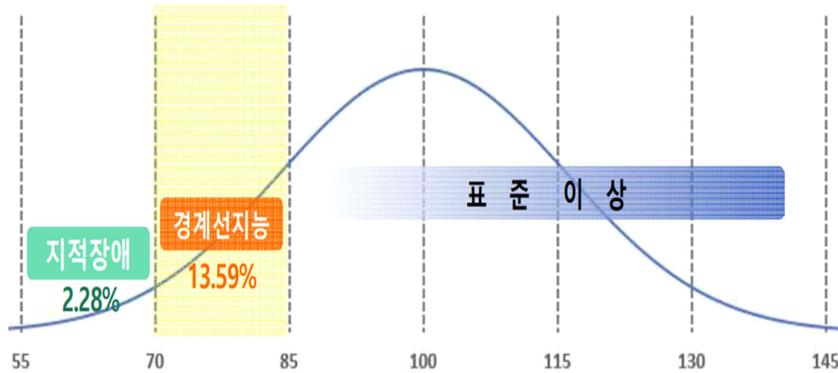
연구자들이 지적하고 있는 부분 중 하나는 학습장애와 경계선 지능, 지적장애와 학습장애를 정확하게 구분하고 진단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다. 학습장애 진단 및 선정하는 데 있어 과거 2014년의 진단기준을 여전히 사용하고 있다는 응답자가 7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진단기준을 상이하게 적용하는 문제가 있다(신재현, 정평강, 2021).

김동일 외(2022)는 학습곤란은 정서·행동장애, 학습부진과 학습장애, 양육과 돌봄 등 매우 다양한 이유로 발생할 수 있으며, 그 범위가 광범위하고, 교육전문가의 신중한 판단으로 예방적인 중재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는 학습장애와 경계선 지능에 대해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측면을 보인다. 이러한 현장의 상황은 경계선 지능아동에 대한 조기 발견과 그에 따른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러한 접근은 교육현장에서 사용 가능한 선별도와 적용의 중요성으로 이어진다(박소희, 이은주, 2022; 허은, 2022).

진단 관련 전문가도 학습장애와 경계선 지능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김동일 외, 2022; 박광옥 외, 2022). 임성은(2023)의 연구에 따르면, 교육현장에서 경계선 지능인 선별 기준과 방법에 대해 변별력있는 방법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다만 '지적장애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지적기능의 문제로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 즉 지적기능의 문제와 그에 따른 지원의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공통적으로 경계선 지능의 정의에 포함하고 있다(임성은, 2023).

선행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경계선 지능에 대한 의학적 진단으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DSM-V만으로는 진단 및 선별하는 기준으로 삼기 어렵다(김용훈, 2023). 학계 및 현장 전문가들은 경계선 지능을 정의하고 진단하기 위해선 지적 기능 수준에 대한 판단 외에도 적응기능 등을 모두 고려하여 평가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를 위해 전문가의 관찰이 선행되고 그에 기반한 임상적 판단이 요구된다 할 수 있다(변민수 외 2024). 관련하여 박광옥 외(2022)는 제반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계선 지능 청년 지원을 위한 과제 중에 경계선 지능에 대한 개념 정립과 진단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능지수 정규분포에 따라 경계선 지능인의 수는 13.59% 정도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박진우, 2023). 경계선 지능 아동 관련하여 연구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진단도구는 KEDI-WISC이며, 시기별로 1998년-2002년, KEDI-WISC, 2003년-2007년, KEDI-WISC, K-WISC-III, 2008년-2012년, K-WISC-III, 2013년-2017년, K-WISC-III, (일부 K-WISC-IV 사용), 2018년-2022년, K-WISC-IV가 사용되었다(박소희, 이은주, 2022).



출처: 교육부 (2024). 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경계선 지능인 지원 방안

그림 III-1. 경계선 지능인 정규분포

의학적 기준에 따른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당사자 중심으로 통용되는 의료적인 기준은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편람(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DSM-4th-TR)에 근거한다. 여기에서 경계선 지능 (Borderline Intellectual Functioning: BIF)은 'IQ 71-84에 해당하며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주의해야 할 발달장애군'으로 규정된다. 현재 경계선 지능인은 정신의학과 및 임상심리 전문가에 의해 전문심리검사 도구를 이용하여 판정되고 있으며, 이때 사용되는 전문심리검사는 지능검사, 성격 검사, 기타 정서 및 주의력 검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학적 정의에 따르면 경계선 지능에 대한 진단기준은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DSM-5), 미국 지적장애 및 발달장애 협회의 AAIDD, 국제질병분류 ICD(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등 세 가지가 있다. 각각의 진단 기준과 정하는 내용의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으로 평균 이하 지적기능, 적응행동능력, 발달단계에서 발생 등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편람(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DSM-4th-TR)에서 경계선 지능 (Borderline Intellectual Functioning: BIF)은 'IQ 71-84에 해당하며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주의해야 할 발달장애군'으로 규정하고 있다. 평생교육 지원조례에서 “경계선 지능”이란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장애는

아니지만 인지, 학습, 사회성 등의 능력이 낮아 소속되어 있는 사회에 적응하기 어려워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자를 말한다.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법적 정의를 살펴보면 의학적으로 ‘지적장애’에 속하지는 않지만 인지능력과 학습능력의 저하로 인해 지원과 보호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공통적으로 언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개정된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편람 DSM-V에서는 지능지수를 구체적으로 명기하지 않고 있다(윤신희 외, 2022).

표 III-1. 경계선 지능에 대한 정의

	내용
법적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법에서 “경계선 지능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발달장애인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지능력 등의 부족으로 학습 및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제22대 국회 안상훈 의원 법안) 이 법에서 “경계선 지능인”이란 인지능력 등의 부족으로 학습 및 사회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으로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발달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제22대 국회 권철승 의원 법안)
	<o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계선 지능”이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을 말한다. “경계선 지능 학생”이란 경계선 지능으로 인하여 학습 및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서울특별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계선 지능인”이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지능력 또는 학습능력 등의 부족으로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이에 대한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자를 말한다. (경기도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의학적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편람(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DSM-4th-TR) 경계선 지능 (Borderline Intellectual Functioning: BIF) ‘IQ 71-84에 해당하며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주의해야 할 발달장애군’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편람(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DSM-V) “개인의 경계선 지적기능이 임상적 주의를 요하거나 개인의 처치나 예후에 영향을 줄 때를 지칭하고, 경계선 지적기능과 경도지적장애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지적기능과 적응기능에 대한 주의 깊음 평가가 필요하다”

2016년 2월 초·중등교육법 제28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의 일부를 개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성격장애나 지적(知的) 기능의 저하 등으로 인하여 학습에 장애를 받는 학생 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학생’을 위해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계선 지능에 대한 정의는 조례에 명시된 용어 정의를 참고할 수 있다. 현재 조례 차원에서 지자체를 중심으로 경계선 지능인 지원이 이루어 지고 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습부진아 지원 조례(2017.03.23.일 제정)에서는 경계선 지능 학생을 ‘지적장애에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 및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으로 정의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2020.10.25.일 제정)에서는 평균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으로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자로 정의하고 있다. 이상의 두 조례에서 경계선 지능인은 ‘평균적인 지능에 도달하지 못한 인지능력, 학교생활과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자’를 의미한다.

경기도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와 고양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에서는 경계선 지능인을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지능력 또는 학습능력 등의 부족으로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이에 대한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자’라는 정의를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다. 조례를 통해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법적 정의를 살펴보면 ‘지적장애’에 속하지는 않지만 인지능력과 학습능력의 저하로 인해 지원과 보호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공통적으로 언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개정된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편람 DSM-V에서는 지능지수를 구체적으로 명기하지 않고 있다(변민수 외, 2024).

경계선 지능에 대한 정의는 조례 및 발의된 법안에 명시된 용어 정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2020.10.25.일 제정)”에서는 평균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으로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자로 정의하고 있다. 제22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에서 정하는 경계선 지능인의 정의는 공통적으로 ‘지적장애’에 속하지 않으나 인지능력 또는 학습능력 등의 부족으로 사회생활 또는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대상으로 정의하고 있다.

병역과 관련된 판정 기준은 우리 사회에서 엄격하게 다루어져 왔다. 경계선 지능과 관련된 병역판정 신체검사 검사 규칙은 이미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병역판정 신체검사에서 경계선 지능 판정은 표준화된 개인용 지능검사, 사회적응력 검사, 초·중·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등의 자료와 정신건강의학과적 평가 등을 참조하여 판단한다. 사회적·직업적 기능 장애가 경미한 정도의 경계선 지능으로 판단된 경우에는 4급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를 하게 되며, 정신건강의학과적인 질환이 동반된 경우에는 병역이 면제되고 민방위 처분을 받는다.

제22대 국회에서도 경계선 지능인 지원과 관련하여 7개의 법안이 발의되었다. 발의된 법안에서도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지능력, 학습능력 등의 부족으로 사회적이 어려운 사람을 경계선 지능인으로 정의하고 있다. 김희정 의원은 발의된 여러 법안의 공통적인 사항 이외에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경계선 지능 청년은 지적장애는 아니지만 인지, 학습, 사회성 등의 능력이 낮아 소속되어 있는 사회에 적응하기 어려워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자로 만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로 정의한다.

2) 경계선 지능 청년에 따른 어려움

경계선 지능의 개념을 규정할 때, 개념에 ‘지능’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경계선 지능인을 설명할 때 학업적인 능력과 주로 연관 짓는 경향이 있으나 경계선 지능인의 특성을 이해할 때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오히려 성장 과정에서의 정서관계사회성 영역에 있다(김동일 외, 2023). 아동·청소년기에 학교와 가정 그리고 생활 환경에서 경험하는 사회화 형성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Cisneros-Cohernour & Stake, 2014).

선행연구에서 주목하고 있는 경계선 지능인의 특성과 어려움은 공통적으로 일상생활 및 교육환경에서 인지·학습의 어려움을 포함한다. 이보다 중요한 점은 사회적 관계의 어려움이다. 이러한 어려움이 경계선 지능인의 자립 등 경제적 어려움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김동일 외, 2022; 박광옥 외, 2022; 김동일 외, 2023; 임성은, 2023).

표 III-2. 경계선 지능인의 특성에 따른 어려움

구분	내용
인지·학습·교육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이 느리고 지속적·반복적·단계적 훈련이 필요함 • 학교에서의 학습과 일상생활(예, 주문하기, 계산하기)의 연계, 사회화가 어려움 • 특수교육과 학습부진아 등에 관한 정책과 지원에 집중되어 있어 경계선 지능인의 교육육구 미충족 • 초·중고 재학 중 학습 및 발달과업을 성취하지 못하고 성인기로 진입하게 됨

구분	내용
사회적·관계적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타인과의 관계 형성과 유지, 사회적 상황과 맥락에 대한 이해 부족 성장과정에서 또래들로부터 소외, 괴롭힘 등 부정적 경험하고 성인이 되어서 학교나 직장에서 유사한 상황 반복됨 성(이성)에 대한 관심을 부적절하게 표현하여 오해가 생기거나 가해자가 됨 교사의 이해 부족으로 오해, 편견, 낙인이 심화됨 일상생활 및 학교생활에서 경계선 지능에 대한 이해 내지 도움을 받지 못하고, 갈등 유발에 대한 두려움
고용·자립·경제적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계선 지능에 대한 정책과 지원의 부족으로 가족의 교육 및 치료비용 부담(가족 갈등으로 이어짐) 성인전환기 이후 고용기회의 부족, 실업 내지 단기 아르바이트로 생활, 고용 유지 어려움

출처 : 김동일 외(2022), 박광옥 외(2022), 김동일 외(2023), 임성은(2023).에서 발췌

생애주기별로 경계선 지능인의 특성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공교육이 시작되는 시기부터 학습활동, 교우관계,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예를 들면 의사소통과 판단의 어려움으로 착취나 폭력 피해(예, 학교폭력)를 겪거나 부적절한 성적 관심을 표현하거나 범죄의 피해자 내지 가해자가 되기도 한다(황여정, 이정민, 2020; 김지연 외, 2021). 이러한 경계선 지능 아동·청소년기의 특성은 사회적 적응에 어려움을 야기하여 성인기로 이어지거나 더욱 심화되기도 한다(박미하, 김영인, 2023).

경계선 지능인은 아동기부터 주변으로부터 긍정적 관심이나 칭찬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일반적으로 학습 속도가 더딘 것과 이후의 상황과 관련된 측면이 있다(임성은, 2023). 학령기에 적절한 교육과 지원을 받지 못해 성취도가 낮아도 보호자가 경계선 지능인 판정 관련 검사를 받기 전까진 인지하지 못할 수 있다. 인지하더라도 장애를 인정하거나 수용하는 것이 어려워 검사를 미루는 경우도 있다(임성은, 2023). 결국 법적 문제에 연루되거나, 군 입대를 앞두고 병역판정 검사를 통해 인지하게 되기도 한다. 경계선 지능 인지 경로와 시기를 통해 경계선 지능 청년들이 다양한 문제에 노출되며, 사회적 안전망이 부재한 가운데 경계선 지능 청년의 문제 상황에 대한 대응은 전적으로 보호자의 책임으로 남는 것이 현실이다(박진우, 2023).

성장과정에서 일상적인 경험과 교류가 부족하고, 자신감이 낮은 상태가 성인기로 이어지면 문제 상황이 개선되거나 나아질 가능성이 높지 않다. 성인기 경계선 지능 청년들은 구직 과정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취업에 대한 불안을 느끼게 되고, 사회생활 전반에 대해

두려움을 가질 수도 있다. 공적인 교육체계에서 벗어나 취약성이 높아지는 시기에 이들의 특성과 욕구에 적합한 맞춤형 지원이 제공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경계선 지능 청년의 청년기는 학령기의 공적 교육체계가 제공하는 지원과 보호가 단절되거나 취약해지는 시기이므로,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경계선 지능 청년의 특성과 욕구에 적합한 지원이 제공되어야 하지만, 경계선 지능 청년을 위한 맞춤형 직업훈련이나 취업 알선 서비스 등이 부족하므로 구직활동도 어렵고 취업하더라도 부적응으로 인한 조기 퇴직으로 자립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임성은, 2023).

일반 청년들 대상으로 진행되는 직업훈련 과정에 경계선 지능 청년이 참여하기엔 직업 훈련 기간이 충분하지 않다. 훈련과정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의 난이도와 숙련도도 경계선 지능 청년이 습득하기엔 적정하지 않다. 경계선 지능 청년의 기술 습득을 위한 훈련과정은 개별화된 맞춤형 방식이 용이하다. 그러나 일반 훈련과정에서 개별 맞춤형으로 운영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독일에서는 경계선 지능 또는 자폐 등 가벼운 장애가 있는 청년들을 위해 다양한 공공기관 및 민간 사업장에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비장애인이 2~3년 걸릴 과정이라면 그보다는 긴 3~4년간 교육하는 방식이다. 기본적으로 이론 교육 보다는 실습 교육을 중점으로 반복하여 훈련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박진우, 2023). 독일과 유사한 방식의 훈련 과정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에서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경계선 지능인은 등록장애인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경계선 지능인은 일반 청년 고용서비스도 실효적이지 않고, 장애인고용 서비스는 대상이 아닌 상황이라 실질적으로는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변민수 외, 2024).

인지능력과 관련 기능수행이 지적장애인과 유사하고 필요한 정책 욕구도 동일한 부분이 있지만 경계선 지능 청년들은 장애인복지고용정책의 대상이 아니다(윤선희 외, 2022). 성인기에 들어서면서 일상생활, 취업 및 고용유지 어려움, 정보 부족 등 경제활동에 필요한 적절한 지원의 필요성은 더 커지고, 서비스를 받지 못해 겪는 어려움도 커진다(이선희 외, 2018). 삶 전반의 영역에서 생애주기에 따라 요구되는 발달과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공교육에서 벗어난 성인전환기, 청년기에 고용, 주거를 포함하여 권익옹호, 평생교육, 정신건강 등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게 된다(박광옥 외, 2022). 박광옥 외(2022)의 연구에 의하면 경계선 지능 청년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은 고용지원(48.4%)으로 나타났다. 경계선 지능 청년들은 학령기 교육적 실패에 이어, 성인이 되어서 실업이나

불완전 고용 등 직업적 실패를 연속적으로 경험하게 된다(보건복지부·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아동자립지원단, 2017). 성인기에서 경제활동이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제반 영역의 지원 가운데 고용지원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다. 취업을 위해선 진로탐색과 컨설팅, 직업전 사회성 훈련과 직업훈련, 취업과 연계된 일 경험 등을 기반으로 향후 취업 시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지만 미비한 것이 현실이다. 경계선 지능인의 규모와 생애 주기적 특성을 고려하면 제도적으로 적정한 고용지원을 받지 못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비경제활동에 따른 사회적인 이전 비용이 더 커질 수 있다(변민수 외, 2024).

직업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사회생활에서 필요한 예절 및 대인관계 기술, 직장 내 업무에 필요한 기본 기술을 습득해나가는 과정 외에도 직업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직업훈련(이무근, 2006)이 필요하다. 성공적인 취업을 위해선 체계적인 직업훈련 뿐만 아니라 고용과 관련한 법적 지원 보장, 전담 서비스 전달체계, 맞춤형 지원 등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경계선 지능 청년의 자립을 위해서는 직업 훈련과 취업이 연계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김형모 외, 2019).

3) 경계선 지능 청년의 사회적 상황 및 욕구

(1) 경계선 지능 청년의 사회적 고립과 제한된 관계

경계선 지능 청년들이 일상생활에서 직면하는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가족 외에 지지적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이다. 응답자들은 학창 시절의 부정적인 경험으로 인해 또래와의 관계를 형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으며, 이로 인해 성인이 되어서는 자발적으로 관계를 맺는 것이 더욱 어려워졌다.

이러한 관계 형성의 어려움은 성인기에도 감정적 지원이나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관계를 맺기 힘들게 했다. 일반적인 또래 관계가 재미와 성장을 동시에 제공하는 반면, 이들은 개인 발전을 도울 수 있는 관계에 접근하지 못해 멘토나 선배와 같은 지지적 관계를 통해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관계의 부재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게 하여, 외로움과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진다. 이 상황에서 타인과의 관계를 맺고자 하는 욕구로 인해 사기나 조작과 같은 부정적인 경험에 취약될 수도 있다. 이러한 취약성은 고립감과 관계를 맺고자 하는 열망의 조합에서 비롯되며, 결과적으로 사회적 어려움이 더욱 악화되는 경우가 있다.

(2) 적절한 직무와 직무환경 매칭의 어려움

직장 환경에서 가장 두드러진 어려움 중 하나는 자신의 능력에 맞는 직무를 찾고 확보하는 것이다. 경계선 지능 청년들은 인지적 제한으로 인해 비장애인에게 기대되는 수준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반면, 발달장애인을 위한 직무는 너무 단순하여 흥미를 느끼기 어렵고 동기 부여가 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에 경계선 지능인 청년들은 자신의 능력에 적합한 직무를 찾는 것이 매우 어렵고, 독립에 대한 강한 의지와 지속적 구직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력서 작성과 면접 등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반복적인 실패를 겪을 확률이 높았으며, 이는 좌절감과 자존감 저하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경계선 지능 청년들이 취업에 성공하더라도 직장 환경에 적응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우에 따라 동료와의 오해, 비정기적인 업무에 대한 적응 어려움, 대인 관계의 문제로 인해 조기 퇴사하거나 인턴십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고용 이력이 불안정해지고, 결국 고용 불안과 자기 의심의 악순환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생애주기적인 관점에서 경계선 지능 청년의 사회적 고립은 학령기부터 성인기까지 일관되게 이어지는 측면이 있다. 이러한 양상은 일반적인 사회적 관계 형성 및 학습 기능의 어려움에 기인한다. 경계선 지능 청년의 자립을 위해선 성인기 이전부터 이들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지원체제와 특화된 내용의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 학령기에 적절한 직업 탐색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을 감안하면, 청년기 맞춤형 고용정책과 지원서비스는 경제활동의 선결 조건이라 할 수 있다.

2. 경계선 지능 청년 관련 연구 및 정책 동향

1) 경계선 지능인 관련 선행 연구

경계선 지능 관련 선행연구를 생애주기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아동기에 집중된 경향이 있다. 주요 내용은 의학적인 접근에서 치료 영역을 주로 다루는 경향이 있다. 1998년부터 2022년까지의 경계선 지능 아동·청소년 관련 선행연구(박소희, 이은주, 2022)를 분석한

결과, 미술놀이·심리작업·음악치료 등 주로 치료 영역의 연구가 수행되었다. 치료 중심의 논문들이 다수인 상황은 주로 아동기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목해야 할 점은 현재 경계선 지능을 가진 아동에 대한 공적 정책이나 지원이 미비한 상황에서 자녀교육과 치료에 대한 부모의 책임이 과중하게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이다(허은, 2022).

상대적으로 경계선 지능 아동에 대한 연구의 수행이 사회적 관심이 비례하여 증가한 측면이 있는 반면, 청년기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관심에 비추어 경계선 지능 청년에 대한 연구 결과들은 충분하지 않다. 경계선 지능 청년의 범죄 연루와 관련된 인권침해, 사회문제 차원에서 다루어지는 미디어의 관심, 제도적으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등 사회적인 문제 인식이 증가함에 따라 최근들어 관련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노원경 외, 2020; 임성은, 2023).

경계선 지능인의 특성과 필요한 지원에 대한 김동일 외(2022)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지능 및 학업 관련 특징에 기반하여 느린 학습자 집단을 다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유형은 기능적 지적장애 위험군이다. 경도 지적장애에 해당하며, 언어, 수학, 공간능력에서의 성취도가 낮은 것이 특징이다. 둘째 유형은 경계선 지능집단이다. 이 유형은 BLCT 지능점수에 있어 T점수가 평균보다 1-2 표준편차 낮고,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가지는 집단이다. 셋째 유형은 학습곤란집단이다. 언어, 수학, 공간 영역의 점수가 고른 분포를 보이지만, BLCT 진단범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넷째 유형은 학습장애 위험군이다. 이 유형은 선천적인 잠재력보다 언어, 수학의 학업 성취가 낮은 집단이다. 다섯째 유형은 전형적인 경계선 지능 위험군으로 구분된다.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공통적인 접근법과 대응으로 이들의 학습곤란, 학습장애 위험 등의 문제에 대해 조기에 학습지원을 받았을 때, 즉 적절한 교육적 지원에 따른 성장 가능성이 있어 조기 지원체계가 중요하다는 주장이 있다. 이와 별개로 경계선 지능인의 인지·정서·관계적 특징과 어려움을 경계선 지능인에 한정기 보다는 우리 사회의 인식과 이해가 낮은 데서 기인하는 측면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 사회 지원체계의 부재가 문제를 심각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다(임성은, 2023).

경계선 지능 청년을 다룬 초기연구 가운데 ‘경계선 지적 기능 성인’들의 자립과정을 다룬 연구가 있다(진현정, 2016). 이 연구는 경계선 지능을 가진 성인들의 자립을 위해선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경계선 지능 청년의 자립

은 청년 당사자의 구직노력이나 직업역량도 중요하지만, 이들의 자립이 실현될 수 있는 '제반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경계선 지능인은 아동기부터 학습기회에 제약을 받아왔으며, 구직을 위한 직업훈련 기회의 부족 등으로 인한 낮은 직업 수행 역량으로 구직 및 고용 유지가 어렵기 때문이다(윤신희 외,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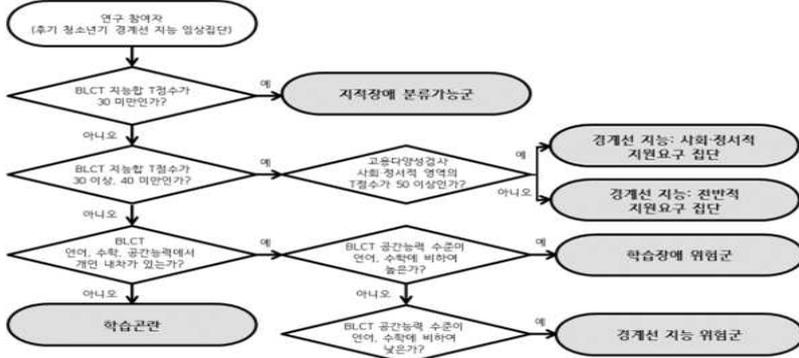
현재 경계선 지능 청년에게 실효성이 있는 고용정책과 지원서비스는 거의 부재한 상황이다. 일반 청년들을 위한 고용지원 서비스의 대상에 포함 될 수는 있다. 경계선 지능을 가진 청년은 법적으로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청년기본법에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경계선 지능 청년에게는 경쟁고용, 즉 일반 청년들과 노동시장에서 경쟁하기에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여 일반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박광옥 외, 2022). 이미지와 정세영(2023)은 '지능'과 '기능'상의 스펙트럼 편차가 크고, 지능 외 특성(사회성숙도를 포함한 개인 특성-기질, 제반 환경 차에 따른 이질성)과 사회적 능력 및 직업적 역량이 매우 제한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즉, 경계선 지능 청년에게는 발달장애인보다 취업영역이 더 확대되고, 취업기회가 더욱 증가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으나, 맞춤형 고용정책과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발달장애인보다 훨씬 고용 및 취업기회가 보장된다고 보기가 어려워진다(윤신희 외, 2022). 등록장애인 중심의 교육 및 고용지원제도로부터 경계선 지능인이 배제되어 왔기에, 이들은 교육훈련 경험이 전무한 상황에서 방치되어 있었다는 문제가 제기된다(이미지, 정세영, 2023).

한편, 김동일 외(2023)의 연구에서는 마치 경계선 지능 집단을 동일한 특성을 가진 집단으로 인식할 수도 있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경계선 지능집단 내에서도 지능과 고용지원을 필요로 하는 정도가 상이하므로, 각 집단별 특성과 지원요구 내용을 기반으로 한 고용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집단별 특성과 지원요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적장애 분류가능군은 모든 영역에서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경계선 지능군은 사회·정서적 지원요구가 높은 군과 전반적 지원요구가 높은 군의 두 유형으로 구분된다. 셋째, 학습곤란군은 고용지원 요구도가 전반적으로 높다. 넷째, 학습장애 위험군은 고용준비 태도 관련 지원 요구가 높다. 다섯째, 경계선 지능 위험군은 언어수학에 비해 공간 능력이 낮다.

1. 지적장애 분류가능군(모든 영역에서 지원 필요)
2. 경계선 지능 1) 경계선 지능(사회·정서적 지원요구) 2) 경계선 지능(전반적 지원요구)

3. 학습곤란(고용지원 요구도 전반 높음)
4. 학습장애 위험군(고용준비태도 관련 지원 요구 높음)
5. 경계선 지능 위험군(언어수학에 비해 공간 능력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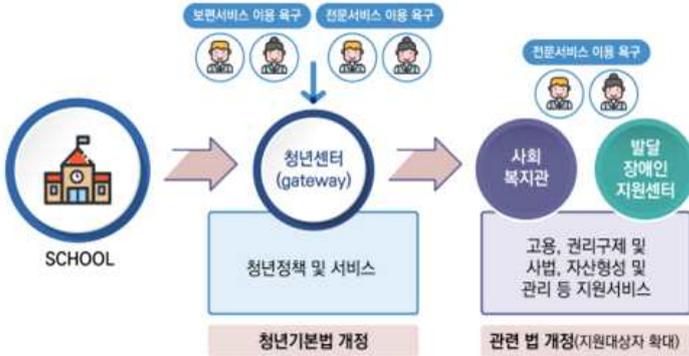


출처 : 김동일 외 (2023). 경계선 지능 청소년 임상집단 하위분류 탐색. 학습장애연구, 20(1), P.11.

그림 Ⅲ-2. 후기 청소년기 경계선 지능 임상집단의 분류

김동일 외(2023)의 연구 연구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경계선 지능 청년집단이 동일한 특성을 가지지 않고 있으며, 집단 내 하위 집단에 따라 개별적인 기능 수준과 필요한 지원의 수준이 상이하다는 것을 드러낸다. 집단 내 특성을 세분화하는 해당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경계선 지능 청년에 대한 지원을 정교하게 설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수 있다. 무엇보다 생활 및 고용 관련 지원이 필요한 정도를 파악하고 개별화된 지원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경계선 지능인의 특성에 따른 어려움을 조기 발견 및 적절한 지원 유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생애주기별 지원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박광옥 외(2022)은 경계선 지능 청년이 학령기를 마친 이후 공적인 서비스가 단절되는 경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필요한 서비스가 청년기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 진입창구(gateway)를 만들고, 사례관리기관(사회복지관,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및 관련 기관들이 협업 가능한 체계를 제안하였다.



출처 : 박광욱 외 (2022). 경계선 지능 청년의 정책소외 실태 및 정책개발. 세종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P.233

그림 III-3. 경계선 지능 청년을 위한 지원체계

생애주기별 지원과 관련하여 박진우(2023)는 정책적으로 경계선 지능인이 생애주기적으로 겪는 어려움과 특성, 욕구에 기반한 지원제도 마련을 위해 국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계선 지능 청년의 자립을 위해 필요한 고용지원 서비스는 단순히 경제활동 유지를 통한 생계 차원의 의미를 넘어서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참여하기 위해 필수적인 서비스로 일상생활 및 사회적 관계 형성·유지의 기반 형성에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계선 지능 청년의 자립을 위한 고용지원 서비스는 경계선 지능 청년의 개별적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설계와 욕구 사정에 기반한 서비스 총량 그리고 사회적 훈련에서부터 취업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경계선 지능 청년의 자립을 위해 임성은(2023)은 경계선 지능 청년의 특성 이해 및 고용 매뉴얼 개발, 경계선 지능 청년 조기 선별, 배치, 직업훈련과 취업을 연계하는 시스템 구축, 관련 협업 기관과의 네트워크 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 경계선 지능인 관련 정책 동향

지자체가 아닌 중앙정부에서도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고용 영역에서는 장애등록이 되지 않아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고용지원의 필요성, 교육 영역에서는 경계선 지능인의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권익보호 차원에서의 지원정책의 필요

성 등을 다루고 있다. 경계선 지능인을 둘러싼 그간 정부의 노력을 정리하면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교육부의 5개년 계획 및 관계부처 합동 계획(안)이 있다(변민수 외, 2024).

첫째,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안)(2024~2028)’에서는 소외된 약자 권익 보호·지원 강화 차원에서 지원 등, 현행 장애인정 기준으로 지원받기 어려운 경계선 지능인 등 사각지대에 대한 교육·자립·고용·돌봄 등 통합적 지원방안 모색을 명시하고 있다. 사회보장 기본계획안에서는 경계선 지능인을 지적장애, 발달장애에 해당하지 않지만, 인지능력·분별력 등의 부족으로 학습 및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둘째, ‘제6차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2023~2027)’에서는 대상별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경계선 지능인 등 법정 장애인은 아니지만 직업생활이 어려운 직업적 장애 대상에게 고용서비스 다양성 검사 등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을 통해 취업지원을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셋째, ‘경계선 지능인 지원 방안’(2024.7.3.)은 교육부 중심으로 관계부처 합동 지원 방안이 정리되어 있다. 경계선 지능인이 평균 지능 대비 낮은 인지 기능으로 학업·근로 등에서 어려움이 있으나,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아 가족 지원에서 소외되는 등 장애와 비장애의 사이에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규정하고 이들을 위한 종합적 지원체계 마련을 명시했다. 조기개입, 인식개선, 자립역량 강화 등 3대 정책방향을 정하고, 발굴 강화 및 실태 파악,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인식 개선 및 협력체계 구축 등 3대 추진 과제를 세웠다. 발굴 강화 및 실태파악을 위해 경계선 지능인 조기 발견 체계 마련,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영유아기에는 부모 교육 및 상담 지원 강화, 학령기에는 성장과정에 맞는 맞춤형 교육 제공, 성인기에는 직업 훈련을 통한 자립능력 향상을 지원한다. 인식 개선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해 범부처 협업체계 구축, 지자체 중심의 지역 밀착형 지원체계 확립, 민관협력을 통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실시한다. 경계선 지능인 지원방안은 주요 과제의 소관부서를 정하여 제시하고 있다. 교육부는 경계선 지능인 조기발견, 복지부는 경계선 지능인 실태조사, 여가부는 부모 대상 상담서비스 제공, 고용부는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 제공, 법무부는 법교육 지원, 지자체는 자조모임 등 학부모 지원 등이 있다. 그 외 사회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등은 공통 과제로 구분하였다.

3) 경계선 지능인 복지서비스 중심 지원 사례

(1) 서울학습도움센터

서울시에서는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습부진아 지원 조례(2017.03.23.일 제정)를 제정하고, 서울학습도움센터를 설치·운영(지역센터 11곳)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교육청은 지역 학습도움센터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찾아가는 학습상담’의 기능을 강화하는 중이다. 학습지원학생을 대상으로 심층진단과 학습부진요인 파악 그리고 학생 맞춤 지원을 실시(윤신희 외, 2022)하여 학습부진의 범주 안에 포함되는 경계선 지능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포괄적으로 지원 하고 있다. 지역학습도움센터는 기초학력의 결손 원인에 대한 판단을 통해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결속 원인은 첫째, 학습요인(3R’s) 둘째, 특수요인(난독, 경계선 지능, 자살 등의 위기) 셋째, 복합요인(관계, 심리 등) 등이며, 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박상현, 2023:63).



출처 : 서울학습도움센터 홈페이지 <https://s-iam.sen.go.kr/menu/menu105.do>에서 2024년 11월 20일 인출.

그림 III-4. 서울학습도움센터

(2) 느린학습자시민회

느린학습자시민회는 느린학습자의 생애주기별 어려움에 대해 느린학습자, 부모, 시민 사회가 연대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다양성으로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설립되었다. 느린학습자시민회는 '느린학습자의 이름으로 만드는 사회적 변화'를 비전으로, 느린학습자의 교육, 돌봄, 복지, 노동권 등 시민 권리 옹호 운동과 정책 지원을 실천함으로써 사회적 불평등 해소와 사회통합 및 자립을 실현하고자 한다.

주요 사업은 느린학습자 인식개선, 권익 옹호, 사회통합지원 사업, 느린학습자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교육·복지 사업, 느린학습자 생애주기별 평생교육 사업, 느린학습자 지원을 위한 정책제안, 공론화, 연구, 학술, 출판, 미디어 사업,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등이다.

표 III-3. 느린학습자 관련정보 - 복지관, 대안학교, 부모커뮤니티

느린학습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복지관
구로종합사회복지관,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 신월종합사회복지관, 장안종합사회복지관, 정릉종합사회복지관, 창동종합사회복지관
느린학습자를 위한 대안학교
고양시이루다학교, 성장학교별, 예림예술학교, 예하예술학교
느린학습자 부모커뮤니티
강서부모커뮤니티 '다꿈이', 구로부모커뮤니티 '하랑', 도봉부모커뮤니티 '느루별', 성북부모커뮤니티 '소나기', 오산부모커뮤니티 '동치미', 청주부모커뮤니티 '도담도담', 기타 느린학습자 지원단체, 대구이음발달지원센터, 사단법인 느린학습자시민회, 중랑마을교육 사회적협동조합, 청년숲 협동조합, 청소년마을배움터 문화놀이터 '와플' ~

출처 : 느린학습자시민회 (2021) 느린학습자의 슬기로운 학교생활을 위한 가이드북(<https://slowlearners.kr>)에서 2024년 11월 20일 인출.

(3) 경계선 지능인지원센터 '느린소리'

사단법인 느린소리는 다양한 삶의 문제를 겪고 있는 경계선 지능인들과 그 가족들이 차별 받지 않고 살아가는 사회를 형성하는데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활동과 지원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경계선 지능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이 자립하여 사회구성원으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평생 멘토가 되어주고자 2022년 개소한 비영리 단체다. 느린소리는 춘천사회혁신센터에 입주한 10개 업체 중 하나로 춘천사회혁신센터의 지역협력, 지속성장가능 전략, 협업지원 등을 받고 있다. '느려도 괜찮은 사회'를 만들어 다양한 사람들이 그들의 속도에 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2022년 춘천사회

혁신센터 비영리스타트업 지원사업 1기로 선정되었다. 느린학습자 지원 입법화,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사업, 지역안에서의 사회 안정망 구축 등의 비전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다. 2022년 강원지역문제 해결플랫폼 실행의제팀으로 선정되었으며, 같은 해 경계선 지능인 지원법 국회토론회를 진행하였다. 2023년에는 경계선 지능인 지원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하였다.

대표자는 12년간 학교 교육복지사로 근무했으며 2022년 경계선 지능인 자녀의 학업과 돌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모 커뮤니티를 결성하고 춘천시 내 사회적응기 청년(경계선 지능인)의 실태를 조사하였으며, 경계선 지능 청년이 직접 진행하는 토크콘서트와 팝업스토어 운영을 통해 경계선 지능인을 조기 발굴하고 맞춤형 솔루션을 계획하고 있다. 현재 춘천도시공사 등 강원도 내 10여개의 기업, 기관, 단체와의 협약을 통해 지역사회 내에서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있다.

(4) 서울특별시 경계선 지능 평생교육지원센터¹¹⁾

서울시는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조례에 근거하여 서울시 경계선 지능 평생교육지원센터(이하 mim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전국에서 가장 먼저 '서울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mim센터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mim센터는 '경계선 지능인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 실현을 위한 평생 동반자'라는 비전을 가지고, 경계선 지능인의 사회지원망 구축과 평생교육을 통한 자립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수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경계선 지능인 관련 연구개발, 발굴 및 선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진로개발 및 취업지원 활동 등 대내사업과 경계선 지능인 관련 각종 연구결과물을 통한 정책 건의와 관련 내용을 유관기관에 공유·전파하고,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자립지원 체계를 구축, 대국민 인식개선을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 등 대외사업을 실행하고 있다.

발달단계에 필요한 잠재역량개발 및 자립지원사업은 경계선 지능인 선별, 발굴, 지원체계 구축, 생애주기별 맞춤형 평생교육 및 자립지원 인프라 확충, 정서발달지원(상담지원) 체계 확립을 위한 사업 등이 있다. 세부 사업으로 선별, 종합검사 지원, 평생교육 및 자립지원

11) 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s://sbifc.org/>에서 2024년 11월 20일 인출.

프로그램 운영, 자조모임 운영, 지역거점 및 전문기관 연계사업, 경계선 지능인 통합지원망 구축, 온/오프라인 일반상담, 심리상담 지원, 자원상담가 양성 등이 있다.

뎀센터는 아동·청소년과 성인,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성인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4차산업 메이커 교육, 진로탐색, 성인지학습, 애니 더빙으로 발음&발표력 향상, 문해력 탄탄, AI로 만나는 디지털세상, 직업준비교육, 면접준비, 직업소양교육 등 직업 역량을 향상하고 고용진입을 위한 준비단계의 교육, 직무훈련 및 일경험지원 시범사업과 같은 직무교육이 제공된다는 특성이 있다. 전체적인 성인교육 대상은 만 19세에서 39세까지 적용하여 운영하고 있다.

(5) 느린학습자 돌봄가족지원센터

느린학습자 돌봄가족지원센터는 의정부지역의 느린학습자 가정 대상 자녀 돌봄 관련 심리·정서적 부담 완화 및 가족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틈새돌봄 지원사업, 돌봄부담 완화사업, 네트워크 구축사업, 맞춤형 지원사업 등이 있다.

표 III-4. 느린학습자 돌봄가족지원센터 사업

구분	주요 내용
틈새돌봄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틈새지도사 파견 월 10시간 파견돌봄
돌봄부담 완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성 쑥쑥 프로그램 : 초등 저, 고학년 대상 사회성 PG • 인지향상 프로그램(겨울 방학기간) • 양육자 정서지원(집단) 프로그램 • 양육자 자조모임 • 남다른 부모교육 • 심리상담 및 치료지원
네트워크 구축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느린학습자인식개선사업 • 실무 네트워크 회의 • 느린학습자돌봄가족지원센터 홍보 • 교사교육
맞춤형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 사례지원회의 • 돌봄가족 맞춤형 컨설팅 • 가족심리검사지원 • 가족상담지원사업 • 느린학습자 치료지원사업 • 틈새지도사 파견

출처 : 느린학습자돌봄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s://www.slowlearner.co.kr/>에서 2024년 11월 20일 인출.

(6) 지역사회복지관 경계선 지능인 대상 프로그램

뫼센터 및 느린학습자 돌봄가족지원센터 등에서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은 (느린학습자 내지)경계선 지능인을 대상으로 특화된 기관에서 수행되는 반면, 기존에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지역사회종합복지관에서도 새롭게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되었다.

표 III-5. 경계선 지능인 대상 지역사회복지관 프로그램

구분	주요 내용
구로종합사회복지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년 구로구 느린학습자 지원 조례 제정 •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 열매) 지원-서울시민참여예산 지원 • 아동 프로그램 : 초등학교 1-6학년 20명 대상 사회성 향상- 놀이체육, 오감만족(요리), 경제교육, 게임멘토링, 연극활동 프로그램 • 부모 프로그램 : 양육 스트레스 완화- 자조모임과 부모교육 • 지역주민 인식개선 공개강좌 • 구로구 내 느린학습자 네트워크 회의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계선 지능인 전담팀 구성 : 경계선 지능 아동과 청소년, 청년 대상 직업훈련 및 지역 연계형 일터 운영 • 청년 자립-취업 지원 : 휘카페 운영, 청년밥상문간 슬로우점 운영
은평구립 우리장애인복지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 은평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프로그램 • 경계선 지능인(청년(만19세-34세) 대상 • 바리스타자격증, 그룹미술활동, 6차산업, 자조모임

출처 : *김현아, "구로종합사회복지관, 느린학습자 지원체계 프로그램 진행", 매일일보, 2022년 12월 1일자, <http://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968885> 에서 2024년 07월 04일 인출.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 홈페이지 http://www.communitycenter.or.kr/bbs/content.php?co_id=social_bu_siness02_2에서 2024년 7월 4일 인출, 박소연, "복지 사각지대로 떠밀린 경계선 지능인 공공의 손길 내밀어야", 서울신문, 2024년 5월 7일자, <https://press.uos.ac.kr/news/articleView.html?idxno=14222> 에서 2024년 7월 3일 인출, 김세훈, "일자리 소외 겪는 경계선 지능인... "배우고 익히면 할 수 있어요", 경향신문, 2024년 5월 10일자,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5100600001> 에서 2024년 7월 3일 인출, 허인, "성북구의회,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 현장방문", 신야일보, 2024년 5월 16일자, <https://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74696> 에서 2024년 7월 3일 인출, 이진호, "경계선 지능인 청년들에게 쉼터가 되어주는 '휘카페'", 매거진한경, 2024년 6월 21일자, <https://magazine.hankyung.com/job-joy/article/202406212200#eniple> 에서 2024년 7월 3일 인출.

***은평구 블로그 <https://blog.naver.com/eunpyeonggu/223416988934?trackingCode=rss>에서 2024년 7월 3일 인출.

구로종합사회복지관은 2021년 구로구 느린학습자 지원 조례가 제정된 이후,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 열매)의 예산을 지원받아 아동(사회성, 경제, 멘토링, 연극)과 부모 대상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인식개선 활동과 관련 기관 네트워크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은 경계선 지능인 전담팀을 구성하여 경계선 지능 아동과 청소년, 청년 대상 직업훈련 및 지역 연계형 일터를 운영하고 있다. 경계선 지능 청년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휘카페와 청년밥상문간 슬로우점 등의 설립 지원 및 직업훈련 등을 실시했다.

은평구립우리장애인복지관은 경계선 지능인 청년(만19세-34세)을 대상으로 바리스타 자격증, 그룹 미술활동, 6차산업, 자조모임 등을 실시하고 있다.

경계선 지능인 전문 기관이 아닌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변화라 할 수 있다. 다만 생애주기에 따라 교육 및 복지 차원의 프로그램 외에 자립을 위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있다. 그 결과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전 생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 학령기 또는 아동(청소년 포함)을 대상으로 교육 관련 프로그램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아동·청소년기에 교육청과 공공·민간에서 학습부진을 포함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과는 달리 청년기의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관련 맞춤형 프로그램은 거의 없다(임선영, 2023).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 사업 등이 있으나 경계선 지능 청년은 장애인등록이 되지 않아 정책 대상에서 벗어나 있다(박광옥 외, 2022).

경계선 지능 청년을 위한 지원정책은 아동양육시설 아동 자립지원사업, mim센터 등 소수의 기관에서 일부 영역에 한하여 진행되고 있다. 운영되고 있는 사업들도 조례에 기반하여 운영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 운영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지 못하는 사례도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밖에 경계선 지능 청년을 위한 기타 사업을 실시하는 곳이 있으나 경계선 지능 청년의 희망하는 수준의 욕구나 수요를 충족하기엔 충분하지 않고(박광옥 외, 2022), 실질적인 자립을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직업역량 강화 및 개별 경계선 지능인의 직무역량을 고려한 취업 연계 프로그램은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최근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지자체 차원에서 제정된 조례가 개정되면서 서울시 mim센터 정도가 교육에서 자립까지 생애주기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 외 최근 경계선 지능 한부모 자녀 통합지원을 시작한 서울시의 사례도 시사점이 있다. 경계선 지능 한부모의 의도치 않은 부주어나 판단 미흡으로 아이의 안전이 위협받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한부모가족지원센터 내에 '서울시 경계선 지능 한부모자녀 통합지원단'을 신설하여 상담 및 사례관리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서울시 여성가족실, 2024.7.23.).

지자체 차원에서 서울시와 같이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정책과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타

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별 재정자립도, 정책과 서비스 격차가 크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경기신문, 2024.5.29).

선행연구에서 연구자들은 공통적으로 주목하는 부분은 경계선 지능 청년 개인 보다는 이를 둘러싼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제도적 지원 가운데 고용영역의 제도적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고양시에서 수행한 청년 느린학습자 실태조사 결과, 응답한 청년 252명 중 50%가 무직상태였고, 소득 없음이 52.8%로 조사되었다(윤신희 외, 2022).

동 조사에 따르면 느린학습자 청년들이 가장 필요한 서비스 욕구로 인식한 서비스는 교육지원 서비스 '언어 및 인지 사고력', '기초학습', '직업능력' 향상 등이 가장 높았고, '맞춤형 직업 훈련' 32.9%, '맞춤형 진로진학지도' 31.3%, '심리 정서' 31.0%, '사회성 향상' 27.4%, '맞춤형 정보화 교육' 등 직업훈련과 진로진학에 대한 욕구가 높았다.

4) 경계선 지능인 고용서비스 중심 지원 사례

박광옥 외(2022)의 연구에서도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식한 영역은 진로와 직업 훈련이 37.8%(71명)로 가장 높았으며, 고용이 10.6%(20명)를 차지하여 경계선 지능인의 고용 진입을 위한 준비와 유지 관련 욕구가 48.4%로 가장 높음을 알 수 있다.

정책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경계선 지능 청년이 실제 경험하는 어려움의 정도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청년들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경계선 지능 청년의 직업적 어려움의 정도는 의학적 기준의 장애에 준한다는 분석 결과도 있다. '24년 경계선 지능 청년 일 역량 강화 및 일경험 시범사업에 참여한 경계선 지능 청년 100명을 대상으로 장애인 고용서비스 다양성 검사를 실시하였다. 장애인 고용서비스 다양성 검사는 경계선 지능 청년의 고용지원 필요도를 파악하기 위해 1차 - 고용기초능력 검사(신체검사 11문항, 인지영역 12문항), 2차 고용준비태도(자기관리 영역 5문항, 사회관계 문항 13문항, 정서 영역 10문항), 3차 고용다양성환경 검사(작업환경 영역 17문항)으로 구성되었다(이미지, 장세영, 2023). 고용지원 필요 수준을 총 5단계의 서비스 대상자(생활·활동 대상자, 전반적 대상자, 제한적 대상자, 간헐적 대상자, 잠재적 대상자)를 구분하여 맞춤형으로 고용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공단에서 고용서비스를 받은 경증 정신장애, 지적장애, 자폐성 집단을 경계선 지능인 집단과 비교분석을 실시한 결과, 경계선 지능 청년 집단은 인지영역의 서비스 요구도는 발달장애(자폐성 장애, 지적장애)보다는 높지 않지만, 자기관리와 사회관계에서는 지적장애, 정신장애와 유사한 서비스 요구도(어려움)

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서영역에서는 정신장애와 유사한 서비스 요구도 (어려움)이 있고, 발달장애(자폐성 장애, 지적장애)보다는 오히려 더 높은 서비스 요구도 (어려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변민수 외, 2024).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이하 고용개발원)은 경계선 지능 청년의 고용서비스 제공을 위한 연구와 시범사업을 수행했다. '23년 경계선 지능인 대상 장애인 고용서비스 지원방안에 대한 연구를 시작으로 '24년 경계선 지능 청년 일 역량 강화 및 일경험 시범사업 연구를 진행하였다. '24년 시범사업은 정책소외대상을 적극 발굴하여 고용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을 확대하기 위한 일환으로, 현행 장애인정 기준으로 지원받기 어려운 고용사각지대의 경계선 지능인의 자립을 위한 지원을 시범사업을 통해 모색하였다. 시범사업은 고용개발원과 서울특별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지원센터, 재단법인 청년재단과 협업을 통해 수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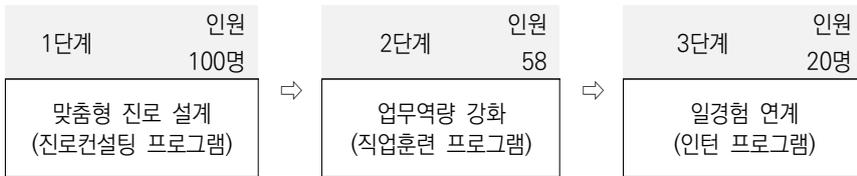
표 III-6. '24년 경계선 지능 청년 일 역량 강화 및 일경험 시범사업 개요

구분	주요 내용
사업명	• 경계선 지능 청년 일 역량 강화 훈련 및 일경험 시범사업
목적	• 비경제활동 또는 실업 상태에 있는 경계선 지능 청년의 취업 의욕을 고취하여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지원 사업
과업	• 경계선 지능 청년 발굴, 진로설계컨설팅(100명), 맞춤형 직업훈련(58명), 일경험(20명) - 맞춤형 직업훈련은 공통소양, 공통직무, 개별직무 교육과정으로 구성해서 진행 - 9개 사업장에서 5주간 일경험 진행, 직무지도원 배치
기관별 수행내용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 시범사업 총괄, 진로컨설팅 설계 및 실시, 맞춤형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일경험 사업체 발굴 및 직무개발, 시범사업 전체 모니터링 등 • 서울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 훈련 강사 수당 지원, 훈련 참여자 모집, 훈련공간 지원 등 • 청년재단 - 일경험 수당 지원, 훈련 참여자 모집, 훈련공간 지원 등

출처 : 변민수, 이미지, 이해경 (2024) 경계선 지능 청년 일 역량 강화 및 일경험 시범사업 연구. 성남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4년 시범사업의 목적은 비경제활동 또는 실업 상태에 있는 경계선 지능 청년의 취업의욕을 고취하여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것으로, 느린 학습·사회 부적응 등 고용사각지대의 경계선 지능 청년 대상으로 진로 컨설팅, 맞춤형 직업훈련 및 일경험 등 단계적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업 가능성을 확대하고자 하였다. '24년 시범사업은 기간을 나누어 1회기, 2회기로 진행되었다. 시범사업의 구성은 경계선 지능 청년에게 진로설계컨설팅(100명), 맞춤형 직업훈련 프로그램(58명), 일경험(20명) 등 총 3단계로 진행되었다. 첫째 모집 단계에서 경계선 지능 청년 중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에게 직업기능탐색-진로컨설팅(진단과 설명 제공)을 제공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일 역량 강화 훈련을 제공하였다.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직업훈련 과정이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직업훈련을 수료한 청년 중 일부를 선발하여 맞춤형 일 경험, 인턴십을 제공했다.

그림 Ⅲ-5. 시범사업 단계별 과정



첫째, 진로컨설팅은 구직자에게 적합한 진로를 매칭해주는 전문적인 검사 및 자문 활동이다. 진로설계컨설팅은 구직자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항목으로 구성된 검사도구로 진행했다.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절차에 의해 구직자의 욕구를 해결하고 진로 준비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준비할 수 있다. 진로컨설팅단계에서 진로성숙·직업흥미, 고용서비스 다양성 검사 결과 등 직업훈련 과정 설계 및 일경험 사업체 매칭을 위한 자료를 확보했다.

둘째, 직업훈련의 주요 교과 과정은 공통 소양, 공통 직무, 개별 직무로 구성하였다. 공통 소양 과목은 직업생활, 의사 표현, 대인관계기술, 자기관리, 노동인권 등으로 구성하였다. 소양교육을 선배치하여 경계선 지능인의 사회성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소양교육은 직장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자세와 태도, 업무에 대한 책임의식, 사회성 함양에 대한 훈련이다. 경계선 지능인에게 소양교육을 통해 현장에서 원만한 인간관계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공통직무교육은 사업체의 공통 업무나 부서와 상관없이 기본적인

으로 수행하는 업무에 관한 과정으로 구성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참여자가 현장에서 인턴십을 하기 전에 전반적으로 필요한 역량을 교육하고 훈련하였다. 개별직무 과정은 업체에서 수행해야 하는 직무와 관련하여 각각 필요한 직무를 교육하였다. 전반적으로 경계선 지능인의 눈높이에 맞는 직업교육 훈련과정으로 운영하여 경계선 지능 청년이 직장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직장에 원만하게 적응하고 업무 수행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운영하였다.

셋째, 일경험은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계선 지능 청년에게 현장 중심의 직무조정 등 맞춤형 일 경험을 제공하여 취업으로의 연계 가능성을 탐색하는 직업훈련 과정이다. 1차 일경험 참여 기업은 IT 관련 기업으로 1차 직무는 IT 교육 사무보조, 앱 매뉴얼 제작, IT 기기 테스트, 디자인 포털 운영 관리 등으로 구성되어 진행하고자 하였다. 2차 직무는 현장 직무수행 정도를 반영하여 IT 캠프 보조, 앱 매뉴얼 편집, 매뉴얼 전송, 포털 모니터링, 자재관리 등으로 재설계하여 실시했다. 2차 일경험에서는 다양한 산업의 사업체에서 진행되었다. 기증 물품 판매업, 스마트 팜, 카페, 홈케어, 공공기관 등이 참여하였다.

'24년 경계선 지능 청년 일 역량 강화 및 일경험 시범사업은 이전에는 시도하지 않았던 경계선 지능 청년의 취업 및 자립을 목적으로 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시사점이 있다. 시범사업의 결과는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직업훈련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후속 시범사업을 통해 사업모형을 고도화하여 경계선 지능 청년의 취업 모형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 경계선 지능 청년도 우리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직업활동을 통한 사회참여 기회가 보장되고, 사회적으로 포함(social inclusion)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고용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5) 경계선 지능인 지원의 한계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경제활동과 고용유지는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최근 선행연구를 통해 발달장애인의 직업과 고용상태는 이들의 자아개념과 건강, 삶의 질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었다(허경화, 백은령, 2023). 경계선 지능 청년들은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진로교육 내지 전공과의 지원을 받기 어렵고, 일반 학급에서 통합교육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들을 위한 진로설계와 고용을 위한 별도의 체계적인 지원체계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취업을 위한 직무수행 역량을 성장시킬 수 있는 맞춤형 직업훈련 교과 등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경계선 지능

청년의 자립과 고용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며, 이를 위해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고용지원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의 신설이 필요한 상황이다.

FGI 분석을 통해 경계선 지능인 지원제도의 한계를 살펴보았다. 경계선 지능 청년이 일상생활과 경제활동 부분에서 직면한 문제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경계선 지능 청년이 장기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게 하려면 이들에게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를 파악하여 정책적 함의를 얻고자 하였다. 인터뷰 대상은 경계선 지능 청년을 연구하는 학계 전문가들과 경계선 지능 청년의 직업활동 및 사회활동 등을 지원하는 단체에서 직접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현장 전문가들을 선정하였다. 경계선 지능인 청년정책 연구를 위한 인터뷰에 참여한 전문가는 학계 5명, 현장전문가 11명으로 진행하였다.

인터뷰는 현장전문가 및 학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서면으로 시행되었고, 각 집단들에게 경계선 지능 청년이 겪는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보내 응답을 받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질문을 크게 분류하자면 우선 두 집단 모두에게 공통 질문으로 일상생활에서 직면하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둘째, 취업 및 고용유지에 있어 이들이 겪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의견을 구했다. 또한 전문가들의 특성에 맞춰 현장 전문가들에게는 현재 시행되는 정책의 효과성 혹은 괴리가 있는지를 물었고 학계 전문가들에게는 국내 지원제도를 넘어 해외의 적용가능한 지원제도에 대해 자문을 구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FGI 질문지를 작성하기 위해 경계선 지능인 청년을 위한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질문지 초고를 작성하였고, 이후 정책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가 질문을 구성, 보완하여 최종 질문지를 완성하였다. 이후 전화 및 이메일을 통해 인터뷰의 취지를 안내하면서 인터뷰에 참여할 학계 및 현장전문가를 모집하였고, 이메일을 통해 인터뷰 질문 답변서를 배포 회수하였다.

(1) 일반 직업훈련 방식의 한계

현재의 일반 직업훈련 프로그램은 훈련생들의 다양한 역량을 고려하지 않고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일반 청년들의 기준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에서 경계선 지능 청년들이 이해하고 기술을 습득하기란 쉽지 않다. 느린 학습자들에게는 반복적인 학습과 피드백이 필수적이지만, 일반 훈련과정에서는 이러한 요소가 부족하여 경계선 지능 청년들이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경계선 지능 청년도 이해 가능한 수준의 이론학습 외에도 반복적인 실습교육과 현장훈련을 위한 충분한 기간이 확보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 직업훈련

지원 과정들은 가능한 짧은 시간 내에 과정을 이수하고 취업하는 것을 성과로 관리하기 때문에 충분하지 않은 훈련기간, 재교육 기회 부족 등의 문제가 있다.

(2) 강사진의 경계선 지능 이해 부족

경계선 지능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에서 경계선 지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강사진은 경계선 지능 청년들의 학습 특성과 요구를 잘 이해하지 못해 훈련생과 효과적으로 소통하지 못하고 일방적이고 비효율적으로 교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훈련 프로그램의 효과성이 낮은 경우가 많다. 경계선 지능 청년들은 반복적이고 실습 중심의 학습이 필요하지만, 강사들이 이러한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경계선 지능 청년들이 교육 과정에 대한 흥미를 잃게 되고 실제 필요한 직무역량을 제대로 습득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3) 경계선 지능 청년 맞춤형 지원 제도 부재

경계선 지능 청년들은 일반적으로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고 이해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며, 이를 실생활에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러나 현재의 국민취업지원 프로그램의 1:1 취업상담이나 직업심리검사 해석, 커리어 로드맵 설계 등은 경계선 청년이 용어나 개념 등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교육 과정에서 사용되는 자료나 교수법 역시 복잡한 용어와 추상적 개념을 사용하여 경계선 지능 청년들에게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런 강의방식은 실질적으로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기술보다는 이론적인 내용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어 경계선 지능 청년들이 직업훈련을 통해 실제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술을 습득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된다.

프로그램 과정에서 정보가 너무 복잡하거나 추상적이어서 청년들은 혼란을 느끼며, 자신에게 맞는 취업 목표를 설정하거나 계획을 수립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이러한 복잡한 절차는 결국 청년들이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게 만들며, 실제 취업과 이어지지 않는 결과를 초래한다.

예를 들어, 취업 준비를 위한 이력서 작성이나 면접 준비 과정에서 제공되는 지침이 너무 일반적이거나 구체적인 사례가 부족하여 청년들이 스스로 이를 적용하기 어려워하고, 결과적으로 경계선 지능 청년들이 자신감을 잃고 취업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실패를

경험하게 하기도 한다.

더 나아가,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은 경계선 지능 청년들의 개별적인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경계선 지능 청년들은 각자 다른 능력과 흥미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프로그램은 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인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어 경계선 지능 청년들은 자신에게 맞지 않는 직업훈련을 받거나, 실제로 흥미를 느끼지 않는 직무에 배치되는 경우가 많아, 결국 취업에 실패하거나 고용유지가 안되는 경우가 많다.

(4) 고용유지 서비스의 부족

경계선 지능 청년들이 취업 후 직장에 적응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나 현재의 취업지원 제도에서는 이러한 고용유지를 지원하는 서비스가 거의 제공되지 않는다. 경계선 지능 청년들은 직장에서의 변화와 새로운 규칙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며, 직무 수행의 속도가 느리고 비정기적인 업무 처리에 큰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 결국 직무수행에 대한 자신감을 잃고 퇴사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경계선 지능 청년들은 직장 내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겪으며, 갈등 상황을 효과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직장 내에서 고립감을 느끼고 팀워크에서 배제되는 경험을 하기도 한다. 이는 직장 생활의 만족도를 낮추고 고용유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3. 경계선 지능 청년 지원 관련 해외 사례

각 국가마다 경계선 지능의 진단기준에 차이가 있으며, 국가에서 이들을 지원하는 데 대한 근거와 관련하여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박광욱 외, 2022; 윤신희 외, 2022).

표 III-7. 경계선 지능 청년 대상 국외 정책 및 서비스

국가	기준	서비스
네덜란드	DSM-V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계선 지능을 지적장애와 동일한 집단으로 간주• 모든 사회서비스 대상

국가	기준	서비스
미국	DSM-V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7년부터 사회보장 서비스 대상에 경계선 지능 포함 근로나 기초생활 지원에 국한
벨기에	AAID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연한 기준으로 지능검사, 경계선 지능인이 지적장애로 진단 가능. 경계선 지능만으로 지원받기 어려움. 지역에 따라 직업과 취업지원의 대상이 됨.
캐나다	AAIDD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계선 지능만으로 지원받기 어려움. 자폐범주성장애와 같은 장애로 어려움 동행시 지원 대상이 됨.
스페인	DSM-V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정책과 제도는 부재 경계선 지능 조기선별 및 진단 개선방안, 개별화 중재 계획, 사회통합 촉진 등과 관련된 정책 방향에 합의가 이뤄짐
일본**	DSM-V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적장애진단을 받는 경우 특수교육, 특수학급에서 교육, 장애인복지정책(장애인 연금 대상), 고용정책의 대상이 됨 반면 지능 기준으로 지적장애 진단을 받지 않는 경우, 교육과 복지정책의 대상이 되지 않음 경계선 지능인(70-85)은 지적장애로 진단받지 않으나 일상생활(사회생활)의 어려움(학업이나 대인관계 어려움)을 가지므로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호주	DSM-V MHFPA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의학 조항에서 경계선 지적장애를 인지장애의 하나로 구분하고 있음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지원은 민간단체를 통해 자원서비스가 제공
독일*	ICD-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습능력의 복합장애(F81) '학습장애(Lernbehinderung)'로 통용. 근로생활참여지원-전문실무가 직업훈련제도, 기존 직업훈련에서 이론교육의 난이도와 비중 축소한 직업교육과정. 장애인만을 위한 직업교육기관(Berufsbildungswerk)에서 실시

출처 : 박광욱 외(2022), 박진우(2023),

*민세리, "경계선 지능인 취업 지원, 독일에서 가능성을 모색하다", 에이블뉴스, 2024년 2월 11일자,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0625> 에서 2024년 4월 20일 인출.

**平田正吾, 奥住秀之(2023) 知的障害概念についてのノート (2) 境界知能の現在. 東京学芸大学教育実践研究紀要, 19, pp.99-102 (https://www2.u-gakugei.ac.jp/~scsc/bulletin/vol19/19_14.pdf) 에서 2024년 4월 20일 인출, 梅永雄二(2023) 知的ボーダーライン者に対する就労支援の必要性. 第31回職業リハビリテーション研究・実践発表会. 独立行政法人高齢・障害・求職者雇用支援機構 障害者職業総合センター(<https://www.nivr.jeed.go.jp/vr/news/vrhappyou31-annai-index.html>)에서 2024년 4월 20일 인출.

1) 미국

미국은 2017년 경계선 지능을 포함하는 신경발달장애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도입하여 근로나 기초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증명될 경우 지원하고 있다. 과거 장애인만 지원했던 것과 달리 사회 관계 및 활동에 필요한 생활기술 등이 강조되면서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지원이 가능해졌다. 신청자의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잔여 기능 역량에 대한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정상적인 근로가 어려움을 증명해야 한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증상 중 하나 이상을 보여주는 의학적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학업 기술을 배우고 사용하는데 상당한 어려움, 잦은 주의 산만, 주의 유지 또는 업무 수행의 어려움, 과잉 행동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다음 영역 중 하나에서 극심한 제한이 있거나 두 영역에서 현저한 제한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정보 이해 또는 활용 능력(용어와 절차를 배우고, 지침을 이해하고, 질문에 답하고, 설명을 제공하는 능력), 자기 관리 능력(감정 조절, 행동 통제, 위험 인식, 위험한 상황 회피 능력), 업무에 집중하고 유지하는 능력(적시에 업무를 시작하고 끝낼 수 있는 능력),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할 수 있는 능력(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능력, 상호작용 시 지나친 과민성이나 민감성을 배제할 수 있는 능력) 등이다(Disability Secrets, 2022).

미국의 경계선 지능인 정책의 지향점은 사람 중심의 포용과 통합을 효과적인 변화의 요소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통합을 지원하는 공공정책, 지역사회 및 가족 지원, 교육 준비, 직장 경험 및 고등 교육, 기업/고용주의 참여, 공공 부문 고용 지원 등을 제안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교육 준비와 관련해서는 모든 수준에 걸친 통합적 교육을 지향하면서, 초등 교육에서는 기초 경력 개발 기술, 중등 교육에서는 조기 직장 경험 기회, 고등 교육에서는 통합적인 경험의 기회를 제공한다.

메리어트 Bridges 프로그램에서 Bridges는 젊은이들의 관심과 능력을 고용주의 요구와 맞춤형으로 매칭시킨다. 단순히 일자리를 구하는 것에만 국한되지 않고 청년들이 직장을 유지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청년들의 자신감을 키워 가능성과 잠재력을 확대시킨다. 미국 10개 주요 도시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소매점, 레스토랑, 사무실, 병원, 호텔, 창고 및 유통 센터를 포함하여 다양한 일자리와 매칭하고 있다. 대부분의 직장에서는 일주일에 최소 15시간 일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플타임으로 일할 수도 있다. 취업 6개월 이후, 최대 1년 동안 연락을 유지하고 업무 진행상황 관리 등 사후 관리를 한다.¹²⁾

2) 호주

호주에서는 경계선 지능인이 장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장애인에 준하는 서비스를 받지 못하지만 필요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첫째, 전문적인 정신건강과 심리치료를 위한 요법들을 제공받을 수 있다. 둘째, 경계선 지능인 가족을 위한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다. 또한 경계선 지능인과 접점을 가지고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교육,

12) BRIDGES 홈페이지 <https://bridgestowork.org>에서 2024년 11월 29일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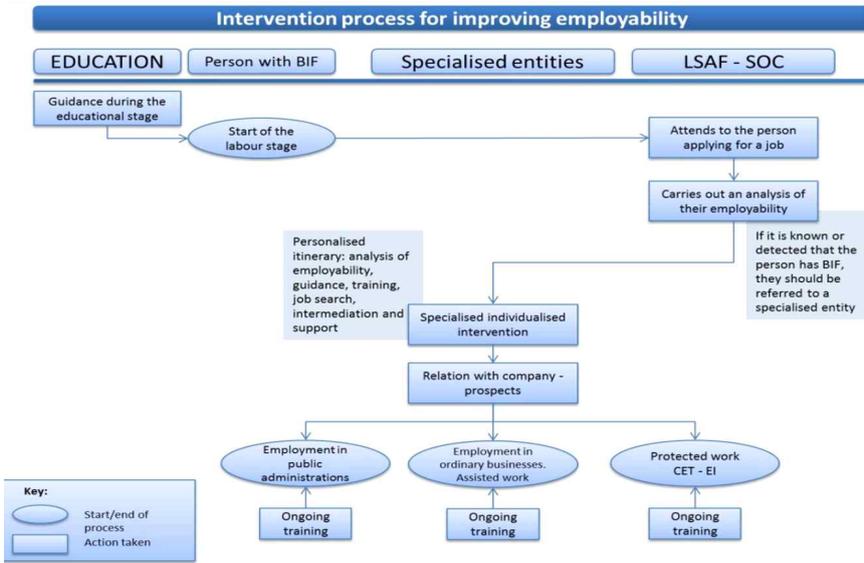
기술 훈련 및 지원 등이 있다(정용문, 2024).

호주의 경계선 지능인들을 위한 서비스는 불충분하고, 이들의 지원욕구는 충분히 해소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Lawn & Mamahon, 2015). 제한적이지만 호주의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지원은 의료 서비스와 치료 그리고 경계선 지능인 가족을 위한 서비스로 크게 구분된다. 의료적인 서비스는 전문적인 정신건강과 심리치료가 지역사회 기반해서 제공되고 있다(Australian BPD Foundation, 2023). 두번째는 경계선 지능인 가족을 위한 서비스다. 패밀리 커넥션(Family Connection) 서비스는 한 주에 2시간, 12주 동안 무료로 진행되는 과정이다. 경계선 지능인과 접점이 있거나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술 훈련 및 교육을 지원한다. 주로 경계선 지능인의 문제 상황에 주목하고 있는 이 서비스 프로그램은 커뮤니티 환경에서 진행되며, 임상(clinicians) 또는 가족 중에서 훈련된 사람이 프로그램의 리더가 된다. 패밀리 커넥션은 경계선 지능인 및 가족의 역할 및 기능에 대한 최신의 정보와 연구결과, 변증법적 행동 치료에 근거한 개인 대처 기술, 가족 기술, 가족 구성원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지원 등을 제공한다. 패밀리 커넥션은 호주 경계선 인격 장애 전국 교육 연합(National Education Alliance for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Australia)에서 주관한다(정용문, 2024).

경계선 지능인은 장애서비스호주는 경계선 지적 기능을 가진 사람들의 경험을 근거로 정책을 마련한다. 경계선 지적 기능을 가진 사람들의 생활 환경을 일반 인구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학교에서의 열악한 경험, 괴롭힘의 위험, 유급 고용기회 감소, 더 높은 빈곤율, 불안정한 주거 및 노숙 위험, 알코올 및 약물 사용 문제 가능성, 정신 질환 동반 가능성, 형사 사법 시스템과의 접촉 위험 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계선 지적 기능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자기 결정권을 고려하는 정책, 복지·안전 및 책임을 지원하는 정책, 관계와 전체적인 삶의 관점에서 개인을 지원하는 정책 등을 강화하고 있다.

3) 스페인

스페인은 ECCDC, AMHC 또는 SSMHID에서 근무하는 전문가가 발급한 인증서로 경계선 지능 진단을 공인한다. 장애 정도를 나타내는 증명서가 발급된 BIF가 있는 사람은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자원과 지원도 이용할 수 있다. 경계선 지적 기능 장애(BIF)는 전체 인구의 최소 3%로 추정하고 있으며, 최신 진단 분류(DSM-5, CIM-10)에서 BIF는 여전히 장애 영역 내의 임상 진단 범주로 분류되지 않으나 2차 범주로 분류하고 있다.



출처 : Generalitat de Catalunya(2017). Recommendations for caring for people with Borderline Intellectual Functioning. <https://presidencia.gencat.cat/funcionamentintellectual-limit> 에서 2024년 11월 29일 인출

그림 III-6. 경계선 지능인 지원 체계

스페인인 경계선 지능 고유의 특성과 그 특성에 따른 지원과 돌봄에 대한 사회 공동체의 합의가 있다. 경계선 지능인 고용 관련 합의 매뉴얼 살펴보면, 정신 장애의 경계에 있는 사람들의 고용 관리 프로젝트 승인(1997.11.11.), 경계선 정신 장애 고용 관리 프로젝트 대상 사업장 수를 확대한 정부 협정(1998.10.21.), 경계선 정신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고용을 관리하는 프로젝트를 확대하는 정부 협정(1999.6.15.), 경계선 지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고용 프로젝트를 확대하고 이를 지적 장애가 있는 다른 청소년 그룹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 협정(2001.5.29.) 등이 있다. 2007년 전문가로 구성된 카탈루냐 협회 나비우(ACNabiu)는 ‘COMFIL 2007’ 프로젝트를 통해 협회가 합의한 경계선 지능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statement)의 전체 내용은 아래의 표에 10개의 항목으로 정리하였다(Salvador-Carulla et al., 2013).

표 III-8. 경계선 지능 성명서

합의점	서비스
1	• 경계선 지능은 특정 공중 보건, 교육, 법적 관심이 필요한 메타 건강 상태 (health meta-condition)로 71-85사이의 지능으로 인해 다양한 인지적 장애와 활동 및 사회참여의 제한 등을 포함한 기능적 결함을 가짐
2	• 경계선 지능 아동은 일반 아동에 비해 더 높은 취약성을 가지므로 조기 발견, 정신병리학적 평가, 특정 학습 잠재력 평가 등을 실시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3	• 경계선 지능인 집단에서 흔히 발생하는 정신건강 문제를 고려할 때 정신병리학적 평가가 중요하며, 그 결과는 인지적 프로파일과 통합되어야 함
4	• 아동청소년기의 경계선 지능은 지능적 결함이 아닌 또래나 사회적 상황을 고려하여 일반 교육과정의 이수를 제한할 수 있는 기준을 바탕으로 그 개념을 정의해야 함
5	• 경계선 지능인은 학교, 직장 및 사회적 적응을 촉진을 위한 지원의 요구가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의료 지원이 필요할 수 있음
6	• 법적, 행정적 접근성의 어려움으로 인해 요구되는 지원은 적절하지 않기에 접근성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이 요구됨
7	• 정의, 평등, 다양성의 원칙을 바탕으로 한 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경계선 지능의 조기 선별 및 평가 등의 목표를 건강, 사회, 교육, 고용, 법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함
8	• 건강을 비롯한 사회, 교육, 노동, 법 등의 여러 분야에서 경계선 지능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연구가 요구됨
9	• 다양한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경계선 지능 교육이 요구됨
10	• 여러 부처간 정보 공유를 포함한 협업이 증진되어야 함

출처 : 박광욱 외. (2022).

경계선 지능인의 노동 역량을 확립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라는 기초와 함께 사회적 합의가 중요함을 보여준다. 이상의 정부 협정과 합의는 스페인의 경계선 지능인 지원과정에서 고용 및 사회 보장부가 필요한 정책을 결정하고 국가 일반 예산에서 자치 공동체에 자금을 분배하여 전제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적극적인 정책수행을 가능하게 한다. 경계선 지능인 대상 공공고용 서비스(SOC)의 내용을 살펴보면 경계선 지능인은 적극적 고용 정책의 지원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공공고용서비스는 기본적으로 현재 취업 중이든, 실업 중이든, 일자리를 찾는 모든 사람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노동 기회를 제공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4. 경계선 지능 청년 고용지원 해외 사례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해외사례 가운데 독일 사례를 통해 경계선 지능인 고용지원의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독일에서 경계선 지능인은 학습장애의 한 유형에 포함된다. 지원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장애인에 준하는 정도로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사회법전 제3권(근로촉진법) 제19조는 “장애인은 사회법전 제9권에 정의된 장애 유형 및 정도에 의하여 근로생활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크게 제한되어 근로생활에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 여기에는 학습장애인도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다(민세리, 2024).

학습장애인을 위한 직업교육기관에서 전문실무가 직업훈련제도를 통해 직업교육을 받는다. 독일의 직업훈련 전문가들은 학습장애인의 직업훈련 성공을 위해서 필요한 조건으로 명확한 작업 지침, 목표 정의, 질문과 도움 요청에 대한 격려, 직무습득을 위한 충분한 시간 제공과 직업교육 성과의 수준을 천천히 향상시키는 방식 등을 제시한다¹³⁾. 비장애인 2~3년 걸릴 교육을 3~4년간 느리게 교육하고, 이론보다는 실습 교육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훈련하도록 하고 있다.

다른 국가에 비교하여 독일의 경계선 지능인 정책은 최근 새롭게 법령이 수정되면서 구체화되고 있다. 경계선 지능인 지원으로 법적으로 규정하면서 관련 지원방안들을 수립하는 과정을 참고할 수 있다. 사회법전 제9권 제2조 제1항의 장애인 개념과 관련하여, 사회법전 제3권(Arbeitsförderung) 제19조가 개정되면서 학습장애인이 장애인 범주에 포함되게 되었다. 독일의 경계선 지능인은 학습장애에 포함되며 진단은 의료전문가, 즉 소아과 전문의가 진단하고 있다.

1) 독일의 경계선 지능인 정의 및 현황(규모)

(1) 경계선 지능인으로서 학습장애인의 법적 정의

독일에서 경계선 지능인이란 용어는 사용되지 않는다. 이에 해당하는 독일식 표현으로 학습장애인(Lernbehinderung)이 사용되고 있으나, 사회적으로나 학술적으로 통합된 개념

13) 경계선 지능인 취업 지원, 독일에서 가능성을 모색하다(에이블뉴스, 2024.02.11.)<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0625>

념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학습장애라는 용어는 1948년부터 ICD-6-WHO¹⁴⁾와 함께 영어권 국가에서 “특정 학습 결함”(읽기, 수학 등)으로 사용되었는데, 독일에서는 “첫눈에 잘 드러나지 않는 장애(Behinderung auf den zweiten Blick)”라는 의미에서 1951년 독일 ICD-6에서 학습장애(Lernstörungen)라는 용어가 정신신경증과 성격장애 등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1948년 이후 국제 분류 외에 새로운 개념 정의를 시도했으며, 그 중에서 가장 이해하기 쉽고 설득력 있는 정의는 교육학자 구스타브 오토 칸터(Gustav Otto Kanter)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에 의하면, 학습장애의 정의는 “장기적으로 심각하며 광범위한 학교 성적 실패”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지능장애를 동반하지만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정신장애를 의미한다.¹⁵⁾ 최근에는 2005년 칼 하인츠 에설(Karl Heinz Eser)의 정의가 주목을 받는다. 그에 의하면, “학습장애는 질적으로 고유하고, 분명하고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장애 범주를 형성하지 않는 협의의 정신적 장애와 정상 사이의 연속체에 있는 광범위하고 복잡한 경계선 증후군이다.¹⁶⁾” 다시 말해, “첫눈에 잘 드러나지 않는 장애(Behinderung auf den zweiten Blick)”를 의미한다.

따라서 에설(Eser)은 학습장애를 대체로 “경계선 지적 기능(Borderline Intellectual Functioning)”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며, 그의 개념정의를 특수학교나 일반학교에서 수학할 수 있는 자격을 결정할 때 중요하게 적용된다.

(2) 학습장애인의 규모

독일의 학습장애인 규모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는 아직까지 찾을 수 없으며, 납득할 만한 추정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전형적인 장애유형인 학습장애는 사회법적 표현으로 Lernbehinderung이며, 학교법적 용어로는 Lernbeeinträchtigung이 사용된다.

14) 세계보건기구의 질병, 부상 및 사망 원인에 대한 국제 통계 분류 매뉴얼 국제 질병과 죽음의 원인 목록 6개 개정 1948년 채택.

15) Eser, Wie viel „Lernbehinderung“ steckt im „Sonderpädagogischen Beratungs-, Unterstützungs- und Bildungsangebot“?, S.(https://lernbehinderungen.de/wp-content/uploads/2023/09/LB_vs_SBUB_Eser-20230907.pdf)에서 2024년 11월 29일 인출.

16) Eser, Lernbehinderung, die Behinderung „auf den zweiten Blick“ – oder: Sind(junge) Menschen mit Lernbehinderung überhaupt behindert?, In: Berufliche Rehabilitation, 19(4), 2005, S. 2-3(<https://www.bildung-stmk.gv.at/dam/jcr:d838fa22-2e37-45b2-9e85-4acbe132d956/Lernbehinderung%20-%200%20Klassifikation.pdf>)에서 2024년 11월 29일 인출.

이러한 학습장애(Lernbehinderung)는 영국식으로 “Learning Disability”에 해당하는데, 새롭거나 복잡한 정보를 이해하고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는 능력이 현저히 감소된 지능장애와 성년이 되기 전에 시작된 독립적인 대처능력이 감소된 사회적 기능장애를 의미한다. 영국적 관점에서 학습장애가 있는 청년층의 비율은 약 2.5%, 노년층은 약 2.1%이며, 대략적인 연령 구성을 고려하면, 전체 비중은 약 2.3%에 이른다. 영국과 비교하여, 독일의 학습장애인은 대략 19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데 다소 보수적 추정으로 평가된다. 이는 전체인구의 2.33%에 해당한다. 이러한 추정에 대한 근거는 국가건강보고서(Bericht Gesundheit in Deutschland 2015)¹⁷⁾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경도장애(장애등급 50 미만)를 가진 사람 중 상당수의 경도장애인이 학습장애인일 것으로 추정된다.¹⁸⁾ 또한 전 연령대에서 학습장애인 수는 약 180만 명에서 2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기본적으로 학습장애인에 대한 유일한 기준을 지능지수로 본다면, IQ 70~85 사이의 인구가 13.59%에 이르며, 약 1,100만명으로 추정된다. 물론, 이러한 수치는 비현실적이며, 학습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삶에서 극복해야 하는 위험을 너무 과장한 추정일 수 있다.

한편, 2022년 연방노동사회부(BMAS)에서 발표한 장애인 참여에 대한 표본 설문조사 최종보고서(Abschlussbericht Repräsentativbefragung zur Teilhabe von Menschen mit Behinderungen)에 의하면, 일상적인 학습·사고·기억·방향할 장애 항목으로 분류하면, 절대적이지는 않지만 장애유형으로 학습장애인 규모는 16세에서 79세 사이의 전체 인구 중에서 3.36%에 이른다. 대표 표본에서 전체 137,455명 중에서 4,618명에 해당한다. 16세 이상의 학습장애인은 2018년 기준 총 192,600명이며, 2.62% 비중을 차지한다. 다만, 일상적인 학습·사고·기억·방향 장애 범주에 속하는 19,954명의 학생과 지적장애가 있는 94,192명의 학생을 포함하면 전체 306,746명으로 파악된다.¹⁹⁾

이와 달리, 독일학습장애인지원연대²⁰⁾에 따르면, 학습장애인 규모는 약 200만 명으로 추정된다. 이 수치는 독일 전체 인구의 약 2.4%에 해당한다. 장애 학생의 비율은 2005년 1.8%에서 2018년 22.1%로 증가하였으며, 학습장애 또는 정신장애로 진단된 사람의 비율

17) Robert-Koch-Institut(RKI), Gesundheit in Deutschland (2015). S. 133 f.

18) 학습지원-연방학습장애인지원협회(e.V.), 학습장애통계: 독일 학습장애인의 인적 범위에 포함되는 사람은 얼마나 많은가?, 12. Dezember (2020), S. 1.

19) 학습지원-연방학습장애인지원협회(e.V.), 학습장애통계: 독일 학습장애인의 인적 범위에 포함되는 사람은 얼마나 많은가?, 12. Dezember (2020), S. 2.

20) 독일학습장애인지원연대 <https://lernen-foerdern.de/portfolio-item/lernbehinderung>에서 2024년 11월 29일 인출.

도 2005년 10.2%에서 2015년 20.6%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각 주의 상황에 따라 변동사항이 크지만, 2018년도에는 학습, 언어, 정서 및 사회 발달을 포함하여 학습장애를 진단받은 학생 수는 194,910명에 이른 것으로 파악된다. 이 수치는 특수교육 지원이 필요한 전체 학생의 35.8%에 해당한다.²¹⁾ 이러한 특수교육대상자 중 학습장애인은 약 40%로 파악되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표 III-9 각 기관별 독일 학습장애인의 규모 추정치 개관

기관	출처	추정 인원
Robert-Koch-Instituts(RKI)	국가건강보고서 (2015년)	약 180만명~ 200만명 (보수적으로 190만명 추정) 전체인구의 2.33%
연방노동사회부(BMAS)	장애인 참여에 대한 표본 설문조사 최종보고서(2022년)	16세~ 79세 전체 인구 중 3.36%
독일학습장애인지원연대	홈페이지	약 200만명 (전체 인구의 약 2.4%)

2) 독일의 경계선 지능인 판정기준 및 사례

(1) 학습장애 진단기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독일의 학습장애인에 대한 공식적으로 명확한 진단기준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관련된 공식 통계 역시 확인되지 않아 일반적인 장애인이나 중증장애인에 대한 통계를 통해 간접적으로 학습장애인 현황을 추정해 볼 수 있을 따름이다. 더욱이 연방노동사회부(BMAS) 홈페이지에서도 학습장애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경계선 지능인 관련 내용을 해석에 의해 파악할 수 있다.

먼저, 장애는 WHO의 ICD-10에서 규정하는 장애에 관한 개념정의를 따르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의학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특별한 학습장애의 범주에 읽기 및 쓰기 장애, 단독 철자 장애 및 수리적 계산 장애를 포함한다. 또한 ICD-10의 추가 진단 단위는 학습능력의 복합장애(F81)이며, 학습장애의 전형적인 장애는 발달장애로 분류되어 코드 ICD-10 F81로 표시된다.²²⁾

21) 위키백과 Lernbehinderung(<https://de.wikipedia.org/wiki/Lernbehinderung#Statistik>)에서 2024년 11월 29일 인출.
22) Lernen Förder(Hrsg.), Lernbehinderung im Spiegel der neuen ICD-11, Lernen Fördern·Heft 3/22, S. 19.

그런데 실제 학습장애 진단은 의료전문가, 즉 소아과 전문의가 개인의 필요에 따라 진단하게 된다. 진단 시기는 임신 중, 출생 시, 아동기 또는 성인기 등 다양하다. 학습장애 정도는 경증, 중등도, 중증 등으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학습장애는 크게 4가지 범주로 구분된다.²³⁾ 첫째로 음성언어로 듣기와 말하기, 둘째로 문자언어로 읽기와 쓰기 및 철자법, 셋째로 산술의 범주에 계산 및 개념이 포함된다. 넷째로 추론은 조직화 및 아이디어와 생각의 통합을 포함한다.

(2) 지능지수에 따른 분류

독일교육위원회(Deutsche Bildungsrat)에 의하면, IQ 55-85 사이에 있는 학생이 지적장애(Minderbegabung, Intelligenzminderung) 학생으로 분류된다. 이 중에서 IQ 70-89 사이에 있는 경우는 가벼운 지적장애등급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지능이 약간 낮은 경우에 해당하는 이들이 학습장애인(Lernbehinderte)으로 분류된다.

이와 비교해서, ICD-10 분류는 IQ 50~69에 해당하는 경우를 경도지적장애로 간주한다(코드: ICD-10 F7). 이들의 지능수준은 성인의 경우에 약 9세에서 12세 미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이러한 분류는 통상적으로 전문가들이 지능지수에 따른 분류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IQ 85-115는 정상지능, IQ 70-85 사이는 학습장애, IQ 70 미만은 경증 지적장애, IQ 50 미만은 중등 내지 중증 지적장애로 분류된다.

(3) 학습장애 분류 및 학습장소에 대한 예시

에설(Eser)에 의하면, 경계선 지적기능에 해당하는 학습장애의 분류 및 학습장소에 대한 개별적 귀속 사례는 다음 <표Ⅲ-10>에서 확인할 수 있다.

23) AccessComputing 홈페이지 <https://www.washington.edu/accesscomputing/what-are-specific-types-learning-disabilities>에서 2024년 11월 29일 인출.

표 III-10. 실제 장애등급별 사례

실제 등급 예시				
(1)	(2)	(3)	(4)	직업준비 교육장소 ²⁴⁾
IQ 약 68 1	왼쪽 경련(장, 붙잡기, 다리) 언어장애(구강근육 운동) 2	계산 장애 (숫자 <100) 강점: 사회적 기술, 자기평가, 도움 수용 1	온전하고 배려심 있는 가족 1	FZ-2/(직업준비교육 >1년) 현재: 수습고용을 통한 통합단계(1차 노동시장) BV 5
IQ 약 70: 통상 약 65, 실제 약 78 2	장애 수준의 다중 정신질환(훈련이 거의 불가능한 불안정성, 애착장애) 신체 제약 없음 1	없음 0	거주만 제공! 위기관리 없음, 어머니의 거부, 의붓 아버지의 역할 부재 0	FZ-2/(직업준비교육 >1년) 복수의 구직 현재: 장애인직업장 (WfbM) BV 5
IQ 약 85-90 3	없음 0	학업성적 부진 ADHD 특히 과잉 행동(약물 무반응!) 2	구조적으로 가족일 뿐 사회적으로 눈에 띄지 않음 1	BvB 재활전문 (BBW): 강력한 구조, 증후군을 감당할 능력이 있는 전문인력/직원 필요 BV 4
IQ 약 95(언어문제 없음) 3	없음 0	이만찌(러시아), 사회적으로 소극적이며, 때때로 공격적 불만 강점: 실행성은 있으나 롤모델 필요 1	가족이 사회적으로 눈에 띄지 않음 1	직업준비교육(BvB) 일반 직업교육 동행 지원이 있는 사업장 직업교육 과 특수직업학교 고려 가능 BV 3

자료: Eser, Lernbehinderung, die Behinderung „auf den zweiten Blick“ - oder: Sind(junge) Menschen mit Lernbehinderung überhaupt behindert?, S. 17.

여기서 변수 (1), (2), (3), (4)는 미국 지적장애인협회(AAMR)의 분류 및 진단시스템에 따른 변수이며, 기본적으로 (1), (2), (3)이 기본 구성 변수이고, (4)는 학습장애를 주요 증후군으로 분류하는데 필요한 조정역할을 한다. 먼저, (1)은 학습장애의 정도(Lb)를 나타내며, {Lb1 (IQ = 50-69), Lb2 (IQ = 70-85), Lb3 (IQ > 85)}으로 구분된다. 세부적으로 '심각한 학습장애'(Lb1), '학습장애'(Lb2) 및 '예상치 못한' 학습장애(Lb3) 수준을 의미한

24) 선정된 학습 장소 분류는 연방노동청/연방노동사무소의 학습 장소 개념을 참조.

다. (2)는 추가장애(ZB)를 의미하며, ZB0 (없음), ZB1 (하나), ZB2 (최소 2개)로 구분된다. (3)은 실생활 적응력 및 추가장애(LAZS)를 의미하며, 실생활 적응력은 자기결정, 학습능력 (특히 독일어, 수학), 일, 여가, 건강, 안전, 의사소통, 사회성, 가정생활(주거), 자기관리 및 공공생활 참여 및 지원 활용 등과 관련된다. (4)는 사회적 맥락 요인(SU)으로 SU0(지나나 어려움 없음), SU1(긍정적 지지)으로 구분된다. 이는 장애인의 적응만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환경요인으로서 장애인에 대해 보다 가족의 지지와 같은 수용적인 사회적 환경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²⁵⁾

이러한 사회적 환경요인을 고려하여 일반적으로 지원에 대한 개인의 필요성(1~4)을 다음과 같이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 1 = 간헐적 / 일시적 / 장애등급(GdB) 약 10-20
- 2 = 제한적 / 제한적 / 장애등급(GdB) 30-40
- 3 = 광범위 / 확장적 / 장애등급(GdB) 50-70
- 4 = 설득적 / 포괄적 / 장애등급(GdB) 80-100

그리고 학습장소(LO)는 연방노동사무소의 학습장소 개념에 따라 직업준비(BV)와 직업교육(BAB)을 구분하여 별도로 배정할 수 있다. 따라서 학습장애 분류 및 학습장소 배정은 개별적 사례에 따라 이루어지며, 전문적인 자격을 갖추고 경험이 풍부한 재활상담사에 의해 수행된다.²⁶⁾

3) 경계선 지능인의 노동시장 및 직장생활 참여

(1) 포용적 노동정책의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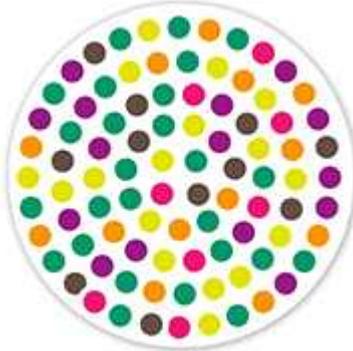
① 포용 및 통합의 개념적 구분

통합은 장애인들이 주어진 상황에 가능한 적응할 것을 요구하는 반면, 포용은 통합 그 이상을 의미한다. 포용의 핵심은 장애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처음부터 삶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영역에서 스스로 결정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에 있다(자기결정에

25) Eser, Lernbehinderung, die Behinderung „auf den zweiten Blick“ - oder: Sind(junge) Menschen mit Lernbehinderung überhaupt behindert?, Bildungsdirkeiton Steiermark PDF 자료, S. 15-16.

26) Eser, Lernbehinderung, die Behinderung „auf den zweiten Blick“ - oder: Sind(junge) Menschen mit Lernbehinderung überhaupt behindert?, Bildungsdirkeiton Steiermark PDF 자료, S. 16.

의한 동등하고 제한 없는 삶 영위). 다시 말해, 직장, 학교, 행사, 클럽, 가족, 사회에서 모든 사람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그대로 받아들여지며 장벽 없이 삶을 영위할 수 있음의 의미를 의미한다.

	
<p>*통합: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장애가 없는 사람들에 비해 맞춰진 세상에 (더 혹은 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함</p>	<p>*포용: 모든 사람이 장벽 없이 평등(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세상을 설계함</p>

출처: 바이에른주 가족노동사회부 홈페이지 <https://www.stmas.bayern.de/inklusion/begriff/index.php>에서 2024년 11월 29일 인출 및 재구성.

그림 III-7. 포용 및 통합 개념적 구분

② 포용적 노동의 의미와 정책 목표

포용적 노동은 기본적으로 직장생활 참여(Teilhabe am Arbeitsleben)를 의미하며, 직장생활 동행지원(Begleitende Hilfen im Arbeitsleben)을 통해 장애인에게 적합한 근로조건 설계, 기술적 근로지원을 위한 현금급여, 일자리 획득, 독립적인 직업인으로 존재성 확립 및 유지, 장애인에게 적합한 주거 지원, 추가 직업교육조치 참여, 특수한 생활상황에 대한 서비스 및 필요한 업무지원 비용 인수 등을 제공한다. 포용적 노동정책은 중증장애인과 직장생활에서 동등한 지위를 가진 사람들의 참여 강화 및 촉진하며, 고용관계 확보 및 중증장애인 고용에 대한 조언 및 지원 제공을 목표로 한다.²⁷⁾

27) Bürgerservice des Sozialministeriums 홈페이지 <https://www.stmas.bayern.de/arbeitswelt/index.php>에서

③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국내적 실현

2009년 발효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직업교육 및 근로생활 분야에도 장애인의 사회 통합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 장애인의 자기 결정적 삶을 가능하게 하는 권리를 보장한다.

먼저, 독립생활 영위는 동 협약 제19조에서 “거주지를 선택하고 어디서 누구와 함께 살지 결정할 권리”를 의미한다. 둘째, 개인이동성은 제20조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권리, 즉 장벽 없는 환경, 휠체어 등 이동보조기구에 대한 권리로 보장한다. 셋째, 정보접근 및 표현의 자유는 제21조에서 정보는 자기 결정적 삶을 위한 의사결정의 중요한 기초이며, 정보에 대한 접근은 추가 비용이 없어야 하고 다양한 장애유형에 적합한 특수한 형식 및 기술의 형태로 제공 가능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보장한다. 넷째, 개인정보 보호는 제22조에서 사생활에 대한 자의적, 불법적 간섭 방해 금지, 즉 쓸 수 있는 개인공간에 대한 특별한 보호 필요성을 강조함으로써 보장한다.

이러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내용을 국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평등한, 비차별적 접근과 제한 없이 삶에 참여하고 모든 사람의 포용을 추구한다. 여기서 평등은 차별의 정반대(비차별)이며, 어느 누구도 출신, 문화, 언어, 장애, 성별 또는 연령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의미하며, 포용적 학습은 일반교육시스템에 대한 비차별적 접근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포용적 학습은 어린이집에서부터 일반 초중고, 대학교까지 포함하여 가능한 한 동일한 조건에서 성장하고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리고 포용적 노동은 직장에서의 평등(Gleichberechtigung)을 의미하며, 직장생활에 참여함으로써 사회에서 동등한 위치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직장생활 참여는 개인적 성공의 기초가 되는데, 장애인에게는 특히 사회적 인정 기능을 갖는다. 그리고 제한 없이 삶에 참여한다는 것은 삶의 모든 중요한 영역에 접근할 수 있는 일반적이고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의미하며, 교통수단과 건물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접근이 특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다.

끝으로, 모든 사람에 대한 포용적 정책은 궁극적으로 장애인이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하고 동등하게 향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요구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한다.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수용되어 함께 살아가는 욕구 없이는 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포용적 정책은 장애 유형에 대한 다양성을 고려하여 각각의 요구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특히, 수화 번역이나 글꼴 조정과 같이 약간의 지원조치만으로도 사회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

④ 포용적 노동정책의 예시 - 바이에른 주의 실천계획

바이에른 주의 장애인정책은 이미 UN-장애인권리협약의 상당 부분을 반영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2003년 독일에서 처음으로 연방주 차원에서 “바이에른 장애인평등법(BayBGG)”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 법은 장애인 돌봄과 부양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평등한 참여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추구하고 있다. 특히,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장애인협회 및 단체와의 교류를 통해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장애인의 우려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그들의 권리, 존엄성 및 능력에 대한 존중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고, 둘째로 유아기부터 시작하여 모든 수준의 통합 교육을 시행한다. 셋째로 직장생활 참여를 위한 다수의 조치와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넷째로 폭력을 예방하고 개입하기 위한 조치로서 장애 소녀와 여성에 대한 이중차별을 철폐한다. 다섯째로는 대중교통부터 정보 획득까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접근성을 측정하며, 여섯째로 통합지원(Eingliederungshilfe)을 사람 중심의 참여서비스로 발전시키고 통합지원비용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사회 전체의 과제로 공유한다.

(2) 통합청 및 포용청의 역할과 기능

포용적 노동정책이 지향하는 직업생활참여, 즉 직업재활급여의 즉시 제공은 통합청 혹은 포용청을 통해 실행된다. 다만, 직업재활급여의 제공은 즉시 필요한 경우에 잠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관할 재활기관(Reha-Träger)으로부터 그 비용을 상환 받을 수 있다.

통합청 및 포용청의 주요업무는 기본적으로 직장생활 통합을 촉진하고 보장하는 것이며,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작업장과 교육장소를 갖추는데 도움을 제공한다. 또한 장애직원에 대한 특별한 해고보호를 보장하며, 사용자가 정해진 수의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 경우에 부담해야 하는 조정부담금을 징수하고 사용한다(사회법전 제9권 제154조와 제

160조). 직장생활에 동행지원 기능을 통해 장애인이 자신의 역량과 지식을 제공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일자리에 고용될 수 있도록 하며, 심리사회적 돌봄, 재정적인 혜택 및 보조금을 포함한 동행지원을 제공한다. 다만, 장애인을 위한 특별지원(사회법전 제9권 제200조)은 이유 없이 적절한 업무나 직업재활조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철회된다. 물론, 장애의 성격이나 정도로 인해 고용관계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원이나 취업지원 비용도 제공한다(사회법전 제9권 제55조 제3항).

한편,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조정기금(Ausgleichsfonds)은 중증장애 인정은 받지 못했으나, 직업재활급여를 받는 청소년 및 청년의 직업교육에 대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이는 교육기회를 확대하여 노동시장으로의 통합을 개선하고 사회참여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3) 학습장애인 고용촉진 및 관련 법령

① 사회법전 제3권과 제9권의 장애인 개념 및 범위

사회법전 제9권 제2조 제1항의 장애인 개념과 관련하여, 사회법전 제3권 (Arbeitsförderung) 제19조가 개정되면서 학습장애인이 장애인 범주에 포함되게 되었다.

표 III-11. 장애인 개념 및 범위

SGB III § 19 Menschen mit Behinderungen	사회법전 제3권 제19조 장애인
<p>(1) Menschen mit Behinderungen im Sinne dieses Buches sind Menschen, deren Aussichten, am Arbeitsleben teilzuhaben oder weiter teilzuhaben, wegen Art oder Schwere ihrer Behinderung im Sinne von § 2 Abs. 1 des Neunten Buches nicht nur vorübergehend wesentlich gemindert sind und die deshalb Hilfen zur Teilhabe am Arbeitsleben benötigen, einschließlich Menschen mit Lernbehinderungen.</p> <p>(2) Menschen mit Behinderungen stehen Menschen gleich, denen eine Behinderung mit den in Absatz 1 genannten Folgen droht.</p>	<p>(1) 이 법에서 의미하는 장애인은 학습장애인을 포함하여 제9권 제2조 제1항에서 의미하는 장애의 성격이나 심각성으로 인해 직장생활에 참여하거나 계속해서 참여할 가능성이 일시적으로 현저히 감소되고 그로 인해 직장생활에 참여하는데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다.</p> <p>(2) 장애인은 제1항에서 언급된 결과로 장애 위기에 처한 사람과 동일하다.</p>

SGB IX § 2 Begriffsbestimmungen	사회법전 제9권 제2조 개념정의
(1) Menschen mit Behinderungen sind Menschen, die körperliche, seelische, geistige oder Sinnesbeeinträchtigungen haben, die sie in Wechselwirkung mit einstellungs- und umweltbedingten Barrieren an der gleichberechtigten Teilhabe an der Gesellschaft mit hoher Wahrscheinlichkeit länger als sechs Monate hindern können. Eine Beeinträchtigung nach Satz 1 liegt vor, wenn der Körper- und Gesundheitszustand von dem für das Lebensalter typischen Zustand abweicht. Menschen sind von Behinderung bedroht, wenn eine Beeinträchtigung nach Satz 1 zu erwarten ist.	(1) 장애인은 태도 및 환경조건의 장벽과 상호작용하여 6개월 이상 사회에 동등하게 참여하는데 방해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신체적, 정신적, 지적 또는 감각적 장애(Sinnesbeeinträchtigung)를 가진 사람이다. 제1문에 따른 장애는 신체 및 건강상태가 해당 연령의 일반적인 상태와 다를 경우에 발생한다. 제1문에 따른 장애가 예상되는 경우, 사람들은 장애를 입을 위험이 있다.

출처: 독일 연방사법부와 연방사법청, 인터넷 법률 홈페이지 '사회법전 제9권'(https://www.gesetze-im-internet.de/sgb_9_2018/)에서 2024년 11월 29일 인출.

② 포용적 노동시장 촉진법

포용적 노동시장 촉진법(Gesetzes zur Förderung eines inklusiven Arbeitsmarkts)은 2023년 6월 6일 연방의회를 통과하였으며, 6월 13일자로 공포되어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BGBl. 2023 I Nr. 146 vom 13.06.2023).²⁸⁾ 이 법은 포용적 사회를 위해 장애인이 평등하고 자기 결정적으로 직장생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더 많은 장애인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기 위해서, 건강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보다 구체적인 지원을 제공할 것을 과업으로 한다. 이는 숙련된 인력에 대한 높은 수요에도 불구하고 포용적 사회라는 의미에서 장애인들이 평등하고 자기 결정적으로 직장생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²⁹⁾

③ 연방참여법

가. 연방참여법의 개요

28) 독일연방법률공보 홈페이지 https://www.recht.bund.de/bgbl/1/2023/146/VO.html에서 2024년 11월 29일 인출.

29) REHADAT 홈페이지(https://www.rehadat.de/lexikon/Lex-Gesetz-zur-Foerderung-eines-inkluisiven-Arbeitsmarkts/)에서 2024년 12월 2일 인출.

연방참여법(Bundesteilhabegesetz, BTHG)은 장애인의 참여와 개인의 자기 결정권 강화를 목표로 하며, 2009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독일에서 구현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 법을 통해 독일의 포용적 노동시장은 확장될 수 있으나 장애인은 장애 관련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자신의 소득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는 문제가 있다. 독일에서 장애에 대한 법적 정의와 협약 조항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재정적인 여유가 없는 장애인은 시설 밖에서는 자립생활이 어려운 현실을 간과하였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혁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방참여법의 목표가 장애인을 위한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므로 더 많은 참여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둘째, 통합지원을 받는 장애인은 자산과 소득을 더 많이 보유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기초보장 및 통합지원을 부분적으로 가정하여 연방정부에 의해 보장되며, 지방자치단체와 주정부의 부담을 줄여주는 기능을 한다. 이러한 연방참여법의 목표 및 조치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표 III-12. 연방참여법의 목표 및 조치

구분	조치	목적
조기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기관은 조기에 협의해야 하며, 새로운 프로젝트모델은 소득활동불능을 방지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기에 만성질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소득활동능력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함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활신청만으로 향후 다양한 기관들로부터 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누가 관할하는지가 아닌 개별적 지원에 중심을 두도록 함
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독립적인 상담기관은 자조를 위한 지원을 제공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이 스스로 더 많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함
통합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를 들어, 노동예산은 노동으로의 새로운 전환을 창출하고 석사과정에서와 같이 새로운 동행서비스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 노동과 사회적 참여가 더 가능해지도록 함
중증장애인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사와 작업장에서 중증장애인 대표를 위한 더 많은 권리 및 청구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이 결정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
품질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더 나은 효율성과 품질검사 및 제재 가능성을 통해 서비스 기관은 더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비스를 제공하고 좋은 품질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함

출처: 바덴뷔템베르크주 60년 생활지원 홈페이지(<https://lebenshilfe-bw.de/blog/bundesteilhabegesetz>)에서 2024년 11월 28일 인출.

나. 장애위험의 조기 인식 및 예방적 재활(rehapro)

예방조치는 만성 질환이나 장애를 초기 단계에서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연방참여법(BTHG)은 연방노동사무소 또는 법정연금보험과 같은 재활조치기관에 대해 재활 이전에 미리 표적예방이 가능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는 장애인의 소득활동 능력을 유지시키는 기능을 한다. 실제, 연방노동사회부(BMAS)는 2018년 5월부터 연방프로그램으로 “직업생활에 참여하는 혁신적인 방법 - 예방적 재활(rehapro)”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6년까지 약 10억 유로의 재정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다. 직장생활 참여 증진을 위한 노동예산 도입

연방참여법(BTHG)은 2018년 1월부터 ‘노동예산(Budget für Arbeit)’을 도입하여 전국적인 급여제공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들이 직장생활에 더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사회법전 제9권 제61조와 제111조 제3호, 사회법전 제12권 제140조 제2항 제3호). 노동예산은 장애인직업장(WfbM)의 작업영역에서 급여를 청구할 수 있고 일반노동시장에서 일하고 싶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우선, 장애인직업장에서 일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장애인이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찾은 경우에 사회보험료 납부의 무가 있는 근로관계로서 단체협약이나 지역 표준임금에 부합한다면, 노동예산을 청구할 수 있다.³⁰⁾

반면, 사용자 측에 대해서는 임금보조금과 기타 직장에서 필요한 지원과 동행인에 대한 비용이 지급된다. 사용자에게 지급되는 임금보조금은 노동예산의 범주에서 전국적으로 적용되며, 사용자가 정기적으로 지불하는 임금의 최대 75%까지 지급된다.³¹⁾ 지급되는 기간 및 범위는 개별사례에 따라 결정되지만, 주정부 차원에서 연방규정에 비해 더 많은 예산을 지불할 수도 있다.

노동예산과 관련하여 장애인에게 보장되는 권리는 장애인직업장으로의 복귀권(Rückkehrrecht)이다. 장애인들이 일반노동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실패한 경우에도 장애인직업장으로 복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일반노동

30) 사회보험료 납부의무와 관련하여 전제하는 사회보험은 법정연금보험, 법정질병보험 및 사회적 요양보험으로 구성되며, 실업보험은 면제된다. 노동예산은 영구적인 근로능력감소로 인해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장애인의 경우도 보호대상으로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31) 이와 관련하여, 사회법전 제4권 제18조 제1항에 따른 “월 기준금액의 최대 40%”의 상한규정은 2023년 6월 제정된 「포용적 노동시장촉진법」에 의해 폐지되었다.

시장에서 일하고자 하는 장애인의 직장생활 참여권을 크게 확대하였다. 이에 따라 노동예산은 UN-장애인권리협약에 따른 선택권과 포용적 노동시장을 실현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제도로 평가된다.³²⁾

라. 직장생활 참여 강화를 위한 직업교육예산 도입

독일 정부는 2019년 직장생활 참여를 강화하기 위하여 노동예산과 비슷한 직업교육예산(budget für Ausbildung)을 추가로 도입하였다(사회법전 제9권 제61a조). 단계적으로 보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직업교육예산은 구체적으로는 가족구성원감경법(Angehörigen-Entlastungsgesetz)을 통해 장애인 작업장 및 다른 급여제공자의 작업장, 사회법전 제9권 제57조의 입학절차 및 직업교육분야 급여청구권을 가진 사람에 대해 지급되었다. 이후에는 참여강화법(Teilhabestärkungsgesetz)에 의해 2022년 1월 1일부터 사회법전 제9권 제58조의 장애인 작업장 또는 다른 급여제공자의 작업영역에서 급여를 청구할 권한이 있는 사람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연방노동사무소는 입학절차 및 직업교육 영역에서 급여청구권이 있는 장애인을 위한 직업교육예산을 운영한다(§ 57 SGB IX).

직업교육예산은 장애인에게 직업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기회를 개선하고 선택가능성을 넓혀 일반 노동시장에서 장애인이 직업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궁극적으로 직업교육을 통해 일반 노동시장으로의 전환을 증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취업자격과정, 직업교육분야 및 장애인작업장의 작업분야에 대한 대안적 기능을 수행한다. 특히, 장애가 있는 근로자들의 기회를 보장하고 선택권을 강화하는 동시에 일반 노동시장에서 장기고용이 가능하도록 기능한다.

직업교육예산은 재활 및 참여를 위한 급여로서 부분적으로는 사회법전 제9권 제185조 제3항 제6호에 따른 조정부담금에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연방노동사무소가 관할 기관이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다른 재활기관, 즉 재해보험기관, 연금보험기관, 사회보상기관, 공적인 청소년지원기관이나 통합지원기관 등이 담당할 수 있다.

직업교육예산의 지급은 우선, 사회법전 제57조 또는 제58조에 따라 장애인을 위해 승인된 작업장(WfbM)이나 다른 서비스기관의 진입절차, 직업교육분야 또는 작업분야를 대상으로 하며, 직업훈련법 제66조 또는 수공업법(HandwO) 제42조에 따라 인정된 훈련

32) 연방지원고용실무그룹(BAG UB) 홈페이지 <https://www.bag-ub.de/seite/428578/budget-f%C3%BCr-arbeit.html> 에서 2024년 11월 29일 인출.

직업 또는 훈련과정에서 민간 또는 공적인 사용자와 사회보험료 납부 대상인 직업교육관계를 전제로 한다. 직업교육관계가 성립되면, 즉 훈련계약이 체결되면, 교육에 필요한 예산은 직장생활 참여를 위한 급여(직업재활급여)로 지원된다. 법정 연금보험 및 재해보험 운영기관을 통한 지원은 사업장 초기교육과정에서만 허용되며, 적응 또는 추가교육 조치에 대해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지원기간은 직업교육에 필요한 기간 동안이므로 성공적으로 졸업할 때까지 계속된다. 다만,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되는 등의 사유로 졸업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 지원이 중단된다(사회법전 제9권 제61a조).

직업교육생은 사업장과 직업학교에서 훈련 및 지원을 받아야 하며, 필요한 여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한 사업장에 다수의 장애인 교육생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안내·동반(Anleitung/Begleitung) 서비스를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비용은 직업교육예산에서 지불하지만, 안내 및 동행 서비스 구성은 사업장과 장애인 개인이 직접 해야 한다.³³⁾ 따라서 안내 및 동행 서비스는 교육적 보조수단에 불과하며, 작업지원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작업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직업교육예산과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물론, 장애의 유형이나 정도로 인해 직업학교에 다니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학교수준의 훈련을 직업재활기관에서도 받을 수 있다. 그밖에 사용자는 직업교육예산에서 사회보험료 부담금을 포함하여 직업교육비용을 상환받을 수 있다.

4) 경계선 지능인의 직업교육 및 취업지원

(1) 직업교육 및 취업지원의 목표 및 고려사항³⁴⁾

학습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일반적인 직업교육시장과 노동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목적을 위해 직업적인 조기통합이 필요하다.

직업교육법(BBiG) 제66조와 수공업법(HwO) 제42조에 따르면, 장애인을 위한 특별

33) 안내 및 동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적절한 기관이나 개인을 찾아야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회급여기관(연방노동사무소)에 인증된 기관의 목록을 요청할 수 있다. 직업교육기관이 직접 안내 및 동반을 조직하는 경우에 전문성 있는 기관이나 공적으로 인정 또는 인증 받은 개인도 가능하다. 반면, 인정 또는 인증을 받지 않은 기관이나 개인을 통해 직접 안내 및 동행 서비스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사회급여기관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와 전문적 자격 증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장애 맞춤형으로 특별히 제공되는 직업코칭을 찾는 경우에 특히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34) betanet 홈페이지(<https://www.betanet.de/budget-fuer-ausbildung.html>)에서 2024년 11월 29일 인출.
34) 통합청 및 주오브자센터 연방실무그룹(BiA) 홈페이지 <https://www.bih.de/integrationsaemter/medien-und-publikationen/fachlexikon/detail/lernbehinderung/>에서 2024년 11월 29일 인출.

표 III-13. 직업교육법 제5조

BBiG § 5 Ausbildungsordnung	직업교육법 제5조
<p>(1) Die Ausbildungsordnung hat festzulegen</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die Bezeichnung des Ausbildungsberufes, der anerkannt wird 2. die Ausbildungsdauer; sie soll nicht mehr als drei und nicht weniger als zwei Jahre betragen, 3. die beruflichen Fertigkeiten, Kenntnisse und Fähigkeiten, die mindestens Gegenstand der Berufsausbildung sind (Ausbildungsberufsbild), 4. eine Anleitung zur sachlichen und zeitlichen Gliederung der Vermittlung der beruflichen Fertigkeiten, Kenntnisse und Fähigkeiten (Ausbildungsrahmenplan), 5. die Prüfungsanforderungen. <p>Bei der Festlegung der Fertigkeiten, Kenntnisse und Fähigkeiten nach Satz 1 Nummer 3 ist insbesondere die technologische und digitale Entwicklung zu beachten.</p>	<p>(1) 직업교육규정은 다음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인된 훈련직업 명칭 2. 직업교육기간;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2년 이상이 여야 하며, 3. 직업교육(훈련직업 프로파일)의 대상인 직업적 숙련도, 지식 및 능력 4. 직업적 숙련도, 지식 및 능력의 객관적이고 시간적인 교육체계(직업교육기본계획)에 관한 지침 5. 시험 요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문 제3호에 따른 숙련도, 지식 및 능력을 확정하는 경우에 특히 기술적 및 디지털 발전을 주의해야 한다.
<p>(2) Die Ausbildungsordnung kann vorsehen,</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dass die Abschlussprüfung in zwei zeitlich auseinanderfallenden Teilen durchgeführt wird, 2. dass im Fall einer Regelung nach Nummer 1 bei nicht bestandener Abschlussprüfung in einem drei- oder dreieinhalbjährigen Ausbildungsberuf, der auf einem zweijährigen Ausbildungsberuf aufbaut, der Abschluss des zweijährigen Ausbildungsberufs erworben wird, sofern im ersten Teil der Abschlussprüfung mindestens ausreichende Prüfungsleistungen erbracht worden sind, 3. dass Auszubildende bei erfolgreichem Abschluss eines zweijährigen Ausbildungsberufs vom ersten Teil der Abschlussprüfung oder einer Zwischenprüfung eines darauf aufbauenden drei- oder dreieinhalbjährigen Ausbildungsberufs befreit sind, 4. dass abweichend von § 4 Absatz 5 die 	<p>(2) 직업교육규정은 다음 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졸업시험은 2개의 시간적으로 구분된 부분으로 시행된다. 2. 제1호에 따른 규정의 경우, 2년제 훈련직업을 기반으로 하는 3년 또는 3년 반제 훈련직업의 졸업시험을 합격하지 못한 경우에 적어도 졸업시험의 첫 번째 부분에서 충분한 시험성적을 달성하는 한, 2년제 훈련직업의 졸업 자격을 획득한다. 3. 직업교육생이 2년제 훈련직업을 성공적으로 졸업한 경우에 졸업시험의 첫 번째 부분이나 후속 3년 또는 3년 반제 훈련직업의 중간시험을 면제받는다. 4. 제4조 제5항의 예외로서, 이러한 훈련직업에 있어서는 계약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에 이미 완료된 교육기간을 고려하여 직업교육을 속행할 수 있다. 5. 종료된 다른 직업교육기간은 직업교육규정에 의해 규제되는 직업교육기간에 전부 또는 일부로 산정되어야 한다.

<p>Berufsausbildung in diesem Ausbildungsberuf unter Anrechnung der bereits zurückgelegten Ausbildungszeit fortgesetzt werden kann, wenn die Vertragsparteien dies vereinbaren,</p> <p>5. dass auf die Dauer der durch die Ausbildungsordnung geregelten Berufsausbildung die Dauer einer anderen abgeschlossenen Berufsausbildung ganz oder teilweise anzurechnen ist,</p> <p>6. dass über das in Absatz 1 Satz 1 Nummer 3 beschriebene Ausbildungsberufsbild hinaus zusätzliche berufliche Fertigkeiten, Kenntnisse und Fähigkeiten vermittelt werden können, die die berufliche Handlungsfähigkeit ergänzen oder erweitern,</p> <p>7. dass Teile der Berufsausbildung in geeigneten Einrichtungen außerhalb der Ausbildungsstätte durchgeführt werden, wenn und soweit es die Berufsausbildung erfordert (überbetriebliche Berufsausbildung).</p> <p>Im Fall des Satzes 1 Nummer 2 bedarf es eines Antrags der Auszubildenden. Im Fall des Satzes 1 Nummer 5 bedarf es der Vereinbarung der Vertragsparteien. Im Rahmen der Ordnungsverfahren soll stets geprüft werden, ob Regelungen nach Satz 1 Nummer 1 bis 3 und 5 sinnvoll und möglich sind.</p>	<p>6. 제1항 제1문 제3호에 기술된 훈련직업 프로필 이외에 직업적인 역량을 보완하거나 확장하는 추가적인 직업적 숙련도, 지식 및 능력이 전수될 수 있다.</p> <p>7. 직업교육의 일부는 직업교육에 필요한 경우(사업장 간 직업교육)에 직업교육장소 밖에 적절한 시설에서 수행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문 제2호의 경우에는 직업교육생의 신청을 필요로 한다. 제1문 제5호의 경우에는 계약당사자의 합의를 필요로 한다. 규제절차의 범주에서 제1문 제1호에서 제3호까지 그리고 제5호에 따른 규제는 유의미한지, 가능한지 여부를 항상 심사해야 한다.
<p>(3) In den Fällen des § 4 Absatz 2 legt die Ausbildungsordnung fes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eine einheitliche Bezeichnung des Ausbildungsberufs und 2. bei Bedarf differenzierende Regelungen für die betroffenen Berufsbereiche und Bereiche. <p>Sie kann eine gemeinsame zuständige Stelle für mehrere Berufsbereiche und Bereiche festlegen.</p>	<p>(3) 제4조 제2항의 경우에 직업교육규정은 다음 사항을 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훈련직업의 통일적 명칭과 2. 필요한 경우에 관련 직업 분야 및 영역에 대한 차별화된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교육규정은 다수의 직업 분야 및 영역에 대해 공통적인 관할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출처: 독일연방사법부와 연방사법청, 인터넷 법률 홈페이지 <https://www.gesetze-im-internet.de/index.html>에서 2024년 11월 29일 인출

직업교육과정이 제공된다. 특히, 전문실무자교육(Fachpraktiker-Ausbildung)과정으로 이론적 부분을 축소한 직업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때 고려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작업지시는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고, 관리 가능해야 한다. 둘째, 해당 학생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으면 질문하도록 격려해야 한다. 셋째, 일상적인 작업은 안전을 전달하므로 대부분 적합하다. 넷째, 사업장 내에서 어떤 질문이든 관계자나 특정한 대화담당자에게 문의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학습장애가 있는 청년들은 장애등급(장애등급, 중증장애)이 30 미만이거나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기업이나 부서에서 직업교육을 받는 동안 법에 따라 중증장애인과 동일하게 대우받을 수 있다. 장애증빙은 노동사무소(AA)의 진술서나 노동시장참여급여에 관한 통지를 통해 제공된다. 이들에 대한 동등한 대우는 통합청(Integrationsamt)의 추가지원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며, 통합전문부서를 통한 포괄적인 지원과 사업장 직업교육 비용이 지원된다.

(2) 성공적인 직업교육 및 취업지원 유형

① 보조금 등 사업장 재정지원

조정부담금(Ausgleichsabgabe)이 사업장의 높은 관리비용을 재정적으로 보상하기 위해 지급된다. 모든 비용은 교육 예산을 통해 연방노동사무소에서 부담하며, 지도 및 동행 비용을 포함하여 교육보조금의 100%에 이른다.

② 통합전문지원서비스

직업교육 후에도 통합전문지원서비스(Integrationsfachdienst, IFD)를 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지원서비스를 받는 학생들은 대부분 직업준비훈련조치에 참여하고, 추가로 직업진로 단계에 참여한다. 이러한 지원을 받아 운전면허, 기계면허 또는 직업교육이나 사회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되는 근로관계로 이어질 수 있는 기타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③ 직업교육 사업장의 채용기회

학습장애가 있는 청년들에 대해 농업부문, 정원센터, 요양원, 가사관리, 소매, 창고 및 자동차 회사에서 채용기회를 얻을 수 있다. 좋은 직업교육 사업장은 개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사업장으로 상사나 동료직원이 장기간 지속적으로 변경되지 않는 곳이다.

(3) 직업교육과정

① 개요

장애인 혹은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직업교육은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공인된 직업훈련을 받고 직장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직업교육의 전문적인 부분이 실행되는 사업장과 협력하여 사업장 밖 직업교육을 시행한다. 지역 소재 사업장이 파트너가 되며, 워크숍, 협력파트너, 훈련생 간의 협력 협약의 일환으로 직업교육 과정이 구속력 있게 결정된다. 통상, 이러한 교육기간은 직업에 따라 2년에서 최대 3년이며, 직업교육생이 수료 후에 협력사업장에 취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³⁵⁾

기본적으로 독일의 직업교육과정은 조기교육으로 진행되며, 초등교육 이후 실업학교 진학이 결정된다. 직업교육이 인문교육에 비해 상대적으로 일반적인 교육과정으로 평가된다. 이 과정에서 이미 학습장애인으로 진단될 수 있으며, 정규교육과정에 따라 특수학교(Förderschule)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청소년의 경우 통상 8학년부터 실질적인 직업탐색 및 실습을 통해 직업과 노동에 대한 소명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청소년노동보호법(Jugendarbeitsschutzgesetz)의 보호대상이 된다.

따라서 독일 학습장애인 청년의 경우에 직업교육의 틀 내에서 기본적 지원과 보충적 혹은 추가적 지원 등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② 청년층 직업교육 경로 지원

학습장애와 같은 특별한 어려움을 안고 있는 청년을 훈련시키는데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장은 직접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기피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장애가 있는 청년과 사업장을 위한 이중직업교육(Duale Ausbildung)³⁶⁾을 제공하며, 성공적인 직업교육 실시를 위해 노동사무소, 상공회의소 및 기타 기관이 지원한다.

일반 노동시장에서 직업훈련이 힘든 학습장애인의 이중직업교육은 ‘전문실무가 직업훈련(Fachpraktiker-Ausbildung)’으로 진행한다. 전문실무가 직업훈련은 일반 직업훈련

35) Umwelt-Werkstatt 홈페이지 <https://www.umwelt-werkstatt.com/massnahmen/berufsausbildung-fuer-menschen-mit-lermbehinderungen-und-besonderem-foerderbedarf/>에서 2024년 11월 29일 인출.

36) 이원화 직업교육 혹은 직업훈련이라고도 하지만, 여기서는 이중직업교육으로 통일하여 지칭한다.

에서 진행되는 이론교육의 비중을 대폭 축소하고 대신 실습교육의 비중을 높인 형태의 직업훈련이다. 전문실무가 훈련과정은 일반 직업훈련 자격의 직무 범위보다 상대적으로 넓지 않지만 독립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일반 직업훈련을 수료한 사람보다 전문성이 낮을 수 있지만 해당 직무에 경험이 없거나 숙련되지 않은 비숙련 근로자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직무능력을 보유하게 된다. 이 과정을 성공적으로 수료한 사람은 전문실무가(Fachpraktiker)라는 공식 지위를 부여 받는다. 전문실무가 직업훈련 분야는 사무, 판매, 요양, 요리, 청소, 목공, 금속, 서비스, 정보기술 등 다방면에 걸쳐 있다. 학령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보조지원(보조 직업교육)이 제공된다. 보조 직업교육은 주로 학습 장애나 언어 장애가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습을 지원하고, 자격증 등 시험 준비에 대한 지도 지원 등 사회 교육적 지원을 제공한다. 특히, 직업교육을 받는 동안 내내 사회·교육적 직업지원 동행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³⁷⁾

표 III-14. 직업지원 동행서비스 제공 직업교육 시행절차

단계	청년 지원	사업장 지원
예비단계 (6개월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로방향 프로파일링 장소 결정 응시훈련 직업실무 시험, 인턴십 참가자 요구에 맞는 일자리 확보 계약 체결 시 절차 지원 직업교육비 지원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장 요구에 맞는 인원 확보 계약 체결 시 절차 지원
동반단계 (전체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대상: 언어장애 감소 교육적자 감소 직업이론적 숙련, 지식 및 능력 학습(튜터링) 직업교육관계의 안정화 사회교육학적 인적 지원 (생활극복 및 생존보장을 위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 발전에 관한 질문에 대해 직업교육동행인과 교체 관리 및 조직 업무 지원
사후관리 (1년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업교육 수료 후 추가 지원 가능 	

출처: 노동세계 포털 홈페이지 <https://www.arbeitswelt-portal.de/ausbildung/artikel/huerden-ueberwinden-unterstuetzung-juenger-menschen-auf-dem-ausbildungsweg>에서 2024년 11월 29일 인출

37) 노동세계 포털 홈페이지 <https://www.arbeitswelt-portal.de/ausbildung/artikel/huerden-ueberwinden-unterstuetzung-juenger-menschen-auf-dem-ausbildungsweg>에서 2024년 11월 29일 인출.

③ 보조직업교육

보조직업교육(Assistierte Ausbildung, AsA)은 2021년에 직업교육동행 지원(Ausbildungsbegleitende Hilfe, AbH)에 통합되었다. 대표적으로 주로 개인교습을 통해 지원을 제공한 직업교육동행 지원은 2005년부터 시작되었으며, 2015년부터 진행된 보조 직업교육은 사회·교육적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지원방안과 관련하여 최근 연방노동사무소(BA)의 참가자 수 및 승인 수가 다소 감소한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³⁸⁾

2021년부터는 지원대상이 확대되고, 학습장이나 사회적 불이익의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면서 향후 지원받는 청년의 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예상과 달리, 2021년 11월 보조직업교육과 직업교육동행지원에서 동행지원 단계에 참여한 전체 참가자 수는 오히려 2020년 11월에 비해 29% 정도 감소하였다. 주된 원인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접촉 제한과 훈련 지원자 수의 전반적인 감소로 추정된다.³⁹⁾

이러한 보조직업교육은 언제든지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지원과정의 매우 유연하게 설정될 수 있으므로 원할 때 언제든지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공되는 지원은 교육생과 사업장의 개별적 지원요구 사항에 따라 달라지며, 개인 및 사업장의 운영상황에 맞추어 조정될 수 있다. 실제 교육은 노동사무소(AA)나 직업센터(Jobcenter)의 위탁을 받은 전문 교육기관에서 담당한다. 위탁 직업교육기관은 참여하는 교육생에게 직업교육동반자(Ausbildungsbegleiter/in)를 지정해 주며, 이들이 고정된 연락담당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⁴⁰⁾

노동세계 포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동행지원서비스 직업교육 및 직업교육 동행지원에 대한 참여자 현황은 다음 그림 III-6과 같이 개관해 볼 수 있다. 먼저, 동행지원 서비스 직업교육의 경우에는 2005년 72,131명에 이르렀으나 2010년에는 41,838명으로 급격히 감소하였고, 2011년 다시 대략 7만명 수준으로 회복하였으나 2012년 다시 약 4만명 수준으로 급감하면서 2015년 44,242명으로 증가한 이후에는 4만명 이하를 벗어나지 못한 채 2020년 29,194명으로 감소하였다. 마찬가지로 직업교육 동행지원의 경우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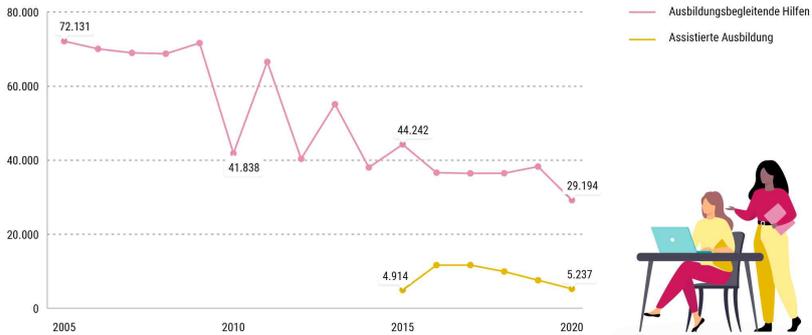
38) Statistik der Bundesagentur für Arbeit(Hrsg.), Grundlagen: Hintergrundinfo – Assistierte Ausbildung: Gesetzliche Neuausrichtung und statistische Berichterstellung, Nürnberg, April (2022), S. 9.

39) 노동세계 포털 홈페이지 <https://www.arbeitswelt-portal.de/ausbildung/artikel/huerden-ueberwinden-unterstuetzung-junger-menschen-auf-dem-ausbildungsweg>에서 2024년 11월 29일 인출.

40) 연방노동사무소(BA) 홈페이지 <https://www.arbeitsagentur.de/unternehmen/ausbilden/assistierte-ausbildung-betriebe>에서 2024년 12월 2일 인출.

2015년 4,914명에서 출발하여 2016년까지 상승 흐름을 나타냈었으나 2017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2020년 기준으로 5,237명으로 2015년에 비해서는 약간 증가한 상황이다.

ASSISTIERTE AUSBILDUNG UND AUSBILDUNGSBEGLEITENDE HILFEN - ENTWICKLUNG DER TEILNEHMENDENZAHLEN



Quelle: Deutscher Bundestag (Hrsg.): 2021, Drucksache 19/12236, Bundesagentur für Arbeit, 2021, Monatsbericht zum Arbeits- und Ausbildungsmarkt

출처: 노동세계 포털 홈페이지 <https://www.arbeitswelt-portal.de/ausbildung/artikel/huerden-ueberwinden-unterstuetzung-junger-menschen-auf-dem-ausbildungsweg>에서 2024년 11월 29일 인출

그림 III-8. 동행지원서비스 직업교육 및 직업교육 동행지원에 대한 참여자 현황

④ 취업자격과정: 이중직업교육과 연계

이중직업교육의 예비단계로 취업자격(Einstiegsqualifizierung) 과정이 제공된다. 이는 사회법전 제3권 제54a조와 사회법전 제2권 제16조 제1항 제3호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기본적으로 취업자격과정은 사용자 측면에서는 잠재적인 직업교육생을 미리 확보함으로써 장래 숙련된 인력을 양성하는데 도움이 되고, 참가 청년들 입장에서는 직장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 지원과 관련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참가 청년들 자신의 기술적 역량을 증명하고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⁴¹⁾

과정 참가자가 청소년인 경우에 아직 훈련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지 않지만

41) 독일 연방노동사무소 홈페이지 <https://www.arbeitsagentur.de/unternehmen/ausbilden/einstiegsqualifizierung-arbeitgeber>에서 2024년 12월 2일 인출.

훈련을 원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며, 학습장애가 있거나 사회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뿐만 아니라 원칙적으로 정기 교육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훈련을 시작하는 연도 초반에 배치되지 못한 청년들은 해당 사업장에서 최소 4개월에서 최대 12개월 동안 인턴십(실습)을 거치게 된다. 통상 취업자격과정은 매년 10월 1일부터 개시되지만 8월 1일부터 조기 개시되는 경우도 있다. 인턴십 과정을 마치면 인증서가 발급되고, 관련 상공회의소에 자격증(IHK-Zertifikat)을 신청함으로써 원하는 교육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물론, 해당 사업장에서 자체 직업교육으로 전환하여 전체 직업교육기간에 포함시킬 수도 있다. 노동사무소(AA)나 직업센터(Jobcenter)에서 보조자 동반교육(AsA)을 통해 추가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교육훈련 외에 교통비 등 개인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보충교육이나 사회교육적 지원도 제공된다. 즉, 직업학교 출석이 의무적인 경우에 사업장은 참가하는 청년들에게 학교에 다니게 할 수 있다.⁴²⁾

취업자격과정을 제공하는 사업장은 보수와 사회보험비용에 대한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사회보험료에 대해서는 노동사무소(AA)나 직업센터(Jobcenter)에서 정액요율로 지원한다. 이러한 보조금과 사회보험료 지원은 정기적으로 조정된다.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 참가자인 청년과 인턴십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인턴십 수당 및 사회보험료를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해당 사업장은 참가자의 배우자나 반려자 혹은 부모가 소유하는 사업장이 아니어야 한다.⁴³⁾ 그밖에 취업자격과정과 관련하여 수공업회의소(Handwerkskammern)와 상공회의소에서 어떤 직업교육을 위해 어떤 취업자격이 적절한지 등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⑤ 전문실무가 교육(Fachpraktiker-Ausbildung)지원

기존의 직업교육에서 이론교육의 난이도와 비중을 대폭 축소한 직업교육과정으로 수요자에게 ‘전문실무가(Fachpraktiker)’⁴⁴⁾라는 국가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일반 직업교육과정을 수요한 전문가(Fachkraft)와 구분된다. 예를 들어, 동물사육 분야에서 일반 직업교육을 수요한 사람은 ‘동물사육사 혹은 동물사육전문가’가 되며, 실무전문가 교육을 받은

42) 독일 상공회의소 홈페이지 <https://www.dihk.de/de/themen-und-positionen/fachkraefte/aus-und-weiterbildung/ausbildung/einstiegsqualifizierungen-5712>에서 2024년 12월 2일 인출.

43) 독일 연방노동사무소 홈페이지 <https://www.arbeitsagentur.de/unternehmen/ausbilden/einstiegsqualifizierung-arbeitgeber>에서 2024년 12월 2일 인출.

44) 전문실무가라고 소개되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전문실무가로 통일하여 지칭함.

사람은 ‘동물사육 전문실무가’가 된다. 전문실무가는 단지 전문가의 보조인력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비록 전문가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못해도 고유의 영역과 권한을 가지고 전문가와 함께 일하기 때문이다.



출처: Handwerkskammer Hannover(Hrsg.), Ausbildung von Fachpraktiker, (2017), S. 4.

그림 Ⅲ-9. 장애 청소년 및 청년을 위한 직업교육

전문실무가(Fachpraktiker) 교육과정은 독일이 2006년 비준하고, 2009년 3월 26일부터 구속력을 발휘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BRK)에 대응하여 도입되었다. 직업교육 분야 장애인 참여권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사회법전 제3권 제19조 제1항이 개정된 이후, 제9권과 관련하여 장애인 및 학습장애인(경계선 지능인)도 직업생활 참여를 지원받아야 하는 인적 대상에 포함되었다. 특히, 사회법전 제3권 제19조 장애인 규정과 관련하여 학습장애를 진단받은 청년들이 전문실무가 교육을 수료하고 있다. 통상, 학습과정에 장기적이고 광범위한 장애가 있고 실행 또는 행동이 연령표준에서 현저히 벗어나 직업적 통합이 본질적이고 영구적으로 어려워진 경우에 학습장애인으로 진단되는데, 이러한 학습장애는 어린 시절에 확인되므로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지원과 교육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전문실무가 교육과정을 마치고 자격을 취득한 청년들에 대한 통계는 확인하기 어렵다.

한편, 전문실무가 직업교육은 포용명령을 충족하도록 하고 있는데, 직업교육법(Berufsbildungsgesetz, BBiG) 제66조와 수공업법(Handwerksordnung, HwO) 제42조에서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장애인 특별규정에 따른 직업교육은 장애청소년이나 법정대리인이 관할 상공회의소에 신청해야 한다. 이때 인준된 직업교육에 대한 훈련 적합성 부족에 대한 결정은 관할 노동사무소(AA)의 직업심리서비스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고, 이에 대한 증명서는 관할 상공회의소에 훈련계약서(Ausbildungsvertrag)를 제출할 때 첨부되어야 한다. 전문실무가 직업교육의 장소는 신청서를 제출한 지역을 중심으로 정해지며, 담당 교육자에 대해서는 추가 재활교육자격(ReZA)이 요구된다.⁴⁵⁾

추가 재활교육은 일반적으로 기업교육실천 고찰, 교육적 및 교훈적 측면, 의학적 및 진단적 측면/심리적 측면, 직업재활시스템, 직업학 및 직업교육적 측면, 장애가 있는 청년을 위한 학제간 프로젝트 작업 및 법률 분야에서 320시간 동안 진행된다. 심화과정에 대해서는 세재혜택이 제공되며, 노동사무소(AA)를 통한 지원, 교육수당 또는 기타 주정부 특별지원이 있다. 별도의 시험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다만, 훈련사업장이 교육기관(교육담당자)과 협력하는 경우에는 추가훈련이 필수적이지 않으나, 교육기관의 직원인 직업훈련 교사에 대해서는 추가재활교육 인증서(ReZA-Nachweis) 보유를 필수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다.⁴⁶⁾

한편, 전문실무가 직업교육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다양한 교육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예컨대, 사무, 판매, 요양, 원예, 조경, 청소, 요리, 목공, 금속, 서비스, 사회복지, 정보기술 등의 분야에서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다. 대체로 제빵, 제빵판매, 사무통신, 건설 및 금속도장, 건물청소, 목재가공 분야는 3년, 자동차 기술에 중점을 둔 메카트로닉스 및 금속가공 분야는 3.5년의 교육기간을 마쳐야 한다.⁴⁷⁾ 이러한 직업교육을 위한 비용은 전액 연방노동사무소에서 부담한다. 이에 대해 전문실무가 교육지원은 장애인을 위한 특별조치에 해당하므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사회통합원칙에 위반되므로 특화된 장치보다 일반 직업교육체제 안에서 비장애인과 함께 교육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는 부정적 평가와 함께, 직업교육과정을 거친 학습장애인에게 국가공인자격을 부여하고 일반 노동시장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사회통합원칙에 부합한다는 긍정적 평가가 상존한다. 다만, 계속 교육과정과 같은 추가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전문가로 승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긍정적 평가에 비중이 실리고 있다. 무엇보다 전문실무가는

45) 연방노동실무그룹 직업교육센터 홈페이지 <https://www.bagbbw.de/berufsbildungswerke/reha-angebote/fachpraktiker-werkerbildungen/>에서 2024년 12월 2일 인출.

46) Handwerkskammer Hannover(Hrsg.), Ausbildung von Fachpraktiker, (2017), S. 5-6.

47) Handwerkskammer Hannover(Hrsg.), Ausbildung von Fachpraktiker, (2017), S. 4.

정규 숙련근로자에 비해 임금수준이 낮고, 해당 직무에 대한 경험이 없거나 부족한 비숙련 근로자에 비해 직무능력이 높아 실제로는 기업의 선호도가 큰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 부족한 노동시장에서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실무가 교육 지원의 효과는 분명히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4) 직업교육기관

① 직업교육센터(Berufsbildungswerke, BBW)

직업교육을 받고자 하는 장애학생은 연방노동사무소(BA)를 경유하여 직업교육센터(BBW)로 갈 수 있다. 담당 재활상담사(컨설턴트)가 어떤 직업교육이 적절한지 청(소)년과 함께 결정하며, 학교 졸업증명서가 없는 청(소)년에게도 상담서비스는 개방되어 있다. 특히, 직업소개소, 통합사무소 및 보충적인 독립재활상담센터의 재활상담전문가는 장애인을 위한 교육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연방노동사무소(BA)와 직업교육센터(BBW)의 교육을 권장 받는 경우에 장애학생들은 상담사와 상담하여 각자의 필요에 따라 적합한 직업교육센터를 선택할 수 있다.⁴⁸⁾

직업교육센터(BBW)에서 해마다 장애 및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청소년 및 청년들에게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하는 사례는 무려 16,000건 이상이다. 전문분야를 초월한 전문가 그룹이 이러한 청년들의 재활과정을 공동으로 계획하는데, 청년들의 개인적 능력과 기능을 파악하고 적절한 직업을 전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⁴⁹⁾

정규 직업교육 외에 교육내용은 이론적인 것 보다 실습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전문실무가 및 직공 훈련과정도 제공한다. 직업교육센터(BBW)에서 실시하는 모든 교육과정은 수공업법(Handwerksordnung, HwO)과 직업교육법(Berufsbildungsgesetz, BBiG)의 규정에 근거하여 국가에서 인정한 것이다. 특히, 직업교육센터의 전문 직원은 연방직업교육원(Bundesinstitut für Berufsbildung, BIBB)의 권고에 따라 추가 재활교육훈련(ReZA)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직업교육센터(BBW)에서 시행하는 교육과정의 품질은 전국적으로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보장한다. 이를 위해 연방노동사무소(BA)와 연방노

48) 연방노동실무그룹 직업교육센터 홈페이지 <https://www.bagbbw.de/berufsbildungswerke/start-ins-bbw/>에서 2024년 11월 29일 인출.

49) 연방노동실무그룹 직업교육센터 홈페이지 <https://www.bagbbw.de/innovationen/qualitaetssicherung/?print=171aa4eecec4866125c24dcaf1256318bcbHash%2525252525252525253Da3992206449640282b27de2944af4e21&cHash=f44234c6ae28ce2f844c660106494cfb>에서 2024년 12월 2일 인출.

동실무그룹 직업교육센터(BAG BBW)는 2015년 기본협약(Rahmenvertrag)을 체결하였으며, 서비스 제공, 품질보증 및 심사권에 대한 최소한의 통일적 기준을 공동으로 설정하였다. 일부 센터는 교육내용의 공통된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자격협회중앙회(QVM)와 같은 내부적인 계속교육협회도 결성하였다.

직업교육센터(BBW)의 재활프로그램은 참가하는 개별 청년들에게 맞춤형으로 제공된다. 주로 진단, 진로탐색, 진로준비, 이중직업교육, 거주 및 여가활동, 응시 및 동기 부여 훈련, 1차 노동시장 배치 등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직업적인 프로그램 외에도 의사 또는 의사에 준하는 전문의료진, 심리학자, 특수교육교사 또는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언어치료사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도 제공한다. 그 밖에 수료생들이 직장생활에 진입할 수 있도록 사례관리자(Case-Manager)가 적절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한다.⁵⁰⁾ 통상, 청년들 중 69%는 수료 후 12개월 이내에 사회보험료 납부 의무가 있는 일자리에 채용되고 있으며, 교육생 중 47% 졸업 후 사회보험료 납부 의무가 있는 일자리에 무리 없이 채용되고 있다.⁵¹⁾

한편, 사회법전 제9권 제51조에 따라 장애 청소년 및 청년들이 직업교육센터에서 제공하는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경우, 연방노동사무소(BA)에서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용자의 경우에는 사업장 직업교육 및 청(소)년 연수생 지도에 대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최근에는 난민 배경을 가진 청소년 및 청년에 대해서도 교육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참여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특별히, 재활이 필요한 상태(Reha-Status)로 인정되지 않지만 복합적인 참가자격에 제한이 있는 경우를 포섭하기 위해 모델프로젝트를 시행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더욱이 지원의 필요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장 직업교육을 이수하지 않거나 기준이 낮은 지원서비스나 통합서비스의 경우에도 수료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새로운 직업교육과정이 요구되고 있다.⁵²⁾

50) 연방노동실무그룹 직업교육센터 홈페이지 <https://www.bagbbw.de/berufsbildungswerke/reha-angebote/>에서 2024년 12월 2일 인출.

51) 연방노동실무그룹 직업교육센터 홈페이지 <https://www.bagbbw.de/innovationen/qualitaetssicherung/?print=171aa4eecec4866125c24dcdf1256318bc&Hash%2525252525252525253Da3992206449640282b27de2944af4e21&c&Hash=f44234c6ae28ce2f844c660106494cfb>에서 2024년 12월 2일 인출.

52) 연방노동실무그룹 직업교육센터 <https://www.bagbbw.de/berufsbildungswerke/zusatzangebote/>에서 2024년 12월 2일 인출.



출처: 연방노동실무그룹 직업교육센터 홈페이지
 (<https://www.bagbbw.de/berufsbildungswerke/start-ins-bbw/>)에서 2024년 11월 29일 인출

그림 III-10. 직업교육센터 분포 현황

② 직업지원센터(Berufsförderungswerke, BFW)

직업지원센터(BFW)는 1차 노동시장에 맞추어 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으로 건강 및 사회적 역량개발을 지원한다. 직업재활시설(Berufliche Reha-Einrichtungen)은 특히 사회법전 제9권 제35조 이하에 따른 직업재활급여(Leistungen zur Teilhabe am Arbeitsleben), 즉 직업복귀에 대한 법적 청구권을 구현하기 위한 근거를 형성한다. 따라서 질병이나 사고가 발생한 후 직업적으로 재활이 필요한 경우를 지원하기 때문에 대체로

성인장애인이 지원대상이 된다.

직업지원센터(BFW)의 운영은 독일연금보험과 직종조합과 같은 재할기관과 사회서비스 기업과 긴밀한 협력관계에서 공공 또는 민간의 후원을 받아 비영리 회사 형태로 이루어진다. 전국적으로 28개의 지역 직업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연방노동사회부(BMAS)에서 구성한 네트워크에 포함되어 독일연방직업지원협회에 속해 있다.⁵³⁾

직업교육과정의 종류는 250가지 이상이며, 대체로 상공회의소, 세무컨설턴트 회의소, 수공업자회의소 또는 보건부나 노동부와 같은 정부기관에서 인정하는 시험을 치르는 것으로 종료된다. 기본적으로 교육기간은 2년이며, 참가자에게 개별기간, 목표, 경로 및 교육장소를 갖춘 다양한 통합에 맞춘 지원이 제공된다. 이러한 지원은 참가자들이 취업할 때까지 개인의 능력과 필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노동시장의 수요에 부합하게 실용적으로 제공된다. 이 경우, 통상 자격인증시스템이 동반된다. 참가자는 전국적으로 약 12,000명 정도에 이른다.⁵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역직업센터가 운영되는 28개 지역은 Bad Pyrmont, Bad Wildbad, Berlin-Brandenburg, Berlin-Brandenburg, Birkenfeld, Dortmund, Dresden, Düren, Frankfurt am Main, Goslar, Halle, Hamburg, Hamm, Heidelberg, HD-Schlierbach, Koblenz, Köln, Leipzig, Mainz, München, Nürnberg, Oberhausen, Sachsen-Anhalt, Schömburg, Stralsund, Thüringen, Weser-Ems, Würzburg이다. 직업교육과정은 크게 상업 및 행정 분야 자격과정, 금속 및 서비스 분야 산업자격과정, 전기 분야 산업자격과정, 정보기술(IT) 분야 자격과정, 미디어 및 인쇄업 분야 자격과정, 제도사·기술자 및 엔지니어 자격과정, 원예 및 조경 분야 자격과정, 보건 분야 자격과정, 사회사업 분야 자격과정, 기타 자격과정으로 구분된다.

53) 독일직업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s://www.bv-bfw.de/>에서 2024년 11월 29일 인출.

54) Deutsche Berufsförderungswerke Bundesverband(Hrsg.), Neustart in den Beruf, (2024), S. 1.



출처: Deutsche Berufsförderungswerke Bundesverband(Hrsg.), Neustart in den Beruf, (2024), S. 7.

그림 III-11. 28개 지역 직업지원센터(BFW) 개관

(5) 연방노동사무소(BA)의 지원⁵⁵⁾

장애청(소)년의 직업교육과 관련한 연방노동사무소(BA)의 지원은 크게 이론 및 실무교육 지원, 어학강의 지원, 사회적 환경이나 직장생활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지원, 시험 공부 지원 등이 있다. 기본적인 교육 지원과 추가적인 지원은 동시에 제공 받을 수 있다.

① 사업장 외부기관에 의한 직업교육 시행

직업교육은 해당 사업장 내에서 뿐 아니라 사업장 밖, 즉 외부의 특수교육기관에서 받을 수 있다. 직업교육생은 직업학교에 다니면서 개인적 필요에 맞추어 교육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장애인을 위한 시설에서 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직업재활시설 직원들에 의해 장애인의 특별한 요구에 맞추어 직업교육이 실시된다. 원칙적으로 공인된 직업교육의 일환으로 이루어진다.

② 직업교육지원 및 직업교육수당

장애로 인해 정기적인 직업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특별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다. 특별직업교육의 내용과 기간은 개인의 요구사항에 맞게 개별적으로 조정될 수 있으며, 관할 노동사무소(AA)와 협의를 통해 정할 수 있다. 특히, 직업교육을 받기 위해 부모와 떨어져 있어야 하는데, 장애로 인해 부모와 떨어져 지낼 수 없는 경우에는 직업교육지원(Berufsausbildungsbeihilfe, BAB)을 받을 수 있다. 원칙적으로 공인된 직업교육분야에서 사내 또는 사외에서 직업교육을 받아야 하는 경우 또는 직업준비 교육조치에 참여해야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직업교육지원(BAB)은 eServices를 통해 등록한 후 신청할 수 있다.

장애청소년에 대한 특별혜택으로는 부모 또는 부모 중 일방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국가에서 공인한 직업교육에 대한 훈련규정을 위반한 직업교육과정이나 장애인을 위한 특수한 형태의 직업교육과정, 장애 유형이나 정도에 따라 영구적으로 직장생활이 불가능한 경우에 직업교육 연장, 전체 직업교육 또는 일부의 반복, 새로운 직업교육에 대한 재정

55) 연방노동사무소 홈페이지 <https://www.arbeitsagentur.de/bildung/ausbildung/hilfen-jugendliche-behinderungen>에서 2024년 12월 22일 인출.

지원 등이 있다. 아울러 직업교육지원(BAB)과 관련하여 특별히 준수해야 할 의무 및 권리에는 교육생과 혼인관계 혹은 생활동반자(Lebenspartnerschaft) 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부모의 협조 의무, 이의신청권 및 소송제기권이 있다.⁵⁶⁾

그밖에 직업교육수당(Ausbildungsgeld)은 직업준비나 직업교육을 위한 지원 조치에 참여하는 동안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제공된다. 또한 직업교육생들은 지역 교육기관으로부터 무료로 “튜터링”을 받을 수 있고, 관할 노동사무소(AA)는 참가자 해당 여부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한편, 사용자는 직업교육생의 장애로 인해 교육을 시행할 수 없는 경우에 교육기간 동안 직업교육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보조금은 직업교육계약 체결 전에 관할 노동사무소(AA)에 신청해야 한다.⁵⁷⁾

③ 심사위원회 및 심사위원실을 통한 지원

시험과 관련해서는 불이익 조정이 가능하다. 불이익에 대한 조정 신청은 해당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하며, 늦어도 수공업자회의소의 직업교육 및 시험 부서의 심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특히, 시험불이익에 대한 조정을 신청할 때에는 수험생이 직업재활기관 등 공식기관으로부터 받은 의학적, 심리적 소견서나 소견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때, 교육생의 장애는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되어야 하며, 불이익 조정에 필요한 제안은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직업학교, 사업장 또는 교육기관의 견해도 첨부해야 한다.

불이익조정 신청에 따른 심사는 어떤 변경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예컨대, 시험기간의 연장, 단체시험이 아닌 개인시험, 자신의 직장에서 시험, 기술지원보조 승인 등이 허용된다. 다만, 시험 방식이 장애에 맞게 조정될 수 있을 뿐이며, 시험 내용은 동일하게 유지된다. 최종 승인 여부는 사례별로 결정되며, 서면으로 통지된다.⁵⁸⁾

56) 노동사무소 홈페이지 <https://www.arbeitsagentur.de/bildung/ausbildung/hilfen-jugendliche-behinderungen>에서 2024년 12월 2일 인출.

57) Handwerkskammer Hannover(Hrsg.), Ausbildung von Fachpraktiker, (2017), S. 8.

58) Handwerkskammer Hannover(Hrsg.), Ausbildung von Fachpraktiker, (2017), S. 9.

5)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취업프로그램 사례

(1) 통합코치프로젝트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의 청소년 및 사회문제 지역협회(KVJS)는 통합전문가서비스(IFD)를 보완하기 위해 통합코치프로젝트(Das Projekt Integrationscoach, PIC)를 개발했는데, 2005년에서 2007년까지 유럽사회기금에서 재정지원을 받아 시범사업으로 수행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특히, 검증된 접근방식을 강화하는 동시에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네트워크 중심의 작업방법과 지역관계를 시험하여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또한 지적장애인을 위한 학교의 학생들과 일반 노동시장에 취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기타 특수학교의 학생들을 주된 대상으로 하였다. 후자에 학습장애인이 포함된다.⁵⁹⁾

실제, 통합코치프로젝트(PIC)는 네트워크 중심의 작업방식과 지역관련성을 핵심적 사항으로 하였으며, 선정된 시범학교나 시범기관과의 협력이 아닌, 대상그룹과 관련된 모든 학교 및 기타 기관과의 협력을 중요시 하였다. 따라서 대상그룹과 친밀한 관계자들, 특히 부모나 기타 가족구성원들의 참여와 공식적인 관계 기관 및 경험이 풍부하고 숙련된 인력, 즉 통합코치와의 체계적 협력관계 구축을 지향하였다. 개별사례에서 가족적 지원과 관계 기관 및 전문인력의 원활한 협력관계 속에서 학습장애인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이었다.

통합코치프로젝트(PIC)의 구체적인 네트워크 작업은 3가지 영역으로 구분된다. 먼저, 사례를 초월한 작업영역은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기를 원하는 경우이고, 두 번째 사례와 무관한 작업영역에서는 관할지역 내에 제도적 네트워크 구축이며, 세 번째 사례관련 전망 영역은 개별적인 학습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정보 제공, 동기 부여 및 상담 등 장기적인 통합을 가능하게 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 이는 통합전문서비스의 기능과도 일치하는 부분이다.⁶⁰⁾

결과적으로, 3가지 네트워크 영역을 연결함으로써 학습장애인 개인이 유연하고 개별적인 솔루션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이 프로젝트의 특징을 찾을 수 있다. 또한 통합코치프로젝트(PIC)을 통한 다양한 접촉과 경험은 여러 기관과 개인으로 구성된

59) 독일교육서버 홈페이지 <https://www.bildungserver.de/berufseinstieg-fuer-menschen-mit-lernschwierigkeiten-und-geistiger-behinderung-8897-de.html>에서 2024년 11월 29일 인출.

60) 독일교육서버 홈페이지 <https://www.bildungserver.de/berufseinstieg-fuer-menschen-mit-lernschwierigkeiten-und-geistiger-behinderung-8897-de.html>에서 2024년 11월 29일 인출.

역동적이고 광범위하게 분산된 네트워크 구축을 가능하게 한다. 재정적 측면에서도 정부에 의한 직접적인 지원이 아닌 새로운 형태의 협력가능성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⁶¹⁾

(2) 함부르크 학습장애인의 취업을 위한 교육 지원

현재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의 직업적 ‘통합전문서비스(Fachdienste)’는 ‘고용지원’의 틀 내에서 학습장애가 있는 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함부르크의 취업지원서비스(Arbeitsassistentz) 시행은 오랜 경험을 통해 작업장에서의 훈련과 자격을 내용으로 하는 직업교육 지원의 중요성을 분명히 확인시켜 준다.

과거 노동시장의 변화된 현실은 점진적인 자동화, 서비스사회의 심화, 기술발전의 반감기, 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기업내 업무 조직의 변화, 극단적 분업노동의 해체 및 노동유연화는 끊임없이 새로운 학습과제를 직면하게 한다. 이러한 변화의 중요성은 특히, 직업교육에서 강조되고 있으며, 학습장애인에 대한 직업재활 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함부르크 모델에서 제시하는 학습장애인에게 필요한 자격은 낮은 수준의 자격으로 단순 구조화된 활동 분야, 즉 잠재적으로 접근 가능한 분야에서 요구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주유소 보조원의 업무는 탱크 트랙 청소작업을 핵심업무로 하지만 고객의 요청에 따른 정보 제공이나 창문 닦기 등의 서비스 제공 업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즉, 학습장애인도 고객과의 소통, 질문, 기록, 의뢰 등의 일련의 업무활동을 유연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직업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이들에 대한 적절한 학습기회의 제공과 공적 지원이 요구되는 이유이다.⁶²⁾

핵심적인 업무기술을 전수하고 행동 중심 학습 개념에 기초한 교수방법을 직업교육 및 훈련에 광범위하게 구현할 필요가 있다. 학습장애인에 적합한 업무프로세스를 계획, 수행, 제어 및 평가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학습기회가 제공되고, 상황에 맞는 사고력, 문제 해결 능력, 독립성, 주의력 및 자격 인식과 같은 상황 관련 주요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장되기 때문이다.⁶³⁾

61) Trautwein/Schöpfer/Weber/Weyersberg, PIC-Das Projekt Integrationscoach, in: BAG UB(Hrsg.), impulse Impressum, Nr. 36, Dezember (2005), S. 17.

62) Trautwein/Schöpfer/Weber/Weyersberg, PIC-Das Projekt Integrationscoach, in: BAG UB(Hrsg.), impulse Impressum, Nr. 36, Dezember (2005), S. 22.

63) Klüssendorf, Der Erwerb von Schlüsselqualifikationen für Menschen mit Lernschwierigkeiten - Ein Bildungsangebot der Hamburger Arbeitsassistentz, in: BAG UB(Hrsg.), impulse, Ausgabe 27, September (2003), S. 21.

또한 학습장애인들은 재학기간에 일반 노동시장에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하는데, 특히 직업교육 및 자격증 취득과 연계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팀 구조와 피드백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교육장소 운영에 관한 규칙과 평가에 대한 지침을 개발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함부르크 모델은 직장에서의 특정 상황(작업 지시 수신, 동료 또는 상사와의 약속, 동료로부터의 문의, 피드백 및 비판, 휴식 상황 등)에 필요한 경우 제안 및 조언이 이루어지고, 상호 간의 소통을 통한 평가의 중요성을 제시한다. 이러한 지원은 '취업지원'의 범주에서 일상적인 직장생활 외에서도 업무 수행능력의 틀에서 보다 집중적이고 세부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⁶⁴⁾

(3) 베를린 시의 전환기 노동시장 관련 교육지원

베를린 시는 1999년부터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학습장애가 있는 지역 청소년 및 청년들이 학교에서 직장생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학교와 직장 생활 사이에서 전환기에 있는 학습장애인을 위한 교육지원 매뉴얼에서 제시되는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노동시장 관련 교육지원의 제도적 환경

베를린 시에 있는 학교들은 진로 지향적인 교육 내용을 9학년 커리큘럼에 포함시키고 있다. 10학년이 되어도 직업교육기관이나 직장을 찾지 못한 학생은 11학년과 12학년에 제공되는 직업교육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학교 졸업 후에는 진로 설정 및 진로 준비 조치가 최대 18개월 동안 제공될 수 있다. 이러한 과정 및 조치는 다양한 기관에 의해 시행된다. 학습장애인은 이들 기관에서 제공하는 여러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으며, 외부 기관 또는 기업에서 직업교육을 받을 수도 있다. 교육기간이 연장되면 최대 4년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직장생활로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특히 특수한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이나 청년들은 사회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는 일자리를 찾지 못해 실업상태에 있는 경우가 빈번하다. 일반적으로 학습장애가 있는 학생들도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자리

64) Klüssendorf, Der Erwerb von Schlüsselqualifikationen für Menschen mit Lernschwierigkeiten - Ein Bildungsangebot der Hamburger Arbeitsassistenten, in: BAG UB(Hrsg.), impulse, Ausgabe 27, September (2003), S. 21-22.

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⁶⁵⁾

② 노동시장 관련 교육지원의 목표 및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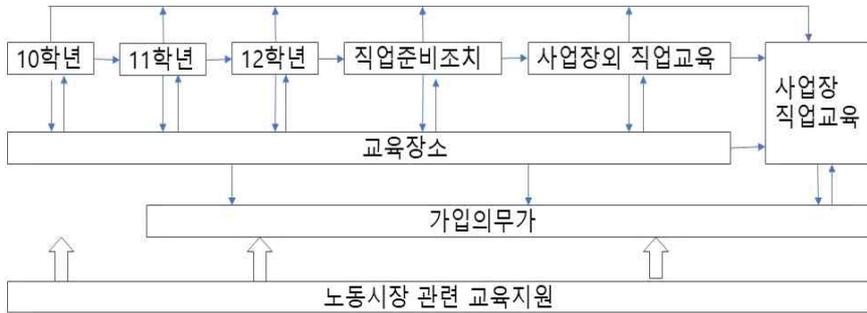
노동시장 관련 교육 지원을 통해, 특별히 지원할 필요가 있는 청소년 및 청년들은 자신의 생각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 3가지 수준의 교육지원이 제공된다. 청소년 및 청년에게 요구되는 개인적 역량은 노동시장에서 요구되는 기술에 대한 기업 통합적 지원을 통해 개선될 수 있다. 기업의 통합 능력은 기업 내에서의 교육 훈련은 물론 직업교육 및 고용관계 통합과정을 지원함으로써 향상될 수 있다. 또한 직업교육 및 고용관계 통합 과정에 참여하는 청소년 및 청년과 기관 간의 협력관계는 이들을 노동시장 관련 교육과정에 참여시키고 참여하는 교육생들의 개별적 요구에 맞추어 조정함으로써 개선될 수 있다.⁶⁶⁾

특히, 이러한 조정은 직장동료나 개인적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지원(비 공식적 지원)과 이주배경을 지닌 청소년 및 청년들의 경우에 체류상황을 관할하는 출입국 관리 담당자의 상담 제공과 같은 전문적인 추가적 지원은 물론 수평적, 수직적 교육 장소에 대한 조정을 포함한다. 먼저, 수평적 교육장소 조정은 협력 기업과 학교 및 기타 외부 교육기관의 활동이 공동된 목표를 지향하도록 하고, 다양한 지식과 관점이 생산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며, 상호 이익 충돌은 방지한다. 외부교육기관은 참여 기업과 협력하여 교육 및 학습 기회를 극대화하며, 인턴십 과정을 통해 경력관리는 물론 전문적인 기술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기업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하여 업무 관련 커리큘럼을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다. 반면, 수직적 교육장소 조정은 직업 탐색 및 준비를 위한 노력을 지속가능하게 하며, 의무교육기간에 포함되어 있는 훈련기업 및 기타 직업교육기관과의 교류를 졸업 후 전망을 고려하여 평가함으로써 사회적 네트워크에 통합되도록 한다.⁶⁷⁾

65) Radatz/König/Bausch/Petri/Humpert-Plückhann, Arbeitsweltbezogene Bildungsbegleitung im Übergangsfeld zwischen Schule und Beruf, in: BAG UB(Hrsg.), impulse, Ausgabe 36, Dezember (2005), S. 23.

66) 위와 동일.

67) Radatz/König/Bausch/Petri/Humpert-Plückhann, Arbeitsweltbezogene Bildungsbegleitung im Übergangsfeld zwischen Schule und Beruf, in: BAG UB(Hrsg.), impulse, Ausgabe 36, Dezember (2005), S.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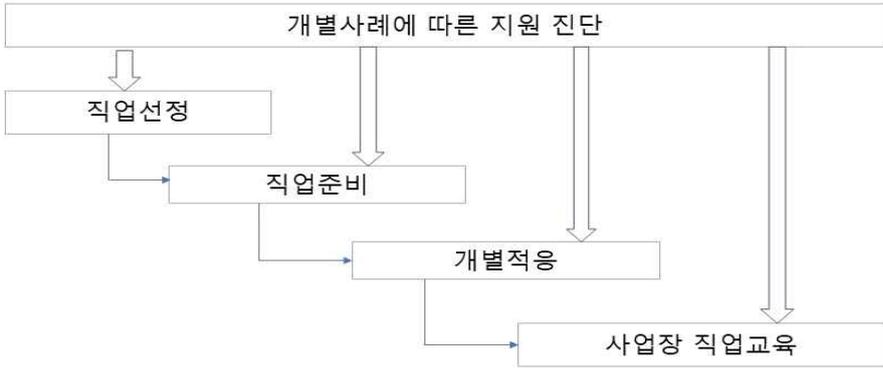
출처: Radatz/König/Bausch/Petri/Humpert-Plückhann, Arbeitsweltbezogene Bildungsbegleitung im Übergangsfeld zwischen Schule und Beruf, in: BAG UB(Hrsg.), impulse, Ausgabe 36, Dezember (2005), S. 24.

그림 III-12. 수직적 교육장소 조정

③ 노동시장 관련 교육지원 프로세스

베를린의 노동시장 관련 교육 지원은 전문적 자격 취득 및 통합 과정의 모든 단계를 지원한다. ‘직업선정 단계’는 이후의 지원 프로세스의 기초를 형성하며, 참여하는 청소년 및 청년이 자신의 희망에 부합하고 실현 가능한 직업을 선택했을 때 완료된다. 이어지는 직업준비단계는 직업교육과 취업가능성을 목표로 하며, 일반 노동시장에서 직업교육을 받거나 취업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면 완료된다. 이후 ‘개별적응’ 단계에서는 사회보험료 납부의무가 있는 사업장 내에서의 교육 또는 취업으로 전환 가능하도록 한다. 이는 교육생이 스스로 업무나 교육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충족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직업교육을 마치거나 고용관계를 성공적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지원시스템이 구축될 때 완료된다. 마지막으로 ‘사업장 직업교육 단계’는 직업교육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최종시험에 합격하거나 사회보험료가 부과되는 고용관계로 전환될 때 비로소 종료된다. 아울러 사례별 진단은 모든 단계에 필수적인 부분이며, 교육 지원을 통한 경험을 토대로 통합 및 지원 계획을 작성하고 검토함으로써 제도적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⁶⁸⁾

68) Radatz/König/Bausch/Petri/Humpert-Plückhann, Arbeitsweltbezogene Bildungsbegleitung im Übergangsfeld zwischen Schule und Beruf, in: BAG UB(Hrsg.), impulse, Ausgabe 36, Dezember (2005), S. 25.



출처: Radatz/König/Bausch/Petri/Humpert-Plückhann, Arbeitsweltbezogene Bildungsbegleitung im Übergangsfeld zwischen Schule und Beruf, in: BAG UB(Hrsg.), impulse, Ausgabe 36, Dezember (2005), S. 25.

그림 III-13. 사례별 진단에 따른 직업교육 지원

(4) 성공적인 직업교육 및 취업 사례

① 특수학교와 협력 사례: Vinzenz-von-Paul-Hospital

로트바일에 소재한 Vinzenz-von-Paul-Hospital(VvP)은 장애가 있는 청년의 직업교육에 있어서 파트너와의 협력을 성공적으로 활용하였다. 약 1,300명의 직원을 고용한 이 병원에서 학습장애가 있는 청년들은 기본적인 병원사무, 위생, 의약품 재고관리, 의료 처치 검진 준비나 보조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 병원은 학습장애가 있는 청소년을 회사에 통합하기 위해 특수학교와 긴밀히 협력하였다. 이러한 협력이 역량 있는 교육생을 확보하는 방안이라고 인사부 부장 Karl Fritsche는 언급하였다. 관심 있는 학생이 먼저 병원에 인턴십을 마치면, 그 중에서 역량 있는 청년들은 “전문실무자” 교육을 받게 된다. “Tandem 원칙”에 따라 교육생들은 서로를 지원하며, 기존 교육생들과 인턴십 과정에 있는 학생들이 함께한다. 이들은 동등한 입장에서 지원을 받고 사례를 교환하며, 교류할 수 있다. 그리고 교육을 마친 후에 회사에 통합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모든 정보를 초기 단계에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특수학교, 외부 지도자 및 다른 조교(코치), 그리고 취업기관(노동사무소)과의 긴밀한 연계 및 협력이 중요하다.⁶⁹⁾

69) Bundesagentur für Arbeit(Hrsg.), Inklusion—die Beschäftigung von Menschen mit Behinderungen ist ein Gewinn für alle!!, Tagungsbroschüre: Zusammen Erfolgreich in Arbeit 2016, Stand: Dezember

② 잠재적 전문인력 활용 사례: Deeg Garten- und Landschaftsbau

Deeg Garten- und Landschaftsbau라는 조경 및 농업건설 부문 소규모 회사는 인턴십을 성공적으로 마친 학습장애가 있는 2명의 직원을 채용하였고, 사회치료기관과 취업기관(노동사무소)의 지원을 받아 소규모 기업의 포용성 달성 사례를 성공적으로 제시하였다. 특히, 소규모 기업은 장애인 채용 및 고용에 있어서 관련 네트워크의 지원이 중요하다. 경영자인 Wieler는 장기적으로 포용적 고용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14명으로 구성된 팀의 전체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⁷⁰⁾

결과적으로 성공적인 포용사례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일상적인 업무생활에서 책임을 공유하고, 개인적 관심과 헌신은 물론 팀 전체의 책임이 강조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요약하면, 기업의 성공적 포용기준에는 경영자의 포용적 헌신과 인식, 모든 직원의 참여, 관련 기관 및 네트워크 지원 및 조언, 사용자를 위한 지원서비스 활용 등이 있다.

5. 해외 사례 시사점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외국의 정책적 지원의 특성은 중앙 중심의 지원 체계 운영과 지방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에 있다. 아직 경계선 지능인 지원 관련 법안의 부재로 중앙 부처의 지원 내용이 명확하지 않고, 평생교육 조례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 중 일부가 학령기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비추어 보면 외국의 경계선 지능인 지원은 중앙과 지방의 균형이 잡혀있고 체계적으로 제공되는 것으로 보인다.

1) 포용적인 정책 적용

우리나라는 경계선 지능인 지원에 있어 정책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부터 출발하려는 경향이 있다. 동일한 경계선 지능인 집단이라 하더라도 복지서비스 대상, 교육 서비스

(2016), S. 7.

70) Bundesagentur für Arbeit(Hrsg.), Inklusion—die Beschäftigung von Menschen mit Behinderungen ist ein Gewinn für alle!!, Tagungsbroschüre: Zusammen Erfolgreich in Arbeit 2016, Stand: Dezember 2016, S. 10.

대상, 고용서비스 대상 등을 구분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측면이 있다. 그에 비해 미국과 독일 등 서구의 정책 지향점은 포용과 통합을 통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은 통합을 지원하는 공공정책, 지역사회 및 가족 지원, 교육 준비, 직장 경험 및 고등 교육, 기업/고용주의 참여, 공공 부문 고용 지원 등을 제안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교육 준비와 관련해서는 모든 수준에 걸친 통합적 교육을 지향하면서, 초등 교육에서는 기초 경력 개발 기술, 중등 교육에서는 조기 직장 경험 기회, 고등 교육에서는 통합적인 경험의 기회를 제공한다.

독일은 학습장애를 장애인 범주에 포함하는 등 일반적인 전달체계에서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사례들에 대해서 통합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포용적인 정책의 목적은 경계선 지능인들도 지역사회에서 삶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영역에서 스스로 결정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에 있다(자기결정에 의한 동등하고 제한 없는 삶 영위). 직장, 학교, 행사, 클럽, 가족, 사회에서 경계선 지능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장벽 없이 삶을 영위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독일은 고용영역에서 학습장애의 정도가 직업적으로 중증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중증장애인과 동일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2) 법령에 의거한 정책 서비스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공식적인 조치는 법적으로 명문화된 조항에 근거하여 규정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지자체의 평생교육 관련 조례에서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지원이 명시되어 있지만 지원에 관한 법령은 아직 제정이 안된 상태다. 독일은 교육 및 고용과 관련하여 법적으로 명확한 지원 근거가 있다.

사회법전 제9권 제2조 제1항의 장애인 개념과 관련하여, 사회법전 제3권 (Arbeitsförderung) 제19조가 개정되면서 학습장애인이 장애인 범주에 포함되게 되었다. 포용적 노동시장 촉진법(Gesetzes zur Förderung eines inklusiven Arbeitsmarkts)은 2023년 6월 6일 연방의회를 통과하였으며, 6월 13일자로 공포되어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BGBl. 2023 I Nr. 146 vom 13.06.2023).⁷¹⁾ 이 법은 포용적 사회를

71) 독일연방법률공보 홈페이지 <https://www.recht.bund.de/bgbl/1/2023/146/VO.html>에서 2024년 11월 29일 인출.

위해 장애인이 평등하고 자기 결정적으로 직장생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더 많은 장애인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기 위해서, 건강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보다 구체적인 지원을 제공할 것을 과업으로 한다. 학습장애가 있는 청년들은 장애등급(장애등급, 중증장애)이 30 미만이거나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기업이나 부서에서 직업교육을 받는 동안 법에 따라 중증장애인과 동일하게 대우받을 수 있다.

○ ————— 제4장 정책제언

- 1. 요약 및 시사점
- 2. 1인가구 청년 지원 관련 정책제언
- 3. 경계선 지능 청년 지원 전달체계 및 서비스 관련 정책제언

1. 요약 및 시사점

1) 취약 청년 파트 요약 및 시사점

청년정책이 등장하면서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새로운 취약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기존의 사회정책에서 다루지 못했었던 사회적 위험과 취약성에 대한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성인 이행기가 길어지면서 원활한 이행을 하지 못하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청년기 취약성은 이행 취약성으로 정의될 수 있다. 이 정의를 적용하면, 취약 청년이란 성인기 이행 과정에서 고용, 교육, 복지, 문화, 주거, 참여 등 삶의 영역에서 불리한 상황에 있는 청년을 의미하는 것으로 개념화할 수 있다.

1인가구 청년은 집단 내 이질성이 매우 큰 집단이긴 하지만 성인기 이행에 보다 큰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지지체계나 사회경제적 불안정성이 높은 취약층이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경계선 지능 청년은 교육과 고용의 경계에서 특별한 지원이 뒤따르지 않으면 성인기 이행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출처: 저자 작성

그림 IV-1. 청년기 이행 취약성

2) 1인가구 청년 지원 파트 요약 및 시사점

1인가구 청년은 이질적인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1인가구 청년은 공통적으로 단독 생활에서 오는 생활부담과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으나, 특히 사회경제적인 불안정이 높은 1인가구 청년은 낙후된 주거에서 오는 어려움, 불안정한 주거에서 오는 어려움, 심리정서적 어려움, 주거비 과부담과 상향 이동에 대한 준비 어려움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었다. 즉, 1인가구 청년 중 중첩된 취약성에 노출된 청년들은 현재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성인 이행기에서 어려움을 함께 경험할 수 있어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1인가구 청년들은 청년 주거 정책에 대한 이해가 어렵고, 주거 관련 어려움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받기 어렵다고 토로하였다.

1인가구 청년에 대한 정책은 주거지원정책과 생활지원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었는데, 국토교통부의 주거지원정책은 1인가구 자체보다 다른 취약성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았고 결과적으로 1인가구 청년이 많이 포괄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있었다. 1인가구 청년이 이질적이므로 1인가구 청년을 명시적으로 내세우기보다는 1인가구 청년 중 취약성이 두드러질 수 있는 부정적 거처에 대한 지원, 1인가구 청년 밀집 지역에 대한 공공임대 지원, 일자리와 연계된 주거 지원을 확대하는 전략이 더 적절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와 자치단체의 생활지원정책은 생활상의 불편함이나 사회적 관계 단절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경우가 많았고 1인가구 지원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는 1인가구에 대해 보다 분명한 정책 대상을 삼고 있는 특징이 있었으나 상시적 사업보다는 기간이 한정된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되는 한계가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틀이 필요하다. 하나는 주거 최저 기준선을 설정하고, 이에 미달하는 주거에 대한 적극적 지원방향을 설정하는 것이다. 부적정 거처에 대한 상향 이동 지원, 임대료 및 공과금, 관리비 연체에 대한 위기 지원, 갑작스러운 퇴거 가구에 대한 임시 거처 지원 등 1인가구 취약 청년에 대한 최저 기준선 보장 전략을 설정하고, 이를 청년의 주거권 보장 전략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다른 하나는 청년 친화적인 주거정책을 구성하고, 이를 지원해주는 생활 밀착형 전달체계가 필요하다. 청년들의 주거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이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주거복지센터와 1인가구 지원센터 같은 주거 지원, 생활 지원 전달체계는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었다. 수도권

1인가구 청년 지원에 대한 수요가 높은 상황이기도 하나, 전국적인 1인가구 청년 지원, 더 나아가 전국적인 청년 주거에 관한 지원의 형태로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

3) 경계선 지능 청년 지원 파트 요약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 경계선 지능 청년은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장애는 아니지만 인지, 학습, 사회성 등의 능력이 낮아 소속되어 있는 사회에 적응하기 어려워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자 가운데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인구 집단을 지칭한다.

경계선 지능에 대한 정의는 법률, 교육, 의학 분야에서 상이하게 나타난다.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에서는 발달장애인이 아닌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며, 서울시 조례는 학습 및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대상으로 정의한다. 의학적으로는 DSM-4th-TR에서 IQ 71-84에 해당하며 지속적인 관심과 주의가 필요한 발달장애군으로 분류된다.

경계선 지능인은 인지·학습 능력의 어려움으로 학습 속도가 느리고 반복적인 훈련을 필요로 한다. 사회적·관계적으로는 타인과의 관계 형성 및 유지, 사회적 맥락 이해에 어려움을 겪으며, 이는 성인기 고용 및 자립의 어려움으로 이어진다. 직업 훈련 기회 부족, 잦은 실업, 경제적 불안정, 사회적 고립, 범죄 노출 위험 증가 등이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최근 국내에서는 경계선 지능인 지원에 대한 정책적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안)' 및 '제6차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에서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언급되었으며, 2024년 7월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경계선 지능인 지원 방안'이 발표되어 조기 개입, 인식 개선, 자립 역량 강화의 3대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은 '24년 경계선 지능 청년의 일 역량 강화 및 일경험 시범사업을 수행하고 차년도 시범사업도 추진 중이다.

해외 주요 국가에서는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미국의 메리어트 브릿지 프로그램은 맞춤형 직무 매칭 및 취업 후 관리를 제공하며, 호주의 가족지원 프로그램은 당사자 및 가족 대상의 정신 건강 및 심리 치료를 지원한다. 스페인은 공인 진단서를 통해 경계선 지능인이 장애인 대상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독일은 경계선 지능인을 학습 장애의 한 유형으로 간주하여 맞춤형

직업 훈련 및 전문실무가 자격증 제도를 통해 사회 참여를 장려한다.

경계선 지능 청년은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정책 제언을 바탕으로 경계선 지능 청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여 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2. 1인가구 청년 지원 관련 정책제언

1인가구 청년 지원 정책은 국토교통부의 청년 주거지원 프레임에 따라 제시하고, 일부 전달체계 및 생활지원에 관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유형 (4)	주택공급				금융지원		주거비지원			기타지원
정책 (10)	공공임대	민간임대	공공분양	민간분양	대출지원	청약지원	주거급여	월세지원	비용지원	기타지원
분류 예시	ZERO 주택	햇살 등지사업	뉴홈	생애최초 특별공급	디딤돌 대출	청년우대 청약통장	주거급여 분리지급	청년 월세지원	중개보수 지원	안심홈세트

출처: 국토교통부(2023.8.30.) 내게 맞는 청년 주거정책, 마이홈에서 찾아보세요.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그림 IV-2. 국토교통부의 청년 주거정책 유형

1) 주택공급 차원에서의 개선방안

1인가구 청년들의 주거 욕구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을 확대·신설이 필요하다.

(1) 청년친화형 주택공급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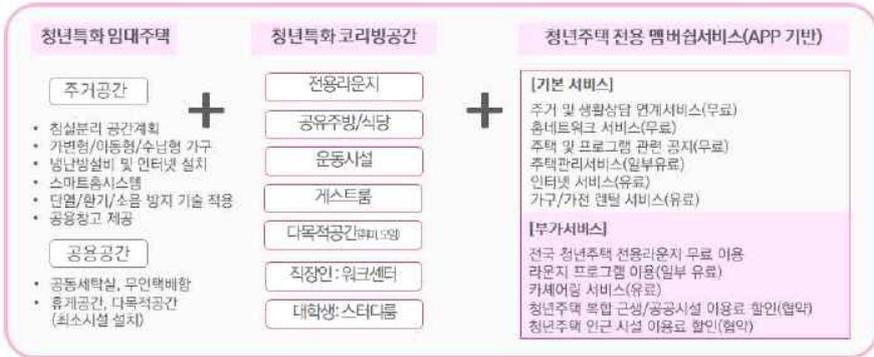
도심 청년주택의 공급, 기숙사형 청년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 청년 1인가구를 위한 설계로 특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청년친화형 주택공급 시 코리빙 공간과 함께 청년센터 등 청년지원기관을 함께 설치함으로써 청년주택에서의 청년 1인가구 주거지원

과 생활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이다(정소이 외, 2023).



출처: 정소이 외(2023). 청년 주거수요를 반영한 도심 청년주택 모델 개발.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그림 IV-3. 도심청년주택 모델(안)



출처: 정소이 외(2023). 청년 주거수요를 반영한 도심 청년주택 모델 개발.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그림 IV-4. 도심청년주택 특화 공간계획 및 서비스(안)

(2) 중간주택 공급(가칭 '징검다리 청년주택')

청년층은 지역 간 이동성 및 직업 이동성이 높다. 청년층이 지역 간 이동을 하는 경우 현재와 같이 민간 시장에서 초단기로 거주하거나 1~2년 이상의 장기로 거주하는 형태 이외의 '중간기간'을 지원하는 징검다리 형태의 공공임대 제공 방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는 두 가지로 세분화할 수 있다. 하나는 비정상 거처에서의 상하이동 시 중간단계의 주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공공임대로 완전히 이주하기 위해 비적정 거처를 벗어나 거주할 수 있는 중간 주택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간주택은 비적정거처나 비정상적 상황에서 온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하기 이전에 지역사회에서 거주할 수 있는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직장이나 학업으로 인한 지역 이주 시 단기로 주거를 제공하는 형태이다. 이는 지역에서의 적응(on-boarding)을 지원하는 형태로 제공할 수 있으며, 단기적으로 생활하면서 지역에서 적절한 주거지를 알아볼 수 있도록 제공할 수 있다. 이는 중소도시나 인구소멸지역 등 청년인구 유입의 인센티브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

중간주택 혹은 징검다리 주택은 공공임대주택의 공실을 활용하고, 지자체 차원의 사회주택을 활용하는 등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3) 일자리 연계형 주택공급 및 서비스 연계성 강화

청년들은 일자리뿐만 아니라 지역에서의 삶의 질도 중시하고 있다. 따라서 청년들의 일자리 제공뿐만 아니라 주거 제공도 중요하며, 일자리-주거-여가생활이 가능한 구조가 바람직하다.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 수요를 해소하기 위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일자리 연계형 주거모형을 적극적으로 확대하여 일자리와 주거지원을 결합하는 형태로 발전시키고, 지역의 서울의 1인가구 지원센터나 가족센터 등 생활지원을 적극적으로 연계해 주는 모형 구축을 통해 새로운 주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표 IV-1. 국토교통부 일자리 연계형 주택공급 계획

지역본부	지구명	블록	공급유형	건설호수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	6-3UR1	통합임대	200
서울	서계(복합문화주거단지)	-	통합임대	200
전북	전주동서학	-	통합임대	96
경남	밀양삼문	-	통합임대	100
충북	청주오창(일자리)	1	통합임대	240
충북	충북혁신(클러스터)	A-1	통합임대	300
전북	김제백구(행복주택)	-	통합임대	100
인천	남동산단	-	통합임대	300
경남	밀양나노융합국가산단	C2	통합임대	300
광주전남	영광대마	-	통합임대	150
광주전남	담양삼만	01	통합임대	94
부산울산	부산초량	1	통합임대	450
대전충남	대전산단2	-	통합임대	100
대전충남	충남금산	-	통합임대	100
경남	진주상평	-	통합임대	150

*출처: 토지주택공사 내부자료.

2) 금융지원 차원의 개선방안

(1) 청년도약계좌 만기 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연계 강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청년도약계좌와 별개로 운영되고 있는 국토교통부 금융지원 사업이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2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출시하면서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 만기에 수령한 목돈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일시납 하는 것도 허용하여 청년자산형성 프로그램 간 연계성도 강화”하였다. 이는 청년의 이행기의 자산형성을 고려하면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이를 촉진하기 위해 청년들의 정책 이해도를 높이고 편의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청년도약계좌 만기 시 자동연계될 수 있도록 사전 동의 및 신청을 받아 연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3) 주거 관련 정책 이해도 증진 방안

(1) 청년 주거정책의 표준화-소득기준

국토교통부는 2023년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청년 주거정책 193개를 10종으로 알기 쉽게 단순화한 바 있다. “주거 복지제도를 수요자인 청년입장에서 단순화하고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는 방향에서 정책을 표준화, 단순화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아직 소득 기준에서 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 중위소득, 월평균소득 등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표준화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⑥ 정책별로 제각각인 소득 기준을 정책 유형별로 통일

- 현재 주거정책에는 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 중위소득, 연평균소득 등 **다양한 소득 기준이 혼용**되고 있어, 청년들이 스스로 정책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쉽게 알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다.
- 이번 개선방안에서는 **주택공급과 주거비지원 사업대상 선정 시에는 각종 복지사업에서 주로 사용되는 ‘중위소득’을 사용하고, 금융지원 시에는 상환능력 확인을 위해 ‘연소득’을 사용하도록 기준을 마련**하였다.

*출처: 국토교통부(2023.8.30.) 내게 맞는 청년 주거정책, 마이홈에서 찾아보세요.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 청년 주거지원 상담·교육 프로그램 신설 (가칭 ‘정검다리 주택금융 교육’)

청년의 주거정책에 대한 교육 욕구가 높고 상담 필요성이 높으므로 이를 상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고도화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서울 청년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재무상담 및 교육 사업 ‘영테크(YoungTech)’를 벤치마킹하여 국토부에서 청년 주거 및 금융 교육 사업으로 고도화하여 전국 적용할 필요가 있다.

현재 서울의 영테크는 광역서울청년센터와 50플러스센터 등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므로, 청년 주거지원 상담·지원 프로그램은 기존의 청년센터나 주거복지센터를 통해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현재 청년센터 등 청년정책 전달체계는 주거정책 관련 교육이나 상담이 거의 부재하므로, 국토교통부에서 신규 주거정책 관련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전국적으로 확대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LH, SH 등 공공기관과 청년 및 주거복지 전달체계, 민달팽이 유니온 등 청년단체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진다면

안정성과 청년 당사자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청년 밀집 지역에서의 적극적인 활동이 1인가구 청년의 안전한 계약과 주거복지, 그리고 주거상향을 위한 기회제공에 도움이 될 것이다.

[참고] 서울시 청년 영테크 프로그램

- 서울시 청년 영테크(YOUNG TECH) 사업은 청년기본법 제22조(청년 금융생활 지원), 서울시 청년 기본 조례 제14조(청년의 금융 생활 지원 등)에 근거하여 운영 중인 사업임
- 연령기준: 19세~39세
- 소득기준: 없음
- 사업내용: 무료 재무상담(대면, 비대면) 및 금융교육, 커뮤니티 운영
 - (재무상담) 재무진단, 소득지출관리, 투자관리, 신용관리 등 맞춤형 재무설계 지원
 - (금융교육) 경제상식, 금융투자, 부동산, 신용관리 등 분야별 강의 진행*
 - * 재무설계, 경제상식, 신용관리, 세금설계, 금융사기, 청년투자 등 9개 분야 (청년센터 및 50플러스 센터에서 교육)
 - (사업홍보) 영테크 홍보단 운영, 온라인 커뮤니티 및 사회관계망 서비스 등 활용
- 사업성과: 영테크 2년 이상 참여자의 소득, 총자산 증가 성과가 보고됨*
 - * "영테크 2년 이상 참여자. ① 소득(14.3%)지출(9.6%) 대비 저축투자(24%) 대폭 증가, ② 총자산 39% ↑(1억~1.4억), 순자산 45% ↑" (서울시 보도자료, 2024.11.28. "서울 영테크' 참여자 순자산 45% ↑... 대표 청년금융 정책으로 도약한다")
- 비교: 민간 수행기관(금융사)이 전문적 재무상담 등을 진행하되, 금융상품 가입을 권유할 경우 대표전화(02-1644-7747)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하도록 보완책을 마련함.

서울시	수행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총괄 및 정책 방향 수립 ○ 신청자 관리 및 재무 상담 신청 시스템 구축 ○ 재무 상담사 위촉, 행사기획, 홍보 총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무 상담 지원 및 진행 금융교육 기획 및 추진 ○ 상담 운영 프로세스 구축, 우수 사례 발굴 ○ 위촉상담사 인력 구성 및 상담사 관리

*출처: 서울시 내부자료 및 영테크 홈페이지 <https://youth.seoul.go.kr/youngtech/>에서 2024년 12월 20일 인출.

4) 청년 주거복지 전달체계의 확대

(1) 전달체계 설치 및 통합

현재 1인가구 청년 지원 관련 정책은 서울특별시에서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들만이 서울시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도입하고자 하고 있다. 중앙단위의 정책근거를 마련하여 전국 단위의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존의 전달체계를 보완하거나 정책 지원체계 패키지(생활지원 및 주거지원) 모형을 개발하여 전국단위로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청년센터, 1인가구 지원센터, 가족센터, 주거복지센터, 마이홈 센터 등 1인가구 청년 지원이 가능한 센터들 간에 협력하고, 사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IV-2. 전국 주거복지센터 현황 (지자체 및 민간)

No	운영 범위	지역명	센터명	No.	운영 범위	지역명	센터명
1	광역	서울특별시	서울시 중앙주거복지센터	31	기초	경기 고양	고양시주거복지센터
2	기초	서울 강남	강남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	32	기초	경기 광주	광주시주거복지센터
3	기초	서울 강동	강동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	33	기초	경기 성남	성남시주거복지센터
4	기초	서울 강북	강북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	34	기초	경기 평택	평택시주거복지센터
5	기초	서울 강서	강서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	35	기초	경기 안양	안양시주거복지센터
6	기초	서울 관악	관악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	36	기초	경기 양주	양주시주거복지센터
7	기초	서울 광진	광진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	37	기초	경기 안성	안성시주거복지센터
8	기초	서울 구로	구로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	38	기초	경기 여주	여주공공주거복지센터
9	기초	서울 금천	금천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	39	기초	경기 이천	이천시주거복지센터
10	기초	서울 노원	노원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	40	기초	경기 용인	용인시주거복지센터
11	기초	서울 도봉	도봉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	41	기초	경기 용주	남양주시주거복지센터
12	기초	서울 동대문	동대문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	42	기초	경기 동천	동두천시주거복지센터
13	기초	서울 동작	동작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	43	기초	경기 하남	하남시주거복지센터
14	기초	서울 마포	마포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	44	기초	경기 파주	파주시주거복지센터
15	기초	서울 서대문	서대문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	45	기초	경기 화성	화성시주거복지센터
16	기초	서울 서초	서초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	46	기초	경기 평택	평택시주거복지센터

17	기초	서울 성동	성동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	47	광역시	대구	대구광역시주거복지센터
18	기초	서울 성북	성북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	48	기초	달서구	달서구주거복지센터
19	기초	서울 송파	송파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	49	기초	전북 전주	전주시주거복지센터
20	기초	서울 양천	양천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	50	기초	충남 천안	천안시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
21	기초	서울 영등포	영등포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	51	광역시	세종	세종시종합주거복지센터
22	기초	서울 용산	용산주거안심종합센터	52	광역시	인천	인천광역시 광역주거복지센터
23	기초	서울 은평	은평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	53	기초	미추홀구	미추홀구 주거복지센터
24	기초	서울 종로	종로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	54	광역시	청주	청주시주거복지센터
25	기초	서울 중구	중구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	55	광역시	광주	광주광역시 종합주거복지센터
26	기초	서울 중랑	중랑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	56	광역시	부산	부산 동부주거복지센터
27	광역시	경기도	경기도 주거복지센터	57	광역시	부산	부산 서부주거복지센터
28	기초	경기 시흥	시흥시주거복지센터	58	광역시	서귀포	서귀포주거복지센터
29	기초	경기 수원	수원시주거복지센터	59	광역시	제주	제주시권역주거복지센터
30	기초	경기 부천	부천시주거복지센터				

(2) 보편적 1인가구 특화 생활지원 사업 확대

청년 특화 주거복지전달체계 강화를 통해 청년의 주거정책 접근성을 높이고, 특화된 1인가구 생활지원 서비스와 연계하여 통합적 지원체제로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1인가구 청년 주거지원 정책의 전달, 교육, 상담을 현재보다 강화하고, 여성가족부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생활지원(생활편의지원, 커뮤니티 형성지원, 안전/보안 관련 지원)을 함께 통합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을 것이다.

5) 1인가구 취약 청년을 위한 지원방안

(1)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연장 및 제도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주거기본법」 제15조와 「청년기본법」 제20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2021년 국무회의를 통해 사업 시행이

확정되었다. 이 사업은 한시지원으로 2023년 일몰 예정이었으나 기간이 연장된 바 있다.

1인가구 청년의 전월세 지원에 관한 욕구가 높으므로 본 사업의 기간을 연장하고, 안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한시지원은 「청년기본법」을 근거로 하고 있으므로 취약청년 주거지원에 관하여 더 명확한 조항을 신설, 보완하여 사업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비정상거처 주거상향 이주지원 패키지 확대

기존 지옥고 등 물리적 취약 청년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단, 비정상거처 주거상향 이주지원은 비정상거처에 3개월 거주 조건이 있어 사후적이다. 최근 발생한 고시원 거주 여성 청년 살인사건과 같이 비정상거처 거주 자체가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주거불안정과 취약성으로 인해 부정상거처에 들어갈 상황에 놓인 경우 월세 긴급지원 혹은 임시주택 지원 등의 노력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3. 경계선 지능 청년 지원 전달체계 및 서비스 관련 정책제언

1) 경계선 지능 청년 법적 지원 관련 정책제언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선 관련 법 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다수의 지자체에 관련 조례가 있지만 지자체간의 서비스 불균형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법적 근거에 따른 표준화된 지침이 필요하다. 경계선 지능인 지원과 관련한 기본법 성격의 별도 법안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조례별로 평생교육 또는 일반지원 등 강조점에 따라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정의도 느린학습자 등 차이가 있고, 지원 방식과 내용도 상이한 상황이다. 경계선 지능인의 정의와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규정이 부재한 상황에서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도 다수 있어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에 어려움이 있다(변민수 외, 2024).

기본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전반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되어 있는 조항을 복지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 단위로 명시하여 소관 업무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경계선 지능인 조기 발굴 및 조기 개입과 관련해서는 복지부의 영유아건강검진 관련 부서, 교육부의 기초학력 지원 부서, 고용부의 취업 취약 계층 고용

지원 부서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부처간 조정 역할을 복지부에 두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를 두어 관계 부처가 참여할 수 있는 행정단위를 마련 할 수 있다. 필요에 따라 복지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각 부처의 사무는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유사사례로 「청소년 기본법」에서는 동법 제9조에서 총괄 조정하는 부처를 여성가족부장관으로 명시하고, 제10조에서는 청소년정책위원회를 두고 관계부처 차관이 참석하도록 하고 있다.

경계선 지능인 지원에 관한 기본법 성격의 법안이 제정되면, 관련하여 타법 개정을 고려할 수 있다. 고용과 관련하여 「고용정책 기본법」에서 청년, 여성, 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의 지원에 경계선 지능 청년을 포함하는 안을 고려할 수 있다. 직업적 어려움의 정도가 심한 청년의 경우라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대상에 경계선 지능인을 포함하는 안도 고려할 수 있다. 독일에서 경계선 지능인은 학습장애의 한 유형에 포함되며 지원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장애인에 준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회법전 제3권(근로촉진법) 제19조는 “장애인은 사회법전 제9권에 정의된 장애 유형 및 정도에 의하여 근로생활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크게 제한되어 근로생활에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 학습장애인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변민수 외, 2024).

2) 경계선 지능 청년 지원 전달체계 및 서비스 관련 정책제언

(1) 맞춤형 직업훈련 및 자격증 도입과 적극적 조치

경계선 지능인의 인지능력과 사회성을 고려한 직업훈련 과정 개발 및 준기능사 수준의 자격증 개발을 고려할 수 있다. 해당 직무에 경험이 없거나 숙련되지 않은 비숙련 근로자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직무능력 습득을 직업훈련 과정의 목표로 정하고 준기능사 자격증 부여하면 노동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직무수행능력을 관리하는데 용이하다. 단순히 보조 인력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자립할 수 있는 정도의 소득이 보장되도록 기술을 숙련시키는 자격 과정이다. 독일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전문적인 실무기능을 습득하기 위해선 실습교육의 비중을 높이고, 반복을 위한 충분한 훈련 기간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직업훈련 과정을 운영해야 한다.

독일 라인란트주 142개 통합사업장(Inklusionsbetriebe)에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전문실무자(Fachpraktiker) 자격을 가진 경계선 지능 청년의 교육생 채용에

대한 질문에 67%가 긍정적으로 답했고, 28%는 아직 교육생을 채용하지 않았으며, 5%는 채용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사업장의 업종은 주로 요식업, IT서비스업, 정원관리 및 조경업, 세탁 및 건물 청소 등이다(Leandra Herder, 2020).

지역에서 전문실무가를 대상으로 하는 구인 내역을 보면, 페인트공, 정원사 보조 등 다양하다. 구인공고에 기재된 페인트공의 예정 업무는 건물 표면의 색상 디자인 선택, 마스킹 및 마스킹 작업 수행, 고르지 못한 표면 보정, 재료량 계산 등이다. 정원 전문실무가의 업무는 고전적인 정원 및 녹색 유지 관리(예: 울타리 관리 및 나무 가지치기, 잔디 관리), 포장재의 신축 및 수리 및 테두리를 포함한 플레이트 표면 식재 및 개조, 잔디밭 울타리 세우기 등이다. 정원 전문실무가가 수행하는 작업은 그룹으로 진행되며 감독관들이 조율하고 동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Leandra Herder, 2020).

경계선 지능인의 노동 역량을 확립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라는 기초 아래 독일은 직업 훈련 전과정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 스페인도 경계선 지능인을 적극적 고용 정책의 지원대상으로 지정하여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 취업 및 자립을 위한 지원 사업 도입

경계선 지능인 취업과 자립을 위해 경계선 지능 청년에 특화된 고용지원 사업을 고려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경계선 지능 청년의 보호자들은 경계선 지능 청년의 인지 및 학습 능력이 정체되어 있다고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취업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한 경계선 지능 청년들은 참여 이후 구직 및 진로성숙도가 높아지고 사회성 기능도 향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을 목적으로 한 경계선 지능 청년의 집단적 경험이 긍정적인 또래관계로 발전하고, 시범사업 이후에도 자발적인 구직활동으로 이어지는 등 적극적인 경제활동의 계기가 되는 점을 고려하면 표준화된 고용지원 사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고용지원 사업은 지자체의 자원이 충분하지 않아 균형 잡힌 서비스 등 서비스 품질 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에 현재 직업 전 훈련, 사회성 훈련 성격으로 진행되고 있는 복지서비스 차원의 프로그램 외에, 취업과 자립을 목적으로 한 고용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중앙 부처 중심으로 도입될 필요가 있다.

지원 사업의 필요 요소로 대인 서비스 지원을 고려할 수 있다. 경계선 지능 청년의 직무습득과 직장적응을 위해선 직무 지원이 필요하다. 잡코치, 직무지도원 등 명칭은 다양할 수 있지만 경계선 지능 청년의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위한 대인지원이 필요하다.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경계선 지능 청년 개인의 특성과 직무성격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략 6개월 전후의 직무지원 기간이 필요하도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의 경우에는 취업 후 적응지도의 명목으로 최대 1년간 지원을 하고 있다.

경계선 지능 청년 고용지원 사업의 두 번째 고려 요소는 경계선 지능인 고용에 적극적인 사업체들의 지지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미국은 메리어트 Bridges 프로그램을 통해 젊은 이들의 관심과 능력을 고용주의 요구와 맞춤으로 매칭시킨다. 취업알선부터 직장을 유지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취업 후 6개월에서 최대 1년 동안 연락을 유지하고 업무 진행상황 관리 등 사후 관리를 하고 있다.

경계선 지능 청년 고용지원 사업의 세번째 고려 요소는 성인지적인 접근이다. 경계선 지능인 한부모 가정의 아이가 부모와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화상을 입기도 하고, 다른 이가 맡겨둔 개에 얼굴을 물리는 등 아이의 안전이 상당히 위태로운 사례가 보고되었다. 현재 서울시는 위기관리 차원에서 경계선 지능 한부모를 지원 하고 있지만 전문적인 고용 지원은 충분하지 않다. 여전히 원가정과 단절되어 있거나 사회생활을 하지 않는 고립된 경계선 지능 미혼모가 상당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다. 이들의 사회적 고립도를 낮추고 생활고에서 벗어나는데 취업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열악한 양육환경은 자녀의 안전 문제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고용지원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3) 맞춤형 서비스 전달체계

비장애인의 서비스 전달체계에 적용하기 어려운 경계선 지능 청년을 위해 별도의 전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서비스 전달체계를 활용한 지원 사업 또는 전달체계에서 경계선 지능인 수준의 욕구와 이해를 반영하기도 어렵고 병행하기도 어렵다. 기존 비장애인 청년 대상의 정부 지원 사업의 목적과 내용은 경계선 지능 청년이 참여하거나 성과를 내는데 적합하지 않아 경계선 지능 청년이 참여하더라도 과정을 이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기존의 취업 알선 또한 근무시간·직무내용 등 경계선 지능 청년의 직무 습득 속도와 인지능력을 고려하고 있지 않고 기계적으로 매칭하는 경향이 있다.

고용서비스와 관련하여 기존의 고용서비스 전달체계를 최대한 활용하되 경계선 지능 청년을 위해 특화된 과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구직활동은 비장애인도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고용안정센터에 접수를 하고, 고용안정센터에서 워크러리지수 및

종합검사결과, 상담 내용 등을 고려하여 취업의 어려움이 지적장애와 유사한 경우에는 장애인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전문기관을 활용한 서비스 전달체계로 연계 할 수 있다. 어려움의 정도가 중간 미만 또는 높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 청년지원 체계로 진행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게 한다.

그 외에 경계선 지능 청년의 교육, 보건, 복지 등의 지원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지원 조직으로 범부처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경계선 지능인지원센터(가칭)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경계선 지능인의 특성상 접근성 확보가 서비스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거주자들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지자체 중심으로 센터를 운영하더라도 경계선 지능인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고려할 때 수요자의 욕구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탄력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경계선 지능인 지원센터의 운영은 당사자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경계선 지능 청년의 진입 문턱을 낮추어 서비스대상자를 확보하는데 유용하며, 지속적인 사례관리의 접점으로서 기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 운영과 관련하여 우려되는 지점은 예산 및 인력 등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 서비스의 질의 편차가 있거나 서비스 수급의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국가 및 공공기관이 운영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4) 고용 영역 외 정책 지원

학령기 경계선 지능인 조기 발견을 위한 서비스,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부모 교육 등 교육차원에서의 지원 외에, 복지차원에서 경계선 지능인 및 가족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서비스를 고려할 수 있다. 호주는 경계선 지능인을 위해 의료 서비스와 경계선 지능인 가족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의료적인 서비스는 전문적인 정신건강과 심리치료가 지역사회 기반해서 제공되고 있다(Australian BPD Foundation, 2023). 경계선 지능인 가족을 위한 패밀리 커넥션(Family Connection) 서비스는 한 주에 2시간, 12주 동안 무료로 진행되는 과정이다. 경계선 지능인과 접점이 있거나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술 훈련 및 교육을 지원한다. 주로 경계선 지능인의 문제 상황에 주목하고 있는 이 서비스 프로그램은 커뮤니티 환경에서 진행되며, 임상(clinicians) 또는 가족 중에서 훈련된 사람이 프로그램의 리더가 된다. 패밀리 커넥션은 경계선 지능인 및 가족의 역할 및 기능에 대한 최신의 정보와 연구결과, 변증법적 행동

치료에 근거한 개인 대처 기술, 가족 기술, 가족 구성원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지원 등을 제공한다(정용문, 2024).



참고문헌

참고문헌

[국내문헌]

강은나, 이민홍 (2016). 우리나라 세대별 1인가구 현황과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34, 47-56.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과 (2022). **2022년도 주거실태조사**.

김리영, 박길환. (2013). 청년 1인가구와 노인 1인가구의 주거입지 특성 비교 연구. **주택도시연구**, 13(2), 75-92.

관계부처 합동 (2021). **제2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 (2023~2027)**.

관계부처 합동 (2023). **제6차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 (2023~2027)**.

관계부처 합동 (2023.12.).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안)(2024~2028)**.

관계부처 합동 (2024). **2024년 제1차 청년정책기본계획 시행계획(중앙행정기관)**.

김동일, 이연재, 한은혜, 안예지 (2022). 지능과 학업성취 준거에 의한 느린 학습자 집단 분류 탐색: 지적장애, 학습장애, 경계선 지능을 중심으로. **학습장애연구**, 19(1), 25-53.

김동일, 이연재, 한은혜, 황지은, 안예지, 고혜정, 박유정 (2023) 경계선 지능 청소년 임상집단 하위분류 탐색. **학습장애연구**, 20(1), 1-28.

김용훈 (2023). 경계선 지능의 개념 정의의 재구조화 및 교육지원 체계 연구. **발달장애연구**, 27(1), 1-17.

김지연, 김승경, 오옥찬, 정소연 (2021). **장애청소년 친화적 청소년정책 추진방안**

- 연구.**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노원경, 김태은, 오상철, 강옥려, 이민선, 김호영 (2020) 초등학교 경계선 지능 학생 선별체크리스트 개발을 위한 타당화 예비 연구. **교육연구논총**, 41(4), 143-171.
- 노혜진. (2018). 청년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 **보건사회연구**, 38(2), 71-102.
- 박광옥, 이기연, 이복실, 안예지 (2022). **경계선 지능 청년의 정책소의 실태 및 정책개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박미하, 김영인 (2023). 경계선 지능 학생을 대상으로 한 사회성 프로그램의 체계적 문헌고찰. **청소년상담학회지**, 4(4), 65-84.
- 박상현 (2023).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통합지원 운영의 실태 분석 및 발전 방안. 서교연 2023-88**.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 박소희, 이은주 (2022). 경계선 지능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국내 연구 동향: 연구대상자 선정 기준을 중심으로. **특수교육논총**, 38(3), 141-164.
- 박애리, 심미승, 박지현. (2017). 청년세대의 주거 빈곤 진입과 주거 불안정성 인식에 관한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19(2), 1-20.
- 박진우 (2023). 경계선 지능인의 현황과 향후 과제. 이슈와논점. 국회입법조사처.
- 반정호. (2012). 1인 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변화. **월간 노동리뷰**, 4, 55-67.
- 배화옥 (1993). 우리나라의 단독가구실태에 관한 소고. **한국인구학회지**, 16(2), 125-139.
- 변금선, 이해림. (2022). 청년의 다차원적 빈곤 특성-2010년과 2019년 청년층의 빈곤 비교. **사회복지정책**, 49(1), 87-119.
- 변미리 (2015). 도시에서 혼자 사는 것의 의미: 1인가구 현황 및 도시정책 수요. **문화 및 사회문제**. 21(3), 551-573.
- 변민수, 이미지, 이해경 (2024). **경계선 지능 청년 일 역량 강화 및 일경험 시범사업 연구**. 성남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 보건복지부·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아동자립지원단 (2017). **경계선지적기능아동 자립지원체계연구 : 경계선 지능아동 자립지원서비스 효과성 보고서**. 세종: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신재현, 정평강 (2021). 학습장애 진단 및 선정 절차의 현황과 과제 : 특수교육지원 센터를 중심으로. **학습장애연구**, 18(1), 1-25.
- 유민상, 신동훈. (2021). **청년의 사회적 고립 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 기본연구보고서, 1-545.
- 유민상, 신동훈, 신영규, 박미희. (2022). **청년 사회 첫 출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II: 성인 이행기 청년의 자립. 협동연구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유민상, 이경상, 유성렬, 이수정(2023). **2023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총괄보고서**. 연구보고 23-일반01.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윤신희, 김종성, 강현철, 고성훈, 이세훈 (2022). **고양시 청년 느린학습자 지원계획 수립 연구**. 경기: 고양시정연구원.
- 이무선 (2016). 다항 로짓모형을 이용한 청년 1인가구의 주거 점유형태 영향 요인 분석.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7(6), 469-481.
- 이미지, 장세영 (2023). **경계선 지능인 대상 고용서비스 지원 방안 연구**. 경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 이지아, 송해란, 조광래. (2024). 국내 '1 인가구' 연구 동향 분석-주제범위 문헌분석을 통한 체계적 문헌고찰. **한국사회복지학**, 76(3), 289-318.
- 이창효, 이승일 (2010). 서울시 1인 가구의 밀집지역 분석과 주거 환경 평가. **서울도시연구**, 11(2), 69-84.
- 임덕영, 이태진, 하은솔, 이병재, 남운재, 남기철, 정원오, 민소영, 신원우, 송아영, 이기재 (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세종: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임성은 (2023) 경계선 지능 청년의 실태·육구 분석. **GRI연구논총**, 25(4), 215-239.
- 정세정, 류진아, 강예은, 김성아, 함선유, 김동진, 임덕영, 신영규, 김문길, 이해정,

- 김기태, 김태완, 이원진 (2022). **정책보고서 2022-109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세종: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소이, 권혁삼, 기호영, 박윤재, 이진하, 이동훈 (2023). **청년 주거수요를 반영한 도심 청년주택 모델 개발**.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 정의철. (2012). 주거비용이 청년층의 가구형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부동산학연구**, 18(2), 19-31.
- 정현주 (2020). “청년 1인가구의 특징과 주거실태”. **한국의 사회동향 2020**. 대전: 통계청 통계개발원.
- 차유림, 민소영, 장혜림. (2022). 자립준비청년의 자립경험. **청소년복지연구**, 24(4), 79-99.
- 채병주, 황선재. (2021). 청년 1인가구의 사회경제적 일질성과 복지 영역 선호. **보건사회연구**, 41(3), 248-268.
- 정세정, 류진아, 강예은, 김성아, 함선유, 김동진, 임덕영, 신영규, 김문길, 이혜정, 김기태, 김태완, 이원진 (2022).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정책보고서 2022-109)**. 세종: 국무조정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허경화, 백은령 (2023).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인식한 친구·직업 유무가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과 긍정적 자아개념의 매개효과: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의 다집단 분석. **장애와 고용**, 33(4), 33-66.
- 허은 (2022). 경계선 지능 아동에 관한 국내 연구동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2(9), 187-200.
- 황여정, 이정민 (2020). **위기청소년 현황 및 실태조사 기초연구**.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외국문헌]

- Cisneros-Cohernour, E. J., & Stake, R. E. (2014). A research experience using portfolios for assessing college teaching. *Revista Iberoamericana de Evaluación Educativa*, 7(2), 209-214.

- Garthwaite, K. (2012). Home Alone? Practitioners' Reflections on the Implications of Young People Living Alone. *Youth & Policy*, 108, 73-87.
- Hall, R. and Ogden, P. E. (2003). The rise of living alone in Inner London: trends among the population of working age. *Environment and Planning A*, 35, 871-888.
- Lernen Förder(Hrsg.), Lernbehinderung im Spiegel der neuen ICD-11, *Lernen Fördern·Heft 3/22*, S. 19.
- Michael, R. T., Fuchs, V. R. and Scott, S. R. (1980). Changes in the Propensity to Live Alone: 1950-1976. *Demography*, 17, 39-56.
- Victor, C., Scambler, S., Bond, J. and Bowling, A. (2000). Being alone in later life: loneliness, Social Isolation and Living Alone. *Review in Clinical Gerontology*, 10, 407-417.
- Wade, J. and Dixon, J. (2006). Making a home, finding a job: investigating early housing and employment outcomes for young people leaving care. *Child and Family Social Work*, 11(3), 199-208.
- Wenger, G., Davies, R., Shahtahmasebi, S. and Scott, A. (1996). Social Isolation and Loneliness in Old Age: Review and Model Refinement. *Ageing and Society*, 16, 333-358.
- 梅永雄二 (2023). **知的ボーダーライン者に対する就労支援の必要性**. 第31回職業リハビリテーション研究・実践発表会. 独立行政法人高齢・障害・求職者雇用支援機構 障害者職業総合センター (<https://www.nivr.jeed.go.jp/vr/news/vrhappyou31-annai-index.html>)에서 2024년 4월 20일 인출.
- 平田正吾, 奥住秀之 (2023). **知的障害概念についてのノート (2) 境界知能の現在**. **東京学芸大学教育実践研究紀要**, 19, 99-102 (https://www2.u-gakugei.ac.jp/~scsc/bulletin/vol19/19_14.pdf) 에서 2024년 4월 20일 인출.

Bundesagentur für Arbeit(Hrsg.), Inklusion-die Beschäftigung von Menschen mit Behinderungen ist ein Gewinn für alle!!, Tagungsbroschüre: Zusammen Erfolgreich in Arbeit 2016, Stand: *Dezember (2016), S. 7.*

Bundesagentur für Arbeit(Hrsg.), Inklusion-die Beschäftigung von Menschen mit Behinderungen ist ein Gewinn für alle!!, Tagungsbroschüre: Zusammen Erfolgreich in Arbeit 2016, Stand: *Dezember (2016), S. 10.*

Deutsche Berufsförderungswerke Bundesverband(Hrsg.), *Neustart in den Beruf, (2024), S. 1.*

Deutsche Berufsförderungswerke Bundesverband(Hrsg.), *Neustart in den Beruf, (2024), S. 7.*

Generalitat de Catalunya(2017). *Recommendations for caring for people with Borderline Intellectual Functioning.* <https://presidencia.gencat.cat/funcionamentintellectual-limit> 에서 2024년 11월 29일 인출

Handwerkskammer Hannover(Hrsg.), *Ausbildung von Fachpraktiker, (2017), S. 4.*

Handwerkskammer Hannover(Hrsg.), *Ausbildung von Fachpraktiker, (2017), S. 5.*

Handwerkskammer Hannover(Hrsg.), *Ausbildung von Fachpraktiker, (2017), S. 6.*

Handwerkskammer Hannover(Hrsg.), *Ausbildung von Fachpraktiker, (2017), S. 8.*

Handwerkskammer Hannover(Hrsg.), *Ausbildung von Fachpraktiker, (2017), S. 9.*

Klüssendorf, Der Erwerb von Schlüsselqualifikationen für Menschen mit

- Lernschwierigkeiten - Ein Bildungsangebot der Hamburger Arbeitsassistenten, in: BAG UB(Hrsg.), *impulse, Ausgabe 27, September (2003), S. 21.*
- Klüssendorf, Der Erwerb von Schlüsselqualifikationen für Menschen mit Lernschwierigkeiten - Ein Bildungsangebot der Hamburger Arbeitsassistenten, in: BAG UB(Hrsg.), *impulse, Ausgabe 27, September (2003), S. 22.*
- Radatz/König/Bausch/Petri/Humpert-Plückhann, Arbeitsweltbezogene Bildungsbegleitung im Übergangsfeld zwischen Schule und Beruf, in: BAG UB(Hrsg.), *impulse, Ausgabe 36, Dezember (2005), S. 23.*
- Radatz/König/Bausch/Petri/Humpert-Plückhann, Arbeitsweltbezogene Bildungsbegleitung im Übergangsfeld zwischen Schule und Beruf, in: BAG UB(Hrsg.), *impulse, Ausgabe 36, Dezember (2005), S. 24.*
- Radatz/König/Bausch/Petri/Humpert-Plückhann, Arbeitsweltbezogene Bildungsbegleitung im Übergangsfeld zwischen Schule und Beruf, in: BAG UB(Hrsg.), *impulse, Ausgabe 36, Dezember (2005), S. 25.*
- Robert-Koch-Institut(RKI), Gesundheit in Deutschland (2015). S. 133 f.
- Statistik der Bundesagentur für Arbeit(Hrsg.), Grundlagen: Hintergrundinfo - Assistierte Ausbildung: Gesetzliche Neuausrichtung und statistische Berichterstattung, *Nürnberg, April (2022), S. 9.*
- Trautwein/Schöpfer/Weber/Weyersberg, PIC-Das Projekt Integrationscoach, in: BAG UB(Hrsg.), *impulse Impressum, Nr. 36, Dezember (2005), S. 17.*
- Trautwein/Schöpfer/Weber/Weyersberg, PIC-Das Projekt Integrationscoach, in: BAG UB(Hrsg.), *impulse Impressum, Nr. 36, Dezember (2005), S. 22.*

[웹사이트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2024). <https://likms.assembly.go.kr>에서 2024년 11월 20일 인출.

노동세계 포털 홈페이지 <https://www.arbeitswelt-portal.de/ausbildung/>

artikel/huerden-ueberwinden-unterstuetzung-junger-menschen-auf-dem-ausbildungsweg에서 2024년 11월 29일 인출.

노동사무소 홈페이지 <https://www.arbeitsagentur.de/bildung/ausbildung/hilfen-jugendliche-behinderungen>에서 2024년 12월 2일 인출.

느린학습자돌봄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s://www.slowlearner.co.kr/>에서 2024년 11월 20일 인출.

느린학습자시민회 (2021) 느린학습자의 슬기로운 학교생활을 위한 가이드북 (<https://slowlearners.kr>)에서 2024년 11월 20일 인출.

독일교육서버 홈페이지 <https://www.bildungsserver.de/berufseinstieg-fuer-menschen-mit-lernschwierigkeiten-und-geistiger-behinderung-8897-de.html>)에서 2024년 11월 29일 인출.

독일 상공회의소 홈페이지 <https://www.dihk.de/de/themen-und-positionen/fachkraefte/aus-und-weiterbildung/ausbildung/einstiegsqualifizierungen-5712>에서 2024년 12월 2일 인출.

독일 연방노동사무소 홈페이지 <https://www.arbeitsagentur.de/unternehmen/ausbilden/einstiegsqualifizierung-arbeitgeber>에서 2024년 12월 2일 인출.

독일직업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s://www.bv-bfw.de/>에서 2024년 11월 29일 인출.

독일연방법률공보 홈페이지 <https://www.recht.bund.de/bgbl/1/2023/146/VO.html>에서 2024년 11월 29일 인출.

독일 연방사법부와 연방사법청, 인터넷 법률 홈페이지 '사회법전 제9권' (https://www.gesetze-im-internet.de/sgb_9_2018/)에서 2024년 11월 29일 인출.

독일연방사법부와 연방사법청, 인터넷 법률 홈페이지 (<https://www.gesetze-im-internet.de/index.html>)에서 2024년 11월 29일 인출.

독일학습장애인지원연대 <https://lernen-foerdern.de/portfolio-item/lernbehinderung>에서 2024년 7월 20일 인출.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 홈페이지 http://www.communitycenter.or.kr/bbs/content.php?co_id=social_business02_2에서 2024년 7월 4일 인출

연방노동실무그룹 직업교육센터 홈페이지 <https://www.bagbbw.de/berufsbildungswerke/reha-angebote/fachpraktiker-werkerausbildungen/>에서 2024년 12월 2일 인출.

연방지원고용실무그룹(BAG UB) 홈페이지 <https://www.bag-ub.de/seite/428578/budget-f%C3%BCr-arbeit.html>에서 2024년 11월 29일 인출.

위키백과 Lernbehinderung <https://de.wikipedia.org/wiki/Lernbehinderung#Statistik>에서 2024년 11월 29일 인출.

은평구 블로그 <https://blog.naver.com/eunpyeonggu/223416988934?trackingCode=rss>에서 2024년 7월 3일 인출.

청년몽땅정보통 (2024) <https://youth.seoul.go.kr/index.do>에서 2024년 11월 20일 인출.

통계청 KOSIS, 인구동향조사 '주요인구지표(<https://kosis.kr>)' 에서 2024년 4월 11일 인출.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19).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JC1517&checkFlag=N에서 2024년 10월 17일 인출.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22).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JC1517&checkFlag=N에서 2024년 10월 17일 인출.

통계청 지표누리(index.go.kr) 1인가구 비율 <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5065#> 에서 2024년 10월 17일 인출.

통계청 통계로 보는 1인가구 (2023). https://www.kostat.go.kr/board.es?mid=a10301010000&bid=10820&act=view&list_no=428414에서 2024년 10월 17일 인출.

통합청 및 주요복지센터 연방실무그룹(BIH) 홈페이지 <https://www.bih.de/integrationsaemter/medien-und-publikationen/fachlexikon/detail/lernbehinderung/>에서 2024년 11월 29일 인출.

학습지원-연방학습장애인지원협회(e.V.), 학습장애통계: 독일 학습장애인의 인적 범위에 포함되는 사람은 얼마나 많은가?, 12. Dezember (2020). S. 1-2

(https://lernen-foerden.de/wp-content/uploads/2023/02/LERNEN-FOERDERN_Eser_Statistik-zur-Lernbehinderung_12.12.2020.pdf)에서 2024년 12월 22일 인출.

AccessComputing 홈페이지 <https://www.washington.edu/accesscomputing/what-are-specific-types-learning-disabilities>에서 2024년 11월 29일 인출.

Betanet 홈페이지 <https://www.betanet.de/budget-fuer-ausbildung.html>에서 2024년 11월 29일 인출.

Bürgerservice des Sozialministeriums 홈페이지 <https://www.stmas.bayern.de/arbeitswelt/index.php>에서 2024년 11월 29일 인출.

BRIDGES 홈페이지 <https://bridgestowork.org>에서 2024년 11월 29일 인출.

Eser, Lernbehinderung, die Behinderung „auf den zweiten Blick“ - oder: Sind(junge) Menschen mit Lernbehinderung überhaupt behindert?, In: Berufliche Rehabilitation, 19(4). 2005, S.

2-3(<https://www.bildung-stmk.gv.at/dam/jcr:d838fa22-2e37-45b2-9e85-4acbe132d956/Lernbehinderung%20-%20%20Klassifikation.pdf>)에서 2024년 11월 29일 인출.

Eser, Lernbehinderung, die Behinderung „auf den zweiten Blick“ - oder: Sind(junge) Menschen mit Lernbehinderung überhaupt behindert?, Bildungsdirkeiton Steiermark PDF, S. 15-16.

Eser, Lernbehinderung, die Behinderung „auf den zweiten Blick“ - oder: Sind(junge) Menschen mit Lernbehinderung überhaupt behindert?, S. 17.

Eser, Wie viel „Lernbehinderung“ steckt im „Sonderpädagogischen Beratungs-, Unterstützungs- und Bildungsangebot“?, S.

2(https://lernbehinderungen.de/wp-content/uploads/2023/09/LB_vs_SBUB_Eser-20230907.pdf)에서 2024년 11월 29일 인출.

Leandra Herder, Projektbericht: Ist-Analyse der Fachpraktikerausbildung

im Rheinland sowie Entwicklung von Empfehlungen zur Ausweitung und Optimierung des Ausbildungsangebotes für Menschen mit Behinderung gemäß § 66 BBiG/§ 42r HwO, LVR-Dezernat Schulen, Inklusionsamt, Soziale Entschädigung, 2020.

REHADAT 홈페이지 <https://www.rehadat.de/lexikon/Lex-Gesetz-zur-Foerderung-eines-inkluisiven-Arbeitsmarkts/>에서 2024년 12월 2일 인출.
Umwelt-Werkstatt 홈페이지 <https://www.umwelt-werkstatt.com/massnahmen/berufsausbildung-fuer-menschen-mit-lernbehinderungen-und-besonderem-foerderbedarf/>에서 2024년 11월 29일 인출.

[보도자료]

교육부 (2024). 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경계선 지능인 지원 방안'
국토교통부 (2023). "내게 맞는 청년 주거정책, 마이홈에서 찾아보세요 (23.08.30)" 보도자료
김민지, "[기획] 사각지대에 놓인 경계선 지능인 (하) 정책 하나로 모을 '컨트롤 타워' 필요", 경기신문, 2024년 5월 29일자, <https://www.kgnews.co.kr/news/article.html?no=795535> 에서 2024년 7월 3일 인출.
김세훈, "[일자리 소외] 겪는 경계선 지능인... "배우고 익히면 할 수 있어요"", 경향신문, 2024년 5월 10일자,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5100600001> 에서 2024년 7월 3일 인출.
김현아, "구로종합사회복지관, 느린학습자 지원체계 프로그램 진행", 매일일보, 2022년 12월 1일자, <http://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968885> 에서 2024년 07월 04일 인출.
민세리, "경계선 지능인 취업 지원, 독일에서 가능성을 모색하다", 에이블뉴스, 2024년 2월 11일자,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0625> 에서 2024년 4월 20일 인출.
박소연, "[복지] 사각지대로 떠밀린 경계선 지능인 공공의 손길 내밀어야", 서울시립대신문, 2024년 5월 7일자, <https://press.uos.ac.kr/news/articleView.html?idxno=>

14222 에서 2024년 7월 3일 인출.

이진호, "'경제선 지능인 청년들에게 쉽터가 되어주는 '취카페''", 매거진한경, 2024년 6월 21일자, https://magazine.hankyung.com/job-joy/article/202406212200d#_enliple 에서 2024년 7월 3일 인출.

허인, "성북구의회,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 현장방문", 신아일보, 2024년 5월 16일자, <https://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74696>에서 2024년 7월 3일 인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홈페이지 <https://www.lh.or.kr/menu.es?mid=a10708030000> 에서 2024년 8월 14일 인출.

국문초록

우리 사회에 청년정책이 등장하면서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성인 이행기에
서의 새로운 취약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기존의 사회정책에서 다루
지 못했었던 사회적 위험과 취약성에 대한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성인
이행기가 길어지면서 원활한 이행을 하지 못하는 청년들에 대한 특별한 지원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1인가구 청년은 매우 이질적인 집단이나 사회적 지지체계나 사회경제적 불안
정성이 높은 취약 집단이 집중되어 있어 성인기 이행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에
서, 경계선 지능 청년은 교육과 고용의 경계에서 특별한 지원이 뒤따르지 않으
면 성인기 이행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1인가구 청년의 현황을 살펴보기 위하여 2차 데이터 분석과 면접
조사를 시행하였고, 현재 우리나라의 1인가구 청년 지원 정책을 분석하였다.
경계선 지능 청년의 현황은 아직 체계적으로 조사된 바가 없어 국내외 사례를
통해 경계선 지능 청년 지원 정책의 출발점과 방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 연구는 기초 연구로서 1인가구 청년과 경계선 지능 청년이 경험하는 취약
성에 대해 사회적으로 지원하고, 이들의 원활한 성인기 이행을 지원하는 위한
방향에서 법제도, 서비스 및 프로그램, 전달체계 등에서의 정책 개선 사항을
제언하였다.

키워드: 성인기 이행 취약성, 취약 청년, 1인가구 청년, 경계선 지능 청년



ABSTRACT

With the proliferation of youth policies, there is a growing interest in previously overlooked vulnerabilities, leading to the implementation of responses to social risks and vulnerabilities that existing social policies have failed to address. Notably, support is being directed toward young people facing challenges in their transition to adulthood due to prolonged developmental periods.

Young single-person households, while a highly heterogeneous group, are also a vulnerable population marked by fragile social support systems and socioeconomic instability, hindering their smooth transition to adulthood. Similarly, young individuals with borderline intelligence encounter significant difficulties in this transition without specialized educational and employment support. Therefore, a focused examination of these issues is imperative.

This study employed secondary data analysis and in-depth interviews to assess the current situation of young single-person households and analyzed existing support policies in South Korea. Recognizing the lack of systematic research on young people with borderline intelligence, this study explored the foundational principles and directional pathways for support policies through an analysis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case studies.

As a foundational study, this research proposes policy improvements across legal frameworks, services, programs, and delivery systems to provide social support for the vulnerabilities experienced by both young single-person households and young individuals with borderline intelligence, thereby facilitating their successful transition to adulthood.

Keyword: vulnerability in the transition to adulthood, vulnerable youth and young adults, youth and young adults living alone, youth and young adults with borderline intellectual functioning, BIF

발간등록번호

취약청년 현황 및 지원방안 연구
-1인가구 청년 및 경계선 지능 청년을 중심으로

1판 1쇄 인쇄 2024년 12월 15일

1판 1쇄 발행 2024년 12월 15일

발행기관 국무조정실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61(어진동) 세종청사

전화번호 044-200-2470

팩스번호 044-200-2481

기획·인쇄 (사) 대한민국 공무원 공상유공자회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44) 415-2125(학술정보관)

